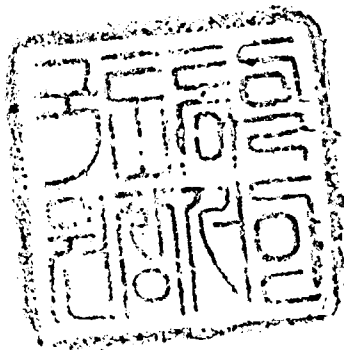


北韓概要



國土統一院

머 리 말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南과 北이 서로 상대를 대하는 길은 알다시피 평화가 아니면 오로지 침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실로 서로가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면, 우선 문을 열고 자기의 사정을 있는 대로 서로 털어 놓으면서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는 도리 밖에 없을 터이다. 문을 잠그어 두고 자기 사정을 일체 비밀에 부쳐둔 채 平和統一을 하고자 한다면 그 眞意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까닭에 우리는 북한이 공산 정권이 자기 사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또 이북 동포들로 하여금 以南과 外國의 실정을 모르게 하는 密閉政策을 쓰고 있는 限, 과연 그들이 말하는 平和統一이 무엇인지 그 眞意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까닭에 근래 줄곧 對話를 거부하고 사실상 分斷을 長期化시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平和統一의 진실한 출발은 서로의 접촉이 아닐 수 없고, 상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대한 민국 정부의 입장은 철두 철미 平和統一의 입장이며, 그럼으로 해서 對話와 交流를 열렬히 希求하고 있다.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北韓의 實情을 알아야 되고 平和統一에 대한 彼我間의 문제점을 미리 연구해 두려고 한다.

더구나 30여 년간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생긴 자연적인 異質化도 있거니와 동시에 북한 정권의 공산주의 체제화와 특이한 人間改造運動으로 인한 人爲的 異質化의 면이 뚜렷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同質化되려니 하는 소박한 생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國土統一院은 祖國의 平和統一이라는 民族의 使命感 아래 平和統一의 앞날이 결국은 멀지 않아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북한의 정권 체제는 물론이요, 이북 동포의 생활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무던히 애써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북한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압으로써 平和統一에 대한 主導力을 장악하고 북한 동포에게 平和와 統一을 힘차게 소리쳐서 그들이 平和統一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國土統一院은 갖고 있는 북한 자료의 일부를 요약하여 한 권으로 엮어 장래에 있을 平和統一에 대비코자 하며, 내용은 객관성을 존중하였으며, 자료는 부족한 대로 통일원 자료에 국한하였다.

1978年 12月

이 책은 1979 年度에 刊行한 <北韓概要>의 增補版임.

일러두기

①本文中 機關, 團體, 地名, 人名 등 固有 名稱과 用語는 加급적 北韓에서 사용되는 그대로 表記하였다.

②本文과 圖表에서는 <註> 또는 <出處>로서 北韓에서 出刊된 資料名을 明記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國內外 研究機關의 推定 資料를 使用하였다.

③軍事分野는 그 特殊性 때문에 省略에 부친 部分이 많고 概括的인 것만을 적었다.

④資料篇에서는 北韓에서 發表된 原文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⑤人物, 圖表, 地圖는 最近의 資料를 근거로 作成한 것이다.

⑥北韓에서 發表되는 統計나 數値는 疑問點이 많으며(예컨대 北韓은 15년간이나 公式的으로 人口를 發表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이용된 推計値에 관해서는 다소 異論의 餘地가 있을 수 있다.

⑦本文中 內容이나 現況資料는 1979年 12月 現在까지를 다루었다.

차례

政治	7
政治理念	9
主體思想	9
思想教益事業	9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10
主體思想의 內容	11
革命觀	13
社會主義建設 : 3大革命	14
南朝鮮革命	16
世界革命	17
政治體制	19
朝鮮勞動黨	19
形成過程	20
性格變化	21
黨 勢	25
組織體系	26
中央機關	28
地方機關	32
黨의 外廓團體	33
黨의 運用體系	34
政權機關	35
人民共和國의 樹立	36
社會主義憲法 採擇	39
政權機關의 組織	40

特殊機能 組織	51
政治權力	54
金日成體制 強化	54
派閥鬭爭	54
金日成崇拜運動	56
指導層의 變化	57
指導層의 人物交替	57
權力承繼準備	61
經 濟	63
經濟體制	65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基盤構築	65
土地改革과 農業의 集團化	65
產業의 國有化	68
管理體制	70
管理體制의 組織	70
計劃體制	72
農業管理	74
工業管理	75
經營方式	79
獨立採算制	79
社會主義競爭運動	80
經濟循環	82
流通秩序	82
價 格	83
貨 幣	84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85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85

自力更生 原則	85
重工業優先政策	86
國防・經濟併進政策	86
經濟計劃的 實施	87
部門別 現況	91
國民所得	91
財政・金融	92
財 政	92
金 融	96
農・水產業	97
農 業	97
水產業	105
鑛・工業	106
採取工業	106
冶金工業	107
機械工業	108
化學工業	109
電力工業	110
建材工業	112
紡織工業	112
輸送・通信	113
輸 送	113
通 信	117
貿易・對外協力	117
貿 易	117
受援・借款	121
社 會	123
人 口	125

人口政策	125
人口現況	126
住民生活	128
家庭	128
家族制度의 變化	128
女性의 地位	130
結婚・離婚	132
出産・育兒	136
衣・食・住	139
所得・消費	144
時期別 政策	144
勞動者 賃金	144
農場員 分配	146
物 價	148
風 俗	149
冠婚喪祭	149
名 節	152
民 俗	153
信 仰	153
勞動・保健	156
勞 動	156
保健・醫療	159
社會統制와 逸脫	162
成分 및 階層構造	162
住民統制	164
政治思想的 統制	164
經濟的 統制	164
家庭生活 統制	166

社會的 逸脫	166
教育·文化	169
教 育	171
教育政策	171
學校教育	171
教育制度	171
教員養成	178
教育內容	178
黨教育	179
社會教育	179
研究機關	180
文 化	182
言 語	182
文學·藝術	183
文藝政策	183
文藝團體	184
文 學	185
美 術	188
音 樂	188
映畫·演劇	189
報道·出版	190
新 聞	190
通 信	191
放 送	191
出 版	193
體 育	194
體育政策	194
競 技	195

文化施設	198
軍 事	201
軍形成斗 性格	203
形成過程	203
人民軍斗 性格	206
軍事政策斗 戰略	208
軍事政策	208
軍事戰略	210
軍事組織體系	212
軍事機構	212
軍隊內 政治組織	215
軍事編制	217
軍事現況	221
兵役 與 訓練	221
兵器生產	222
兵力 與 裝備	223
豫備兵力	226
軍事同盟	229
外 交	231
外交政策	233
政策基調	233
國際政治觀	233
政策目標 與 指針	233
政策決定 與 執行機構	235
政策變化過程	236
外交活動	239

地域外交	239
對中·蘇外交	239
對東歐外交	242
第3世界外交	244
對西方外交	248
UN外交	249
經濟外交	253
對外宣傳	254
宣傳內容與方式	255
宣傳機構	256
親北團體	256
朝總聯	258
修交現況	261
統 一	267
統一政策	269
統一政策的基調	269
南韓觀	269
統一觀	270
統一戰略	271
統一方案	272
統一方案的變遷	272
5大方針	278
南北對話	281
南北赤十字會談	281
南北調節委員會	283
變則對坐	285
卓球會談	286

三當局會談	288
資 料	291
〈조선로동당 규약〉	29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3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32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332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 교양법〉	34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347
北韓 主要年表	375
北韓 人名錄	387
北韓 圖表	
北韓 地圖	

政 治

政治理念

主体思想

오늘날 北韓에서는 <金日成 主体思想>이 政治·軍事·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指導理念으로 되고 있다.

勞動黨 規約과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자기 金日成 主体思想을 黨이나 國家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黨規約 前文：“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同志의 偉대한 主体思想을 자기 活動의 指針으로 삼는다.”

□ 社會主義憲法 第4條：“人民共和國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現實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主体思想을 自己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

北韓에서 <主體>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50年代 중반부터이며, 1970年代에 와서 이른바 <主體思想>으로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主體思想>은 처음 소련으로부터 輸入된 共產主義의 移植定着을 위한 <思想教養事業>의 展開와 병행해서 形成된 것이다.

思想教養事業

解放以後 오늘까지 北韓에서의 <思想教養事業>은 6.25 動亂 以前の <建國思想 總動員運動>, 休戰後의 <階級教養>, 1960年代 初까지의 <共產主義教養> 등으로 추진되어 왔다.

첫째로, 建國思想 總動員 時期는 1946年 土地改革을 비롯한 產業國有化 등 이른바 <民主改革>이라는 명분으로 <反帝, 反封建 民主革命課業을 完遂하고 社會主義의 길로 들어선 時期>였다.

이 時期에는 政權의 樹立과 改革을 촉진하기 위해서 住民의 참여의식과 사상무장을 고취하는 것이 思想教養의 주요 내용이였다.

따라서, 이 때는 共產主義가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고 <反帝·民主思想>이 강조되였다.

둘째로, 1950年代 후반까지는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社會主義 基礎建設>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기였다.

이 時期에는 社會主義的 改革을 추진하기 위하여 思想教養事業의 內容으로서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당성 제고가 강조되였다.

세째로, 1960年代 初까지는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成되고, 先進的인 社會主義制度가 확립된 시기>였다.

계속해서 社會主義建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상 교양 사업의 내용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 世界觀>과 集團主義精神, 勞動을 사랑하는 精神과 같은 <共產主義的 道德稟性>이 要求되였다.①

네째로, 1960年代 후반 이후부터는 <社會主義의 더 높은 發展 段階>로 규정하고, 社會主義建設을 가일층 전진시키는 혁명과제가 제시되였다.

이 때부터는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강조되고 <主體思想에 기초한 政治思想的 統一>이 고창되였다.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北韓에서 <主體>가 거론되기는 1955年末 勞動黨 宣傳煽動員大會에서 金日成이 <思想에서의 主體>를 力說한 데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黨 思想事業에서 主體 確立의 必要性이 提起된 것은 戰後復舊建

① 4차 당대회(1961.9)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진통 교양>을 건부시킨 필수성을 제기하였다. 김일성 저작선집, 3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 180.

設 時期에 金日成이 黨內 反對派들의 挑戰으로 말미암아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걸쳐 黨의 政策을 樹立하고 貫徹해 나가는 데서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韓國의 北韓問題 專門家들 間에는 北韓에서 <主體>를 내세운 것이 黨內 宗派分子에 대한 肅清을 통한 金日成體制의 確立에 보다 根本的인 目的이 있었다고 보는 見解가 지배적이다.

당시 주체확립 문제는 金日成이 반대파의 입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당면 思想事業 방향을 제시하는 데 국한되어었다. 그 후 中·蘇간의 理念紛爭의 격화로 말미암아 國際共產主義運動 대열 내에 <현대 수정주의(一名 좌우경 기회주의)>가 대두되자, 김 일성은 <主體>를 대내외의 정치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北韓이 思想·政治·經濟·國防·外交의 諸領域을 <主體思想>의 내용 체계로 綜合化·理論化시킨 것은 1970年代에 와서이다.

昨속에 와서는 이른바 <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로 부각시키면서 <金日成主義>를 마르크스주의와 根本的으로 區別되는 現代 勞動階級의 가장 탁월한 指導理念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金日成의 아들 金正一의 後繼者 翁翊설과 관련하여 더욱 표면化되어 가고 있다.②

主體思想의 內容

<主體思想>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基本原則에 立脚하여 革命과 建設의 主體와 原動力을 人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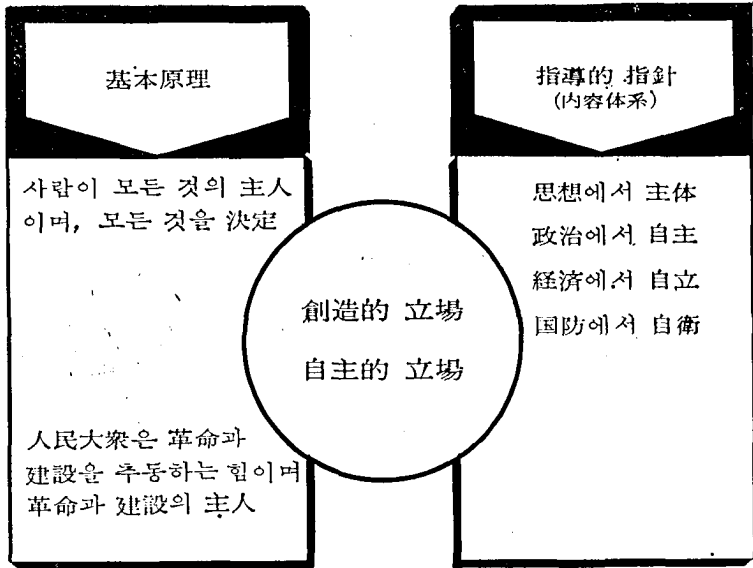
② 1972년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를 북한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며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맞는 사상이라고 하였다. 김일성,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인본 미니저널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김일성 대답), 근로자 (1972, 10)

<김일성주의>는 1974. 2. 16 김정일이 생일기념 연회에서 한 연설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와 하자”는 데서 <로동당 내에 한해> 공식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전에도 1973년, 각급 당학교, 정치학교, 대학교 사회과학 과목에 <김일성주의 철학>, <김일성주의 정치경제>, <김일성주의 원리>, <김일성주의 제문제>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에서 정기적으로 <김일성주의 학습> 시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외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소> 명칭을 <김일성주의 연구소>로 개칭하고 있다.

<김정일의 후계 翁翊설문제>에 관해서는 <政治權力>篇의 <權力繼承 準備> 항을 참조.

大衆에 歸着시키고 있다.③ 北韓의 理論家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革命과 建設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 즉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思想이며, 이러한 사상을 具現하는 指導的 指針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主體思想>



北韓은 이러한 <主體思想>을 모든 分野에 걸쳐 지도 이념화하여 全住民을 <주체사상으로 一色化> 하는 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國際的으로는 <主體思想>에 대한 宣傳活動을 적극 벌이고 있다.

에 對하여, 世界各國에 主體思想 研究所를 組織하여 主體思想에 관한 국제적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주체사상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여 非同盟 勢力 등에 影響을 부식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主體思想의 宣傳은 주로 아시아, 아프리

③ 이러한 主張에 대해 海外에서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 또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버나드·크리서記, "김일성의 격리병동", 뉴스위크 (1979. 10. 15)

〈主體思想〉의 內容體系 形成過程

內 容	提 起 時 期	背 景
思想에서의主體	黨 煽動員大會 (1955. 12. 28)	◦ 스탈린의 死亡 ◦ 黨內 國內派 肅清
經濟에서의自 立	黨 中央委員會 12月全員會議 (1956. 12. 11)	◦ 對外援助 減少(5個年 經 濟計劃 樹立 蹉跌) ◦ 黨內 反金日成運動 高潮
政治(內政)에 서의 自主	黨 中央委員會 12月全員會議 (1962. 12. 10)	◦ 共產圈內 個人崇拜 反對 運動 ◦ 黨內 中共派, 蘇聯派 打 倒
國防에서의自 衛	黨 中央委員會 4期 5次 全員 會議(1962. 12. 10)	◦ 中·蘇紛爭의 發展과 美 ·蘇 共存 摸索 ◦ 韓國의 軍事革命
政治(外交)에 서의 自主	第 2次 黨 代表者會議 (1966. 10. 5)	◦ 中·蘇紛爭의 擴大 ◦ 非同盟 運動의 發展
綜合體系化	黨 中央委員會 4期 16次 全員 會議 (1967. 6. 28) 第5次 黨大會 (1970. 11. 12)	◦ 金日成 1人支配體制的 確立 ◦ 金日成 個人崇拜運動의 展開

카 地域의 非同盟國家를 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蘇聯·中共 등과 같은 共產國家들에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革 命 觀

革命觀에 있어서는 〈北韓에서의 社會主義·共產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 그리고 〈世界革命〉이라는 세 가지 革命課業間的 관련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革命的 〈民族的 任務〉와 〈國際的 任務〉^④를 同時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北韓에서의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은 〈남조선 혁명〉

④ 주체사상 연구소, 김일성의 주체사상(명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을 위한 <基地>를 강화하는 것이 되며, 동시에 그것은 또 <世界革命의 一部分>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社會主義 建設 : 3大革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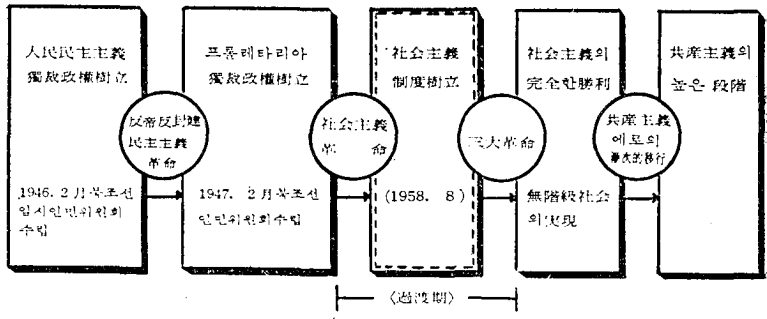
이른바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관한 理論>은 共產主義 社會에 도달할 때까지는 革命段階 區分과 매개 혁명단계의 특징과 임무에 따르는 革命的 <目標>, 그리고 <戰略的 課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社會主義 革命論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政權이 수립되어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이후부터 <社會主義制度가 樹立>되고, 나아가 無階級 社會가 實現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까지를 <過渡期>로 규정했다는 점이다.⑤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기까지 <過渡期> 革命的 目標로는 <思想的 要塞>와 <物質的 要塞>의 占領이 제시되고 있다.

<思想的 要塞의 占領>이란 <은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 것을 말하며, <物質的 要塞의 占領>이란 <社會主義的 物質的 土臺를 構築>하는 것을 의미한다.

革命的 段階區分



⑤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이론 (명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북한에서는 그와 같은 <過渡期>의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상·문화·기술의 이른바 <3大革命>을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3大革命이라 함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세 가지 혁명을 뜻하는데, 오늘날 北韓에서는 勞動이나 教育에 이르기까지도 全住民이 이를 생활의 기본 행동원칙으로 삼고 있다.⑥

3大革命 中에서는 思想革命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이를 <제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 하면, 思想革命은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人間改造事業>이며, 동시에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政治事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에 있어서 思想革命은 인간 개조사업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동계급의 혁명화>, <농민의 노동계급화·혁명화>, <인텔리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의미하고 있다.⑦

이와 같은 思想革命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당 조직은 물론 정권기관, 근로단체, 교육기관, 문화기관 등 모든 조직이 동원 활용되며, 조직생활을 통한 <批判事業>과 문학·예술을 통한 <群衆教養 改造事業> 등의 方法이 이용되고 있다.

思想革命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分野의 活動에서는 政治事業의 先行이 강조되고 있다.

技術革命은 共產主義 社會로 넘어가기 위한 <물질적 요새 점령>이라는 內容의 革命으로서 <낡은 技術을 새 기술로 바꾸고 손노동을 기계화·반자동화·자동화하기 위한 鬪爭>을 뜻하며,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줄인다는 데 그 당면 목표를 세우고 있

⑥ 사회주의 헌법 제11조, 36조, 로동법 9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계.

⑦ 사상혁명, 온사회의 혁명화·로동계급화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다.⑧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계속되는 經濟計劃에 따른 <긴장된 노력사정>을 푸는 데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오늘날 金日成은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사대주의·기술신비주의·경험주의>가 기술혁명을 가로막는 장애로 간주하고,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기술혁명 수행의 선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문화혁명은 노동계급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革命課業의 하나로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 기술은 근로자들의 육체 노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 예컨대 화학비료의 施肥, 트랙터의 이용과 관리 方法 등을 말한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는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 있어 환경위생정화와 질서확립을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社會主義 生活樣式을 北韓社會內에 뿌리박는 데 目的이 있다.

오늘날 북한은 이러한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추진을 위해 <3大革命小組運動>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군중적 차원에서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 <숨은영웅 모범따라배우기 運動>등을 벌리고 있다.⑨

南朝鮮革命

北韓은 <南朝鮮革命>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革命完成>을 위한 地域革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규정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의 目標은 現 大韓民國政府를 전복하고, 새로운 <民主聯合政府> 形態의 <人民政權>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革命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은 우선 南韓에 <마르크스·레닌主義黨>⑩을 건설하여 <主力軍>을 編成하고

⑧ 사회주의 헌법 제25조, 로동법 7조.

⑨ <3大革命小組運動>에 관해서는 <政治體制>篇의 <특수기능 조직> 중 <3대혁명소조>항과 <政治權力>篇의 <權力繼承準備>항을 參照.

⑩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統一革命黨을 지칭 (로동신문 1979. 8. 25).

〈補助力量〉을 동원하는 〈統一戰線形成〉을 추진함으로써 〈反革命勢力〉을 弱體化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統一戰線形成〉은 하층 통일을 위주로 하면서 상층 통일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① 즉 통일전선의 대상인 韓國內의 政黨·社會團體와 제휴 합작을 실현하는 데서 그 대상 政黨·社會團體內의 하층 군중들과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政黨·團體內 支配層과의 〈상층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상·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政黨·團體들을 하나씩 하나씩 統一戰線體에 흡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戰略의 方針下에, 투쟁 방법으로는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등 각종 형태의 투쟁 方法을 결합해야 하며,② 모든 투쟁은 〈主權〉을 쟁취하는 목표로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특히 南韓에서 〈人民政權〉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平和的 方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革命的暴力〉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世界革命

〈世界革命〉은 〈조선혁명의 대외적 환경〉으로 간주되며 매우 중요시된다. 왜냐 하면, 世界革命의 完成 즉 〈세계적 규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北韓에서의 社會主義의 勝利를 보장하는 〈국제적 담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世界革命觀에서 〈革命力量의 編成과 配置〉 그리고 〈打擊目標〉를 설정한 것을 보면, 〈社會主義 力量 (共產國家들의 社會主義 建設)〉과 〈民族解放鬭爭 力量 (第3世界의 自主獨立)〉을 〈2대 世界革命力量〉으로 규정하고, 당면한 투쟁의 목표를 〈현대 제국주의의

① 김일성 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 92.

② 김일성, "5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1970. 10. 4)

政治理念

우두머리인 미 제국주의)에 대한 反對와 <反美鬭爭의 중요한 고리인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로 잡고 있다.

따라서, 세계혁명의 鬭爭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반제·반미 공동행동>과 <국제적인 반제·반미 통일전선>의 형성에 모든 혁명역량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⑬

⑬ 주체사상 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 이론(평양:사회과학 출판사, 1975).

1978. 9. 9북한정권 수립 30주년 기념 중앙경축대회 보고에서 김일성은 <신용세력 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말했다. 로동신문 (1978. 9. 10).

政治體制

朝鮮勞動黨

北韓政治體制的 특징은 한 마디로 1黨 革命體制, 1人首領支配體制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국가기관이나 각종 정치조직에 대한 〈首領과 黨的 領導〉가 강조되며, 국가기관이나 각종 政治組織은 黨的 지도와 영도 밑에 事業해야만 하는 이른바 〈黨國家的 性格〉을 뚜렷이 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主權을 잡은 勞動階級이 社會에 대한 정치적 영도〉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實現하기 위하여 首領에 의해서 唯一的으로 영도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確立〉이 주장되고 있다.

그들은 또 〈하나의 全一體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아래서 黨은 〈最高의 組織形態〉로서 〈革命的 參謀部〉이며 〈嚮導的 領導的 力量〉이라고,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근로단체 등과 같은 각종 정치조직들은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고 大衆을 당과 〈首領〉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引傳帶〉이며, 당의 路線과 정책을 執行하는 〈武器〉라고 定義하고 있다.

둘째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과 革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首領〉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死活的 意義〉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며,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강조하는 1人 支配體制를 制度化하고 있다. 즉 〈首領〉은 黨과 프롤레타리아 國家를 創建·지도하며, 근로단체를 조직·지도하고, 노동계급과 人民大衆의 투쟁을 지도하는, 다시 말해서 〈黨, 階級 및 大衆을 統一

政治體制

的으로 領導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體系總體에 대한 最高領導者>라고 한다.①

따라서 이러한 <首領>의 영도적 역할을 弱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에 대한 敵對이며, 體制에 대한 反對이며, 革命을 배반하는 <反革命策動>으로 규정된다.

形成過程

오늘날 北韓에서는 <朝鮮勞動黨>의 創建日을 1945年 10月 10日로 公式化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1945年 10月 10日부터 13日까지 平壤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會議 마지막 날(10月 13日) 채택한 <政治路線과 조직강화에 관한 決定書>에 따라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북조선 노동당>의 모체가 됐던 것이다.②

이렇게 <分局>創建 初期만 해도 <조선 공산당>의 <서울 中央>은 인정되고 있었다.

<分局>은 다시 美·蘇共同委員會가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協議對象政黨, 社會團體의 자격문제에 관한 제 5호 성명을 발표(1946年 4月 18日)한 것을 계기로 1946年 4月 末경 <北朝鮮共產黨>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어 同年 8月 29日에는 中國 延安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朝鮮獨立同盟>系를 中心으로 지식층 小市民층을 망라하고 있던 <朝鮮新民黨>과 合黨,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を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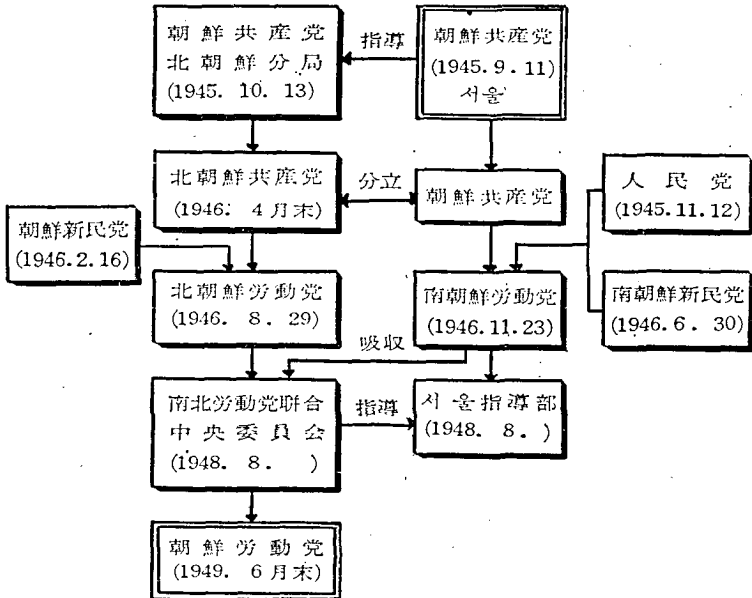
<北朝鮮勞動黨>은 1948年 8月 <人民共和國> 政權樹立을 위하여

①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명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1) pp. 120~159.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다", 근로자(1979. 4.)

② 조선중앙연감(1949) p. 715; 당시 北韓地域駐屯 蘇聯軍(25軍)의 軍事委員會 委員이었으며, 아·아 로마넵고 후임으로 蘇聯軍<民政機構> 責任者로 服務했던 엔·게·테베테브(당시계급: 少將)는 同分局이 蘇聯軍司令部 및 <民政機構>와 밀접한 협력을 하였다고 回顧하고 있다. 엔·게·테베테브, "遂行하여야 할 義務를 意識하며", 웨·베·박, 에스·에스 수솔리나 共編, 朝鮮의 解放(모스크바: 蘇聯邦科學 아카데미 東邦學研究所 1976) p. 93

〈南朝鮮 勞動黨〉과 〈聯合中央委員會〉를 구성하였고, ③ 이어 政權 樹立 以後 1949年 6月 30日, 南·北勞動黨은 〈1國 1黨〉 原則에 따라 〈조선로동당〉으로 統合되었다.

朝鮮勞動黨 形成過程



性格變化

조선로동당은 창당 이래 性格上 많은 變化를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黨의 性格變化는 특히 黨의 理念, 目標나 傳統에 대한 再定義 그리고 組織의 運營과 黨員構成의 變化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 理念·目標: 黨의 理念, 目標에 관한 變化는 歷代 黨規約의 變化過程에서 알아볼 수 있다.

③ 조선로동당 역사 교재(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228.

1, 2次 黨大會에서 채택한 黨規約에서는 黨의 理念을 맑스·레닌主義로 규정하면서 투쟁목표에 대해서는 다만 統一政府 수립으로만 규정했다.

그러다가 1956年 4月, 3次黨大會規約에서는 共產主義 社會建設이 最終目標임을 밝히었고, 1961年 9月의 4次 黨大會規約에서는 黨이 <抗日武裝鬪爭 革命傳統의 繼承者>임을 明白히 하였으며, 1970年 11月 5次黨大會規約에서는 黨의 理念이 金日成의 <主體思想>임을 明文化하였다.

勞動黨은 共產主義社會 建設에 最終目標를 두고, 소위 <當面目標>에만 변화를 보여 왔다. 統一戰線의 구축을 통한 統一政府樹

指導理念 및 目標의 變遷過程

規 約	理 念 傳 統	當 面 目 標
北朝鮮勞動黨 (1) 創立大會 (46. 8)	맑스·레닌주의	◦ 統一政府의 樹立
北朝鮮勞動黨 (2) 2次大會 (48. 3)	맑스·레닌주의	◦ 統一政府의 樹立
南北勞動黨 (3) 合黨大會 (49. 6)	맑스·레닌주의	◦ 統一政府의 樹立
3次 黨大會 (4) (56. 4)	맑스·레닌주의 + 조선인 민의 革命傳統	◦ 社會主義制度의 樹立 (대내) ◦ 反帝·反封建 民主主義 革命 (한반도)
4次 黨大會 (5) (61. 9)	맑스·레닌주의의 創造的 적용 +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 社會主義制度의 強化發 展 (대내) ◦ 反帝·反封建民主主義 革命 (한반도)
5次 黨大會 (6) (70. 11)	金日成主體思想	◦ 社會主義制度의 強化發 展 (대내) ◦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 (한반도)

<出 處>: (1) 박창욱, “북조선 로동당규약 해설”, 근로자, (1949. 3), pp. 43~46 및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북조선 로동당 출판사, 1946); (2)~(6)은 각당대회 규약.

立에서 출발하여 내적으로는 社會主義制度 樹立 또는 強化로, 전 한반도에는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 또는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反帝, 反美統一戰線 형성으로 그 목표를 바꾸어 왔다.

○ 組織의 運營: 黨組織의 運營에 있어서는 時間이 흐를수록 會議를 통한 黨員들의 合意보다는 金日成을 頂點으로 한 少數集團의 下向式 指示에 따른 運營체제로 바뀌어져 왔다. 초기에는 黨大會와 中央委員會의 權限이 크게 중요시되어 黨大會는 每年 1回(規約上), 中央委員會는 3個月에 1回씩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는 黨大會는 4년에 1回, 中央委員會는 6個月에 1回개최되도록 되었다.

1956年 3次 黨大會부터 中央委員會보다는 政治委員會가 그 權限이 커졌으며, 1966年 10月의 黨代表者會議에서 <秘書局>制가 신

組織·運營體系의 性格變化過程(中央)

黨大會	指 導 機 關	黨責任者	會議開催期間
1, 2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常務委員會	政治委員會委員長	黨大會: 1년에 1回 中央委員會: 3個月에 1回
合黨大會 (49.6)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組織委員會	全黨委員長	黨大會: 1년에 1回, 中央委員會: 3個月에 1回
3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常務委員會와 組織委員會	中央委員會委員長	黨大會: 4년에 1回 中央委員會 4個月에 1回
4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秘書局	中央委員會委員長	黨大會: 4년에 1回 中央委員會 6個月에 1回
5 次 黨大會	黨大會→黨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秘書局	中央委員會 總秘書	黨大會: 4년에 1回* 中央委員會: 6個月에 1回

* 필요에 따라 黨大會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도록 유보 규정을 두고있음.

설됨에 따라 모든 黨의 운영이 金日成의 指示를 받는 <秘書局> 中心으로 行해지게 되었다.

○ 黨員構成：黨員構成의 變化는 <勞農黨>의 性格을 지향해 왔다.

黨員 構成上의 획기적인 變化가 있었던 것은 動亂中이었다. 이 期間中에는 黜黨·戰死 등으로 因한 많은 黨員 감소가 있었던 反面, 1950年 7月부터 1952年 11月 까지의 期間 동안에 約 45萬名에 달하는 대대적인 黨員 增加가 있었다. 당시 金日成은 전 黨원 中 約 40%가 新입 黨원 이었으며 그 中 半 이상이 文盲者였다고 밝히고 있다.^④ 따라서 黨員의 量的인 成長에 따른 질적 저하가 문제되었으며, 黨員에 대한 政治教養事業의 강화 필요성이 강조 되기도 하였다.

그후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은 黨의 入黨節次와 黨원의 義務를 強化하는 政策으로 나타났다. 3次 黨大會부터 候補黨員制를 신설

黨員構成의 變化

	構 成 比 (%)						
	勞働者	貧農	中農	富農	事務員	學生	商人, 企業家, 自由業者, 其他
1945. 10	30	34			36		
1946. 8	20	50.5	29.5				
1948. 3	20.2	52.8	27				
1950. 7	21.2	54.7	7.5	0.3	11.4	1.0	3.9
1952. 12	22.2	57.4	3.9	0.1	12.5	1.4	2.5
1956. 1	22.6(1)	56.8	3.7		13	3.9	
1961. 9	30						

出處： 각 당대회시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金日成 연설 및 <조선중앙년감>을 근거로 작성.

(1) 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중화 보고에서는 17.3%로 언급.

④ 金日成, "2기 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2. 12. 15) 보고," 金日成 저작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p. 372.

하여 “黨員으로 入黨할 것을 희망하는 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후보당원의 후보 年限을 經過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4次黨大會부터는 入黨 保證人의 黨年限을 당시까지 1年으로 되어있던것을 2年으로 늘림으로써 入黨節次를 강화시켰다.

黨員의 義務強化를 위해서는 4次黨大會부터 黨員의 黨生活, 黨會議參加 討議 등 黨員의 活動을 규정하였었던 것이 5次黨大會에 와서는 여기에 黨學習까지 義務條項으로 추가하였다.

黨員構成에 관해서는 1956年 1月 發表한 이래 지금까지 公式的인 發表가 없다.

黨 勢

創黨 初期 <朝鮮勞動黨>은 4,530명을 가진 前衛組織으로 출발하였으나 <朝鮮新民黨>과의 合黨大會인 <北朝鮮勞動黨創立大會>를 계기로 급속히 黨員을 增加시킴으로써 <大衆의 政黨化>를 꾀하였다.

黨 員 增 加 趨 勢

時 期	黨 員 數	黨細胞數
朝鮮共產黨 北部朝鮮分局 3次擴大執行委員會 (1945. 12)	4, 530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 (1946. 8)	366, 000	12, 000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1948. 3)	725, 762	28, 000
朝鮮勞動黨 中央委 2期 5次 全員會議 (1952. 12)	1, 000, 000	48, 933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56. 4)	1, 164, 945	58, 259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61. 9)	1, 311, 563	65, 000
朝鮮勞動黨 創建 20週年(1965. 10) (1)	1, 600, 000	
朝鮮勞動黨 創建 25週年(1970. 10) (2)	1, 600, 000	
1972. 8 (3)	2, 000, 000	
1978. 1 (4)	2, 000, 000	약 200, 000

出處: 各黨大會 中央委 事業報告, 金日成 演說 및 <조선중앙년감>

(1) 로동신문(1965. 10. 10)

(2) 로동신문(1970. 10. 10)

(3) 로동신문(1972. 8. 29)

(4) 로동신문(1978. 1. 29)

1952年 12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5次 전원회의> 때에는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약 5만 개의 세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61年 9月 1日 現在 당원수를 1,311,563名, 細胞數를 65,000個로 公式發表한 以來 지금까지 당세에 관한 公式의인 통계 발표는 없으나, 現在 北韓에서는 <200만 黨員>이 운위되고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1個 세포당 당원을 10名으로 잡는다면(黨規約上에는 5~15名), 약 20만 개의 당세포가 조직된 것으로 되며, 人口 對 黨員比는 12.2% (北韓 人口를 1,650 萬名으로 추정할 경우)이다.

組織體系

黨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下에 모든 地域別 部門別로 階序的 組織을 가지며, 그 組織原理는 下級黨 組織은 上級黨 組織을 선거하고, 上級黨 조직은 하급당 조직의 사업을 지도 겸임한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現 勞動黨의 조직체계는 5次 黨大會에서 채택된 당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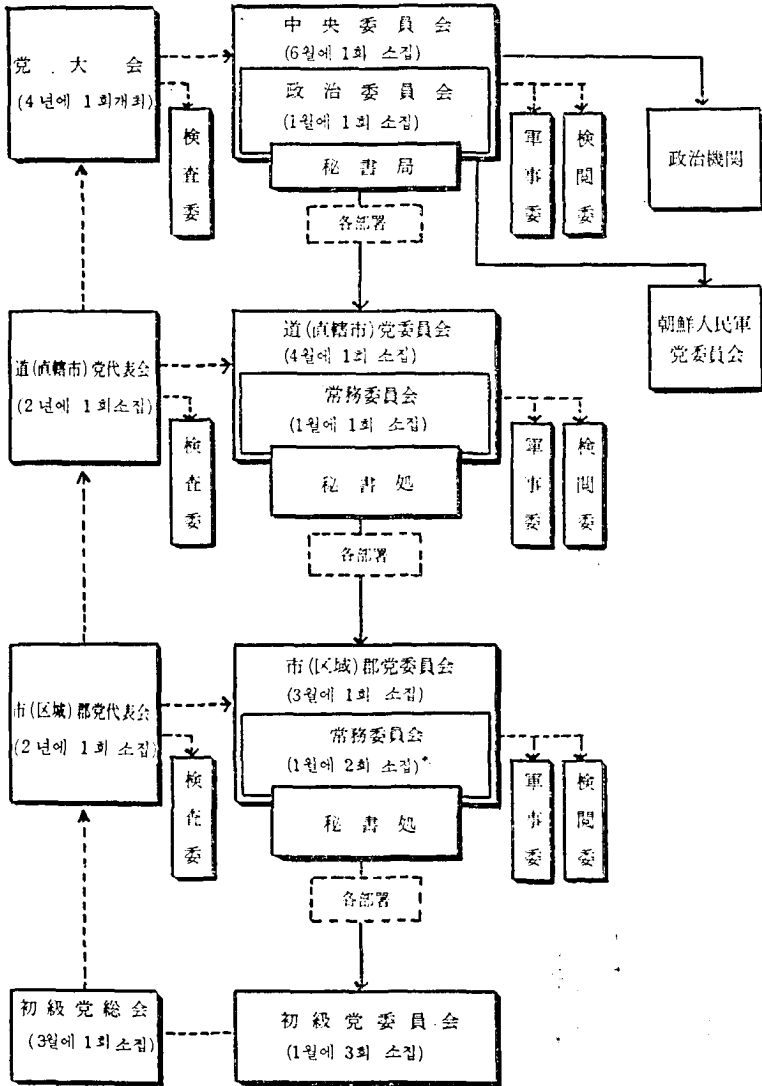
당조직의 最高 지도기관은 全黨의 경우는 黨大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경우는 해당 黨代表會이다. 당대회와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간에는 당중앙위원회와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遂行한다.

軍隊내에는 各급 單位에 당조직을 가지며, 군내내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직속하에 조직되어 있다. 軍隊內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批准를 받아 駐屯地域의 各급 당위원회에 政治 및 軍事幹部를 委員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必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요 政治·經濟·軍事機關에 政治局 (예컨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조직하며, 이 정치국들은 해당 機關에 조직된 黨委員會의 執行部로서 機能을 遂行한다.

당의 基層組織은 <당원 생활의 據點>, <당의 전투 단위>로 정의

労働党組織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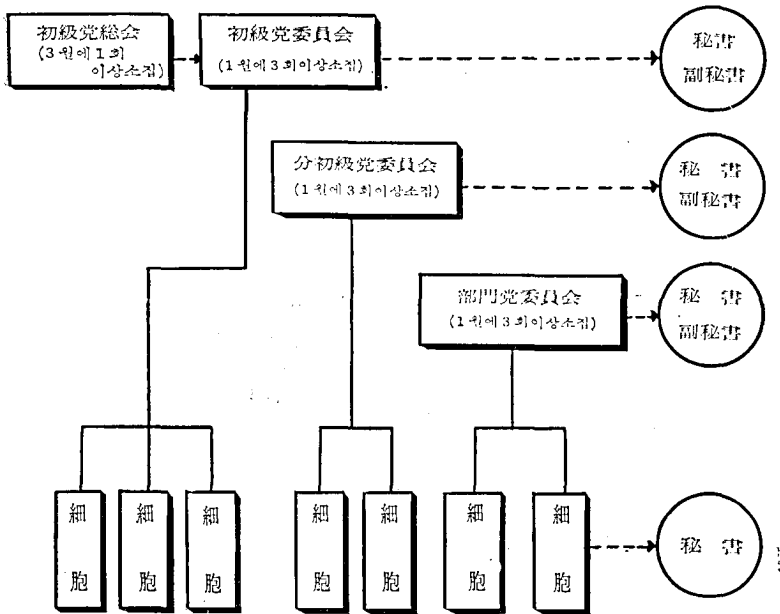
- - - -> 選挙
 凡例
 —> 指導

되는 <당세포>이다. 黨細胞는 당원 5~15名인 單位에서 조직되며, 특수한 경우는 例外도 있다.

이러한 黨細胞의 上級組織으로 <初級黨委員會>가 있으며 同<初級黨委員會>는 당원이 16名 이상인 單位에서 조직하고, 必要에 따라 1年 임기의 <執行委員會>를 선거한다. 당원 16名 以上인 行政 및 生産單位에서는 初級黨위원회와 당세포 中間에 <部門黨委員會>를 조직할 수 있으며, 初級黨위원회와 部門黨위원회의 中間 형태로 <分初級黨委員會>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 미만의 單位에는 시(구역) 郡黨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責任者로 하여 <黨小組>를 조직할 수 있다.

黨基層組織形態



中央機關

○黨大會 : 黨大會는 形式上으로 勞動黨의 最高機關이다. 5次 黨大會 規約에는 黨大會를 4年에 1回 黨중앙위원회가 召集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

게 召集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黨大會는 ① 黨中央委員會 및 중앙검사위원회 活動의 總和, ② 黨綱領 및 規約의 採擇, 修正補完, ③ 黨路線과 政策, 戰略戰術의 기본문제 결정, ④ 당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의 선거와 같은 事業을 遂行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사실상 당중앙위 또는 정치위원회의 決定事項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당대회의 代表者 選出은 당중앙위원회가 그 比率를 定하며, 다음 級의 黨組織인 道(直轄市)黨代表會, 市(區域)·郡黨代表會에서 選出하도록 돼 있다.

1980年 10月 개최예정인 제6차 黨大會 대표자 선출비율을 보면 黨員 1,000명에 決議權 대표자 1명, 候補黨員 1,000명에 發言權 대표자 1명으로 되어 있다⑤

黨大會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으며, 당 규약상 規定한 대

黨大會 開催 現況

黨大會	開催日字	代表數	代表構成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	1946. 8. 28 ~30	801	勞動者: 183 農民: 157 事務員: 385 其他: 76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1948. 3. 27 ~30	999 (이 중 2名不參)	勞動者: 466 農民: 270 事務員: 234 其他: 29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56. 4. 23 ~29	916 (이 중 2名不參)	勞動者: 439 農民: 192 事務員: 246 其他: 39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61. 9. 11 ~18	1,657 (이 중 3名不參)	勞動者: 944 農民: 451 事務員: 191 其他: 71
朝鮮勞動黨 5次大會	1970. 11. 2 ~13	1,734(1)	

出處: 各黨大會 代表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 發言權만 갖는 代表 137名 포함.

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5기 19차 전원회의 결정,” 르통신문 (1979. 12. 13.)

로 열린 일이 없다. 6次 黨大會에 관해서는 黨 5期 19次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79. 12. 18~21)에서 80年 10월에 개최한다고 결정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政策 또는 전략 전술의 重要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표자회의>를 召集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지금까지 3次 당대회와 4次 당대회 간인 1958年 3月, 4次 당대회와 5次 당대회 간인 1966年 10月 두 차례 黨代表者會議을 召集한 바 있다.

○中央委員會: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管掌하는 당조직의 최고 지도기관 이다. 중앙위원회는 <政治委員會>와 중앙위원회의 總秘書와 秘書를 선거하고 <秘書局>을 조직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數는 당대회에서 決定한다.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은 發言權만 가지며, 준후보위원은 <生産勞動에 직접 참가하는 核心黨員>에서 選出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⑥ 중앙위원회 위원은 黨大會에서 選出되며, 위원 중 缺員이 생겼을 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후보위원 중에서, 또는 별도의 規則과 절차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黨員中에서 補選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의 除名은 중앙위원회 全

歷代 黨中央委 全員會議 討議案件 (1979. 12 현재)

期	開催 回数	討 議 된 案 件						
		黨內 問題	對內 政治 問題	對南關 係, 統 一問題	對外 關係	經濟 問題	軍事 問題	社會 問題
1期(46. 8~48. 3)	12	10	3	1		2		
2期(48. 3~56. 4)	17	10	4	2	3	7	1	
3期(56. 4~61. 9)	15	7	1		4	20		1
4期(61. 9~70. 11)	20	8	3	1	1	20	2	5
5期(70. 11~)	19	7	4	2	1	17		3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⑥ 각급당 위원회의 후보위원제는 2차 당대회에서, 준후보위원제는 5차당 대회에서 신설되었다.

員會議에서 決定한다.

中央委員會는 6個月에 1回 以上 <全員會議>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관련된 黨 및 정권기관 단체의 要員이 參加하는 <擴大全員會議>를 개최한다. 그간 전원회의에서 취급된 案件을 보면, 50年代부터 경제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60年代 이후의 軍事關係의 토의는 1962年 末부터 本格化된 전쟁 준비와 관련이 있다.

○政治委員會：<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는 黨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사실상의 최고 核心部署이다. 정치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중앙위원회의 名義로 黨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政治委員會는 正委員과 후보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인원수에 있어서는 創立大會時 5명으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政治委員會는 1956年 3次 黨大會에서 常務委員會로 일시 개칭되었다가 1961年 4次 黨大會 이후 다시 政治委員會로 불리지면서 정치위원회 內에 <常務委員會>가 조직되었으나, 5次黨大會부터는 정치위원회내의 <常務委員會>가 폐지되었다. <정치위원회>는 1個月에 1回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秘書局：<中央委員會 秘書局>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其他 당면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의 執行을 조직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各部署를 日常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黨의 中樞機關이다. 뿐만 아니라, 秘書局은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당적 지도,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비서국은 1966年 10月, 黨4期 14次 中央委 全員會議의 결정에 따라 中央委員會에 設置되었다.

○軍事委員會, 檢閱委員會：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조선인 민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 全體를 唯一的으로 망라하는 군사부문의 최고 黨 정책의결기구로서 군에 대한 黨의 指導를 보장해주는 中央 通路이다. 그리고 당의 군사정책을 토의 결정하며, 軍

需産業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事業을 조직 지도한다.

당 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가 組織된 것은 1962年 12月, 4期 5次 당 中央委 全員會議에서 國防力 強化에 관한 決定을 채택한 후부터이다.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反黨行爲, 黨의 綱領과 紀律을 위반하는 행위, 黨의 紀律 問題와 관련된 下級黨 委員會의 提議와 當의 申訴를 심의 해결하는 기능을 遂行한다.

창당대회 規約에는 중앙검열위원회를 黨大會에서 選舉하여 구성하게 되었으나, 2次 黨大會부터 당중앙위원회의 指示 밑에서 사업하고, 그 구성원을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選舉하도록 하였다. 검열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 둔 理由는 黨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黨 중앙위원회의 機能을 強化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中央檢査委員會: 중앙검사위원회는 당대회에서 選舉하여 구성되며, 黨의 財政 經理事業을 검사하는 機能을 맡고 있다.

地方機關

道(直轄市)黨과 市(區域)·郡黨 등 各級 地方黨 조직체계는 당 중앙기관의 조직 원칙에 준하고 있다.

地方黨 代表會는 2年에 1回 召集키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시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도록 하였다. 地方黨 代表會에서는 해당 地方 黨委員會와 검사위원회의 委員, 上級黨 會議에 파견할 代表를 選舉하고, 검사위원회 事業을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各級 地方黨 위원회는 常務委員會, 책임비서와 비서를 選舉하고 秘書處, 군사위원회 및 검열위원회를 조직한다.

各級黨 상무위원회는 당위원회의 會議과 會議사이에 黨委員會의 名義로 黨內事業과 行政 및 경제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地方 黨委員會의 主要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들에게 당사업을 부여하고 당생활을 지도하며, 근로 대중들이 자기 基本課業을 完遂할 수 있도록 지도 검열한다.

② 勞農赤衛隊의 강화를 위해 그 戰鬥力의 向上을 조직 지도하고, 政治思想敎養을 하며 군사동원 사업을 保障한다.

③ 黨 規律을 위반한 자에 대한 책임추궁, 처벌, 黜黨을 決定하고 비준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는 市(區域)·郡黨 以下の 당세포를 組織하고, 그들의 활동을 指導 檢閱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初級黨 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의 向上을 위해 그들을 지도 補助한다.

黨의 外廓團體

北韓에서 헌법상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政黨으로는 <조선로동당> 이외에 <조선민주당 (1945年 11月 3日 창립)>, <천도교청우당>(1946年 2月 8日 창립)>이 이른바 <友黨>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조선로동당>의 黨大會 또는 간혹 軍중집회에 代表가 나와 찬양과 지지 연설을 하는 것 이외에 活動이 없으며, 실제로 組織形態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름뿐인 團體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政黨·社會團體를 망라해서 조직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1949年 6月 25日 창립)>이 존속하고 있다고 주

勤勞大衆團體의 現況

團 體	創 立 日	盟 員 數
職 業 總 同 盟	1945. 11. 30	약 240만(71. 12月 現在)(2)
農 業 勤 勞 者 同 盟	1965. 3. 27	약 260만(72. 2月 現在)(3)
社 會 主 義 勤 勞 青 年 同 盟(1)	1946. 1. 17	약 270만(68. 4月 現在)(4)
民 主 女 性 同 盟	1945. 11. 18	약 270만(71. 10月 現在)(5)

出處 :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1) 1964. 5. 12일부터 <조선 민주청년동맹>을 <社會主義勤勞青年同盟>으로 개칭. (2) 로동신문(1971. 12. 5). (3) 로동신문(1972. 2. 16). (4) 김일성,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2권(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9) p. 503. (5) 로동신문(1971. 10. 6).

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對南宣傳 선동을 위한 위장 단체에 불과하다.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으로 불리우는 社會團體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조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 민주여성동맹〉등이 있다.

이들 社會團體는 〈조선로동당 규약〉에 明示된 바와 같이 〈黨의 外廓團體〉로서 〈大衆의 思想教養組織〉 〈黨과 大衆의 引傳帶〉 〈黨의 충실한 幫助者〉의 역할을 한다.

黨의 運用體系

勞動黨의 運用은 黨政策의 決定 및 執行과 黨幹部에 대한 人力管理 및 黨員에 대한 教養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黨 政策은 한마디로 金日成의 敎示와 그 具現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黨政策의 決定은 形式上 各級黨委員會의 會議形式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黨會議는 해당 회의 소속 당원 3분의 2 이상의 참가로 성립되며, 黨會議의 決定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黨會議에서 채택된 제반 政策은 사실상 秘書制를 根幹으로 하여 집행되고 있다. 중앙에는 秘書局을, 지방에는 秘書處를 두어 해당 黨委員會의 各黨部署들을 통괄케 하고 있다. 中央委員會의 秘書局에는 總秘書와 수명의 秘書, 그리고 地方秘書處에는 責任秘書와 수명의 秘書가 있으며, 〈行政·生産單位〉에 있는 基層組織인 黨細胞에는 秘書와 2~3명의 副秘書가 있다.

黨幹部에 대한 효율적인 人力管理를 위해서 각급당위원회에 幹部養成 및 再教育體系를 갖추고 있다.

中央의 金日成 高級黨學校에서는 道級 이상의 黨幹部의 훈련 및 再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各道의 共產大學에서는 郡級 黨幹部를, 各郡의 郡黨學校에서는 初級幹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金日成 高級黨學校의 경우 3個月班, 6個月班, 1年制, 2年制, 3年制의 教育課程이 있다. 모든 黨幹部들은 해마다 定

期的으로 各級再教育機關에서 한 달씩 공부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⑦

그밖에 黨政策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宣傳煽動 媒體로서는 <로동신문사>, <로동당 출판사>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黨員들의 思想教養을 강화시키고 있다.

政權機關

北韓에서는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使命을 강조하면서 <人民共和國>은 <勞·農同盟>에 기초한 <人民政權>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의 지위는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引傳帶>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政治體制에 있어서 <政權은 首領의 혁명사상을 實現하는 정치기구>로서, 그리고 <당의 모든 路線과 政策의 執行者>로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오늘날 北韓의 公式理論은 이와 같은 역할을 遂行하는 <政權機

統治權行使의 法的形式

機 關	形 式
主 席	命 令
最高人民會議	憲法, 法令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 定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決定, 指示
政 務 院	決定, 指示
部·委員會	指 示
地方人民會議	決 定
地方人民委員會	決定, 指示
地方行政委員會	決定, 指示

⑦ “당간부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6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4) pp. 136-152.

關)의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 1) 反革命的 要素 등에 대한 독재를 수행하는 <鎮壓의 機能>
- 2) 社會에 대한 法的 制裁를 수행하는 <統制的 機能>
- 3)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추진하는 <文化教養者的 機能>
- 4)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經濟組織者的 機能>
- 5) 革命的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對外的 機能>⑧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능은 주로 各級機關의 法的 權利行使 형식으로 표현된다.

人民共和國의 樹立

오늘날 北韓에서는 公式的으로 1948年 9月 9日을 政權 수립일로 記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軍의 占領 狀態下에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착착 進行돼 왔었다.

그 첫 作業은 1945年 8月 26日 <평남 인민정치위원회>의 조직을 비롯한 各地方 <人民委員會>의 조직이었다. 同年 10月 8日에는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소집되고, 10月 28日에는 <5도 행정국>이 發足되었다.⑨

이듬해인 1946年 2月 8日,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 각 행정국 및 각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는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의 양해 밑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創設을 決定하였다.

⑧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1) pp. 273-363.
 ⑨ 同會議에 參席하였던 이·엠·치스차코프(當時 北韓駐屯 蘇聯 第26軍司令官·大將)는 이 會議에서 最初로 北韓地域內 5道 人民委員會를 統合하는 單一組織에 對한 決定이 이루어졌다고 回顧하고 있다. 이·엠·치스차코프, “第25軍의 戰鬪行路”, 웨·베·박, 에스·에스·수슬리나 共編, 朝鮮의 解放(모스크바: 蘇聯科學 아카데미 東邦學研究所, 1976) p. 52.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同年 3月 6日 공포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北韓地域의 <中央行政機關>이었으나, 소련군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提出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獨自性이 없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성격을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⑩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1946年 11月 3日에는 北韓 全域에 걸쳐 道·市·郡의 人民委員會 選舉를 實施하여 3,459名의 人民委員을 選出하였다. 北韓에서는 당시 총유권자 4,516,120명중 99%이상이 투표에 參加하였다고 發表하였다.

1947年 2月 17日부터 19日까지 3日間에 걸쳐 各道(市)·郡人民委員會 및 各政黨·團體 代表 1,159名이 參席한 가운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同大會에서 선출한 대의원 237명으로 <북조선 인민회의>가 構成되었다. <북조선 인민회의>는 2月 21~22日 이틀간 제 1차 會議을 열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을 결성하였다.

당시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여 總 22名의 成員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정당별 構成은 <북조선 로동당>이 16名, <조선 민주당>이 2名, <천도교 청우당>이 2名, 무소속이 2名으로 事實上 <북조선 로동당> 일색이었다.

오늘날 北韓에서는 當時의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最初の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탄생>⑪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美·蘇 共同委員會가 결렬되고 1947年 11月 유엔총회가 유엔

⑩ 조선로동당 역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156; 그러나 當時 北韓 주둔 蘇聯軍 民政機構 法律關係 實務者로 服務했던 베·웨·스체치닌 大佐는 그의 回顧에서 北朝鮮臨時 人民委員會를 社會主義 建設段階에 革命을 이끄는 機關으로서 民主主義獨裁를 遂行하는 政權으로서 그 性格을 規定하고 있다. 베·웨·스체치닌, “解放後的 朝鮮”, 웨·베·박, 에쓰·에쓰·수슬리나 共編, 朝鮮의 解放(모스크바: 蘇聯邦 科學아카데미 東邦學研究所, 1976) p. 250.

⑪ 조선로동당 역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201.

감시하의 南北韓 총선거 실시와 선거를 監視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設置를 결의하자 <人民共和國> 수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1947年 11月 18~19日에는 <北朝鮮人民會議 3次會議>가 開催되어 <조선 임시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同 委員會는 12月 20日 憲法草案을 확정하였다.

이 草案은 이듬해 (1948年) 2月 6日부터 개최된 <北朝鮮人民會議 4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2月 10日 <人民討議>에 회부되었고, 4月 29日 소집된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정식 채택하기로 決定하였다.

同年 7月 9日, 10日 양일간에는 <북조선 인민회의 5차회의>가 소집되고, <人民共和國 憲法>의 實施를 결정하는 한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일,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문제 등을 심의 채택하였다.

同年 8月 25日에는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가 實施되어 立候補者 227명중 221名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北韓은 이 選舉에 등록된 유권자 4,526,065명중 99.97%가 參加하였으며 찬성율을 98.49%로 發表하였다.

1948年 9月 2日부터 10日까지 평양에서는 총대의원 572명중 528명이 참석한 가운데 <最高人民會議 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⑫ 당시 北韓當局은 북한 지역에서 선출한 대의원 212명 이외에 소위 南韓에서 <署名投票>로 선출된 代表者에 의해 간접 선거되었다는 360명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發表하였다.⑬

이 최고인민회의의 1次會議에서는 헌법 초안을 심의하여 <人民共和國 憲法>을 공식 채택하고 公布하는 한편, <北朝鮮 人民委員會>로부터 <政權을 이양>받고, 9月 9日 會議에서는 金日成을 首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⑫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중요 문헌집(평양, 1948) pp. 283-7.

⑬ 남한 대표로 발표된 360명중 66명은 姓만 밝혀진채 이름은 ○○으로 발표하였다. 조선중앙년감(1949) pp.14-17.

社會主義憲法採擇

1948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한 이래 수차례의 部分的인 헌법 수정을 가해 오다가, 1972年 12月 27日 최고인민회의의 5기 1차 회의에서는 종래까지의 <人民民主主義 憲法>을 폐기하고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社會主義 憲法의 특징은 한 마디로 社會主義制度를 法的으로 安着시키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강화한다는 이름 아래 主席中心의 국가기관체계를 制度化한 것이다.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국가의 性格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명문화하고, 主權은 <로동자 · 농민 · 병사 · 근로인텔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과 舊憲法 간의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는 국가기관 체계이다. 새로운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國家首班> 또는 <國家主權을 代表>하는 <主席>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를 신설하였고, 종래의 <內閣>을 단순한 <行政的 執行機關>인 <政務院>으로 바꾸었다. <地方政權機關>도 지방의 각

國家機關의 性格變化

新 憲 法		舊 憲 法	
機 關	性 格	機 關	性 格
主 席	國家首班 國家主權의 代表	首 相	政府의 首席
最高人民會議	最高主權機關	最高人民會議	最高主權機關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最高人民會議常 設機關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最高人民會議 休會中 最高主權機關
中央人民委 員會	國家主權의 最 高指導機關		
政 務 院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	內 閣	國家主權의 最高執行 機關
地方人民會議	地方主權機關	地方人民會議	地方主權機關
地方人民委 員會	當該人民會議休 會中地方主權機 關	地方人民委員 會	該當人民會議의 執行機 關 地方의 國家行政機關
地方行政委 員會	地方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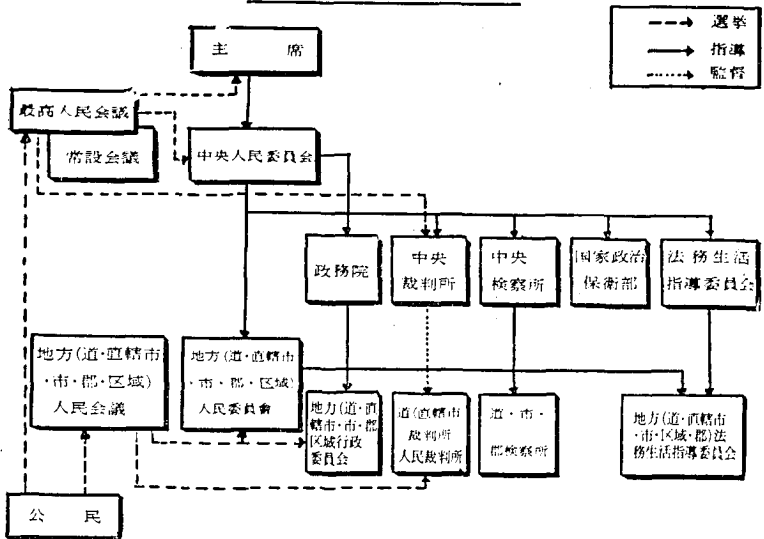
급 〈行政委員會〉를 신설함으로써 〈主權의 指導機關〉과 〈行政的 執行機關〉의 二元的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政權機關의 組織

모든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은 이른바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立脚하도록 돼 있다(헌법 9조). 北韓은 이러한 原則이 〈上部的 지도와 下部的 創意性을 결합시키는〉 이상적 제도라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形式的인 민주주의적 선거 절차와 上命下服 關係를 의미하고 있다.

國家機關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主權機關〉과 〈行政的 執行機關〉 그리고 그 活動의 지역적 管轄 범위에 따라 〈中央政權機關〉과 〈地方政權機關〉으로 나누어진다.

○主 席 : 主席制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이며, 김일성 1인 支配體制의 제도적 장치로서 신설된 것이다. 〈主席〉은 4年 임기로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나, 〈主席〉에 대한 最高人民會議의 召喚權은 없다. 政權機關 組織體系



出處 : (1) 憲法規定에 依據 作成.

(2) 197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6期 1次會議의 김일성 演說로 설치가 확인된.

憲法上 主席의 地位는 ①〈國家의 首班〉으로 국가 주권을 대표하며 ②〈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 ③〈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배하는 절대적 權力者이다.

憲法上 明示된 主席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한 직접 지도
- 2) 必要에 따라 政務院을 召集 指導
- 3) 一切의 武力을 指揮 統率
- 4) 최고인민회의의 法令, 中央人民委員會 政令 및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의 公布, 主席 命令의 發布.
- 5) 特赦權의 行使
- 6) 條約의 批准 및 廢棄
- 7) 外國 使臣의 信任狀, 召喚狀 接受
- 8) 最高人民會議에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 政務院 總理, 國防위원회 副委員長의 선거, 召換을 提議
- 9) 最高人民會議에 議案을 提出
- 10)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의 事業 監督

〈副主席〉은 〈主席〉의 활동을 도와 주도록 最高人民會議에서 選출되며 同상 2~3명을 두고 있다.

○最高人民會議: 最高人民會議는 헌법상 立法權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權限을 갖는 形式的의 기구에 불과하다. 현행 최고인민회의의 〈代議員〉의 임기는 4年으로 되어 있으며(1954年 10月 30日 헌법 개정 이전까지는 3年이었다), 사정에 따라 다음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면 無期限 연장될 수도 있다.

現行 최고인민회의의 代의원은 人口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選出되도록 되어 있다(1기, 2기 최고인민회의의 代의원은 인구 5만에 1명 비율이었다),

歷代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

期別	選 舉 日	代議員 數(名)	投 票 率/ 贊 成 率(%)	任 期 (年)	備 考
1	1948. 8. 25	572	99. 97/98. 49	9	人口 5萬에 1名 選出(選作 된 南韓出身 代議員 360名 包含) 憲法上 任期 3年 (후백합 투표)
2	1957. 8. 27	215	99. 99/99. 92	5	憲法上 任期 4年 (후백합 투표)
3	1962. 10. 8	383	100/100	5	人口 3萬에 1名 選出 (단일합 투표)
4	1967. 11. 25	457	100/100	5	人口 3萬에 1名 選出 (단일합 투표)
5	1972. 12. 12	541	100/100	5	人口 3萬에 1名 選出 (단일합 투표)
6	1977. 11. 11	579	100/100		人口 3萬에 1名 選出 (단일합 투표)

出處 :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북한에서의 선거는 단일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인데, 조기의 <후백합 투표>는 찬성은 백합에, 반대는 흑합에 투표하도록 된 제도이며, <단일합 투표>는 투표함은 하나이나 찬반단을 기재하여 투표하도록 된 제도이다.

憲法에 규정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憲法, 法令의 채택 및 수정
- 2)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3) 主席의 選舉
- 4) 副主席,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 政務院 總理,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選舉 및 召喚(主席의 제의에 의거)
-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의 선거 및 소환
- 6)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및 해임.
- 7) 人民經濟發展計劃의 承認
- 8) 國家豫算의 承認
- 9) 戰爭과 平和에 관한 문제의 결정

最高人民會議은 1년에 1~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必要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會議은 代議員 全員の 과반수가 參席해야 成立되며, 회의 기간은 통상 2~3日이다.

會議 決定은 참석한 代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며, <헌법의 채택 수정>에는 代의원 全員の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歷代最高人民會議 開催現況

期 別	任 期 (年)	會議召集回数(回)	會議開催日總數(日)
1	9	13	55
2	5	11	32
3	5	7	22
4	5	6	18
5	5	7	30
6		3	9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상설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두며, 常設會議는 議長, 副議長(통상 2명), 사무장, 의원(현재 13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任務 및 權限은 다음과 같다.

- 1) 最高人民會議 休會中 제기된 법안의 심의 결정
- 2) 최고인민회의 休會中 現行法令의 修正
- 3) 現行 法令의 해석

歷代 最高人民會議 討議案件

期	開催 日數	討 議 된 案 件					計
		政治 問題	經濟 問題	社會 文化 問題	對南關 係·統 一問題	對外 關係	
1期 (1948. 9. 2~1957. 9. 17)	13	7	13	2	2	5	29
2期 (1957. 9. 18~1962. 10. 21)	11	1	8	3	2	2	16
3期 (1962. 10. 22~1967. 12. 13)	7	10	7	1	1	2	21
4期 (1967. 12. 14~1972. 12. 24)	6	6	8		1	1	16
5期 (1972. 12. 25~1977. 12. 14)	7	6	7	3	2		18
6期 (1977. 12. 15~ 現在)	3	3	3				6
計	47	33	46	9	8	10	106

- 4) 最高人民會議의 召集
- 5) 최고인민회의 代의원 선거사업 실시
- 6) 地方人民會議 代議員 선거사업 조직
- 7)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의 선거 및 召喚

○中央人民委員會：〈中央人民委員會〉는 社會主義 憲法 採擇에 따라 新設된 機構로서 헌법상 〈國家主權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主席이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가 되어 위원회를 직접 지휘·감독·통제하며, 委員의 選出·召喚을 最高人民會議에 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主席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中央人民委員會는 主席·副主席·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年이다. 主席 및 副主席을 除外한 中央人民委員會 委員은 통상 당 정치위원 또는 비서, 정무원의 총리 또는 부총리를 겸직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1972年 12月 당시 25名으로 구성되었으나 1977年 12月에는 15名으로 축소되었다.

중앙인민위원회에는 部門別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司法安全委員會(以上 헌법상에 명시), 法制委員會, ⑭ 經濟委員會^⑮ 등이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黨의 核心幹部 및 政務員의 고위간부로 구성되어 黨·政 協의 기능을 가지며, 〈政令〉 〈決定〉을 채택하고, 〈指示〉를 내리는 등 立法機能도 가지고 있다. 헌법상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權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내의 政策樹立

⑭ 로동신문(1977. 4. 29)

⑮ 로동신문(1978. 5. 22)

- 2) 정무원, 지방 인민회의 및 지방 인민위원회 事業의 指導
- 3) 裁判·檢察機關 事業의 指導
- 4) 국방 및 국가 정치보위사업의 指導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法令, 主席 命令, 중앙인민위원회 政令·決定·指示의 執行狀況 감독 및 그에 위반된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기.
- 6) 政務院의 部 設置 및 廢止
- 7) 정무원 부총리, 各部長 및 其他 정무원 成員들의 임명 및 해임(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거)
- 8) 大使와 公使의 임명 및 召喚
- 9) 주요 군사 간부의 임명 및 해임, 將領軍事칭호의 수여
- 10) 훈장·명예 칭호·군사 칭호 및 外交職級의 제정, 훈장·명예칭호 수여
- 11) 大赦 實施
- 12) 行政區域의 改編
- 13) 有事時 戰時狀態와 動員令의 宣布

○政務院：〈政務院〉은 舊憲法상의 〈內閣〉을 改稱한 것이지만, 종래의 〈內閣〉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權限과 역할도 크게 축소되었다.

종래의 內閣이 〈國家主權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정의되었던 것과는 달리, 政務院은 〈최고 주권기관의 行政的 집행기관〉으로 定義되고 있으며,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部長(委員長)들과 그밖의 필요한 成員으로 構成되는데, 총리는 主席의 제의로 最高人民會議가 선거하며 그 밖의 成員들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中央人民委員會가 任命한다.

1977年 12月 최고인민회의의 6期 1次 회의에서 선출된 政務院의 成員은 총리 1名, 부총리 6名, 部長 21名, 委員長 7名, 事務長 1名으로 發表되었다. 以後 확인된 〈자원개발부〉 〈도시경영부〉의 新設, 〈수산부〉의 〈수산위원회〉로의 개칭, 機械工業部를 第1, 第2, 第3 機械工業部로 改編하는 등 조직 개편과 부총리의 추가 임

歷代 政務院(內閣)의 構成

期 別	總 理 (首相)	副總理 (副首相)	部長(相)	委員長	事務長
1기 (1948. 9)	1	3	17	1	
2기 (1957. 9)	1	6	24	2	
3기 (1962. 10)	1	8	22	5	
4기 (1967. 12)	1	8	30	6	
5기 (1972. 12)	1	6	15	7	
6기 (1977. 12)	1	6	21	7	1
(1979. 12현재)	1	9	24	9	1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5期(1972. 12) 이전은 수상, 부수상, 상의 숫자.

명으로 現在 정무원의 成員은 總理 1名, 副總理 9名, 部長 24名 委員長 9名, 事務長 1名 등으로 돼 있다.

현재 政務院의 部署로는 인민무력부·외교부·사회안전부·국가 계획위원회·농업위원회·광업위원회·금속공업부·전력공업부·第 1 기계공업부·第 2 기계공업부·第 3 기계공업부·화학공업부·건설부·국가건설위원회·건설공업부·경공업위원회·철도부·육 해운부·수산위원회·인민봉사위원회·교육위원회·자재공급부·체신부·자원개발부·문화예술부·재정부·무역부·대외경제사업 부·로동행정부·보건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토관리부·도시 경영부가 있다.

憲法上 政務院의 임무와 權限은 다음과 같다.

- 1) 各部,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의 지도
- 2)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
- 3) 國家의 人民經濟計劃 作成 및 執行對策 수립
- 4) 국가예산 편성 및 執行對策 수립
- 5) 공업, 농업, 대내외 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사업의 조직 지도
- 6)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 7)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 사업의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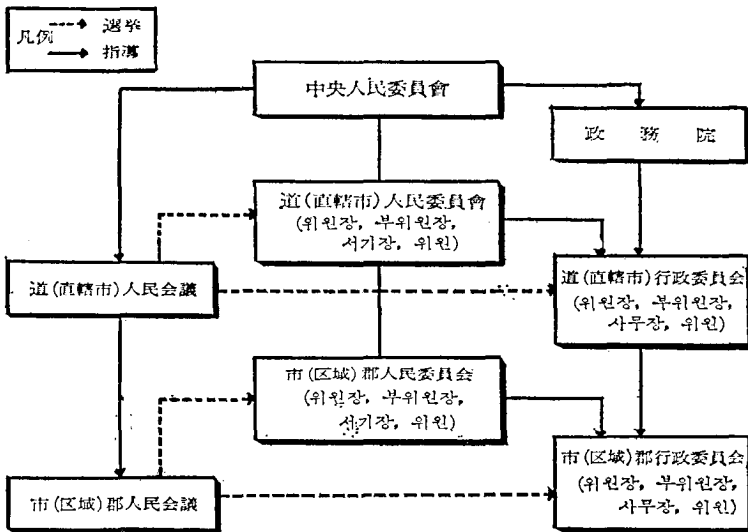
- 8) 인민무력 건설에 관한 사업의 수행
-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 보호 및 국민의 權利保障을 위한 對策樹立
- 10) 政務院의 決定, 指示에 위배되는 國家 관리機關의 결정, 指示의 폐기

政務院의 會議에는 成員 全員으로 構成되는 <全員 會議>와 總理, 副總理, 其他 總理가 任命하는 政務院 成員으로 구성되는 <常務會議>가 있다.

정무원은 <결정>을 採擇하고 <부문별 집행기관>인 <部>는 <지시>를 발할 수 있다.

○地方政權機關：地方 政權機關은 <지방 주권기관>인 各道(直轄市)·市(區域)·郡 <人民會議>와 <人民委員會>, 그리고 <行政的 執行機關>인 各급 <행정위원회>가 있다. 종래까지는 1954年 10月 30日 <지방 주권기관 구성법> 채택에 따라, 各급 지방 인민회의

地方政權機關 組織體系



를 <지방 주권기관>,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를 <지방기관>으로 정의해 왔었다.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各級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 주권기관>으로 정의되고, 行政的 執行機關인 각급 지방 행정위원회가 新設되었다.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里>單位的 지방주권 기관은 폐지되었다.

道(직할시) 인민회의의 任期는 4年, 市·區域·郡人民會議의 任期는 2年이다.

각급 지방 인민회의는 중앙 인민회의의 指導를 받으며, 지방의 <인민경제 발전계획>과 지방 예산을 承認하며, 해당 인민위원회

歷代 地方人民會議 選舉

選 舉 日	代 議 員 數			
	道·直轄市	市·區域·郡	里·邑·勞動者區 ⁽¹⁾	面 ⁽²⁾
1949. 3. 30	689	5,164		
1949. 11. 24 ~ 25				13,354
1949. 12. 3			56,113	
1956. 11. 20 ⁽³⁾			54,279	
1956. 11. 27	1,009	9,346		
1959. 2. 28		9,759	53,882	
1963. 12. 3	2,517	14,303	70,250	
1967. 11. 30	3,305	18,673	84,541	
1972. 12. 12	3,185	24,784		
1975. 2. 27		23,833		
1977. 3. 4	3,244	24,268		
1979. 3. 11		24,247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폐지.

(2)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폐지.

(3) 1954년 10월 30일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채택 이후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로 개칭.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該當 行政委員會(위원장), 해당 재판소(판사, 인민 참심원)를 선거 및 소환하는 權限을 갖는다.

地方 인민회의는 매년 1~2 회의 정기회의를 開催하도록 되어 있는데, 會議의 召集과 준비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하고, 採擇된 決定은 해당 인민위원회 委員長이 공포한다.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 지방 주권기관>으로서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부터 從來의 집행기관적 기능이 排除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監督과 統制業務를 遂行하는 상설적 주권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는 ① 해당 人民會議의 召集 및 인민회의 代의원 선거사업 실시, ②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의 <지도 통제>, ③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의 <지도>, ④ 해당 지역내 국가기관·기업소·사회 협동단체 사업의 <감독통제> 權限을 갖는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또 해당 지방 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사무

行政區域現況

(1979. 2월 현재)

區 分	數	備 考
道	9	平南, 平北, 慈江, 兩江, 黃南, 黃北, 咸南, 咸北, 江原
特別市	1	平壤
直轄市	2	開城, 清津
市	17	
區 域	37	
郡	152	
邑	152	
里·洞	4,169	
勞動者區	214	

※ 慈江道는 1949. 1. 13일 平北과 咸南의 一部地域을 합쳐, 兩江道는 1954. 10. 30일 咸南과 咸北, 慈江의 一部地域을 합쳐 新設되었다. 面 行政單位는 1955년 12월 이후 폐지되었다.

장·위원을 임명 또는 解任한다. 각급 지방 인민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운영한다. ⑥

각급 지방 행정위원회는 <지방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인민위원회의 指導를 받으며, 上級 行政委員會와 政務院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행정위원회는 지방 행정사업의 조직 집행, 지방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추진, 지방 예산의 집행 등과 같은 任務를 갖고 있다.

○ 裁判 및 檢察機關: 社會主義 헌법하에서 재판 및 검찰기관은 <黨과 國家의 司法政策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武器>라고 말해지고 있다. 北韓의 재판기관 體系는 중앙재판소, 道(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特別裁判所로 이루어진다.

인민재판소는 보통 2~3개 市(郡)에 1個所씩 설치된다. 中央 및 地方裁判所의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최고인민회의와 해당 지방 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되며, 그 任期는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特別裁判所의 경우 所長과 判事는 中央裁判所가 임명, 해임하고, 人民參審員은 해당 <軍務者會議> 또는 <從業員會議>에서 선거한다.

재판은 판사 1名(특별한 경우 3名), 人民參審員 2名이 수행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중앙재판소가 모든 재판 업무를 監督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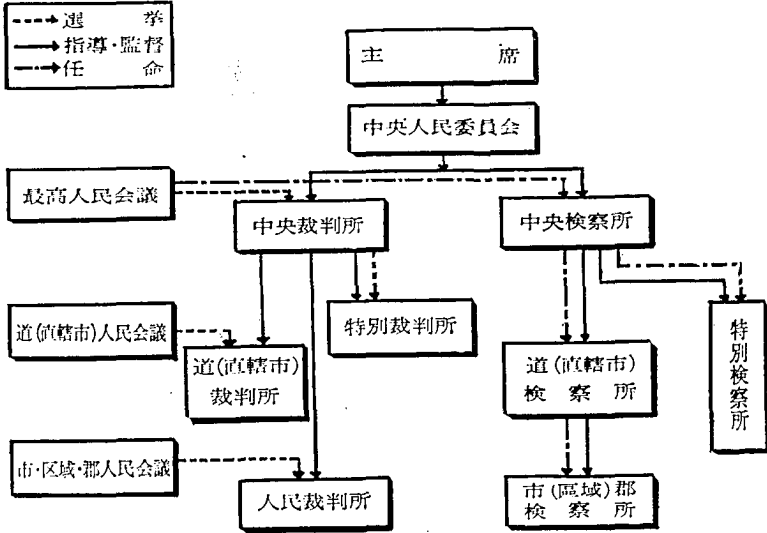
北韓의 검찰기관 체계는 중앙검찰소, 道(直轄市)·市·區域·郡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해임한다. 검찰 업무는 主席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하급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

北韓에서는 最近 <社會主義 法務生活>을 강조하면서, 中央과

⑥ 중앙인민위원회 법무부, “지방 주권기관 구성법에 관한 법규 해설”, 민주조선 (1975. 2. 13~15)

裁判・檢察機關體系



道·郡에 <國家機關>으로서 <法務生活 指導委員會>를 설치하고 있다. ⑩ 각급 <法務生活 指導委員會>는 社會에 대한 法的 統制 및 <준법 교양>의 임무를 수행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法務生活>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役割을 한다.

特殊機能 組織

北韓은 黨規約 또는 헌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機能을 遂行하는 組織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特殊組織들은 1970年代 초반 金日成·金正一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權力體系 確立을 위하여 設置 또는 규정되었으며, 오늘날 北韓體制의 主要 統制裝置로서 그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⑩ <法務生活 지도위원회>의 설치는 1977년 12월, 6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로 확인되었다.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중앙과 각지방 단위에 <국가기관>으로 조직된 사실은 <근로자(1978.7)>에서 확인되었다.

김억락,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1978.7) p. 28.

○國家政治保衛部：國家政治保衛部는 정무원 기구인 社會安全부의 기능 중 政治保衛部門만을 獨立시켜 북한 체제안전을 위한 政治查察을 目的으로 새로 設置되었는데, 창설 시기는 75年 3月頃으로 알려져 있으며, 當時에는 社會安全部長이었던 金炳夏가 部長이었다 한다.

이 機關은 社會安全부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직접적인 집행기관으로서 行政體系에 따라 中央으로부터 道·市·郡은 물론, 人民軍과 같은 特殊機關에까지도 一元的 體系로 組織되어 있다.

그런데 各級 最高人民회의 1次 會議에서는 새로운 中央機關을 구성하기 마련인데, 國家政治保衛部만큼은 秘密에 부쳐 公表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때문에 責任者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며, 다만 中央人民委員會가 이를 직접 監督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大革命小組：1972年 社會主義憲法에 3大革命을 規定(제11, 25, 36조)한 以後 이를 추진하기 위한 組織으로 73年 2月부터 3大革命小組를 發起해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小組〉는 黨일군·國家 經濟機關 일군·大學生·大學敎員·工場 企業所의 技術者·科學者 등을 中心으로 構成되며, 單位小組는 지도 대상에 따라 20~30名에서부터 50名에 이르기까지 組織되어 現在 수만 명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 중앙〉 金正一의 직접 지도 밑에 人民經濟部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文化機關·各급 學校에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黨 組織과 더불어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小組運動은 “革命的 군중로선으로부터 出發한 것이며,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徹底히 具現한 것으로 政治思想的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大衆을 적극 발동함으로써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새로운 形式의 革命的 指導

方法”이라는 것이다.

小組운동은 黨中央의 친위대 근위대로써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鬭爭으로 오래된 幹部들이 가지고 있는 保守主義·經驗主義·要領主義·機關本位主義·官僚主義 등을 改造하기 위한 思想鬭爭에 表面的인 目的을 두고 있으나^⑮ 時宜上으로 이를 金正一의 後繼體制 構築과 연관된 體制改編作業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⑯

⑮ 손병찬,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모신 관철에 끝없이 충성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근로자 (1977. 11) p. 30.

⑯ <정치권력>편의 ‘권력계승준비’ 항목·참조.

政治權力

金日成体制強化

派閥鬭爭

北韓의 지도층은 처음에는 해방전의 공산주의 운동 또는 抗日鬭爭 經歷과 地域的 出身을 달리하는 파벌들 간의〈聯立〉 形態를 취하고 있었다.

초기 北韓 指導層을 구성하고 있던 파벌로는 金日成系를 除外하고, 國內에서 地下共産黨 운동을 했던 〈국내파〉, 中國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하여 〈조선신민당〉으로 규합되었던 〈중국파〉, 그리고 소련에서 共産主義 教育을 받고 解放後 소련군의 진주에 뒤따라 귀국한 〈소련파〉가 있었다.

해방 직후 金日成(本名 金成柱)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으나 事實上 뚜렷한 政治的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①

金日成은 자신의 權力 強化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反對派,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 제거 작업을 추진해 왔다. 파벌 투쟁의 첫 희생자는 〈국내파〉 人物이었다.

金日成은 이미 政權樹立 以前부터 〈국내파〉의 有力한 人物들을 〈좌경적 오류〉 또는 〈종파주의〉, 〈영웅주의〉라고 비판하였다.

6.25 남침전쟁의 실패로 金日成의 政治的 權威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金日成은 1952年

① 1945. 10. 13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 1차 확대위원회에서는, 金鎔範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동년 12. 17 개최된 분국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비로서 金日성이 분국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12月 <당중앙위원회 5次 전원회의>를 계기로, 1955年 12月까지 <南勞黨>계의 지도급 인물들을 <美帝의 間諜>이라는 罪名으로 단죄하는 대대적인 숙청을 斷行하였다.

1956年 2月, 20次 소련 공산당대회 이후 공산권 내에서 개인숭배 反對, 스탈린격하運動이 전개되면서 北韓에서는 反金日成 운동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金日成은 최대의 정치적 危機를 당하게 되었다.

1956年 8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중국파> 및 <소련파>에 의한 反金日成 운동이 좌절되면서 金日成은 主謀者들에 대한 처단 숙청을 단행하는 한편, 1958年 3月 <黨代表者會議>를 개최하여 숙청 작업을 일단락짓고, 全國적으로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을 대대적으로 展開함으로써 反對派의 基盤을 一掃하는 등 1人體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歷代 黨政治委員會 派閥構成

당 대회	위원 수		파 별 구 성			
			김일성파	중국파	소련파	국내파
1차(46.8)	정	5	1	2	1	1
2차(48.3)	정	7	2	3	1	1
3 차 (56.4)	정	11	5	2	2	2
	후 보	4	1	1	1	1
4 차 (61.9)	정	11	7	1	1	2
	후 보	4		1		3
2차대표자회의 (66.10)	정	15	11	1	2	1
	후 보	12	10	1	1	
5 차 (70.11)	정	11	11			
	후 보	4	4			

出處: 각 당대회 때 발표된 정치위원회 출신 배경, 경력, 김일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

1950年代 후반기는 金日成 自身の 말대로 金日成 體制的 <엄청난 시련의 시기>였다.

1960年代에 金日成은 비교적 安定된 權力을 유지해 왔으나 1967年 3月 自派內的 <甲山系> 黨僚 숙청과 1969年 1月 軍部 숙청 등 정치적 不安을 겪기도 하였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 以後부터 北韓의 지도층은 完全히 金日成派로 <一色化>되었다.

金日成崇拜運動

공산국가에 있어서 支配者에 대한 <개인숭배>는 常例로 돼 있으나 北韓의 경우는 특히 그 程度가 심하다. 오늘날 北韓에서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의 실태는 개인에 대한 <英雄化>의 단계를 넘어서 <神格化>에로까지 진전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이 本格化된 것은 金日成에 대한 反對 세력이 除去되고, 1人支配體制的 기반이 구축된 1958년부터였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은 金日成 個人에 대한 과장된 찬양과 象徴조작, 歷史조작, 思想教育, 선전 등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金日成에 대한 경칭과 찬양의 修辭는 무려 180여 자에 이르는 장광설이 되고 있다.

또한 近代史, 특히 <독립운동사>는 完全히 金日成 一家의 족벌사, 金日成의 <혁명투쟁사>로 改作 날조되고 있으며 신문, 잡지 심지어 學校 教科書, 학술 서적 등 모든 출판물들은 개인 숭배를 위한 선전 수단이 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의 내용은 우선 김일성을 <抗日 革命鬪士>, <朝鮮의 解放者>로서의 이미지를 浮刻시키는 努力으로부터 出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②라는 진

②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朴成哲, 金東奎, 崔賢, 林春秋 등 항일빨치산투쟁을 전개했다는 94명이 집필, 총 12권(3,222 面)으로 되어 있으며 1959.5에 최초로 노동당 역사 연구소에서 출간되었음.

투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학습의 기본 교본이며 <聖典>처럼 되어 있다. 그 內容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한 例는 김일성의 部隊가 15年間 10만 여회의 戰鬥을 통하여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10만번의 전투라면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도 1일 平均 20여 회의 戰鬥을 한 셈이 된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은 또 그를 모든 權威와 能力의 最上位로 묘사함으로써 北韓住民에게 <卓越한 領導者>의 이미지를 부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③

그리고 北韓에서는 住民들이 먹고, 노동하고, 휴식을 취하며 교육을 받는 모든 生活을 <수령님의 은혜>로 생각하도록 強要된다.

뿐만 아니라, 金日成을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위대한 사상가>로, 政治·經濟·社會·文學·藝術의 <이론가>로 추켜세우고 있다.

심지어 北韓에서는 自然科學의 論文에서까지 金日成의 語錄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最近에 와서는 金日成에 대한 이러한 개인숭배 운동이 더욱 強化되고 있는데, 金日成의 家系를 <革命家門>으로 내세우기 위해 先祖와 外家, 친척, 심지어 前妻도 抗日革命鬪士로 부각하여 公式 歷史 책에 기록하고 있으며, 金日成 家族의 活動場所를 유적지화하고 <烈士陵>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개인숭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實情이다.

指導層의 變化

指導層의 人物交替

北韓의 지도층은 경직된 少數集團을 이루고 있다. 政治指導層

③ 일례로 북한은 김일성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 김일성을 神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고 있으며, 평양 시내 곳곳에 김일성의 全身像이나 胸像이 산재해 있다. 에드윈·레인골드, “북한방문기”, Time, (1979.5.28)

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黨의 정치위원(후보위원 포함) 및 秘書를 역임한 人物은 1次 당대회부터 5次 黨大會까지 46名이며, 당중앙위원으로 選出되었던 人物은 189名에 不過하다.

政權機關의 경우를 볼 때, 주석·부주석·중앙인민위원·총리(首相)·부총리(부수상)를 역임한 人物은 50여 명, 部長(相)·委員長을 역임한 人物은 150여 명 程度이다.

이들이 모두 당직과 정권기관의 직책을 겸직했던 점을 考慮하면, 해방 이후 北韓을 統治해 온 정치 지도층의 변화는 事實上 200여 명 內外의 소수 집단 내에서의 交替였다. 당 지도층 幹部의 人名은 5次 黨大會(1970年 11月) 때 發表된 以來, 아직 공식적으로 名單을 확인할 수는 없다. 黨政治委員은 5次 당대회 以來 11명중 3명이, 秘書는 10명중 2명이 死亡하였고, 經濟·行政 등 分

歷代 黨政治委員 및 秘書變化

黨大會	委員 및 秘書	連任	候補에 서昇進	新任	再選	3選	4選	5選	6選
1 차	정 5								
2 차	정 7	5		2	5				
3 차	정 11	1		10		1			
	후보 4			4					
4 차	정 11	10	1		9		1		
	후보 4	3		1	3				
2 차 대표자 회의	정 15	9	1	5	1	7		1	
	후보 12	3		9	1	2			
	비서 11								
5 차	정 11	5	3	3	2		2		1
	후보 4	1		3		2			
	비서 10	4		6	4				

出處: 각 당대회시 발표 명단을 근거로 작성.

※ 재선, 연임 등의 구분은 당대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선출된 것은 고려하지 않았음.

野의 實務的인 專門家 出身 新人을 새로 增員해 왔다.

歷代 黨中央委員會 委員變化

黨大會	中央委員	連任	候補에 서昇進	新任	2選	3選	4選	5選	
1 차	정	43							
	후보	—							
2 차	정	67	29		38	29			
	후보	20			20				
3 차	정	71	29	5	35	19(1)	12		
	후보	45	3		42	3			
4 차	정	85	27	11	47	15	7	5	
	후보	50	1		49		1		
5 차	정	117	29	15	72	19	8(2)	1	2
	후보	55	6		49	6			

出處: 각 당대회시 발표 명단

註: (1) 1차 당대회 때 중앙위원에 선출됐다가 2차대회에서는 탈락되었던 2명 포함.

(2) 2차, 3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가 4차 당대회에서 탈락했던 1명 포함.

그 동안 報道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現在 <조선로동당>의 지도층 간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政治委員會

(委員) 金日成 金一 崔賢 朴成哲 李鐘玉 吳振宇
徐哲 林春秋 吳白龍 全文燮 金仲麟 金煥 桂應泰
金永男 李根模 延亨默☆ 金萬金 金英柱☆(☆표는 未確認)
(候補委員) 朴守東 許鈹 姜成山 鄭準基 玄武光
金鐵萬 崔載羽 孔鎮泰

□ 秘書局

(秘書) 金一 林春秋☆ 金煥 金英男 吳振宇 玄武光☆
延亨默☆ 金正一☆ 金仲麟 徐哲(☆표는 未確認)

政權機關의 人物은 1977年 12月 最高人民會議 6期 1次 會議 때 名單이 發表된 以來 다소의 變動이 있었다. 現在 政權機關의 간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 主 席

(主席) 金日成

(副主席) 金 一 康良煜 朴成哲

□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林春秋

(委員) 金日成 金 一 康良煜 崔賢 朴成哲 吳振宇 徐哲

李鍾玉 林春秋 吳白龍 桂應泰 金煥 洪時學

金萬金 서관희* 尹基福, (*표는 미확인)

□ 政務院(9個委員會 24個部)

(總理) 李鍾玉

(副總理) 桂應泰 許鎔 鄭準基 姜成山 孔鎮泰 金斗英 姜希源

崔載羽 金教連

人 民 武 力 部 吳振宇

外 交 部 許鎔

社 會 安 全 部 최원익

國 家 計 劃 委 員 會 (불명)

農 業 委 員 會 정용택

鑛 業 委 員 會 趙昌德

金 屬 工 業 部 윤호석

電 力 工 業 部 李智燦

第 一 機 械 工 業 部 桂亨淳

第 二 機 械 工 業 部 (불명)

第 三 機 械 工 業 部 (불명)

化 學 工 業 部 원동구

建 設 部 박임배

國 家 建 設 委 員 會 金應相

建 材 工 業 部 김남운

輕 工 業 委 員 會 허 순

鐵 道 部 姜成山

陸 海 運 部 李鐵鳳

水産委員會	姜漸求
人民奉仕委員會	林亨九
教育委員會	김일대
資材供給部	김태극
逡信部	金英彩
文化藝術部	李昌善
財政部	金敬連
貿易部	최정근
對外經濟事業部	정송남
勞動行政部	채희정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최마련
保健部	박명빈
資源開發部	(불명)
國土管理部	(불명)
都市經營部	(불명)

(事務長) 김운혁

□ 裁判·檢察機關

中央裁判所長	方學世
中央檢察所長	이진수

□ 最高人民會議

議長	黃壯燁
副議長	洪起文 許貞淑
豫算審議委員長	洪時學
法案審議委員長	尹基福
(事務長)	전창철

權力承繼準備

최근 북한에서는 새世代之 社會的 登場과 함께 <代를 이은 革命> <革命偉業의 繼承>을 강조하면서 공공연히 金日成 以後 體制의 준비 또는 후계 준비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 北韓의 지도층은 아직은 <빨치산 출신>으로 불리우는 舊 革命幹部와 실무적인 자질을 갖춘 新進 테크노크라트幹部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內的으로는 대대적인 政治世代之 交替作業과 병행하여 金日成의 長男인 金正一을 새로운 지도자로 옹립하기 위

한 운동이 상당한 정도로 推進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勞動黨의 高位職에 종사하다가 귀순한 人士에 의하면 金正一을 後繼者로 翁립하기 위한 最初의 決定이 이루어진 것은 1973년 2월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秘密會議에서였다고 證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後繼者 擁立運動이 積極化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2월에 개최된 黨 5期 8次 全員會議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④ 특히 1975년 10월경 부터는 金正一이 後繼者로서 그 體制를 구축하고 있음을 出版物 등에서 公表하기에 이른 사례가 있다.⑤

그간 北韓은 이같은 金日成의 後繼體制 구축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三大革命小組運動을 통해 지방급 幹部들은 물론, 黨中央委員會의 幹部들도 상당수 金正一의 人物로 交替시켰다.

최근에는 <黨中央>, <향도의 햇발>등으로 金正一을 지칭하고, 이른바 <金日成主義>를 <黨中央이 선포하고 定式化한 革命思想>으로 부각시킴으로써⑥ 그를 中心으로 한 唯一的 지도체제의 確立과 偉大性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金日成의 후계체제 구축운동이 政權繼承과 관련된 後繼者 指名運動으로서 그것이 軍·黨 각층에서 커다란 抵抗을 받고 있어서 일종의 名分危機에 빠져 있다고 판단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④ 5期 8次 全員會議에서는 “모든 힘을 社會主義 건설사업에 총동원할 데 대하여”라는 議題를 討論하고 6개년 계획을 75년 10월 당창건 30주년 기념일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후 速度戰運動이 展開되는 등 새로운 變革의 징후를 찾아볼 수 있으며, 全員會議가 끝나자마자 조직담당 비서인 김영주를 부총리로 전보 발령했다.

⑤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首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조종던간부학습제강(1972. 2)

⑥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역사적 지위(김일성주의 학습), 統革黨 목소리 방송, (1979. 9. 4). <구체사상>과 <金日成主義>의 關係에 대해서는, “김일성주의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는 달리 革命의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 자기의 고유한 구성체제로 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으로써 완성된 범모를 가지고 있는 革命思想으로서…… 김일성주의 구성체제에서 가장 중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 곧 혁명의 지도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주의 학습”, 통혁당 목소리 방송, (1979. 9. 12 및 9. 21)

經 濟

經濟體制

社會主義經濟體制的 基盤構築

北韓에서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改造는 1946년부터 着手하여 12年만인 1958년에 끝났다.

1946年 2월에 조직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民主改革>이라는 名分으로 無償沒收·無償分配의 原則에 의한 土地改革과 工場·鑛山·鐵道·遞信·銀行 등 重要産業을 國有化하였다.

1947년부터는 産業에서의 國유화 部門을 계속 강화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國營 農·牧場 등을 확대시켜 社會主義的 改造를 積極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休戰後부터 社會主義의 建設이 본격화 됨에 따라 農業의 集團化와 個人商工業의 社會主義化를 더욱 강행하여 不過 4~5年만에 社會主義的 改造를 完成시켰다.

土地改革과 農業의 集團化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1946年 3월에 <土地改革 法令>을 公布하고, <無償沒收·無償分配>①에 의한 土地改革을 實施했다. 그 결과 北朝鮮 總면적 約 200萬 町步 中 100餘萬 町步의 土地가 무상으로 몰수되었으며, 90餘萬 町步가 貧農·小作人들에게 무상으로 分配되었다.② 그 결과 小作制가 철폐되고, 個人經營으로 되었으며, 一部 土地가 國有化되었다.

① 조선로동당 력사 교재 (명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16.

② 조선중앙년감(1949) p. 71.

沒收土地內容

內 容	町 步	比 率(%)
日本國 및 日本人 所有地	100,500	9.5
朝鮮 人民의 反逆者 所有地	21,683	2.1
大·小 地主의 所有地	913,000	87
教會 및 僧院의 所有地	14,855	1.4
總 計	1,050,038	100

出處: 조선중앙년감 (1949). p. 71.

※ 김일성선집, 제 1 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63에는 總沒收土地 1,000,325정보로 표시

土地分與內容

對 象	戶 數	町 步
貧 農	17,137	22,387
土地 없는 小 作 人	442,975	603,407
土地 적은 小 作 人	260,501	345,974
他 郡에서 自 耕하는 農民	3,911	9,622
總 計	724,522	981,390

出處: 조선중앙년감(1949) p. 72.

※ 북한 의무성 발표(1969.11)에는 인민위원회 보유지 18,935정보가 추가되었음.

그 후 土地灌溉 管理令 發効(1946.9), 國營 農·牧場의 規模 擴張 (1949.12), 農機械賃耕所 設置(1950.2) 등을 거쳐 휴전 후인 1953 年 8월에 열린 로동당 제 6 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는 1954年 부터 농업협동조합을 組織할 것을 決定했다.③

黨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를 規 定했다.④

第 1 形態는 固定的인 努力協助班.

第 2 形態는 出資한 노동과 土地에 의하여 分配를 實施하는 半 社會主義의 形態.

③ 김일성선집, 4 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21.

④ 정치경제학, 하권 (학우서방, 1967) p. 66~67.

第3形態는 土地·농기구 등 生産手段을 통합하여 노동의 量과 質에 의해 分配하는 完全한 社會主義的 形態.

이 세 가지 形態中 農民들의 實情에 따라 適當한 것을 選擇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3年 末부터 1954年 初에 걸쳐 1個郡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경험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는 集團化 운동이 본격적으로 展開되었다. 1956年 4월에 개최된 노동당 3차 대회에서는 1次 5個年計劃期間에 集團化를 完成시킬 것을 決定한 바 있으며, 이러한 黨 決定에 따라 집단화의 속도는 매우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集團化를 着手한지 不過 5年만인 1958年 8월에 集團化가 完結되어 全農家가 協同組合에 加入되었다.

당시의 농업협동조합 수는 13,309個所였으며, 平均 80戶의 농가로 조직되었다. 耕地面積에서는 1個 組合當 130町步였다.

그러다가 1958年 10月 協同組合을 里單位로 統合하게 됨으로써 3,843個 組合으로 그 數가 줄어드는 反面, 한 個의 協동조합은 平均 300戶와 500町步로 그 規模가 커졌다.

그 후 1961年 11月 郡(區域) 人民委員會로부터 農村經理에 대

農 業 的 集 團 化

年 度	農業協同組合 總 數(個所)	協同組合에加入한 農 家 戶 數		協同組合에編入된 耕 地 面 積	
		戶 數	總農家戶數 에대한比率 (%)	耕地面積 (千町步)	總耕地面積 에대한比率 (%)
1 9 5 3	806	11,879	1.2	11	0.6
1 9 5 4	10,098	332,662	31.8	576	30.9
1 9 5 5	12,132	511,323	49.0	885	48.6
1 9 5 6	15,825	864,837	80.9	1,397	77.9
1 9 5 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 9 5 8	3,843	1,055,015	100.0	1,791	100.0
1 9 6 3	3,732	1,066,896	100.0	1,837	100.0

出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 p. 18.

한 指導機能을 分離시켜 전문적 農業 指導機關인 郡(區域) 農業 協同組合 經營委員會를 組織하고, 郡內에 있는 농기계작업소·농 기계공장·灌溉管理所·자재공급소·가축방역소 등을 直接運營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오늘의 協同農場 經營體制가 確立되었으며, 또한 농업 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改稱하게 되었다.

産業의 國有化

1946年 8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重要産業國有化 法令을 發表하여 <日本國과 日本人의 個人 및 法人 등의 所有와 이른바 조선 人민의 反逆者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工場·企業所·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을 國有化하는 조치를 취했다.⑤

그 결과 全體産業의 90% 以上인 1,034個所의 산업시설이 社會主義的 所有로 轉換되었다⑥.

한편 個人이 經營하는 小規模 工場·企業所와 商業에 대해서는 6·25前은 물론, 休戰後까지도 生活必須品の 원활한 生産과 流通을 위해 장려·이용·제한하는 정책을 통하여 이들을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였다.

한편 資本主義的 形態의 商工業은 6·25 동란이후 적지 않은 個人 商工業을 改造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같이 세 가지 形態를 活用했

⑤ 조선로동당 역사교과(명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167.

⑥ 조선중앙년감(1949) p. 73.

※ 정치경제학<하>(학우서방, 1967) pp. 89~92. “로동당은 1947년에 수공업자들로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그들의 개인 경리를 사회주의적 협동경리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과 수공업의 협동화를 농촌부터 시작하여 점차 도시로 이행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9월에 발족한 생산협동조합은 1949년에 조합수가 20배 이상으로 한 조합당 조합원수는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으며, 1949년부터 1952년간에 조합수는 567개에서 579개로, 조합원수는 108%로 늘어났다.”

는데,

第1形態는 都市의 手工業者들을 生産協同班化.

第2形態는 中小 商工業者들의 生産手段과 자금을 통하여 공동 경리를 운영하는 半社會主義의 形態.

第3形態는 生産手段의 共同所有로 된 完全한 社會주의적 형태 등이다.

이와 같은 黨의 方針과 過程을 거쳐서 農業 集團化의 完成과 때를 같이하여 手工業과 資本主義的 商工業의 協同化가 1958年 8月에 完成되었다.

이같은 改造政策은 수공업자들을 협동경리의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움으로서 기업가·상인들이 協同組合에 大量으로 加入하도록 誘導하였던 것이다.

개인 상공업을 社會主義的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노동당이 取한 重要한 方針의 하나는 경제형태의 개조를 人間改造와 밀접히 결

工業總生産額의 經濟形態別 構成

(單位: %)

區分	1946	1949	1956	1959	1960	1963
工業總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중						
社會主義經濟形態	72.4	90.7	98.0	100.0	100.0	100.0
(國營)	(72.4)	(85.5)	(89.9)	(89.5)	(89.7)	(91.2)
(協同經營)	(—)	(5.2)	(8.1)	(10.5)	(10.3)	(8.8)
小商品經濟形態	4.4	1.5	0.7	—	—	—
私資本主義經濟形態	23.2	7.8	1.3	—	—	—

出處: 조선중앙년감(1964) p. 171.

小賣商品 流通額의 所有形態別 構成

(單位: %)

區分	'46	'49	'53	'56	'57	'59
國營 및 協同團體商業	3.5	56.5	67.5	87.3	87.9	100
個人商業	96.5	43.5	32.5	12.7	12.1	0

出處: 조선중앙년감(1959) p. 355.

합시켜서 推進한 점이다.

管理體制

管理體制와 組織

北韓의 경제관리는 政·經 不可分의 原則下에서 黨의 全般의인 지도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62년부터 실시된 <大安의 事業體系> 이후 공장 운영이 <工場黨 委員會>의 集團의 指導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관리에 있어서 黨의 干渉 幅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⑦

中央集權의 計劃經濟의 실시과정에서 官僚機構는 數的으로 계속 增大되고 복잡화 되었으며, 1960年代 末에는 政務院의 總部署數가 近 40餘個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과거의 產業別 細分化에 따른 갖가지 生産管理의 非效率性을 줄이고자 一部를 統·廢合한 바 있으며, 1979年末 現在 政務院의 總部署數는 33個로, 그 中 27個部署가 經濟關聯部署이다.^⑧ 계획부문은 政務院의 國家計劃委員會에서 總括·調整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제관리는 중앙의 農業委員會가 道 農村經理委員會와 郡 協同農場 經營委員會를 指導·統制하는 한편, 國營農·牧場 및 農業部門 關係 企業所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국가건설부문은 중앙의 國家建設委員會에서 기본 건설부문을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各地區 道建設委員會와 各建設事業所를 指導統制하고 있다.

그 밖의 중앙의 各 경제관계 위원회 및 部는 그 直轄로 各部門의 中央工業의 工場·企業所를 관리하며, 지방 행정 및 경제사업을 總括하는 道·郡 行政委員會를 지도 통제한다.^⑨

⑦ 조선중앙년감 (1971) p. 13.

⑧ 로동신문 (1977. 12. 16 일자).

※ 1978년에 자원개발부 신설. 중앙방송(1978. 8. 7 및 8. 21)

⑨ 사회주의 헌법, 제130조.

한편 道營 企業所는 道 地方産業管理局에서 총괄하며, 郡의 各 工場·企業所 및 生産協同組合 工業은 郡地方工業部에서 총괄하고 있다.

計劃體制

經濟計劃의 作成과 執行狀況에 대한 감독 등은 중앙의 國家計劃委員會를 中心으로 하여 道·市·郡 및 工場·企業所에 이르기까지 一元화된 體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분야에 걸쳐 黨의 政策을 計劃化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任務로 하고 있다.

1965年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강조된 이래, 종래의 道·市·郡計劃委員會 이외에 국가계획위원회 밑에 直轄로 地區 計劃委員會와 中央工業의 工場·企業所에 계획부를 設置함으로써 계획체제의 集權化를 더욱 強化시켰다.

政務院의 各部 및 委員會들도 자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계획 수치는 一元的으로 國家計劃委員會로 集結되어 統制와 調整을 받게 되어 있다.

한편, 계획 작성 과정을 보면^⑩, 主席과 黨中央委員會에 의해 결정된 기본 정책을 놓고 국가계획위원회는 <細部 草案>을 作成하여 政務院 各部·委員會와 地區 計劃委員會에 下達한다.

이에 의해 上記機關은 <自體 草案>을 作成하여 하부 기관에 下達하고, 各工場·企業所는 <豫備 數字>를 作成·上報하며,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3~5萬種의 指標를 구체화한 <計劃 草案>을 作成·下達한다.

末端 經濟單位는 이에 의거, <計劃 草案>을 作成·上報하며, 國家計劃委員會는 최종적으로 <計劃數字>를 作成하여 黨中央委員會의 基準을 얻은 後 10月頃에 國家의 法으로서 公布·示達한다. 展望計劃의 法令化는 最高人民會議에서 확정된다.^⑪

⑩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3권(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 582~608.

⑪ 사회주의 헌법, 제76조.

社會主義的 농업 관리체제에는 社會主義的 所有의 두 가지 所有形態, 즉 國家的 所有와 協同的 所有가 있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國營 農·牧場, 國營 農機械作業所, 國營 灌溉管理所등이며, 協同的 所有는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全農業分野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전농업의 構成에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⑫

管理體制를 보면, 처음에는 郡人民委員會 農村經理部에서 郡內의 농업 전반을 장악하여 行政方式으로 지도 관리하였다.

그 결과, 官僚主義·獨斷主義 등이 팽배되었으며, 郡人民委員會 委員會 自體의 指導力量 부족과 지도 간부의 低水準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계획수립·기술·자재공급·노동행정·재정활동 등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⑬

그리하여 1961年 12月 김일성의 平南 속천군 現地指導에서의 <敎示>에 따라 종래의 郡人民委員會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시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다.^⑭

1962年 末부터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농촌경리의 末端單位로 하여 道에는 道 農村經理委員會, 中央에는 農業委員會와 一元的으로 연결시켰다.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이자, 농업 기업소의 성격을 띤 同委員會는 郡內 협동농장 및 농업부분의 國家企業所를 總括的으로 管理 운영하게 되었다.

改編된 농촌 관리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농업관리의 基本方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당위원회의 集體的 指導下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 2) 郡單位로 工業的·企業的 方法에 의한 農村管理

⑫ 정치경제학, 하권 (학우서방, 1967) pp. 366~367.

⑬ 김일성저작선집, 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p. 31~75.

⑭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 2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 144~165.

3) 中央集權的 一元化體系의 原則 反映

또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에 나타난 農村經理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1) 郡 단위로 企業的·統合的인 管理: 郡內 협동농장들의 일체 生産活動과 기업소의 제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總括的, 具體的으로 지도
- 2) 협동경리에 대한 國家的 指導協助의 강화: 郡內의 농기계 작업소·농기계 수리공장·가축방역소 등 국가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郡 협동경리 전반에서 經濟 組織性을 提高시키고, 郡的인 獨立採算制를 實施할 準備을 갖춘다.

協同農場의 生産組織에서의 기본형태는 作業班이며, 일정한 耕地, 勞動力 및 生産道具를 가지고 부과된 생산과제를 年間을 통하여 遂行한다. 작업장 내에는 몇 개의 分組가 있으며, 分組單位로 작업을 한다.

作業班은 협동농장의 생산 규모와 자연부락, 地域的 條件에 따라 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및 농기구 수리반 등으로 조직된다. 其他 生産部門은 小規模의 경우는 作業班內에 分組로 소속시키고 규모가 큰 경우는 專門作業班을 組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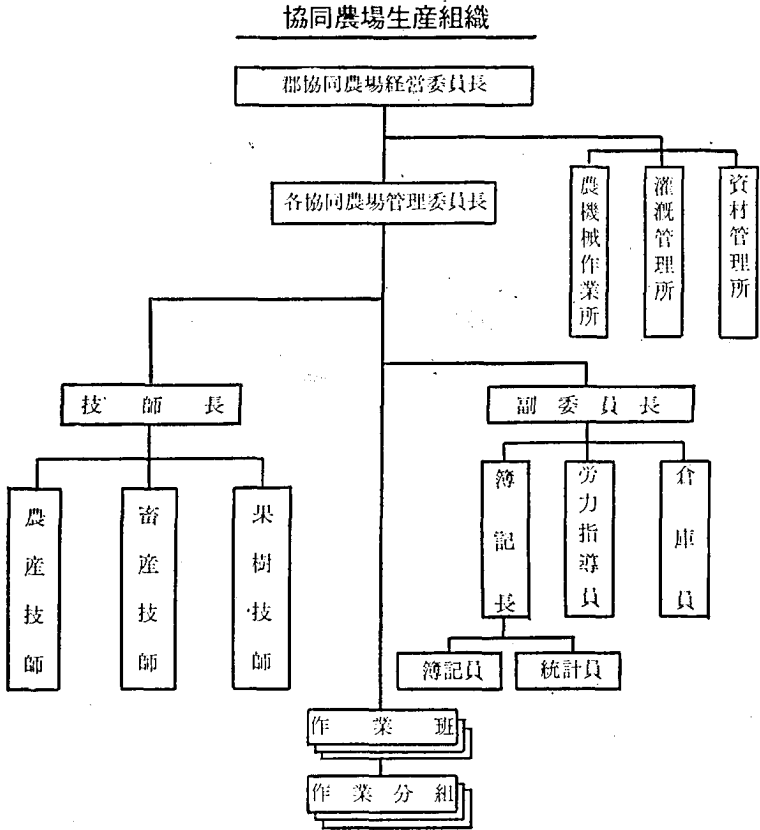
협동농장의 決算分配는 勞力日數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노력일수는 농장원들이 공동경리에 投下한 노동을 말하며, 個個 農場員이 차지하는 分配 몫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혀 주는 尺度이다.

分配에 있어서 作業班 優待制가 實施되고 있는데, 이 制度는 작업반에 부과된 목표를 초과 수행하였을 경우, 그 초과 생산분을 해당 작업반원에게 나누어 주는 制度이다.

1960年代 중반부터는 作業班 優待制와 함께 分組管理制가 實施되고 있다.

工業管理

生産手段에 대한 社會主義的 所有에 기초하는 사회주의공업기업소는 그 所有形態에 따라 國營공업기업소와 협동단체 기업소로,



※ 1962. 12. 22의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한 데 관하여” 내각결정 제157호의 내용과 최근 원남기순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1979. 7에 작성한 것임.

管理所屬에 따라 中央工業 企業所와 地方工業 企業所로 나뉜다.⑤

社會主義 工業企業所는 國家의 唯一的 계획하에 生産과 작업을 하는 工業의 經營單位이다.

工業企業所의 生産組織은 生産 技術적 特성과 生産의 專門化와 協동화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工業企業所에는 직

⑤ 경제사건, 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57.

장, 작업반들이 조직된다.

本來 工業管理에 있어서는 支配人 唯一管理制를 擇하였는데, 이는 支配人에게 경제관리운영의 모든 問題를 決定하고 처리하여 責任지게 하는 經濟管理 運營方法이었다.

그런데 唯一管理制는 생산협의회, 기술협의회등 行政的 및 社會的 形式을 통하여 集體性은 있으나 本質에 있어서는 책임 일꾼 한 사람에 의한 管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唯一管理制는 官僚主義와 機關本位主義 같은 個人的 獨斷과 主觀이 介入된 수 있으며, 企業管理에 大衆의 直接的인 참여가 곤란한 것이다. ⑩

이러한 問題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1961年 12月 김일성의 대안전기공장 現地指導에서 제시된 <大安의 事業體系>이다.

1962년부터 실시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의 경영으로 轉換된 工業管理體系로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내세우고 있다. ⑪

1) 당의 지도적 역할 강화와 經濟的刺戟보다 政治·道德的刺戟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優先

2) 工場·企業管理 운영에서 <工場黨委員會>의 집체적 토의와 지도 및 당간부·支配人의 生産現場 지도의 강화가 포함된 均衡로 선의 관철

3) 中央集權化된 계획적 관리, 독립 재산제의 實施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 內容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장당위원회의 集體的 指導體系로서 공장당위원회에 黨幹部·行政幹部·支配人·技師長·기술자·생산 핵심당원이 참여

⑩ 경제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821.

⑪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2권 (평양: 조신로동당 출판사, 1970) pp. 86~132. p. 423. 그 외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 이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p. 227~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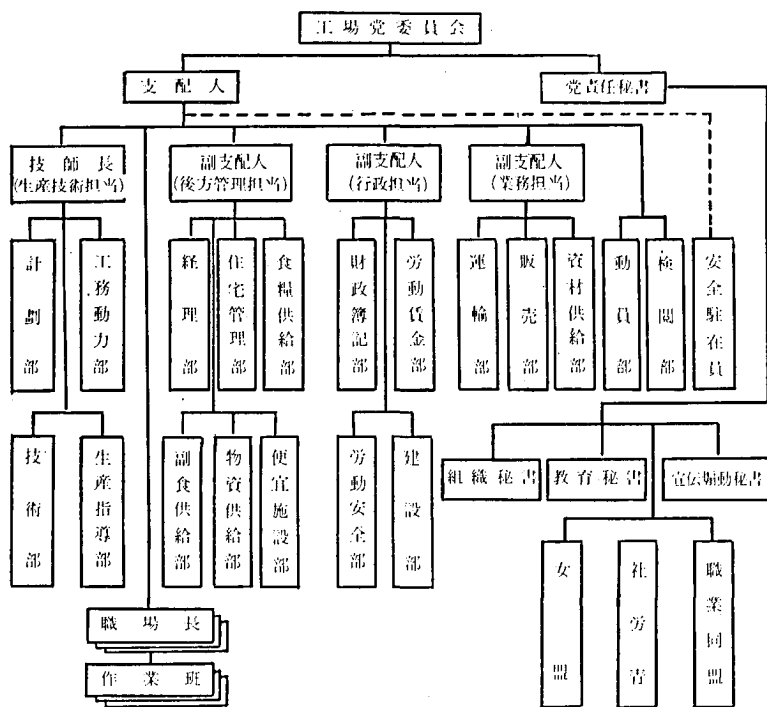
한다.

2) 집중적인 生産指導體系로서 계획작성, 生産 및 기술 지도사업은 技師長의 責任下에 遂行하며, 資材供給事業, 後方 供給事業 등 工場관리 全般에 대한 行政·경제활동은 支配人의 責任下에 遂行한다.

3) 중앙집권적인 자재 공급체계로서 各部管理局→工場·企業所→職場→生産現場 順으로 生産을 조직 지도하는 上級機關이 자재를 責任供給한다.

4) 總合的 후방 공급체계로서 지금까지 勤勞 大衆의 生活問題는 工場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어 副食物 供給조차 매우 不진

工場·企業所生産組織



하게 된 실정을 打開하기 위해 勞動者區 經理委員會를 設置하고, 工場 後方供給 副支配人을 委員長으로 임명하여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經營方式

獨立採算制

국영 기업소의 모든 單位들에서 獨立採算制가 實施되고 있다. 本制度를 도입한 이유로서는 자본주의적 상품 화폐 관계가 존속하며, 個人利己主義·機關本位主義·地方本位主義의 사업 태도가 常存하는 가운데 노동기피 현상과 국가 재산의 소홀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소에 대한 계획적 지도와 <원에 의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勞力·資材·資金의 節約, 非生產的 支出의 감소, 기업소의 수익성 保障을 위해서 <獨立採算制>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獨立採算制를 실시하는 데는 다음의 原則이 요구되고 있다.^⑧

먼저 당 정책과 國家要求에 의한 管理이어야 하며, 국가 계획의 무조건적 실행, 기업 운영에서 生産大衆의 참여와 政治事業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계획적 관리, 기업소의 경영상 융통성, 상품·화폐 관계의 적절한 배합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政治·道德의 자극과 物質的 刺戟이 옹기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獨立採算制의 기업적 측면을 보면,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각 국영 기업은 銀行信用의 이용과 독자적인 <부기 밸런스>를 보유하며, 물자 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다. 사업 평가에 貨幣指標를 활용하며, 國家計定 利益金을 공제한 남은 몫은 기업소의 경영상태 改善과 종업원들의 물질생

^⑧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 146~147.

활 提高에 활용한다.

그리고 독립 체산제 운영에 있어 <千里馬作業班運動·三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을 강화하고 <직장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한다.

한편, 독립체산제의 統制的 측면을 보면, 기업소의 勞賃資金·償金·企業所基金의 積立 規模 등 모든 경제 관리를 正確히 規定化하고, 고정재산 관리 이용을 制度化하며, 재정 의무 수행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統制를 實施한다.

또한, 月別·分期別·指標別로 國家計劃의 엄격한 실행을 감독·통제하는 한편, 기업소의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모든 項目과 지표별로 매달·매분기마다 물질적·정치적 평가를 실시한다.

독립 체산제는 공업·농업·유통 분야 외에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까지도 擴大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73年 9月의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는 독립 체산제의 正確한 實施에 대해 再強調한 바 있다.^㉑

社會主義競爭運動

競爭運動은 해방 후부터 꾸준히 展開해 왔다.

1946年 12月부터는 <建國思想 總動員運動>이라는 경제 건설과 사상 개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에서는 國家財産 애호·노동규율 강화·원가절하·기술 습득 등이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그 後 <증산돌격대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3.1節 增産競爭, 5.1節 增産競爭, 常時 증산 돌격대 등의 경쟁운동으로 擴大되었다.^㉒

戰後에는 1954年初부터 3個年 復舊計劃과 함께 <복구돌격대운동>, <民靑 巡廻優勝旗 쟁취운동> 등이 展開되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本格的으로 전개된 것은 1956年

㉑ 조선중앙년감 (1974) pp. 152~153.

㉒ 조선중앙년감 (1949) p. 97.

12月 黨 全員會議 이후부터이다. ①

즉, 노동 강화를 통한 生産增大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共産主義 思想으로 教養, 改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方案으로서 <千里馬運動>을 내세웠다.

黨의 총로선으로 採擇된 이 운동은 1959年 3月부터는 <千里馬 作業班運動>으로 심화되었으며, 1961年 8月까지 200萬名 以上の 근로자가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②

<千里馬作業班運動>은 <千里馬運動>이 내세운 모든 근로자의 共産主義的 教養 改造를 바탕으로 작업반 단위로 責任을 지우게 함으로써 兩者를 有機的으로 結合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 운동의 범위는 공업·농업·건설·보건·과학·교육 등 모든 領域을 포괄하며, 中心課業으로는 사람과의 事業<思想革命>, 설비·자재와의 사업<技術革命>, 책(당 학습교재, 김일성 저서등)과의 사업<文化革命>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③

1975年 末부터는 <3大革命 붉은旗 쟁취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오래 전부터 金日成과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돌린 검덕광산과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1975年 12月 1日和 2日에 각기 쟁기대회를 가짐으로써 발단되었다. ④

이 운동이 발단된 것은 革命과 建設에서 질박하게 제기된 諸問題들의 해결과 金日成의 주체사상의 要求대로 3大革命을 심화 발전시키자는 目的이 있다.

그리고 종래의 <千里馬作業班運動>과 같이 작업반을 기본 단위로 해서 진행하며, 공장기업소·농장 등 모든 領域에서 展開되고

① 김일성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101, 간은 책, 제 4권 p. 115.

②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 53, p. 426.

※ 민주조선(1965. 7. 17)에는 1965년 6월 만 원제 87만 3천명의 노동자, 사무원, 힘장농장원, 학생을 망라한 23,000개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③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0) pp. 321~354.

④ 로동신문(1975. 12. 2), 근로자 (1976. 1호) pp. 12~17.

있다. 이 운동의 中心課業은 <千里馬運動>과 <速度戰>의 요구를 구현하고 기왕의 <천리마 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을 높은 段階에서 발전시켜 社會 全分野를 共產主義 要求에 맞게 改造하자는 데 있다.

經濟循環

流通秩序

北韓經濟에서의 流通은 生産과 소비를 連結시키는 重要한 手段으로서 자본주의 국가의 流通秩序처럼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自律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計劃經濟原則에 따라 全體的으로 中央에서 계획되고 통제된다. ㉕

계획에 있어서는 공업과 농업의 併進的 發展과 都市와 農村의 隔差 解消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地域間的의 경제적 連繫를 重視하고 있다.

모든 生産手段이 國有化되어 있으며, 個人所有는 소비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유 형태는 크게 國家的 所有와 協同의 所有 및 個人所有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下에서의 상업 형태를 소유 형태 및 거래 當事者를 기준으로 分類하여 보면, 國營기업소 상호간의 商品流通, 國營기업소와 協동조합간의 상품유통, 國營기업소와 個別 근로자간의 상품유통, 協동조합과 個別 근로자간의 상품유통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㉖. 여기서 特記할 것은 機資材 供給計劃과 協동 生産계획에 따라 國營기업소들 사이에 授受되는 生産手段은 去來의 目的이 될 수 없으나 상품적 성격을 띠는 만큼 商品 유통의 形態, 즉 상업적 형태로 去來되는 것이다. ㉗

商業의 形態를 그 主體에 따라 分類하면 國營상업, 協동단체 상

㉕ 경제사전, 1권(명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626.

㉖ 정치경제학, 하권(명양: 사회과학 출판사, 1967) p. 413.

㉗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문제에 대하여 (명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18.

업, 農民市場 및 社會給養企業所 등으로 나눌 수 있다.②

국영상업은 공업상품의 都賣를 獨占할 뿐만 아니라, 小賣도 큰 比重을 차지한다. 협동단체 상업은 협동농장 상업, 생산협동조합 상업, 수산협동조합 상업 등으로 區分되는데, 그 중 협동농장 상업이 가장 활발하다. 농민시장에서는 個人의 부업으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등이 去來되고 있으며, 社會給養企業所에서는 各種食堂·清涼飲料店 등이 있다.

價 格

價格이라 함은 商品의 價値를 화폐로 表現한 것이며, 價値는 그 商品을 生産하는 데 投下된 <사회적 필요노동>③에 의해 決定된다.④

상품의 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먼저 中央當局에서 勞動生産性提高, 原價低下計劃, 原資材 消費水準, 先進的 소비생활 기준, 농산물의 수매가격 결정, 개별적 노동시간과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의 모순 극복 등 各級의 경제 여건의 諸基準을 정한다.

各級 생산 기업소에서는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中央計劃 當局에 의해 총괄적으로 公定된다.⑤

商品의 價格이 결정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價格表가 作成되며, 여기에는 가격의 종류, 생산 원천 및 생산 기업소명, 제품명, 가격 번호, 규격과 규격 번호, 引受條件, 가격을 定한 日字 등이 밝혀진다.⑥

한편, 黨은 가격을 의식적으로 操作하여 需要와 供給을 조절하

② 상업독본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9) pp. 35~37.

③ <사회적 필요노동>이란 '일정한 생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이 투하하는 평균 노동량을 시간을 단위로 계산한 것'임.

정치경제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7) 참조.

④ 상업독본,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9) p. 112.

⑤ 정치경제학, 하권 (동경: 학우서방, 1967) pp. 295~302

⑥ 경제사건, 1권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7.

※ 그러나 이미 共產諸國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價格의 計劃化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에서도 가격은 현실과 유리되어 계획경제운영과 資源配分에서의 차질, 消費者 分配條件의 악화 등 심각한 諸問題를 惹起하고 있다.

기도 한다.

貨 幣

화폐는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表現해 주는 一般的 等價物의 役割을 가진 특수한 상품으로 보며, 가치 척도, 流通, 支拂 등 一般的인 화폐의 機能을 인정하고 있다.^㉓

그러나 화폐의 기능이 價格政策의 任意的 操作으로 인하여 실제의 가치를 反映하지 못하고 單純한 교환 進표로서의 機能만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폐의 유통량은 유통 가능한 상품 가격의 총액과 화폐의 회전 속도에 의하여 決定된다.

화폐의 流通은 現金流通과 無現金流通의 두 가지 方式으로 나누어지는데, 현금유통은 機關·企業所·個人이 上점에서 소비품을 구입할 때 利用되며, 無現金流通은 機關·기업소 상호간에 原料·資材·設費 등 생산수단을 구입할 경우 開設된 은행 계정간의 差滅決濟에 의하여 行해진다.^㉔

따라서 北韓에서의 모든 機關, 企業所, 協同團體들은 은행에 口座가 開設되어 있어, 이에 의하여 生産手段의 支拂去來를 하고 있는데, 이 無現金流通의 比重은 사회 총거래 중 第一部門의 몫이 큰 만큼 압도적으로 크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反映하는 利率의 水準은 계획 당국에 의하여 意圖적으로 定해지며, 그 利率은 國家의 中央集權的 純所得 또는 企業所 純所得으로 귀속된다.

㉓ 정치경제학, 하킨(학우서방, 1967) p. 303.

㉔ 경제사건, 1권(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 686.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經濟政策의 基本路線

自力更生 原則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면서부터 自力更生の 原則을 堅持해 왔다.

經濟體制를 社會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 그 자체를 革命遂行으로 보는 北韓은 自力更生の 原則을 社會주의 혁명의 基本정신으로 하여 自體의 힘으로 새 社會를 建設하며, 革命的 중국적 승리를 達成해야 한다고 主張한다.①

또한 이는 自立的民族經濟의 建設路線으로 이어지며, 생산수단에 대한 國內需要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充足시키고 技術革命과 擴大再生産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②

그러나 이러한 自力更生 原則은 國際分業의 利點을 度外視하게 되어 必然的으로 閉鎖的인 經濟體制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需要의 모든 물자를 자체내에서 해결하려는 閉鎖的인 경제체제는 軍需産業과 聯關된 重工業 優先 政策을 固守함으로써 産業間의 不均衡을 더욱 深化시켰다.

그런데, 70年代에 들어서 內資에 의한 경제개발의 限界를 느낀 北韓은 對外貿易의 擴大에 注力하고 있다.③

①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3) p. 5.

②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모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3) p. 2.

③ "1978년 신년사" 로동신문, (1978. 1. 1).

重工業 優先政策

北韓에서는 産業部門을 공업·농수산업·基本建設·交通運輸·通信·商業 등으로 區分하고, 이 중에서 물질적 生産의 주도적, 결정적 역할을 하는 部門을 工業·農業·基本建設部門이라고 하며, 특히 공업은 生産力 發展과 경제 구조에서 重要的 的의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工業은 生産力의 重要的 部門으로, 生産의 <骨根體系>를 이루는 노동 도구를 生産하고, 물질적 富의 生産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특히 重工業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가장 重要的 역할을 한다.④

重工業은 一次産業과 경공업의 뒷받침 위에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發展하는데,北韓에서는 이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經濟體制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는 과정에서부터 自力更生의 原則에 따라 계속하여 追求하였다.

北韓이 스탈린時代의 소련과 比較할 때, 그 歷史的 背景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重工業 優先政策을 固守한다는 사실은 그들 獨自의 경제정책이 不在한 가운데서 소련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結果라 하겠다. 결국 重工業 優先政策은 軍需産業 育成과 聯關되어서 武力 赤化統一政策의 公言과 더불어 정권기반 構築의 方便으로 이용되어 無理한 산업 불균형과 經濟沈滯를 감수하면서 가지도 계속 追求되고 있는 것이다.⑤

國防·經濟併進政策

1962年 12月 노동당 제 4期 5次 全員會議에서 4大軍事路線을 採擇하고,⑥ 60年代 中半期에 共產圈의 이념 분쟁과 中·소 분쟁의 격화에 따라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창하면서, 經濟發展을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한층 強化해야 한다고 하여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併進政策이 추진된 것이다.

④ 인민경제 부문구조와 경제발전 속도 (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1965) p. 6.

⑤ 평화통일 (국토통일원, 1978) p. 93.

⑥ 로동신문 (1962. 12. 16)

經濟力 強化와 軍事力強化를 동시에 追求한다는 政策은 1966年 10月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宣言되었고, 勞動黨全員會議에서 採擇된^⑦ 以後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1966년까지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比重을 約 10% 정도로 發表하던 것을 1967~1971년까지 30% 이상으로 발표하면서 相對的으로 人民經濟費의 比重을 낮게 策定하였던 것이다.^⑧

經濟發展과 軍事력 強化를 동시에 추구하려면, 必然的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消費部門을 抑制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北韓住民의 소비생활 窮乏 現狀은 무리한 重工業 優先政策과 國防·經濟 併進政策의 계속적인 推進의 結果라 하겠다.

經濟計劃의 實施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實施되었다. 당시는 短期計劃으로서 1947年과 1948年은 모두 年間計劃으로 끝났으며, 1949년에는 2個年計劃에 들어갔다.

이 計劃은 日帝의 식민지적 遺産인 산업의 跛行的 性格을 除去하고, 各部門의 生産은 급속히 늘릴 目標을 세웠으나 6.25動亂으로 인해 中斷되었다.

다음에는 戰前 수준으로 경제를 복구하는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社會主義 工業化의 기초를 구축하는 5個年計劃이 實施되었다.

1954年 4月 最高人民會議 第7次 會議에서 채택된 戰後復舊 3個年計劃은 生産 수준을 戰前 1949年 수준으로 높일 것을 目標로 내세웠으며, 期間中 中·蘇의 원조 등에 힘입어 石炭·시멘트·곡물 등이 계획에 미달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4個月 早期達成 되었다고 發表하였다.^⑨

1957년부터 착수한 5個年計劃은 社會主義經濟의 基礎築城과 주

⑦ 로동신문 (1966 10. 8)

⑧ 참조: 본서 경제부문별 현황중 재정 부문을 보면, 군사비의 변화를 자세히 알 수 있음.

⑨ 로동당 제 3차대회 중앙위원회의 사업 총결보고 (1956. 4. 23).

經濟計劃의 目標와 實績

計 劃	課 業	計 劃 目 標	實 績
1次 1個年計劃 ⁽¹⁾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企業所復舊操業 • 國營商工業擴大 • 生産의 急速한 保障과 生活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6年比 약 2倍 • 糧穀收穫高: 1946年比 30萬噸增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6年比 70%提高 • 糧穀收穫高: 1946年比 17萬噸增産
2次 1個年計劃 ⁽²⁾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의 偏頗性克服 • 生産品의 質提高 및 原價切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7年比 41%增加 • 糧穀收穫高: 1947年比 13.5%增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總生産: 1946年比 2.6倍 • 糧穀收穫高: 280萬8,552噸
2個年計劃 ⁽³⁾ (1949~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落後된 産業과 農業의 發展 • 朝鮮全域의 經濟復舊土臺造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營産業總生産: 1948年比 194% • 糧穀總生産: 1946年比 158%(쌀잡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營産業總生産: 計劃比 102.9%('49) • 糧穀總生産: 279萬5,231噸('49)
戰後復舊3個年計劃 ⁽⁴⁾ (195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戰前水準 到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953年比 75%增加 • 工業總生産: 2.6倍 • 糧穀收穫高: 1949년 대비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953年比 160% • 工業總生産: 2.8倍 • 機械金屬工業成長率: 47.5%⁽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96%⁽⁹⁾ • 糧穀收穫高: 1946년對比 126%
5個年計劃 ⁽⁵⁾ (195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業化의 基礎構築 • 衣食住問題 基本的 解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約 2.2倍 • 工業總生産: 2.6倍 • 糧穀收穫高: 376萬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2.2倍 • 工業總生産: 3.5倍 • 기계·금속공업성장율: 46.9%⁽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40%⁽⁹⁾ • 糧穀收穫高: 380.3萬噸
7個年計劃 ⁽⁶⁾ (19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改革과 文化革命 수행 • 住民生活의 劃期的 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2.7倍 • 工業總生産: 3.2倍 • 糧穀收穫高: 600-700萬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未發表 • 工業總生産: 3.3倍 • 기계·금속공업성장율: 18.4%⁽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47.5%⁽⁹⁾ • 糧穀收穫高: 未發表
6個年計劃 ⁽⁷⁾ (197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革命 促進 • 사회주의 物質·技術의 土臺 공고화 • 勤勞者를 힘든 勞動에서 解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8倍 • 工業總生産: 2.2倍 • 糧穀收穫高: 700-750萬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所得: 1.7~1.8倍 • 工業總生産: 2.5倍 • 기계·금속공업성장율: 19.1%⁽⁹⁾ • 노동생산성성장율: 155%⁽⁹⁾ • 糧穀收穫高: 800萬噸(1976년 발표)

計 劃	課 業	計 劃 目 標	實 績
2次7個年計劃 ⁽⁸⁾ (197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 促進 • 社會主義經濟土臺強化 • 住民生活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得所: 1.9倍 • 工業總生産: 2.2倍 • 糧穀收穫高: 1,000萬噸 	

出處: 연도별<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1)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외보고(1947. 2. 19).
 - (2) 북조선인민회의 4차회의(1948. 2. 6).
 - (3) 1948년 계획실행 총결과 1949~1950년 2개년계획 법령.
 -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 4. 23).
 - (5) 당 3차 대외 보고 (1956. 4. 23).
 - (6) 당 4차 대외 보고(1961. 9. 11).
 - (7) 당 5차 대외 결정서 (1970. 11. 12).
 - (8)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1977. 12. 15).
 - (9) 엠·에·프리구벤코, <북한의 경제>, 소련방 과학 아카데미, 세계 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나우카출판사, 동방문화 편집국 (모스크바: 1977)
- ※ 1차 7개년계획과 6개년 계획의 노동생산성 성장율은 前 成長率에 의거 算出된 것임(上揭書).
- ※ 공업총생산 중 기계제작 비중은 1944년부터 1975년까지 1.6%에서 31.4%로 향상(上揭書)

민의 衣食住問題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나, 中·蘇의 경제 지원의 부진으로 당초 設定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1958年 3月 同計劃을 수정한 후 1959年에 일단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發表하고 1960年을 緩衝期로 定했다.

1961年 9月 로동당 4次大會에서 채택된 7個年計劃에서는 技術改革과 思想革命을 동시에 추진하며, 前 3個年은 各部門에서 기존 생산시설의 정비에 주력하고, 後 4個年은 重工業部門의 擴張과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同計劃은 中·蘇紛爭의 격화로 인한 경제지원의 不實과 大大的인 준비 증강책의 併行으로 인하여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자아냈다.

따라서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에서는 계획기간을 3年間 연장할 것을 決定했으며, 당초의 7個年計劃은 1970年 末에 가서야 종결지을 수가 있었다.

1971년부터는 技術革命에 力點을 두는 6個年計劃에 着手했으며, 同計劃은 1975年 8月에 강철을 비롯한 몇개 부문을 除外하고

는 達成된 것으로 發表했으나, 다음 해인 1976年 12월에 發表된 內容에서는 계획 미달로 因해 未發表한 部分이 적지 않았다.

그 다음 해인 1977年은 6個年計劃 遂行過程에서 造成된 긴장을 풀기 위한 名分으로 <緩衝의 해>로 定했다.

1978年부터는 第2次 7個年計劃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實施한 경제계획은 戰後復舊 3個年計劃을 제 외하고는 修正·延長 또는 緩衝期의 設定 등을 되풀이했다.

第2次 7個年計劃 (工業部門)

部門	區 分	單 位	1984 年 目 標
工業部門	工業總生產額	倍數	2.2
	工業成長率	年間(%)	12.1
	電力	億 Kw/H	560~600
	石炭	萬 噸	7,000~8,000
	鐵 礦	萬 噸	무산광산: 1,000
	錳, 鎳, 鉛, 鋅	萬 噸	640~700
	鋼	萬 噸	740~800
	機械加工品	萬 噸	500
	工作機械	1,000臺	50
	트럭	1,000臺	4.5
	化學肥料	萬 噸	500
	시멘트	萬 噸	1,200~1,300
	織物	億 m	8
砂	萬 噸	30(國內原料)	
農水產部門	穀物生產	萬 噸	1,000
	벼	萬 町步	15
	畝地拓	萬 町步	10
	肉類生產	萬 噸	80~90
	水產物生產	萬 噸	350
	그중 漁獲量	萬 噸	270
	과일生產	萬 噸	150

出處: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결정>, 로동신문(1977. 12. 17).

部門別現況

國民所得

北韓에서는 현재 總量指標로서 <社會總生産>과 <國民所得>을 사용하고 있으며, 前者는 <一定 期間에 생산된 物質的 富의 總體>로서, 後者는 <社會 總生産 중 소비된 生産手段을 補償한 나머지 部分>으로서 定義되고 있다.① <社會 總生産>이 通常 概念인 國民 총생산(GNP)과 다른 점은 生産 單位間에 거래된 中間 需要額이 포함되어 있는 反面, 用役 生産額을 除外(수송, 통신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 概念의 <國民所得>은 減價償却費와 中間 需要額을 제외하고 있으나 生産 單位간의 去來時에 부과되는 去來收入金(間接稅에 해당)이 포함되어, 用役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②

北韓은 1965년까지 <사회 총생산액>과 <국민소득>을 發表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1人當 국민소득에 대해서만 간혹 언급하고 있다.

各國의 專門研究機關은 북한의 GNP와 1人當 GNP를 추계하고 있으나 推計方式의 차이와 換率 適用의 差異③에 따라 推定額이 一致되지 않고 있다.

① 정치경제학, (하)(동경:학우서방, 1967) pp. 464-466. 여기서는 社會總生産을 總社會生産物로 표시.

② 따라서 북한의 국민소득을 通商概念의 國民所得(NI)으로 환산하자면, 去來 收入金を 제외하고 用役生産額을 가산해야 한다.

③ THE EUROPA YEARBOOK(1978), Vol. 11, p.273에 표시된 미(\$)와 북한의(원)의 비율(1977년도 기준): Basic Rate<1:0.978>, Tourist Rate<1:2.128>, Trade Rate<1:3.363>

部門別現況

지금까지 北韓은 1人當 GNP를 1962년에 417원(北韓貨)④, 1966년에 500원④, 1967년에 580원④, 1970년에 605원⑤, 1974년에 1,029원⑥으로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각기관이 推計한 北韓의 GNP와 1人當 GNP를 보면 다음과 같다.

(GNP 와 1人當 GNP)

年度	北韓發表 (國民所得)		美國政府機關 (1975年價格)		韓國研究機關 (經常價格)(A)		韓國研究機關 (經常價格)(B)	
	GNP	1人當 GNP	GNP	1人當 GNP	GNP	1人當 GNP	GNP	1人當 GNP
1974		(1,025원)	100億弗	590弗	73億弗	452弗	75億 2千 萬弗	464弗
1978					91.9億弗	541弗		

北韓의 1人當 GNP

<北韓發表>

年度	1人當 GNP(원)	根 據
1946	64.44(1)	'67年度 所得 580원은 '49年比 9倍
1949	132(1)	'67年度 所得 580원은 '49年比 4.4倍
1962	416.66(2)	'66年度 所得 500원은 '62年比 1.2倍
1966	500(2)	最高人民會議 4期 1次會議 報告(1967.12.16)
1968	580(2)	最高人民會議 4期 1次會議 報告(1967.12.16)
1970	605.73(3)	'70年 所得은 '46年比 9.4倍
1974	1,029.69(4)	'74年 所得은 '70年比 1.7倍
1974	1,000弗(4)	工業熱誠者大會('75.3.3)

出處 : (1) 조선중앙년감, 1970, p. 276.
 (2) " , 1968, p. 2.
 (3) " , 1974, p. 242.
 (4) " , 1976, p. 30, 371.

財政 · 金融

財 政

生産手段이 社會主義의 所有로 되어 있고, 모든 財貨와 서비스 가 중앙계획기관의 統制下에 生産되고 配分되는 북한에서 財政機

④ 조선중앙조감(1968) p. 2.
 ⑤ 조선중앙년감(1974) p. 242.
 ⑥ 조선중앙년감(1976) p. 371. 1974년의 1인당 국민소득 1,029원을 여행자 교환 비율(1\$: 2.128 원)을 適用 換算하면 483\$이 된다.

能은 모든 경제 활동의 中樞가 되고 있다.

北韓의 財政은 中央 및 지방기관의 豫算收支와 社會화된 企業의 財務·銀行信用·社會保險·國民所得 全般에 걸쳐 中樞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계획의 編成에 있어서도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國民所得이 예산을 통해 분배되며, <경제의 균형적·계획적 발전, 축적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예산체제는 統合 豫算體系이며, 중앙 예산에 道·市·郡의 地方豫算이 포함되어 있다. 總豫算中에서 地方豫算이 차지하는 比重은 1958년의 16%에서 1964년에는 44%로 높아졌다.

1975年 최고인민회의의 5기 5차 회의에서 지방예산에 대한 再強化 指示가 있는 後 새로운 형태의 地方豫算制가 導入되어^㉑ 地方 財政需要를 地方 自體財源으로 조달하고, 地方工業 발전에 의해 道 單位로 消費財를 自給自足하도록 하는 方針을 세웠다. 1978년 12월에는 <地方豫算制> 규정을 채택하였다.

지방예산의 중요한 資金源으로는 地方工業·社會給養·便宜奉 仕事業의 收益金이 되고 있다. 이러한 地方豫算制는 一定額의 지방예산 剩餘分을 中央에 上納하게 함으로써 財源調達을 순조롭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㉒

먼저 歲入 構造를 보면, 1958년에는 企業·협동단체 등에서 納入되는 去來收入金, 企業利益金, 협동단체 소득세가 예산수입의 93.5%를, 1963년에는 98%를 占하게 되었다. 豫算收入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去來收入金은 복잡한 差別稅率을 지닌 賣上稅의 一種으로, 주로 消費財에 부과되나 서비스와 一部 中間財에도 부과되고 있다.

去來收入金은 소요 재원의 조달 外에 消費財의 소비억제, 總需要와 供給의 均衡要因으로도 기능을 수행한다.

㉑ 조선중앙년감(1976) p. 333.

㉒ 조선중앙년감(1976) p. 333. "1975년에는 지방예산에서 남은 돈 4억 1,700여만원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

部門別現況

또한 예산수입에서 2%를 차지하던 住民의 소득세는 1974年 4월에 폐지하는 대신, 去來稅, 商業機關, 便宜奉仕機關을 통한 간접세에 의해 補充하고 있다.

歲出構造를 보면,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기관관리비 등으로 大分되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1970年代 以前까지는 세출 예산의 50% 내지 70%로서 기록이 심하나 1971年 以後에 대개 57~5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비도 1970年代에는 平均 17%이었으나 1972年 이후는 23~24%線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機關 管理費는 대체로 2% 미만으로 固定되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社會化된 기업과 경제기관에 대한 支出費로서 투

財政規模의 趨勢

(單位: 北韓貨 萬원)

區分 年度	歲入額	歲出額	歲出內容			
			人民經濟費	社會文化費	軍事費	機關管理費
1949	20,301	19,657	8,308			
1953	52,727	49,597	23,990	5,597	7,524	4,793
1955	108,157	100,619	75,345	8,510	6,190	6,451
1958	152,914	132,141			6,356	7,448
1961	240,000	233,800	170,790	50,033	5,845	7,131
1965	357,384	347,613	236,376	68,422	27,809	15,006
1968	502,370	481,289	235,350	82,913	155,938	8,663
1970	623,220	600,269	284,087	119,394	186,083	10,805
1971	635,735	630,168	278,379	144,467	195,982	11,340
1972	743,030	738,861	409,932	187,807	125,606	15,516
1973	859,931	831,391	475,554	210,344	128,034	17,459
1974	1,001,525	967,219	551,393	239,792	155,722	20,312
1975	1,158,630	1,136,748	650,688	275,761	186,427	23,872
1976	1,262,583	1,232,550	691,828	308,301	206,537	25,884
1977	1,378,900	1,334,920	768,174	339,131	209,582	28,033
1978	1,565,730	1,474,360	845,087	363,888	234,423	30,962
1979	1,730,132	1,730,132	1,092,127	417,016	262,980	38,531

出處: 各年度別 豫決算 報告書.

자 대상은 공업·농업·수송·통신·건설 등이나 重工業과 같은 戰略產業에 집중 투자가 강조되어 왔다. 總工業投資額 中 중공업과 경공업의 比率를 보면, 1960年代 이전에 중공업이 81~85%, 1960年代 이후는 64~74%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0년에도 공업 건설 투자액의 88.8%가 중공업 기지 확대 강화에 투자되었다.⑨

세출부문의 構成比中에서 가장 起伏이 심한 것은 군사비로서 北韓은 1950年代와 1960年代에 걸쳐 계속적으로 준비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미 金日成은 1970年 11月 5次黨大會에서와 1978年 9.9節 行事에서 4大군사로선의 完成을 公言한 바 있다.⑩

歲 出 構 成 比

(單位：%)

年 度	構 成 比	人 民 經 濟 費	社 會 文 化 費	軍 事 費	機 關 管 理 費
1953		48.4	11.3	15.2	7.6
1955		74.9	9.5	6.1	6.7
1957		70.5	18.2	5.3	6.0
1961		73.0	21.4	2.5	3.1
1963		74.0	21.5	1.9	2.6
1964		69.5	20.6	5.8	4.1
1965		68.0	19.7	8.0	4.3
1966		68.5	17.2	10.0	4.2
1967		49.9	17.5	30.4	2.2
1968		48.9	17.3	32.4	1.8
1969		47.5	19.7	31.0	1.8
1970		47.3	19.9	31.0	1.8
1971		44.2	22.9	31.1	1.8
1972		55.5	25.4	17.0	2.1
1973		57.2	25.3	15.4	2.1
1974		57.0	24.8	16.1	2.1
1975		57.2	24.3	16.4	2.1
1976		56.2	25.0	16.7	2.1
1977		56.8	25.4	15.7	2.1
1978		57.3	24.7	15.9	2.1
1979		58.5	24.1	15.2	2.2

出處：各 年 度 別 豫 決 算 報 告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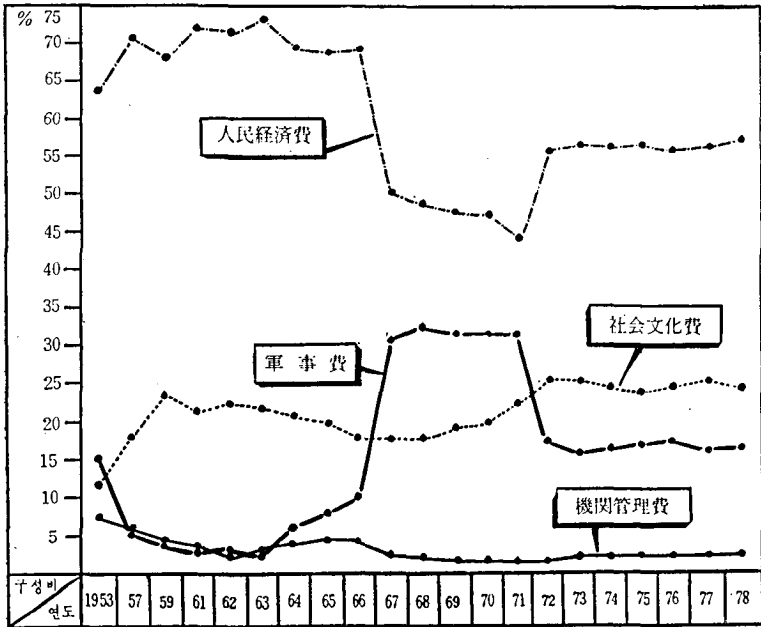
⑨ 자 년도별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1971. 4. 14일자) <최고인민회의 4기 5차회의 보고>.
 ⑩ 로동당 제 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70. 11. 2).

部門別現況

別表의 세출 구성비를 보면 4大 軍事路線을 採擇하여 本格的으로 軍備增強을 시도하던 1963年의 군사비 比重이 1.9%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세출 구성에서 군사비의 比重이 1966年까지는 10% 미만이다가 1967年부터 1971年까지는 30%를 상회하였으나 南北對話가 시작된 1972年부터 다시 급격히 하락하였다. 歲出構成比의 추세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民經濟費와 軍事費의 構成比가 서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음은 軍事費의 상당액이 人民經濟費에 恩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歲出 構成의 趨勢



金 融

北韓의 은행제도는 1964年 3月に 개편되어 中央銀行·産業銀行

· 貿易銀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中央銀行은 화폐 발행, 現金流通의 調節, 現金出納 業務, 無現金決濟의 組織, 稅收의 出納, 政權機關·企業 등에 대해 流通資金을 供給한다.

産業銀行은 협동농장, 각 부문의 경제 기관, 기업에 대한 短期貸付·보림·저금사업·개인 송금 업무, 협동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도와 통제 업무를 취급한다.

貿易銀行은 國際決濟業務, 支拂 및 保證業務, 무역 기관에서의 外貨獲得과 支拂에 대한 信用業務를 취급한다.

<원에 의한 統制>라고 불리우는 은행의 통제 기능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나, 住民들의 은행 利用은 매우 微微하다. 모든 企業은 中央銀行이나 專門銀行에 口座를 開設하며, 거의 모든 支拂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現金의 支拂, 價格, 貸金率 등 現金運用에 전반적 통제를 가하며, 단기 신용의 供與過程을 통하여 企業間, 企業內의 物的·貨幣的 資源의 계획적 이용에 대한 統制를 加한다.

북한은 資金 調達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價格과 생산 원가의 乖離, 지나치게 細部化된 계획의 非現實性과 硬直性, 物的 刺戟의 不足과 소비의 선택이 排除된 生産, 黨과 官僚에 의한 경제관리 등의 非金融的 要因으로 인하여 금융의 效率性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農 · 水産業

農 業

1958年 8月 農業集團化가 완성된 後 農業發展을 위한 첫 조치로서 <靑山里精神과 靑山里方法>을 내세웠다.

1960年 2月 金日成은 靑山里 協同農場을 現地指導 한 後 지도 간부들의 關照주의적 작용이 심화하는 것을 지적하고, 上部가 下

部를 도와주는 立場에서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한다는 內容의 <교시>를 했는데, 이 때에 말한 金日成의 연설이 훗날 <靑山里精神·靑山里方法>이라는 하나의 典型的인 事業方法으로 되었으며, 憲法에서까지 이를 規定하게 되었다.

그 後 1964年 2월에 열린 黨 4期 8次 全員會議에서는 農村의 技術·文化·思想革命을 內容으로 하는 <농업 강령>①을 發表하였다. 이 강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水利化·電氣化·機械化·化學化가 추진되었으며, 1974년에는 田畝의 水利化와 農場의 電氣化가 完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밖에 農業發展을 위한 措置로서 自然改造를 들 수 있다.

耕地面積

(單位:千町步)

年 度	耕 地 面 積
1 9 4 6	1,860(논: 388, 밭: 1,472)
1 9 4 9	1,983(논: 467, 밭: 1,516)
1 9 5 6	1,899(논: 491, 밭: 1,408)
1 9 6 0	1,913(논: 510, 밭: 1,403)
1 9 6 3 ⁽¹⁾	1,996(논: 583, 밭: 1,413)
1 9 7 6 ⁽²⁾	2,000(논: 700, 밭: 1,300)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1.

(2) 조선중앙방송 (1976. 11. 8).

※1963年 以前은 과수원 면적 등을 포함.

※韓國研究機關推計: 1976年 現在 畝 62.1萬町步, 田 146.5萬町步.

1976年 10月 2日, 黨 第 5期 第12次 全員會議에서는 <自然改造 5大方針>이라는 것을 決定하고, 穀物增産을 위한 長期的인 自然改造事業에 着手하였다.

5大方針이란 1) 밭 灌溉의 完成 2) 土地整理·土地改良 3) 다락 밭 建設 4) 治山 治水 5) 간석지 개간 등이다.

이 決定에서는 2~3年內에 40萬町步의 밭 灌溉 건설, 15萬町步의 다락밭 造成, 하루에 400mm의 폭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로 발표됨, 조선중앙년감(1975) p. 12.

하는 江·河川 整理, 10萬町步의 干瀉地 개간 등을 主要 課業으로 提示했다.

그러나 北韓地域의 險峻한 地形, 地勢로 인하여 더 이상의 耕 地面積 擴大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水利化: 7個年計劃 期間에는 灌溉施設의 擴張工事, 관물 뽑기 工事와 江·河川 整理事業, 植樹 造林事業 등에 역점을 두어 水利 化體系를 確立하였다. 이 期間에 岐陽 灌溉工事, 靑丹 灌溉工事を 끝내고, 압록강 灌溉工事와 신계 灌溉工事を 着手하였다. 그리고 채소 밭에 분수식 관개 체계를 導入하였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만풍호>와 <은파호>, <연탄 저수지>, <평원 저수지>를 비롯하여 總 117個의 貯水池를 새로 建設했으며, 40萬 町步에 해당하는 밭을 관개화하였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나머지 18萬町步의 밭 관개를 1978年 4月 까지 끝내어 과일 밭과 뽕 밭에 이르기까지 관수 체계를 導入한 計劃이다. 그 밖에 江·河川建設, 中·小河川 整理, 海岸防堤, 물빼기 공사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 예견되고 있다.

○機械化: 農村의 기계화는 1950年代 후반기부터 着手했으며, 1958년에 기양 트랙터工場에서 트랙터가 生産됨으로써 협동농장에 普及되기 始作했다.

7個年計劃 期間에는 농기계 公장의 擴張과 농기계 작업소를 2 倍 以上으로 增大시켰다. 1970年代 까지는 모내는 기계가 다량 보급되고, 트랙터 臺數도 상당히 增加되었다.

平地帶에서는 논밭갈이·씨레질·김매기·비료주기·탈곡·운반 작업 등이 모두 기계화되고, 모내기 的 기계화만 남은 과제로 되었다.

2次 7個年計劃에서도 트랙터와 화물 자동차의 臺數를 계속 증가 시켜 機械化 水準을 높일 것을 計劃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실태가 트랙터와 같은 大型 농기계 등만으로 劃一化 되어 있기 때문에 營農에서의 효율과 능률면에서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農業의 機械化 水準

()은 總保有 台數

年 度	區 分	耕地 100町步當 100馬力換算 15馬力換算 台數	自 動 車 台 數
1 9 5 3		(764)	
1 9 5 6		0.13	
1 9 6 0		0.65	(759)
1 9 6 3(1)		0.9	(2,200)
1 9 7 0(2)		2.97	(4,857)
1 9 7 7(3)		5~6	(20,000)
1 9 7 8(4)		평지 6대, 산간지대 5대	100정보당 1대
1 9 8 4		1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2.

(트랙터는 총 보유대수를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2) 1970. 11. 5차 당대회 보고에서 1960년에 비한 증가율 발표.

(3)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

(4) 1978. 4. 최고인민회의 제 6기 2차 회의 보고.

○化學化: 7個年計劃 期間에 化學肥料 施肥量은 1960년에 비해 3.2倍로 增加되어 논에는 町步當 674kg, 밭에는 町步當 478kg으로 높아졌다.

化學肥料 施肥量

(單位: kg)

年 度	町 步 當 施 肥 量
1 9 4 9	131
1 9 5 6	113
1 9 6 0	160
1 9 6 3(1)	300
1 9 7 0	512 ⁽²⁾ (논: 674, 밭: 478) ⁽³⁾
1 9 7 5(4)	1,000
1 9 7 7(5)	논: 1,300, 옥수수 밭: 1,200

出處: (1) 1963년 이전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2.

(2) 조선중앙년감 (1971) p. 5.

(3) 조선중앙년감 (1971) p. 221.

(4) 6개년 계획 총화에 대한 중앙통신 보도.

(5)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1977. 12).

※ 그런데 화학 비료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 질소질 비료의 경우 질소 함량이 20% 내외인 유안이 대부분이며 유안은 산성비프라는 결점이 있다. 또한 시비량도 정보당 1,300kg을 성분론으로 따지면 정보당 260kg에 불과하다.

6個年計劃期間에 化學肥料를 町步當 1톤 以上으로 施肥할 것을 목표로 책정한 결과 1977년에는 논과 밭에 1,300kg의 化學肥料를 施肥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되었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논·밭 町步當 化學肥料의 施肥量을 2톤 以上으로 提高시키고 磷肥料와 加里肥料의 比重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電氣化 : 1967年 末에 농촌 98.2%, 농가의 86.1% 전기가 가설되어 모든 밭에 電氣가 들어가게 되었다. 농업의 動力化에 따른 電力 消耗量이 增加되고 있다.

○穀物生産 : 穀物生産 提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는 1964年 2月 黨中央委員會 第4期 8次 全員會議에서 채택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고 볼 수 있다.

이 테제(강령)에서 강조된 것은 農村에서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을 추진시켜 곡물 생산을 最大限으로 增大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테제가 發表된 후 농촌의 모든 勞力을 곡물 증산에 集中시켰다.

특히 水利化·機械化·電氣化·化學化·土地改良·耕地擴張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곡물 생산의 增加를 가져오게 되었다.

北韓에서는 곡물 增大의 가능성이 옥수수 생산에 있음을 강조하고, 1970年代 후반기부터는 옥수수에 대한 <영양단지 가식법>을 導入하게 되었다.

그밖에 곡물 증산을 위해 品種改良과 農作의 集約化 그리고 適地適作, 適期適作의 原則下에 作物配置를 하며, 病虫害防止에 注力하고 있다.

穀物の 概念이 粗穀일 뿐만 아니라 薯類도 포함되며, 統計處理時 田畝의 立苗 상태에서 集計를 하기 때문에 精穀으로 곡물생산고를 계산하려면 立苗 計算上의 差異分 約 20%를 除하고 平均 精米率 約 70%를 適用시켜야 한다.

部門別現況

따라서 1977年 곡물 생산고 850萬톤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約 476萬屯이 된다.

町步當 穀物收穫高

年度	區分	目 標	實 績
1 9 5 6(1)		논벼 : 3.4톤 밭곡식 : 1.1톤	
1 9 6 1(2)		논벼 : 4톤 옥수수 : 2.5톤	
1 9 6 7(3)		논벼 : 4~5톤 옥수수 : 2.5~3톤	
1 9 7 5			논벼 : 5.9톤 옥수수 : 5톤(4)
1 9 7 6(5)		논벼 : 5.3톤 옥수수 : 4.2톤	

- 出處: (1) 전후 3개년 계획 목표(1954. 4).
 (2) 1차 5개년 계획 목표(1958. 6).
 (3) 7개년 계획 목표(1961. 9).
 (4) 6개년 계획 총화에 대한 중앙통신 보도(1975. 9).
 (5) 6개년 계획 목표(1970. 11).

穀物總生産高

(單位: 萬屯)

年 度	總 生 產 高
1 9 4 6	190
1 9 4 9	265
1 9 5 3	233
1 9 5 6	287
1 9 6 0(1)	380
1 9 6 1(2)	483
1962~1964(3)	500
1 9 7 4(4)	700
1 9 7 5(5)	770
1 9 7 6(6)	800 以上
1 9 7 7(6)	850 "
1984(목표치)	1,000 "

- 出處: (1) 1960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1961) p. 332.
 (2) 조선중앙년감 (1962) p. 230.
 (3) 조선중앙년감 1963년판, p. 221, 1964년판 p. 170, 1965년판 p. 152.
 (4) 조선중앙년감 (1975) p. 191.
 (5) 조선중앙년감 (1977) p. 305.
 (6)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
 ※美國政府機關推計: 1976年 現在 생산량 560萬屯
 韓國研究機關推計: 443. 4萬屯.

○果樹: 1950年代에 果樹業 발전을 위해 野山을 개간하여 約 6

萬 8천町步의 果樹園을 새로 造成했다.

7個年計劃期間에는 송화果樹農場(果樹面積 7千町步)을 비롯한 大型化된 果樹園地를 造成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果樹 面積이 30萬町步로 확장되었으며,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果實 生産量을 150萬톤 以上으로 增大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果樹面積 (單位: 千町步)

年 度	面 積
1 9 4 6	25
1 9 4 9	21
1 9 5 6	16(13.5) ⁽³⁾
1 9 6 0	52(82) ⁽⁴⁾
1 9 6 3 ⁽¹⁾	98
1 9 7 6 ⁽²⁾	300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조중앙년감 (1964) p. 321.

(2)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

'79년 9월 중국 신화통신사 대표단의 방문기에도 30만 정보로 발표(로동신문 79. 10).

(3), (4)의 ()의 수치는 조선중앙년감 (1961) p. 335에 표기된 것임.

과일 生産量 (單位: 千톤)

年 度	生 産 量
1 9 6 0 ⁽¹⁾	160
1 9 7 0 ⁽²⁾	320
1 9 7 4	480
1 9 7 6	704
1 9 8 4	1,5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0. 9. 7개년 계획 목표치를 1960년의 3배인 50만톤으로 발표.

(2) 1970年 以後는 1960년 생산량에 대한 倍數 比率를 計算한 것임.

○畜産: 1960年代에 國營畜産과 協同農場 畜産 그리고 個人副業 畜産을 배합하는 畜産政策을 실시하여 協同農場的 各 畜産作業班 에서는 年 2톤 以上, 各農家에서는 100kg 以上の 肉類를 生産하게

部門別現況

했다. 한편, 萬景臺·용성 닭공장을 비롯하여 70餘個의 닭工場을 새로 建設했다.

6個年計劃期間에는 1萬톤 규모의 돼지 목장을 平壤에 建設하고, 咸興·清津 등 主要都市에 2~5千톤 規模, 各郡에는 500톤 규모의 牧場을 新設토록 計劃되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從來의 <國家畜産과 協同農場 畜産>을

肉類生産

(單位:千噸)

年 度	生 産 量
1 9 4 9(2)	34
1 9 5 3(2)	28
1 9 5 6(2)	32
1 9 6 0(1)	89.7
1 9 6 3(2)	105.7
1 9 7 4(3)	264
1 9 7 5(4)	428~535
1 9 7 6(5)	550
1984(목표치)	800~900

出處: (1) 1961. 9. 7개년 계획 목표를 1960년도의 3.9배인 35萬톤으로 발표.

(2) 1949년도 생산량에 대한 倍數比率을 適用 推計(조선중앙년감 1964, p. 323).

(3) 조선중앙년감 (1975) p. 349.

(4) 조선중앙년감 (1976) p. 326.

(5)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 <연간 55萬톤의 육류 생산 능력 토대 마련>

卵類生産

(單位:100萬個)

年 度	生 産 量
1 9 4 9	34
1 9 5 3	35
1 9 5 6	65
1 9 6 0	125
1 9 6 3(1)	155
1 9 7 0(2)	700
1 9 7 4(3)	1,260

出處: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3.

(2) 1970. 11. 5차 당대회 보고.

(3) 6개년 계획 실적에 대한 중앙통신 보도.

기본으로 하면서 농촌 주민들이 個人副業畜産을 배합하는 畜産政策을 계속 추구해 나가며, 大規模 畜産團地를 새로 造成시켜 생산량 150萬톤 以上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사료문제가 심각하여 畚前作植村面積의 擴大나 自然生 사료의 채취에 力點을 두면서 牛·豚 등 큰 가축보다는 개·緬羊·山羊 등에 더 置重하고 있다.

牛乳生産

(單位: 톤)

年 度	生 產 量
1 9 4 9	790
1 9 5 3	490
1 9 5 6	570
1 9 6 0	11,900
1 9 6 3 ⁽¹⁾	27,500
1 9 7 0	110,000 ⁽²⁾
1 9 7 6	60,000 ⁽³⁾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3.

(2) 1961. 9. 7개년계획 目標值.

(3) 1970. 11. 6개년계획 目標值.

水 産 業

6個年計劃 期間에 魚群 探查, 最新 漁撈技術의 강화, 漁具의 多樣化·輕量化 등을 촉진했으며, 金策·新浦·元山港을 遠洋漁業 基地로 만들고 河川·湖水·貯水池 등과 淺海·干瀉地 등을 利用한 양식·양어 사업을 강화했다.

또한 漁船의 大型化·現代化·萬能化 方針에 따라 3,750톤級의 트롤선과 5천톤級의 운반선을 建造했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東海에서 遠洋漁業을 發展시키고, 西海에서는 中漁·小漁業을 發展시키며, 고기배의 現代化·萬能化를 實現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漁獲高

(單位：千噸)

年 度	生 產 量
1 9 4 9	273
1 9 5 3	122
1 9 5 6	365
1 9 6 0	465
1 9 6 3 ⁽¹⁾	640
1 9 7 0 ⁽²⁾	900
1 9 7 5	1,350 ⁽³⁾
1 9 8 4	2,700(目標值) ⁽⁴⁾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323.

(2) 1970年 以後는 6개년계획 目標値와 實績 遂行率에 의한 계산.

(3) 水産物 總量 약 170萬噸.

(4) 水産物 總量 330萬噸.

鑛 · 工業

採取工業

炭鑛은 咸鏡北道の 北部인 阿吾地 古乾原 一帶와 西海岸 一帶에 散在되어 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德川 · 西倉 · 金野青年炭鑛 등을 소련의 기술 및 施設 支援으로 새로 開發했으며, 安州 · 古乾原 · 前川炭鑛 등을 現代의 施設로 改建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安州중합탄광을 확장하여 大燃料 基地化할 계획이며, 그밖에 일신 · 학등 地帶 등에 새로운 炭鑛 開發을 계획하고 있다.

鐵鑛石에 있어서는 6個年計劃期間中 茂山 · 成興 · 檢德 · 笏洞 · 殷栗 · 萬德 · 龍陽 · 大楡洞 · 甲山 · 萬年 · 端川 등 既存 鑛山의 시설 擴張에 注力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茂山광산을 磁鐵精鑛 1,000萬噸 水準으로 施設을 擴張하고, 德成 · 西海里 · 檢德 · 端川地區의 광산 개발을 計劃하고 있다.㉔

北韓은 석탄 생산량을 別表와 같이 發表하고 있는데, 그 眞否는 알 수 없고, 美國政府機關 推計에 의하면 1976年度 石炭生産量이 3,950萬屯으로 되어 있다.

石 炭 (單位:萬屯)

年 度	漁 獲 量
1 9 4 6	127
1 9 4 9	400.5
1 9 5 3	70.8
1 9 5 6	390.8
1 9 6 0	1,062
1 9 6 3	1,404.3 ⁽¹⁾
1 9 6 8	2,300 ⁽²⁾
1 9 7 0	2,750 ⁽³⁾
1 9 7 5	4,950 ⁽⁴⁾
1 9 7 7	5,000 ⁽⁵⁾
1 9 8 4	7,000~8,000(目標值)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보통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 (1969) p. 221,
 (3) 조선중앙년감 (1971) p. 3.
 (4) 조선중앙년감 (1976) p. 322.
 (5) 조선중앙년감 (1978) p. 281.
 ※美國政府機關 推計: 1976年 現在 3,950萬屯.

冶金工業

鐵鋼業에서 代表的인 工場으로 松林에 있는 黃海製鐵聯合企業所, 平南道の 降仙제강연합기업소, 淸津市の 金策제철소, 淸津제강소, 金策市の 城津제강소가 있다.

1969년에는 <4.13 제철소>가 신설되었으며, 6個年計劃 期間에는 既存 施設에 대한 技術改善과 시설 확장에 注力하였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金策제철소에 大型 溶鑪 등 冶金設備을 증설, 黃海製鐵聯合企業所에 강철·제강·압연직장 확장, 콕스 생산의 國內比率 提高, 自動化·半自動化·산업 텔레비전화와 원

⑩ 1977. 12. 6.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 1차 회의, 이종욱 보고.
 ※ 한국 연구기관 추계: 1976년 현재 철광석 생산량 735만톤.

部門別現況

격조정화를 전면적으로 實現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金策제철소는 현재 소련의 지원으로 냉간압연직장의 신설과 240萬屯 규모로의 施設 擴張을 추진 중에 있다.⑬

製鍊施設로서는 動亂 중에 파괴되었던 南浦·興南·文平 제련소가 1960年代에 들어와서 복구되었다.

端川地區에 새로운 大規模의 有色金屬 基地와 2萬屯 能力의 北倉 알미늄 工場이 건설 중에 있다.

鐵鋼生産

(單位: 千屯)

年 度	鋼 鐵	銑 鐵·粒 鐵
1 9 4 6	5	3
1 9 4 9	144	166
1 9 5 3	4	—
1 9 5 6	190	231
1 9 6 0	641	853
1 9 6 1	775	931
1 9 6 3 ⁽¹⁾	1,022	1,159
1 9 7 0	2,200 ⁽²⁾	1,894~2,056 ⁽⁵⁾
1 9 7 5	3,300 ⁽³⁾	3,220~3,496 ⁽⁵⁾
1 9 7 6	4,000 ⁽⁴⁾	—
1984(목표치)	7,400~8,000	6,400~7,000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 (1971) p. 239.

(3) 조선중앙년감 (1976) p. 322.

(4)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회의 보고(생산 능력).

(5) 6개년계획 目標와 實績 遂行率(1975. 9 중앙통계국 발표)에 依據 推計.

※ 美國政府機關 推計: 1976年 現在 선철 275萬屯.

機械工業

주요한 機械工場으로서는 熙川工作機械·熙川精密機械·龍城機械·龜城鑛山機械·北中機械·樂元機械·羅南炭鑛機械·大安電機·平壤電機·朱乙電機·金鍾泰電氣機關車·德川自動車·岐陽 트랙터工場 등 各種 機械工場들과 淸津·元山·金策·南浦·新義

⑬ 1979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소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조인된 것임. 모스크바 방송(1979. 10. 9)

州 등의造船所가 있다.

2次 7個年計劃期間에는 工作機械 5萬臺와 10萬噸級의 大型船舶 등을 생산하며, 生産의 專門化, 協同化에 注力할 것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機械工業生産

年度	區分	工作機械	트랙터 (15馬力換算)	自動車
1 9 6 0		3,950	3,002	3,111
1 9 6 3(1)		—	3,033	4,022
1 9 7 0(2)		12,500	17,100	10,000(目標値)
1 9 7 5(2)		30,000	21,210	24,000(目標値)
1 9 7 7(3)		30,000	30,000	—
1984(目標値)		50,000	45,000	—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0.

그 중 1960년의 공작기계 생산량은 7개년 계획 목표치를 逆算.

(2) 6개년 계획 목표치와 실적의 수행율에 의거 계산.

(3) 1977. 12 최고인민회의의 제 6기 1차회의의 보고.

化學工業

有機化學工業은 주로 7個年計劃 期間부터 着手했으며, 이 기간에 비날론, 合成樹脂의 生産部門을 創設하고, 스프 1萬噸 能力의 화학섬유공장을 신설했다.

또한 興南·아오지에 석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 合成工場, 興南肥料工場の 과린산工場, 요소비료공장을 건설함으로써 肥料의 生産能力이 150萬噸에 도달했다.

그 밖에 殺草劑 工場을 비롯한 農藥 生産工場들이 建設되고, 原油 加工工場의 一段階 工事を 추진했으며, 中·小 化學工場의 建設에 주력했다.

代表的인 工場으로서는 咸興의 2.8 비날론聯合企業所, 興南비료工場, 本宮苟性소다·鹽化비닐·染料工場, 淸津化學섬유, 新義州化學섬유工場 등을 들 수 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西部의 淸川江 下流에 大規模 〈青年化學工場〉建設이 추진되었으며, 100萬噸 以上の 燐肥料 生産能力이 새

로追加되었다.

東部와 西部에 石油 加工工場이 建設되어 石油化學 工業基地가 창설되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化學肥料·除草劑·화학섬유의 增産과 石油化學의 中間製品 및 副産物의 綜合處理, 合成 고무工場 新設, 淸津化學섬유·新義州 化學纖維工場의 施設擴張, 中·小 化學工場 建設 등에 注力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靑年化學 聯合企業所內 요소비료, 高압 폴리에틸렌, 아닐론공 장이 11月 中旬에 준공되어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肥料生産

(單位:千톤)

年 度	生 産 量
1 9 4 6	156
1 9 4 9	401
1 9 5 6	195
1 9 6 0	561
1 9 6 3	853 ⁽¹⁾
1 9 7 0	1,500 ⁽²⁾
1 9 7 5	3,000 ⁽³⁾
1 9 7 8	3,690 ⁽⁴⁾
1 9 8 4	5,000(目標值)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 (1971) p. 232.

(3)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

(4) 평양방송 (1979. 2. 22.)

※ 1978년의 생산량 수치는 중량 톤이므로 이를 성분톤(물동량 기준 1/5)으로 환산하면 77.8만톤이 된다.

電力工業

發電施設은 解放前에 建設된 鴨綠江 中流의 水豊發展所를 비롯하여 長津江·赴戰江·虛川江·富寧·金剛山 發電所 등이 있었는데, 이들 發電所들은 動亂中에 一部 破壞되었으나 휴전 후에 다시 복구했다.

5個年計劃 期間인 1959년에 禿魯江發電所가 建設되었으며, 7個

年計劃 期間에는 天摩·內中里·江界 및 雲峰發電所 등의 水力發電所와 平壤火力發電所가 建設되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西頭水·熙川 第1號 水力發電所 및 北倉, 雄基·南興(青年)에 各各 火力發電所를 새로 建設하였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현재 進行中인 大同江水力發電所와 워원 발전소, 熙川 第2號 發電소의 建設을 끝내며; 새로운 大規模의 水力 및 中小규모 水力發電소의 建設을 計劃하고 있다. 그밖에 火力發電에 있어서는 大規模의 發電所 보다 埋藏量이 풍부한 底熱炭을 쓰는 火力發電所와 工場의 餘熱 및 廢熱을 利用하는 工場 火力發電所 建設을 계획하고 있다.

水力과 火力의 發電量 比率은 중태의 水力 優位로부터 탈피 그 比率이 5:5 정도로 높아졌다.⑭

電力生産(發電量)

(單位: 百萬kw/H)

年 度	發 電 量
1 9 4 6	3,934
1 9 4 9	5,924
1 9 5 3	1,017
1 9 5 6	5,100
1 9 6 0	9,139
1 9 6 3	11,766 ⁽¹⁾
1 9 7 0	16,500 ⁽²⁾
1 9 7 5	28,600 ⁽³⁾
1 9 7 8	31,460 ⁽⁴⁾
1 9 8 4	56,000~60,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

(2) 조선중앙년감 (1971) p. 3.

(3) " (1976) p. 323.

(4) 1979年 김일성 新년사.

※ 1978년 發電量을 314억kw/H로 발표하고 있으나 발전시설 용량 506만kw (수력54%, 화력 46%)에 평균 최대 설비이용율을 계산하여도 年間 發電量이 307억kw/H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⑭ 로동신문(1977. 12. 17).

建材工業

主要 시멘트工場으로는 2.8 마동·부례산·勝湖里·球場·海州·川內里·고무산 시멘트工場 등을 들 수 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기존 공장들의 施設을 擴張하고 生産能力을 높이는 한편, 300萬屯 能力의 順川시멘트工場을 새로 가동시켰다.

2次 7個年計劃에서는 새로운 시멘트工場의 建設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板유리 生産 增大를 위해 南浦유리工場의 압연 유리직장 建設과 各道の 小型 판유리공장 建設을 끝내고, 西部와 東部に 각각 1,000萬 m² 능력의 판유리工場 建設이 추진되고 있다.

시멘트

(單位:千屯)

年 度	生 產 量
1 9 4 6	103
1 9 4 9	537
1 9 5 3	27
1 9 5 6	597
1 9 6 0	2,285
1 9 6 3	2,526 ⁽¹⁾
1 9 7 0	4,000 ⁽²⁾
1 9 7 5	6,830 ⁽³⁾
1 9 7 7	8,000 ⁽⁴⁾ 이상
1 9 7 8	10,560 ⁽⁵⁾
1 9 8 4	12,000~13,000(目標值)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 (1971) p. 233.

(3) 6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의 수행율로 계산.

(4)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

(5) 1979. 2. 22 평양방송 보도인 前年比 增加率 123%에 의거 계산.

紡織工業

代表的인 紡織工場은 平壤·惠山·新義州·龜城·開城 紡織工場들이다.

7個年計劃 中에는 沙里院 織物工場을 비롯한 새로운 工場이 建

설되어 모직물·아마 직물까지 生産할 수 있게 되었으며, 各地方에서 編織物 工場들이 신설되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9月紡織工場과 沙里院방직공장이 새로 建設되었고, 平壤綜合紡織工場에 화학섬유 방직설비가 增設되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기존 설비를 現代化·高速化하여 生産能力을 提高시킬 것과, 아널론 방직공장의 建設과 피복공장들의 近代化를 계획하고 있다.

織 物

(單位：千 m)

年 度	生 產 量
1 9 4 6	2,691
1 9 4 9	12,842
1 9 5 3	21,623
1 9 5 6	77,080
1 9 6 0	189,659
1 9 6 3	227,187 ⁽¹⁾
1 9 7 0	400,000 ⁽²⁾
1 9 7 6	580,000 ⁽³⁾
1 9 7 7	600,000 ⁽⁴⁾ 이상
1 9 8 4	800,000(目標值)

出處：〈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년 이전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0.

(2) 조선중앙년감 (1971) p. 234.

(3)(4) 1977. 12 최고인민회의 제 6기 1차 회의 보고.

※ 직물생산 실적발표는 그 단위가 넓이(m²)가 아니라 길이(m)이며, 폭을 발포치않기 때문에 확실한 직물 생산실적을 알 수가 없다.

輸送·通信

輸 送

輸送部門에서는 주로 鐵道網 擴張에 注力해 왔다.

1960年代는 平壤~清津, 平壤~新義州 간을 비롯한 850km의 電鐵化를 추진시켜 基本幹線이 電鐵化되었고, 清津~羅津, 平山~伊川間 등 300餘km 區間을 新設했다.

6個年計劃 期間에는 清津~茂山, 清津~羅津, 平壤~麻洞間

部門別現況

380km를 電鐵化했으며, 伊川~洗浦間 鐵道가 新設되어 東西間의 直通線이 平壤~高原間 外에 또 하나 생긴 셈이 된다.

그밖에 南新義州~덕현間, 은파~철광間, 용천~다사도間 등 總 471km의 鐵道가 새로 건설되고, 海州~은빛間, 新川~長淵間의 狹軌를 廣軌로 改造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⑮에는 1,600km를 電鐵化하고, 現在 江界~惠山~茂山間의 鐵道建設을 推進하고 있다.

道路의 總延長은 20,775km로서 대부분이 포장되지 않은 道路인데, 完全 포장된 高速化道路 및 幹線道路는 971km에 不過하나 南浦~平壤, 平壤~元山 간의 고속도로가 1979년에 開通됨으로써 東西間의 輸送難은 어느 程度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金日성이 '75~79年 新년사에서 계속 輸送難 打開를 강 조한 것을^⑯ 보면 地形·地勢로 인한 北韓의 輸送 隘路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水運部門은 1970年 以後 대형 貨物선의 建造로 인해 多少 向上 되어 貨物 수송량이 1970年比 1.7倍로 增加되었다.

그러나, 港灣設施의 未備와 船舶의 不足으로 輸送 全般에서 水運의 比重은 極히 적은 實情이다.

輸送手段에서 特異한 것은 <三化輸送>^⑰으로서 이中 가장 큰 比重을 가진 索道(케이블카)는 52個 炭·鑛山에 280km가 設置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管輸送(pipe-line)은 淸津~茂山間 精鑛 輸送管, 新義州~博川에 이르는 送油管 등 218km이며, 벨트 콤페어 施設은 은울광산·검덕광산 등에 約 20km가 設置되었다.

2次 7個年計劃 期間에는 茂山~淸津 사이에 精鑛 輸送管 第2段 階 工事와 나프사 수송관 공사를 비롯한 새 수송관 건설을 계획 하고 있다.

⑮ 철도의 總延長은 4,292m(그중 전철화 1,223km).

⑯ 각 연도별 로동신문 (1. 1.)

⑰ 三化輸送은 관·벨트 콤페어, 삭도를 이용하는 수송.

主要 鐵道網 現況

鐵 路 名	區 間	延長(km)	驛數	備 考
平 釜 線	平壤—開城	199.3	23	평양—마동간 電鐵化
平 義 線	平壤—新義州	224	31	1964년 電鐵化完了
平 羅 線	平壤—羅津	819	113	1972년 全區間 電鐵化
滿 浦 線	順川—滿浦	299	38	순천—고안간 電鐵化
平 德 線	平壤—長上	165.1	29	1979년 全區間 電鐵化
平 北 線	定州—清水	120	12	
平 南 線	平壤—南浦	55.2	10	진천화 공사중
平 安 線	南浦—溫泉	34.7	10	
黃海青年線	沙里院—장마	97.7	14	
銀 波 線	銀波—長淵	79.8	16	1973년 廣軌化
白 川 線	海州—온빛	64.4	15	1971년 廣軌化 완공
青年伊川線	平山—洗浦	163	15	1972년 全區間 완공
江 原 線	高原—平康	142.6	24	
端 豐 線	端川—洪君	80.3	11	
咸 南 線	여해진—檢德	63.5	13	全區間 電鐵化
白頭山青年線	吉州—惠山	141.7	20	全區間 電鐵化
咸 北 線	輸城—羅津	316.1	46	
茂 山 線	古茂山—茂山	57.9	11	청진·무산간 電鐵化
白 茂 線	白岩—茂山	191.7	29	狹 軌
新 興 線	咸興—赴戰	91.7	21	"
長 津 線	五老—泗水	58.5	13	"
江 界 線	江界—狼林	57.0	12	
鐵 嶺 線	水橋—西海里	59	10	1973.9 완공
多 獅 島 線	龍川—多獅島	23.1	5	
德 峴 線	南新義州—德峴	48.9	4	1971.4 완공
雲 峰 線	滿浦—雲峰	42	6	1959년 신설
鹽 州 線	南新義州—鹽州	28.7	4	
高原炭嶺線	屯田—장동	19.6	3	1968년 電鐵化
三 池 淵 線	善天—이명수	59.2	10	狹軌, 1958년 신설
白頭林鐵線	渭淵—大坪	90.8	10	狹軌, 1958以前 新設
价 川 線	新安州—价川	29.5	4	
八 院 線	龜城—八院	63.7	8	
甕 津 線	海州—웅진	40.4	10	
股 山 線	价川—股山	41	6	
釜 浦 線	웅진—釜浦	30	5	1976년 廣軌化
龍 岡 線	龍岡—麻永	17	4	
松 林 線	黃州—松林	13.1	2	

部門別現況

鐵 路 名	區 間	延長(km)	驛數	備 考
大 安 線	江西—大安	8	1	
博 川 線	孟中里—博川	9.3	2	1974년 신설
北 青 線	新北青—北青	9.4	2	
康 德 線	康德—輸城	12.2	2	휴진후 신설
會寧炭鑛線	會寧—鷄林	11.7	4	
洪 儀 線	洪儀—豆滿江	9.5	1	1963년 신설
灰 岩 線	阿吾地—梧鳳	10.4	3	
古 乾 原 線	新乾—古乾原	10	1	

註:北韓에서 사용하는 鐵路名 및 區間 適用

主要 道路網 現況

路 線		主要經由地	延長(km)	路幅(m)	備 考
幹 線	平 壤~元 山		210	30	高速道路
	開 城~新義州	平山 沙里院 平壤 安州 定州	402.3	4.9~7.3	排水良好
	高 城~隱 城	元山 咸興 北青 金策 清津 會寧	867.2	2.7~7.3	清津以北 傾斜 甚함
	平 壤~元 山	咸川 陽德	196.4	3.7~4.9	勾配 및 커브 甚함
	安 州~滿 浦	价川 熙川 江界	291.3	3.7~4.9	球場以內勾配 커브 甚함
	沙里院~海 州	載寧	約 72.5	5.2~7.6	大體로平坦함
	新義州~古茂山	朔州 楚山 滿浦 中江 惠山 茂山	861.0	2.7~6.1	大部分 勾配 커브 甚함
	定 州~朔 州	龜城	99.8	4.6~6.1	勾配 甚함
	元 山~休戰線	高山 金化	143.2	4.6~5.5	勾配 甚함
	清 津~元汀里	羅津	112.7	4.6~7.3	
1 級	平 壤~南 浦	江西	53.1	5.5	高速道路
	平 壤~原平里	順川 孟山 永興	241.5	3.7~7.3	大體로 勾配 甚함
	順 川~義 州	价川 龜城	約 193.8		
	金 川~休戰線	伊川 平康	149.7	3.7~6.1	勾配 甚함
	開 城~海 州	白川 延安	約 88.4	6.1	平坦함
	平 壤~甯 山	延山 新溪	141.6	3.1~5.5	一部勾配甚함
	平 山~陽 德	新溪 谷山	144.8	2.7~4.9	勾配 甚함
	北 青~惠 山	豐山 甲山	186.4	2.7~4.9	勾配 甚함
	載 寧~猪島里	安岳	46.6	5.5~7.6	平坦함
	熙 川~陽 德	寧遠 孟山	約 58.0		

通 信

7個年計劃 期間에 各里 單位까지 電話 架設을 끝냈으며, 全地域의 有線放送化를 實現했다.

6個年 期間에는 電話路線의 延長과 市內 電話回線의 增大 및 無線放送 出力을 倍로 擴大시켰다.

1971~1976년 기간에 全國의 텔레비전化에 努力하였다.

앞으로 2次 7個年計劃 기간에는 電信, 電話 施設 등을 現代化하고, 放送 出力을 높일 것을 計劃하고 있다.

貿易 · 對外協力

貿 易

北韓의 貿易은 무역부 산하의 國營商社와 그 밖에 協同貿易商社 등을 通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實質的으로는 長期 通商協定에 의해 約定된 貿易議定書를 基로 한 國營 貿易이 中心이 되고 있다.

貿易政策의 특징은 國家計劃委員會의 事前計劃을 基調로 相對 國과의 協商을 通해 品目別 쿼터를 査定하는 雙務的 性格이 강하다 는 점이다.

年度別 무역 추세를 보면, 해방 이후 1976年 末까지 大部分 貿易 赤字를 보여 왔다. 1946年과 1954年을 제외한 지난 24年間의 貿易 總額은 約 148億 9千萬弗로서 그 中 貿易 赤字額은 15.8%로 23億 5千 6百萬弗, 黑字額은 0.18%로 約 2,600萬弗이었다.

대체적으로 1960年代까지의 貿易 赤字幅 比重은 10% 內外였으며, 1970年代에는 20~30%로 그 比重이 늘어났다.

1960年代의 輸出 增加率은 8.5%, 輸入 增加率은 21.9%를 보이고 있으며, 1970年代에 들어와서도 계속 輸入 增加率은 높으나 1975年부터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次 7個年計劃이 시작되는 1978年부터 다시 上昇勢를 보이고 있으며 貿易 赤字幅도 증대하고 있는데, 赤字幅이 가장 큰

時期는 南北對話 以後 1974年度이고, 그 후 外債 事情의 惡化로 무역규모가 줄어들다가 1978年度에 다시 늘어났다.

對外貿易收支推移

(單位: 1,000弗)

年 度	貿易總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易收支
1 9 7 1	866,011	301,933	564,078	-262,145
1 9 7 2	1,038,650	398,950	639,700	-240,750
1 9 7 3	1,340,400	497,700	842,700	-345,000
1 9 7 4	1,980,300	677,200	1,303,100	-625,900
1 9 7 5	1,906,638	813,957	1,092,681	-278,724
1 9 7 6	1,486,900	658,100	828,800	-170,700
1 9 7 7	1,500,000	680,000	820,000	-140,000
1 9 7 8	1,800,000	866,000	926,000	-660,000

出處: IMF & IBRD, Direction of Trade
UN, Economic Trade Statistics
OECD, Trade by Commodities.

地域別 貿易構造를 보면, 1963년까지는 共產圈의 貿易 比重이 總貿易量의 90% 以上을 차지하였으나, 1965년에는 88.9%로 1969년에는 72.7%로 하락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地域別 構造 變化가 일어나 對西方圈 貿易增加率이 上昇 추세를 보였으며, 1974년에는 53.6%로 共產圈 貿易比重을 앞섰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다시 對共產圈 무역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北韓 무역에서 소련의 比重은 매우 높아서 1978年度의 對蘇 輸入額은 2億 5千 800萬弗이며, 輸出額은 2億 9千 470萬弗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1971年度의 수준을 능가하는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3,670萬弗의 赤字를 시현하고 있는 것은 對蘇 負債의 상환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측이 수입을 늘린 것으로 보여진다.^⑤

다음 日本으로부터는 1974年 전체 수출입액의 약 22%를 차지하였으며, 점차 상승 추세를 보여 1976년에는 對日 수출 比重이 對先進國 수출의 47.8%를 점하고 있다.

⑤ 소련 무역성 계획 경제국 <소련의 대외무역>誌.

1978年度の 대일 수입액은 1億 8,300萬弗, 수출액은 1億 700萬弗에 이르러 크게 上昇勢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對日負債의 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日本측이 수입을 늘리고 北韓은 2次 7個年計劃 수행에 必要한 기술, 장비 도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⑩

對共產圈中 東歐 貿易은 1956년에 처음 交易이 이루어진 對東獨 貿易이 가장 比重이 높고, 기타 國家들과는 큰 기복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서방권과의 무역은 계속 赤字인 가운데서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EEC 國家中 서독과의 거래가 늘고 있다. 開發 途上國의 경우는 對 홍콩 수출이 높고, 對 말레이시아·필리핀 수출

地域別 貿易構造 (單位: 100萬弗)

年 度	合 計	共 產 圈	比 率 (%)	自 由 圈	比 率 (%)
1 9 7 1	866	734	84.8	132	15.2
1 9 7 2	1,039	796	76.6	243	23.4
1 9 7 3	1,340	820	61.2	521	38.8
1 9 7 4	1,980	918	46.4	1,062	53.6
1 9 7 5	1,907	1,032	54.1	875	45.9
1 9 7 6	1,487	984	66.2	503	33.8

出處: 소련貿易統計年鑑, IMF, IBRD, OECD 등의 貿易統計(Direction of Trade).

北韓·소련貿易 現況

(單位: 1,000弗)

年 度	貿易總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易收支
1 9 7 1	502,600	135,800	366,800	-231,000
1 9 7 2	458,400	154,900	303,500	-148,600
1 9 7 3	480,600	179,300	301,300	-122,000
1 9 7 4	453,600	196,800	256,800	-60,000
1 9 7 5	468,500	209,700	258,800	-59,100
1 9 7 6	400,700	158,300	242,400	-84,100
1 9 7 7	446,000	223,000	224,000	-1,000
1 9 7 8	552,700	294,700	258,000	+36,700

出處: 소련의 <對外貿易>誌 各 月報.

⑩ 일본 대장성 通關 統計.

北韓・日本貿易 現況

(單位：1,000弗)

年 度	貿易總額	輸 出 額	輸 入 額	貿易收支
1 9 7 1	59,000	30,000	29,000	+1,000
1 9 7 2	131,000	38,000	93,000	-55,000
1 9 7 3	172,000	72,000	100,000	-28,000
1 9 7 4	361,000	109,000	252,000	-143,000
1 9 7 5	246,000	65,000	181,000	-116,000
1 9 7 6	168,000	72,000	96,000	-24,000
1 9 7 7	192,000	67,000	125,000	-58,000
1 9 7 8	290,000	107,000	183,000	-76,000

出處：通關通覽，〈韓國・北朝鮮要覽〉1978，世界政經調查會編，p. 500.

參考：1978年 韓國의 對日輸出額은 25億 9,100萬弗，輸入額은 60億 300萬弗，貿易總額은 85億 9,400萬弗.

이 늘고 있다.

北韓의 수출품은 철광석·비철금속 등 주로 一次產品이었으나, 1960년에 들어와 수출 시장의 多邊化를 모색하면서, 半製品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重化學工業이나 軍需工業에 필요한 資材導入에 주력하였다.

1970年代에 와서는 기계, 플랜트 등 資本財를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동시에 西方圈 先進諸國을 資本財 輸入市場으로 하면서 半製品에서 完製品 수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輸出入 商品 構造를 보면, 對아시아·中近東·아프리카에는 기계류·금속 제품·농기구·섬유 제품 등 公業 제품을 수출하고, 원료·곡물·생고무·목재 등을 수입하고 있다.

對소련의 수출품에는 압연 강재·합금·크랭카·미곡 등 原資材와 中間材가 70% 以上이며, 수입품에는 原油·석유 제품 등 기계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對東歐貿易을 보면 철강·기계·공구 등의 半製品를 수출하고, 精密機器와 특수기계·베어링 등을 수입하고 있다.

日本 등 西方圈과는 工業 原料·半製品·農産物을 수출하고, 기계·플랜트 등 資本財를 수입하고 있다.

受援・借款

1954年 이후 소련·中共·東歐에서 無償援助 16億 5,386萬弗과 有償援助 3億 8,918萬弗 도합 20億 4,304萬弗의 원조를 받았으며, 소련이 47%, 중공이 30%를 부담하였다.

시기별로는 1950年~1960年 기간에 總援助額의 89%가 집중되었으며, 有償 援助 중 91%(3億 4,042萬弗)가 償還이 면제되었다.

供與國別 受援現況(1945—1970)

(單位: 萬弗)

國 家 別	金 額	比 率(%)
소 련(1)	96,293	47.2
중 공	61,350	30
체 코	20,034	9.8
동 독	13,635	6.7
기 타(2)	12,892	6.3
總 計	204,204	100.0

出處: 韓國研究機關 資料.

(1) 모스크바 방송(1976. 10. 8)은 해방 이후 소련의 對北韓 원조 총액이 15億 3,473萬弗에 이른다고 집계.

(2) 기타는 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의 원조액.

1970年代에 들어와서 COMECON^㉑의 對西方圈 貿易赤字는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㉒ 北韓은 외화 조달의 多邊化를 시도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에 치우쳤던 종래의 對外 經濟協力은 1972년부터 OECD 諸國과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 후 後者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한편, 北韓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 資本 設備財의 과도한 도입과 수출의 부진이 겹치게 되어, 무역 규모에 비해 債務額이 커지게 되었으며 延滯額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㉓

^㉑ 소련·동독·폴란드·불가리아·헝가리·루마니아·체코 등 7개국.

^㉒ 1976년말 COMECON의 對西方圈 무역 적자는 450억불이며, 그중 소련이 200억불에 달함. Le Nouvel Economiste, (1977. fév., 28 Paris) p. 36.

^㉓ 1978. 2. 현재 債務額은 21億 7,000만弗(소련 9億弗을 제외한 대부분은 서방권), 延滯額은 5억 1,480萬弗(韓國研究機關 資料)

借款導入現況

(單位：萬弗)

年 度	全 額(%)	OECD(%)	計(%)
1 9 7 0	8,700(96.6)	300 (3.4)	9,000(100)
1 9 7 1	25,000(93.6)	1,700 (6.4)	26,700(100)
1 9 7 2	15,000(42.3)	20,400(57.7)	35,400(100)
1 9 7 3	10,900(22.5)	37,500(77.5)	48,400(100)
1 9 7 4	12,000(23.0)	40,000(77.0)	52,000(100)
1 9 7 5	18,600(43.3)	24,300(56.7)	42,900(100)

出處：韓國研究機關 資料。

※：1971~1975(5年間) 總計 21億 4,400萬弗 借款導入(소련에서 9億 200萬弗, OECD에서 12億 4,200萬弗)。

社會

人口政策

解放後부터 6.25에 이르는 期間에는 北韓地域의 住民들이 대거 南下하였고, 戰爭으로 인한 人的 損失이 컸으므로 人口의 많은 減少現象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休戰後부터는 人口增加를 위한 社會政策을 강력히 推進해 왔다. 그 例로서 出產補助金 支給, 雙兒出產의 경우 特別 상여금 지급, 産前·産後의 휴가제 실시, 母性에 대한 勞動時間의 短縮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人口增加를 目的으로 1959年末부터는 在日同胞를 北送하기 시작했고, 在滿同胞에게도 귀환을 奨용했다.①

그러다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産兒制限 政策으로 轉換한 대신, 유아 사망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따른 平均壽命을 높이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②

人口 이동에 있어서는 農村의 機體화가 추진되고, 産業施設이 擴張됨에 따라 相對的으로 農村人口는 감소되는 반면에 都市 및 勞動者의 人口가 漸次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勞動力 配置가 中央으로부터의 一元化된 體系에 의해 計劃的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自然發生的인 社會的 移動은 있을 수 없다.

① 1959.12~1978.3까지 180회에 걸친 北送人員은 93,050名.

② 1976年 現在 平均壽命은 男子 70歲, 女子 76歲로 發表, 朝鮮중앙년감(1978년판) p. 294.

人口現況

北韓發表 人口統計

年 度	總 人 口	增加率(%)	性別構成 (%)	
			男	女
1946年末	9,257,000	—	50	50
1949年末	9,622,000	2.25	49.7	50.3
1953. 12. 1	8,491,000	0.7	46.9	53.1
1956. 9. 1	9,359,000	1.34	47.8	52.2
1959. 12. 1	10,392,000	2.73	48.3	51.7
1960年末	10,789,000	2.8	48.4	51.6
1963. 10. 31 ⁽¹⁾	11,568,000	2.99	48.7	51.3
1967 ⁽²⁾	1,040만			
1968 ⁽³⁾	1,076만			
1970 ⁽⁴⁾	1,380~90만			
1974 ⁽⁵⁾	1,680만			
1975 ⁽⁶⁾	1,640만			
1978 ⁽⁷⁾	1,720만 以下			
1979 ⁽⁸⁾	1,720만 以下			

出處：(1) 이상은 조선중앙년간(1964년판), p. 316.

(2) 조선중앙년간(1968년판), p. 180.

“總人口의 1/4인 260萬名이 공부……”에 의거 역산.

(3) 조선중앙년간(1969년판), p. 226.

總人口의 1/4인 269萬名이 공부……”에 의거 역산.

(4) 로동신문 (1970. 11. 3), 5차 당 대회 보고중 工產品 總생산량에 대한 1인당 생산량 발표에 의거 역산.

(5) 조선중앙년간(1975년판), p. 337.

“總人口의 1/3인 560萬名이 全般的 11年制 義務教育에……”에 의거 역산.

(6) 조선중앙년간(1976년판), p. 186. 金日成의 日本 毎日新聞과의 인터뷰 중 “인구의 절반 이상인 820만명이 공부……”에 의거 역산.

(7) 로동신문(1978. 9. 10), 北韓政權樹立 30周年記念 金日成報告 中 “總人口의 절반이 넘는 860萬名이 공부……”에 의거 역산.

(8) 로동신문(1979. 9. 9), 北韓政權樹立 31周年記念 朴成哲 報告中 “人口의 절반이 넘는 860여만명이 공부……”에 의거 역산

北韓 總人口 推計

年 度	總 人 口	年 度	總 人 口
1964	12,020,000	1972	14,693,995
1965	12,252,000	1973	15,052,546

1966	12,583,590	1974	15,419,869
1967	12,924,175	1975	15,796,185
1968	13,273,999	1976	16,158,149
1969	13,633,311	1977	16,528,422
1970	14,002,369	1978	16,907,196
1971	14,344,007	1979	17,294,661

出處: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추계방식에 의해 산출된 것임.

人 口 的 都 市 · 農 村 別 構 成

年 度	都 市 人 口 (%)	農 村 人 口 (%)
1953. 12	17.7	82.3
1956. 9	29.0	71.0
1959. 12	38.0	62.0
1960. 12	40.6	59.4
1963. 12	44.5	55.5

出處: 조선중앙년감(1964년판), p. 320.

性 別 · 年 齡 別 人 口 推 計 (1978)

나 이	男	女
0 ~ 4	1,327,686	1,262,060
5 ~ 9	1,176,618	1,129,497
10~14	1,024,872	987,804
15~19	934,319	895,546
20~24	782,043	754,984
25~29	616,373	605,641
30~34	570,816	564,870
35~39	530,046	523,436
40~44	420,620	437,070
45~49	306,943	346,808
50~54	228,486	271,368
55~59	181,998	218,038
60~64	150,610	176,241
65~69	112,812	133,358
70~74	68,255	86,689
75~79	40,336	54,247
80이상	22,045	35,898
總 計	8,494,878	8,483,563

出處: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추계방식에 의해 산출된 것임.

住民生活

家 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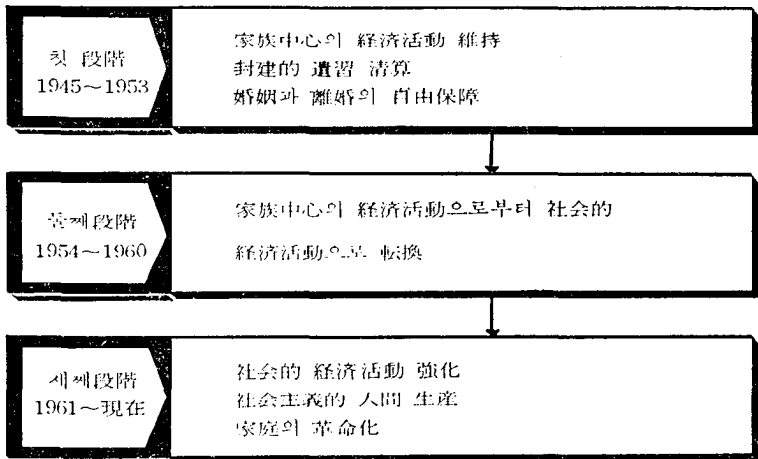
家族制度的變化

北韓의 家族制度는 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革과 密接히 結付되어 變化되어 왔는데, 크게 3段階로 구분할 수 있다.

첫단계의 改革은 男女平等의 實際的 實現을 그 中心課題로 삼았으며, 그러기 위해 家庭에서 崩潰적인 遺習을 청산하고 婚姻과 離婚의 자유를 法的으로 보장하는 조치들^① 취했다.

둘째 단계에는 農業의 集團化를 비롯한 個人商工業의 抹殺 등 社

家族制度的變化過程



① 1946.7.30.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4호로 <男女 平等에 대한 法令>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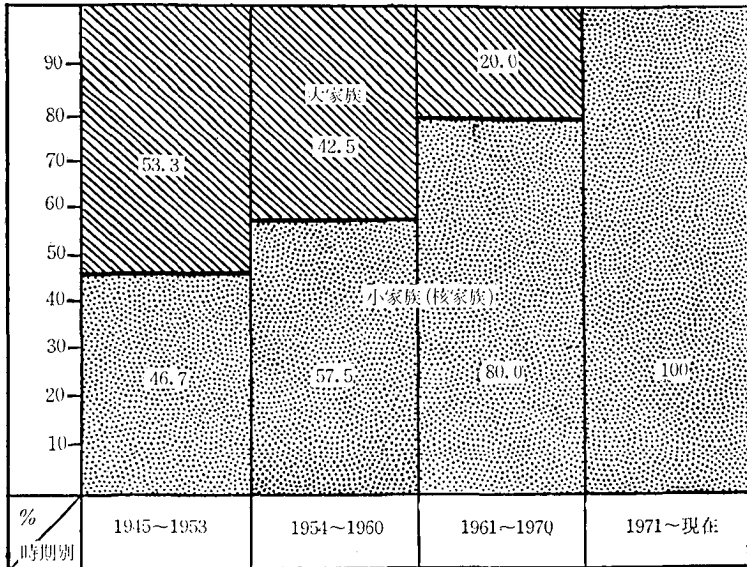
會主義의 改革으로 인해 家族 中心의 經濟活動이 不可能하게 됨에 따라 家族 成員은 자기 個人的으로 社會的 經濟活動에 참가하게 되었다.

세계 단계에는 둘째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經濟的 生産을 增大시키는 한편, 社會主義的 人間을 만들어내고 家庭을 革命化하는 것이 주된 과제로 등장했다.

家庭의 革命化問題는 1968年 3月 2日 <全國烈士家族 및 榮譽軍人家族大會>②에서 처음으로 提起되었으며, 1970年 5次 黨大會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家族 成員들은 夫婦·兄弟이기에 앞서 <思想的 同志>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③

家族形態의 變化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②) 로동신문 (1968. 3. 2)

③) 로동신문 (1977. 3. 11)

이러한 家族制度的 變化와 더불어 社會主義工業化가 추진되고 경제의 分業化가 심화됨에 따라 本來의 大家族制度는 점차 小家族化되어 갔다. 1960年代까지는 一部 農村地域에 大家族制의 흔적이 있었는데,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家族中心의 經濟的 基盤과 家父長的 位階秩序의 破壞도 大家族制度의 崩壞였고, 여기서 社會構造의 變質과 아울러 새로운 家族概念, 즉 社會主義의 家族概念이 발을 붙이게 되었다.④

女性の地位

北韓의 女性은 男子와 平等하게 政治·經濟·社會活動에 參與하고 있으며, 子女 養育 및 家事의 社會責任化로 인해 子女들은 家庭의 義務로부터 점차 解放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社會主義 憲法〉 第62條에서는 女性에 對한 政策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녀성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에서는 〈女性들을 부업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決定을 채택한바 있으며, 그 後,

— 食品加工工業의 發展

— 家庭用 電子製品인 전기 콘로·전기술·냉장고·세탁기 등의 生産增大와 세탁소 설치⑤

— 탁아소, 유치원시설 擴張과 모든 어린이의 社會的 養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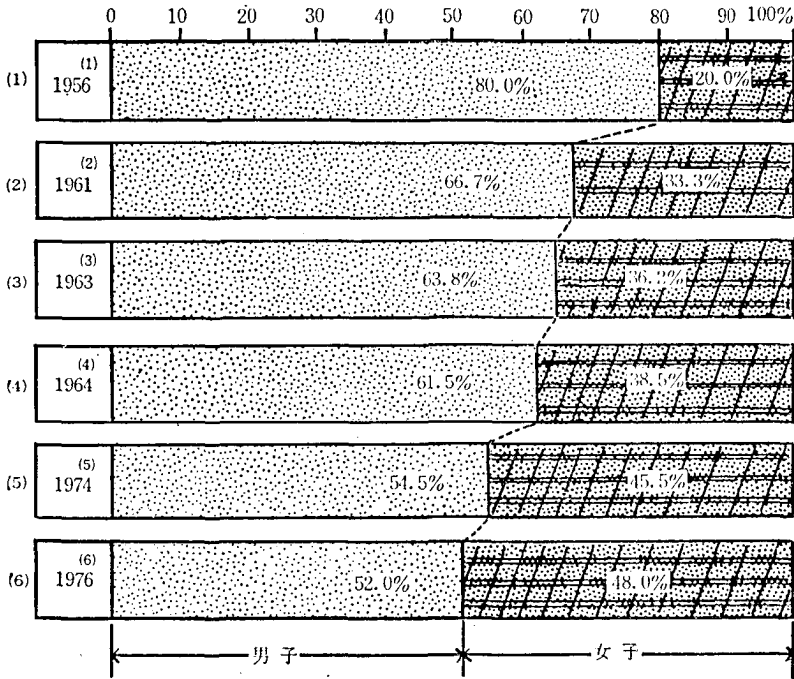
—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女性들의 6時間 노동제 實施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女性들의 직장 진출이 현저하게 增大되었다.

女性들의 職場進出에 對해 女性同盟 委員長인 金聖愛는 1976年 7月 23日 男女平等權法令 發表 30周年記念 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④ 李兌榮, 北韓의 女性에 關한 研究(국토통인원, 1979), p. 14.

⑤ 平壤市에는 1個洞에 1, 2個의 세탁소가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1979. 10. 14).

勞働力の 男女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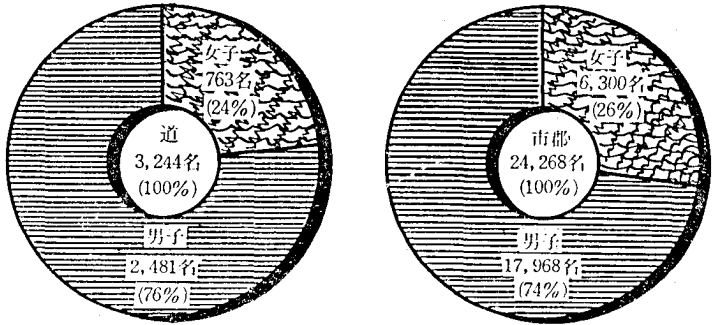
出處：(1) 조선중앙년감 (1961년판), p. 116.
 (2) 조선중앙년감 (1962년판), p. 264.
 (3)~(4)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p. 164.
 (5) 조선중앙년감 (1975년판), p. 334.
 (6) 로동신문 (1976. 7. 30).

歷代最高人民會議 女性 代議員 比率

期	代議員總數	女性代議員數	比率 (%)
1	572	69	12.1
2	215	27	12.6
3	383	35	10.9
4	457	73	16
5	541	113	20.8
6	579	120	20.8(1)

出處：조선중앙년감에 의거 작성.
 (1) 평양방송(1978. 9. 19).

地方 人民會議 男女 代議員 比率 (1977)



※ 男女平等權 法令發表 30周年記念 報告會에서 김성에는 군 인민회의로부터 최고 인민회의에 이르는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 수의 33%를 여성이 차지한다고 보고, 로동신문(76.7.30).

“이 법령으로 우리 여성들은 부엌 일과 어린이를 키우는 일에서 해방되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 로력 구성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나 된다.

수많은 여성들이 공장 지배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책임있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고, 수백만을 헤아리는 여성들이 공장과 농촌 그리고 과학·교육·보건·문학예술·편의봉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江原道 元山市의 경우 職業女性이 모두 5만 명인데, 이 숫자는 勞動能力을 가진 전체 여성의 80%에 해당되며, 그 중 간부급에 있는 여성이 2,700여 명이나 된다.⑥

結婚·離婚

結婚과 離婚은 처음부터 男女平等權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當事者의 自由 의사라는 原則이었으나 한편으로는 結婚의 登錄이

⑥ 中共 新화사 통신사 代表團訪問記, 로동신문(79.10.14).

婚因의 형식적 조건임을 法的으로 규정했다. 婚姻을 國家登錄制로 한 것은 이 등록을 통하여 이른바 <소망스럽지 못한 家族形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結婚年齡은 法的으로 女性은 만 17歲, 男性은 만 18歲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傳來의 早婚風習이 禁止되었다.⑦ 그러나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婚姻年齡은 法的 下限線보다 훨씬 늦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軍服務年限이 길뿐만 아니라 服務中には 結婚이 許容되지 않고 있으며, 大學生活에서도 結婚은 거의 不可能한 形便에 있기 때문이다.

女子도 政治的, 經濟的 이유로 시집을 늦게 가도록 장려하고 있다.

“녀자들이 한창 배우고 일할 나이에 시집을 가면 학습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 정치 생활에도 적극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⑧

金日成의 이 말은 女子의 婚姻年齡을 늦추어 女性들을 勞動階級化, 革命化하고 女性 勞動力을 確保하자는 뜻인 것이다. 婚姻年齡을 늦추는 또하나의 理由는 1970年代 初부터 産兒獎勵 政策에서 制限政策으로 轉換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結婚年齡은 大體로 男子는 30歲, 女子는 27歲 以上으로 制限되어 있다.⑨ 結婚條件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黨성과 계급성(成分)이다.

배우자 선택에서 <成分>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혼>에 대해 당과 조직에서 깊이 干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黨과 組織의 成員은 배우자를 決定하기 前에 소속 기관에 반드시 事前 申告하여 承認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에 당사자들의 <成分>문제가 크게 論議된다. 그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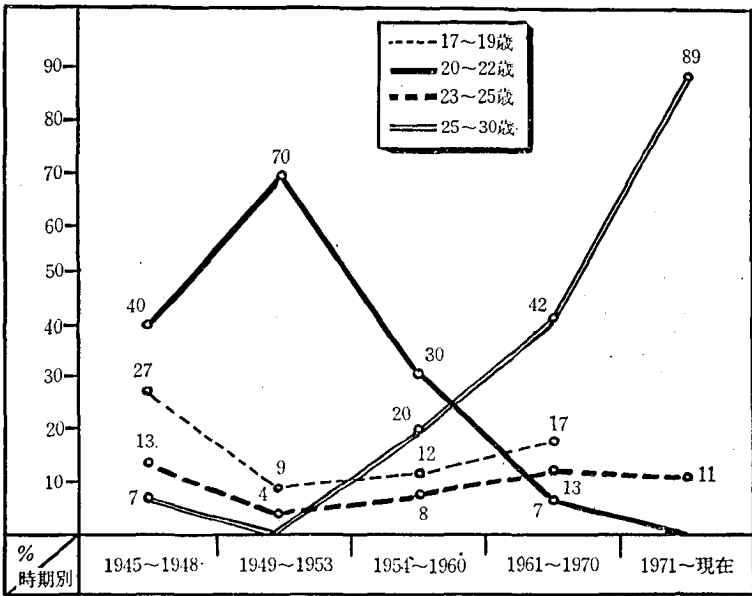
⑦ 男女平等權法令 第6條.

⑧ 김일성 저작선집, 제 6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4), p. 14.

⑨ 1979. 10. 15, 뉴스위크誌 Bernard Krisher 기자 북한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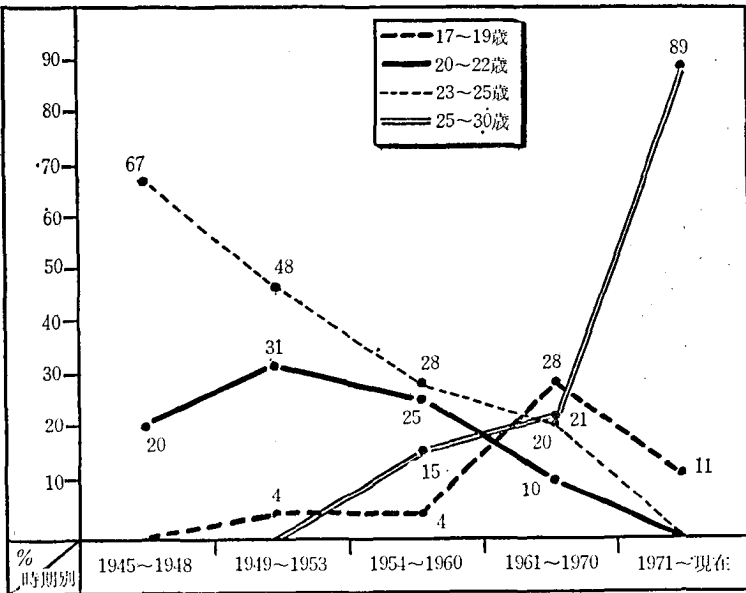
“……女子는 27세까지 결혼하지 못하며 男子는 적어도 29세까지는 결코 결혼하지 못한다……”

結婚年齡(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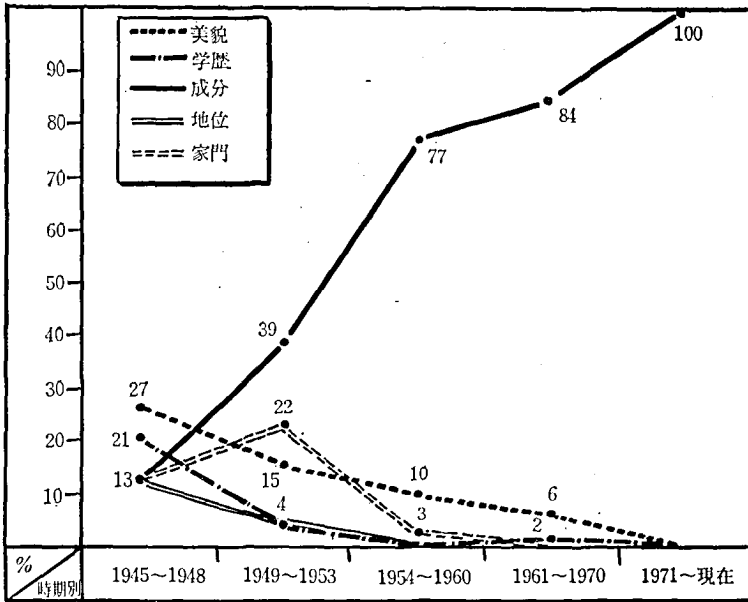
※ 其他は 除外

結婚年齡(女)



※ 其他は 除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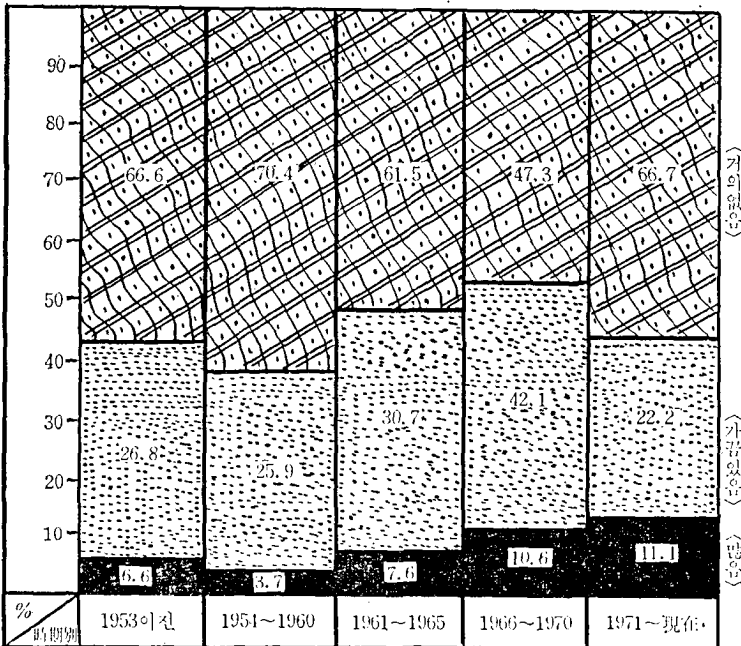
配偶者 選択条件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 其他は除外

離婚率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居住移轉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職場移動의 自由 등이 制限을 받고 있으므로 배우자 선택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離婚도 婚姻과 같이 政權樹立 初에는 自由 의사의 原則을 法的으로 보장받았다. 즉, 이혼은 첫째 當事者의 合意가 이뤄지고, 둘째 合議離婚者의 의사가 所管 行政機關에 受理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처럼 男女의 同等한 自由離婚 權利가 표방되면서도 離婚 사유가 受理되어야만 효력을 發生할 수 있게 하는 등 離婚에 대한 間接적 制限을 함으로써 家族과 社會의 安定을 기도했던 것이다.

1956年 3月에는 合議制 離婚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離婚을 許容하는 <內閣> 決定을 채택하게 되었다.⑩ 이때부터 事實上 個人의 자유의사에 따른 離婚權은 상실되고, 국가가 허용하는 이혼만이 成立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離婚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出產・育兒

○出 産: 1946年 6月 24日에 公布된 勞動法에 의해서 農村을 제외한 모든 企業所 및 事務 職場에서 근무하는 勤勞女性은 産前 35日, 産後 42日間の 휴가를 받게 되었다. 이어서 1958年 8月 農業이 集團化됨에 따라 協同農場에서 일하는 農村 女性들까지도 産前・産後 휴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78年 4月 18日에 채택된 새로운 勞動法 第66條에 의해 해석된다.⑪

그러나 말은 바 責任量의 完遂와 各種 社會主義 競爭運動의 展開로 인해 特別한 경우(産母의 健康 등)를 제외하고는 法定 休暇日을 다 채우지 않고 勞動하는 것이 一般의 現象인데, 특히 協同農場의 女性 農場員이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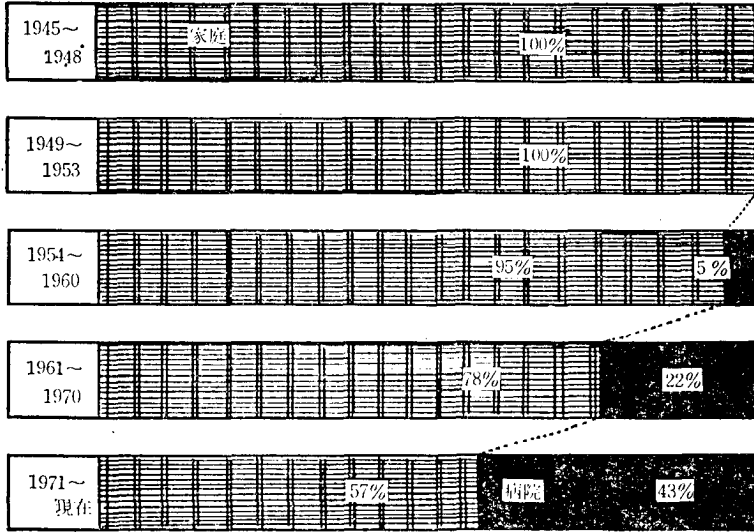
出産場所는 都市와 農村間에 차이가 있으며, 農村은 대부분의

⑩ 1956年 3月 8日 公布, 同年 4月 1日부터 施行.

⑪ 로동신문 (1978. 4. 19).

경우 자기 집에서 助産員의 도움을 받아 出産하며, 都市의 工場地帶은 해당 産業病院의 産室에서 出産한다.

出 産 場 所



出處：國土統一院分析資料

最近에 農村의 診療所를 病院化하고, 産室과 兒童 病棟을 大幅 擴張할 것을 重要 課題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病院에서 出産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⑩

따라서 앞으로는 産母가 病院産室을 利用할 기회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育 兒：어린이 養育은 社會가 集團主義化되고 家族制度의 變化와 가정의 革命化가 강조되고 母性의 직장 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자 탁아소, 유치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에서는 6個年計劃 期間內에 모든 어린이

⑩ 조선중앙년감 (1975년판), p. 416

를 社會的으로 양육할것을 決定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은 1976年 4月 29日 <어린이 보육교양법>⑬의 공포에 의해 법적으로 制度化 되었다.

託兒所·幼稚園의 수는 1978年 8月 現在 約 6萬餘個에 이르고, 여기에 350만의 유아가 수용되고 있다. 託兒所에는 보통 生後 90日이 되면 맡기게 되는데, 모범적인 탁아소에서는 한 保育員이 3~4名의 어린이를 맡아본다.⑭ 一日託兒所는 아침 8時부터 저녁 6時까지 어린이를 맡아보게 되어 있는데, 통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청 소재지와 큰 工場地帶에는 一日託兒所 외에 週託兒所가 있다. 평양의 경우도 구역마다 평균 1개 이상의 週託兒所가 있고, 원산시에는 236개의 日託兒所와 週託兒所가 있다. 또한 農村에서도

託兒所·幼稚園 現況

區分 年度	託 兒 所		幼 稚 園	
	託兒所數	收容人員	幼稚園數	收容人員
1946			64	3,918
1949	12	620	116	8,656
1953	63	2,165	19	1,048
1956	224	6,538	173	12,015
1960(1)	7,624	394,489	4,470	295,485
1966(2)	23,251	877,000 (適齡期 兒童 의 70%)	15,218	790,000 (適齡期 兒童 의 60%)
1970(3)	8,600	1,200,000	6,800	950,000
1975(4)	託兒所·幼稚園 6萬餘個所, 託兒所·幼稚園生 350萬			
1978(5)	託兒所·幼稚園 6萬餘個所, 託兒所·幼稚園生 350萬			

- 出處：(1) 以上은 조선중앙년감(1964년판), p. 328, p. 204.
 (2) 조선중앙년감 (1966~1967년판), p. 170.
 (3) 조선중앙년감 (1971년판), p. 255.
 (4) 最高人民會議 第5期 5次會議 報告 (로동신문 1975. 4. 10).
 (5) 평양방송 (1978. 3. 20).

⑬ 로동신문 (1976. 4. 30).

⑭ 평양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9.15 주 탁아소>의 경우.

모든 農場員들의 어린이들이 託兒所生活을 하고 있으며, 協同農場의 託兒所에 들어온 어린이들의 입고 쓰는 것과 점심은 탁아소에서 공급하며, 연간 분배에서 어린이가 託兒所에서 먹은 食糧을 공제한다.⑮

週託兒所에 맡겨진 어린이는 일요일에만 집에 갈 수 있으며, 탁아소에서 양육된 유아는 만 4세가 되면 幼稚園에 義務的으로 보내야 한다.

北韓의 이같은 幼兒集團養育은 世界的인 兒童教育 理論에 逆行하는 것이라는 批判이 있다.⑯

衣·食·住

○食生活：食糧은 勞動者·事務員의 경우, 配給制에 의해 공급받고 있다. 食糧配給制는 해방 후 一部 階層(주로 國家機關의 事務員 勞動者)에만 實施해 오다가 후진 후부터는 農業의 集團化와 個人商工業의 社會主義化가 完成됨에 따라 協同農場員을 除外한 모든 住民에게 擴大시켰다.

勞動者·事務員에게 配給되는 食糧은 주로 쌀과 옥수수이며, 그 比率은 平壤과 地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방에서는 平壤의 5:5 보다도 잡곡 비율이 많은 편이며, 옥수수 대신 감자를 雜穀으로 配給할 때에는 4:1의 비율이다.

근래에 와서 平壤을 비롯한 地方都市에서는 <옥쌀工場>들이 설치되어 옥수수를 <옥쌀>로 가공하여 배급하고 있다. <옥쌀>이라는 것은 옥수수를 가공하여 쌀모양처럼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처럼 食糧에 대한 配給制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外的 方法으로는 食糧을 求할 수가 없다. 따라서 出張 또는 旅行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糧卷>이라는 것을 所持해야만 食事を 할 수

⑮ 신화사 통신사 대표단의 방문기.
로동신문 (1979. 10. 14).

⑯ 李相琴, 북한의 여성 학술토의 토론 (국토통일원, 1979)중에서,
“소련에서도 현재 만 1세까지는 集團育兒를 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기브르에서도 母子의 접촉을 強調하고 있다.”

있으며 都市住民들이 食堂을 利用할 경우에도 糧券을 사용한다.

糧券을 發給 받으면 다음 쌀 配給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配給 받게 된다. 最近에는 每人當 하루 100g 限度內에서 食糧 배급과는 관계 없이 국수를 판매하고 있다 한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婦女子들의 직장 진출과 관련해서 6個年 計劃期間에 밥工場을 대폭 확장할 것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 決定에 따라 평양을 비롯한 各都市들에서는 主食物을 加工하는 <밥工場>과 半製品 副食物과 국거리들을 배급하는 봉사 시설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婦女子들은 職場에서 퇴근하는 길에 이러한 시설들에서 自己 家族들이 必要한 主, 副食들을 가지고 가 간단히 (약 10분 程度) 加工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食生活에서 많은 時間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平壤市에서는 各洞마다 <밥工場> 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大部分의 住民이 이를 利用하고 있다.⑦

農民들의 食糧은 配給制가 아니며, 年末 결산 분배에 의해서 分配받게 된다. 分配量 中에서 年間 食糧탄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國家收買>에 응해야 하는데, 農民의 年間 食糧은 公式的으

알 꼭 配 給 量

區 分	配 給 量 (1日)	混 食 比 率
당 및 국가기관간부	700g	백미
일 반 노 동 자	600g	5:5
중 노 동 자	700g	5:5
일 반 사 무 원	600g	5:5
군 인	750~850g	8:2
대 학 생	600g	5:5
고 등 중 학 생	500g	5:5
인 민 학 생	400g	5:5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⑦ 신화사 통신사 대표단의 방문기, 로동신문 (1979. 10. 14).

로 1人當 粗穀의 경우 400kg, 옥수수는 280kg로 되어 있다.

○衣生活：各種 織物 生産量은 1年에 約 5億m(그中 毛織·나 이론·테트롱 등은 5,000萬m)인데, 그中 軍用 및 公共用 그리고 工業用과 輸出用을 제외한 나머지가 住民들의 衣生活에 돌아가기 때문에 絶對量에 있어서 充分치 못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衣服을 自由로이 해 입을 수 없으며, 더우기 대부분의 女性들이 社會主義 建設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作業 服을 입는 時間이 많아서 유행과 모양보다는 活動的인 옷차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男女할 것 없이 衣服이 매우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옷차림에 대해 종전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平壤에 被服 研究所라는 것이 設置되었으며, 그 研究所에서 만들어낸 <옷 전시회>라는 것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1978年 10月 경에 平壤에서 옷 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男女 어른用 옷과 어린이 옷 등 모두 160종이 진열되었으며, 그

階 層 別 衣 服

區分 職業別	夏 期			冬 期			保有
	外出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外出및出張	勤務時	平常時	
勞働者	Y셔츠 (테드 롱) 紳士服 下衣 (테드 롱)	混紡織 作業服	남방셔츠 (테드 롱)	麻織 外套 (테드 롱 洋服)	混紡織 作業服	<다우다> 솜 冬服 (上衣) 테드 롱 下衣	1~2 着
事務員	Y셔츠 (테드 롱) 紳士服 下衣 (毛織)	비닐混紡 作業服	남방셔츠 (테드 롱)	毛織 外套 紳士服 下衣 (毛織)	솜 冬服 混紡織	<다우다> 솜 冬服 (上衣) 테드 롱 下衣	1~2 着
學 生	남 방 셔 츠 (白色綿織) 비 닐 混 紡 下衣 (黑色)	上同	上同	<다우다> 솜 冬服 上衣, 비 닐 混紡 下衣	上同	上 同	1~2 着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中 女性들의 옷은 연하늘색, 연분홍색, 연미색, 연물색 등 밝은 색깔의 옷이 많았다 한다.⑮

○住生活：住宅은 6.25 동란 때 약 60만棟이 소실, 파괴되어 토굴 및 반토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休戰後부터 實施해 온 人民經濟計劃 수립에서 주택 건설을 크게 反映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경제계획마다 計劃한 주택 건설의 목표이다.

住宅建立目標

期 間	目 標
1957年~1960年	都市 1,000萬m ² , 農村 20萬세대
1961年~1970年	120萬세대(實績 80萬세대)
1971年~1976年	100萬세대
1978年~1984年	年間 20~30萬세대

出處：조선중앙년간 및 모동신문.

休戰 直後에는 平壤을 비롯한 都市 建設에 注力했으며, 農村住宅 建設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本格化되었다. 住宅의 양식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2~3世帶用 연립식 住宅이며, 組立式 工法을 도입하고 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平壤에는 10층 이상의 현대식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이 一定한 설계에 의해 規格化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은 個人이 건립할 수 없으며, 農村住宅까지도<국가 예산>에 의해 건설토록 되어 있다.⑯ 그러므로 住宅에 대한 個人所有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住宅 構造는 中央과 地方, 都市와 農村에 따라 差異가 있으며, 都市의 경우는 大體로 방 2, 마루 1, 부엌 1의 아파트로서 계층에 따라 配定을 받고 있다.

노동자 事務員들이 부담하는 주택 사용료는 生活費 支出에서

⑮ 평양방송 (1978. 10. 14).

⑯ 사회주의 헌법 제26조.

0.3%에 지나지 않으며, 연료 및 기타 使用料를 합쳐도 3% 밖에 안된다.②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衣·食·住 生活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生活水準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이른바 <社會的 追加保障>이다. 즉 無償治療制·無料教育·염가에 의한 食糧配給과 住宅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月收入의 일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다.

住 宅 事 情 (平壤)

住 宅 型	家 屋 構 造	入 住 者
獨立 高級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獨立式 單層 또는 2層住宅 ◦庭園 ◦수세식 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中央黨 副部長級 以上 ◦政務院 副部長級 以上
新型 高層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2개 以上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베란다 冷溫水 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中央黨 課長級 以上 ◦政務院 局長級 以上 ◦大學教授 ◦文藝人 幹部
一般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1~2, 마루방 1, 부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般 勞動者 ◦事務員
集團 公營 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1~2, 부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末端 勞動大衆
農村 文化 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單層 聯立住宅 ◦방 2, 부엌 1, 倉庫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協同 農場員
舊 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2~3개의 農村既存 舊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두리 農民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저축한 돈은 시계·라디오·TV 등 공업상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으나 工產品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조선중앙년감 (1976년판), p. 370.

所得·消費

時期別政策

北韓에서는 住民들의 物質文化를 계통적으로 向上시키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最高 活動法則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간 重工業을 우선으로 하는 經濟政策을 實施했고, 軍事力 強化에 注力해 왔기 때문에 住民들의 생활 수준은 計劃한 대로 向上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休戰後부터 수차례 걸쳐 計劃經濟를 實施했는데, 그 때마다 住民 생활 향상 문제가 중요한 政策의 하나로 反映되기는 했으나, 向上의 Tempo는 매우 느린 편이다.

經濟計劃을 수립할 때마다 내세운 生活水準의 向上目標는 다음과 같다.

○3個年計劃(1954~1956)

파괴된 經濟를 복구하여 戰前 水準으로 회복하고 住民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1次5個年計劃(1957~1960)

社會主義 기초 建設을 축성하고 住民의 衣·食·住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7個年計劃(1961~1970)

住民의 物質文化 수준을 決定的으로 提高시키는 것.

○6個年計劃(1971~1976)

노동자·농민간의 生活水準의 차이와 都市·農村 住民들의 生活 조건에서의 차이 해소.

○2次7個年計劃(1978~1984)

住民生活를 한 계단 높이고, 國民所得을 1.9倍로 成長, 生活水準의 平準化를 계속 추구.

勞働者 賃金

모든 근로자에게는 勞働의 量과 質에 대한 分配가 實施되고 있

으므로 所得에서의 差異가 不可避한 것으로 되어 있다.

性別·年齡別에 관계 없이 같은 勞動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으며, 分配에 있어서는 勞動者·農場員·事務員 할 것 없이 都給 支拂制와 定額 支拂制인 두 가지 形態가 있다.

大體로 勞動者·農民들에게는 都給 支拂制, 그리고 黨 및 <國家機關>과 經濟機關의 事務員들은 定額 支拂制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추가적인 것으로서 加給金制와 賞金制가 實施되고 있다.②

그간 勞動者·事務員·技術者들에 대한 임금 引上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4. 4. 1부터 平均 25% 引上

○1958. 1. 1부터 平均 10% 引上

○1959. 1. 1부터 平均 40% 引上

○1970. 9. 1부터 平均 31.5% 引上②

(1976년까지 平均賃金 70원에서 90원으로)

이를 休戰 直後와 比較해 보면 約 2.5배가 引上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1974年 2月 26日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으로 工產品 가격을 平均 30% 引下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③ 同年 4月 1日부터는 稅金制度가 全面 廢止되었기 때문에 實質所得이 그만큼 向上된 것으로 된다.

賃金은 職種 및 技能級數에 따라 格差가 있는 것으로, 勞動者의 경우를 보면 <賃金技能 等級制>에 의해 등급이 1級으로 부터 8級까지로 區分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1級の 노임과 가장 높은 8級的 노임을 比較할 때 2 배를 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夫婦가 職場生活을 하고 있어

② 사회주의 모동법 제 5 조, 모동신문 (1978. 4. 18).

③ 조선중앙년감 (1975년판), p. 407.

④ 조선중앙년감 (1975년판), p. 175.

住民生活

世帶 收入은 平均 約 150원 程度가 되므로 所得上의 差異는 심한 된이 아니다.

階 層 別 賃 金 (月 給)

區 分	賃 金 額 (원)	該 當 職 級
部長 및 副部長	300~350	黨政治委員, 政務院部長, 道人民委員長, 特級企業所 支配人, 科學院 원사
工場 企業所 支 配人 및 技師長	150~200	1~2級 企業所 支配人 및 技師長
地 方 機 關 長	100~150	
8 級 勞 動 者	95	鍛夫, 製鐵·製鍊工
5 級 勞 動 者	75	一般機械工, 運轉技士
3 級 勞 動 者	60	一般輕勞動者
一 般 事 務 員	60~70	郡級 行政職 勤務者
便 宜 施 設 責 任 者 및 從業員	50~80	旅館, 食堂, 理髮所, 商店

出處: 國土統一院 分析資料

農 場 員 分 配

한편, 協同農場員들은 都市의 노동자, 사무원과는 달리 協同農場의 決算分配에 의해 現物과 現金을 分配 받는다. 分配의 기준은 每農場員이 1年間 農事 일에 投下한 <勞動의 量과 質>이 되는데, 이는 每日 3~4명으로 구성된 <勞力評價組>에 의해 査定된 勞力 點數의 總計가 되는 것이다.②

協同農場에서 1年間 生産한 總量에서 國家가 의무적으로 收買해 가는 農산물과 施設費(탁아소·유치원 등) 飼料 및 種子·비료대·農機械 賃耕料·水利代 등을 控除한 나머지를 가지고 農場員들의 勞力點數를 기준으로 해서 分配하게 된다.

그러므로 施設費 등이 많이 드는 施設 投資를 하게 되면 分配 몫이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② 평양방송 (78.6.12).

또한 協同農場의 立地條件에 따라 分配量이 差異가 생긴 수밖에 없다. 즉, 自然 및 立地條件이 有利한 協同農場은 不利한 協同農場보다 生産量과 現金收入이 많기 때문에 個人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差異가 생긴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山間地帶 農民들은 平野地帶의 農民들보다 적은 量의 分配를 받고 있다. 그밖에 勞力點數에 따라 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勞動力이 많은 農家와 적은 農家 사이에는 分配量에서 많은 差異가 생기기 마련이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6個年計劃期間에 農民 1世帶當 平均 貨幣收入을 1,800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상한바 있는데, 이미 1974년에 이 수준을 능가하여 2,360원 선에 달한 것으로 發表하고 있다.^㉕

이는 都市의 勞働者 사무원의 평균 수입(90원×12월)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黨에서는 아직도 농장원 생활을 都市의 노동자 生活水準으로 向上시키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㉖에서 北韓이 發表한 數値의 矛盾性이 드러난다.

1979年度의 決算分配에서 公式의으로 發表된 代表的인 協同農場의 예를 들면, 문덕군 룡림 협동농장은 戶當分配가 平均 12 t 500 kg,^㉗

7호 농장에서의 戶當 分配는 平均 11 t 700kg^㉘이다.

㉕ 로동신문 (1975. 9. 23).

㉖ “6개년 계획기간에 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소득은 1.7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8배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이 6개년 계획에 예정되었던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라고 농민의 생활수준이 로동자, 사무원보다 미달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6개년계획 수행 총화와 인민경제 발전 제 2차 7개년 계획(1978~1984)에 대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정무원 총리 리종욱 보고 중에서('77. 12. 17. 로동신문).

㉗ 로동신문 (1979. 11. 30). “……간신분배 모임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자국 외교 대표들과 부인들, 외국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라는 報道內容으로 보아, 이 決算分配量은 一般的인 事例는 아닌 것 같다.

㉘ 로동신문 (1979. 11. 29).

住民生活

實際로 分配量에서 1年間の 家族 食糧을 除한 나머지는 國家가 收買해 가기^㉑ 때문에 농장원들의 分配量의 增加가 食生活 向上에 별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㉒

物 價

生活必須品中에서 工業商品은 唯一價格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㉓ 즉, 都市나 山間 벽지 할 것 없이 小賣價格에서 차이가 없이 항상 같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休戰後부터 수차에 걸쳐 物價 引下를 해 왔는데, 1974年 3月 1日부터는 工業產品 價格을 平均 30%라는 大幅의 引下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원래 工業 商品의 價格이 高價로 策定되었기 때문에 30%를 引下했다 해도 貨金 水準과 比較해 볼 때는 아직도 높은 편이다.

時計·라디오·제봉틀·양복 등의 가격을 보면, 高級官吏의 한 달 봉급을 훨씬 넘는 형편이므로 이런 工產品은 大衆 消費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食料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食糧이 配給制로 되어 있으며, 그

食 料 品 價 格 (1978年度)

品 名	單 位	價 格
백 미	1kg	12전
잡 쌀	1kg	15전
옥수수	1kg	9전
밀	1kg	6전
담배	1갑	15전~1원25전
쇠고기	1kg	6원~8원
닭고기	1kg	3원~4원50전

出處：韓國研究機關 B 資料

㉑ 조선중앙년감 (1976년판), p. 370.

㉒ FAO 산하 식량 전문가들은 北韓을 포함한 일부 共產國家와 제 3 세계 주민 4억 5천~5억이 심각한 영양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경고 (1979.11.15 로이타 통신 보도).

㉓ 1972.5.14 김일성의 日本 全國革新市長 代表團과의 對話에서, 조선중앙년감 (1973년판), p. 48.

配給價格은 매우 싸 편이다. 이는 國家가 農民들로부터 쌀 1kg當 62錢, 雜穀은 40錢에 收買하여 소비자에게는 各 8錢과 6錢으로 供給하는 二重價格制를 實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主食物에 대한 住民들의 부담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工業商品價格 (1978年度)

品名	單位	價格
손목시계(침성대)	1개	180원
재봉틀(북한제)	1대	380원~500원
스피카(천리마)	1개	16원
자전거(제비표)	1대	180원
라이다(기름용)	1개	3원 50전
벽시계(개성제)	1개	50원
텔레비전(북한제)	1대	180원~380원

出處: 韓國研究機關 B 資料

風俗

冠婚喪祭

○結婚式: 結婚의 擇日은 從來의 吉凶을 가리는 風習이 없어지고, 生産에 支障이 없는 公休日 또는 日曜日을 擇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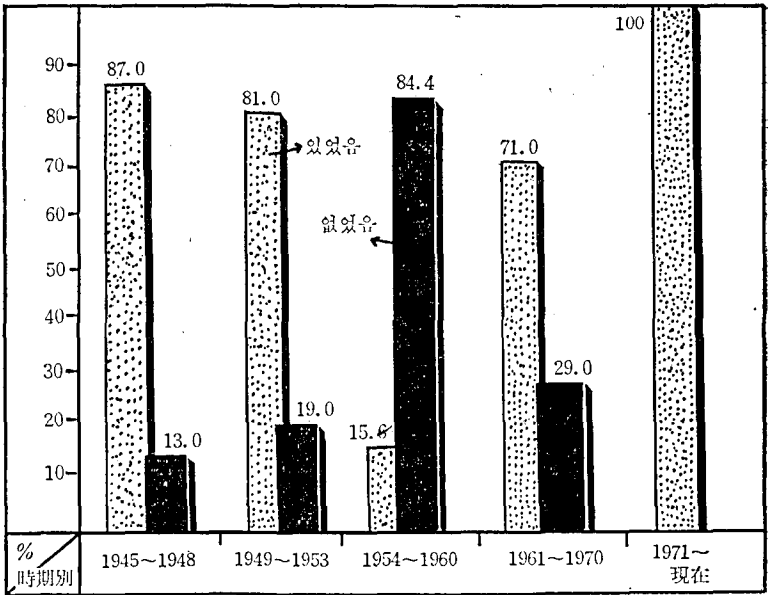
禮式場所는 會議室 아니면 신부의 집에서 擧式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禮服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平素에 입는 옷차림으로 가슴에 붉은 造花를 단다. 主禮는 대체로 自己가 속해 있는 職場 責任者 協同農場 管理 幹部 또는 黨 및 社會團體 幹部가 서며 간단한 격려사와 선물 교환 및 祝辭로서 式은 끝난다.

式이 끝난 후 신혼 여행은 가지 않고 식당 또는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질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을 利用해서 살림집을 꾸민다.

○回 甲：休戰後 1950年代는 經濟的인 여유가 없을 뿐더러 식량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回甲·生日·돌잔치가 모두 금지되었는데, 1960年代 後半期부터 1970年代에 들어와 回甲 잔치 및 돌잔치가 목인되는 경향이 있다.

回甲잔치 有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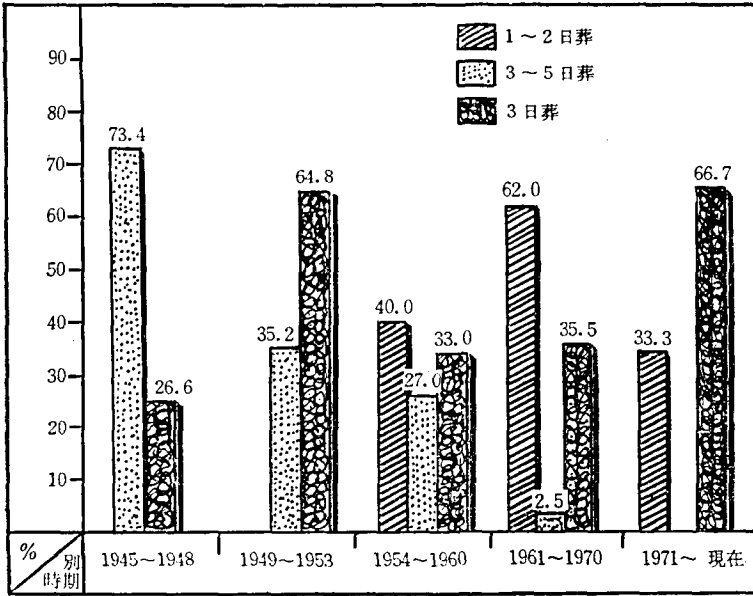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葬 禮：葬儀는 普通 3日葬이나 1~2日葬의 경우도 많다. 葬禮式과 埋葬은 都市의 경우는 <綠化事業所> <便宜協同組合> 등이 葬禮 一切를 맡아서 처리해 준다. 農村地域에서는 상여가 없어지고, 달구지 또는 트럭에 의해 관이 운반된다. 葬地는 지정된 공동 묘지만을 쓸 수 있으며, 火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는 것이 없고, 머리에 굴건을 쓰고 팔에 검은 천을 두르는 경우도 있다.

葬 禮 期 間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祭 祀：祭祀도 다른 風習과 같이 6.25 前까지는 별다른 統制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 후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一部 家庭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한 方法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다가 60年代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秋夕날에 <省墓>하는 것과 직계 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하게 되었으나 傳來的인 祭祀의 뜻과 形式은 사라지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祭祀>를 지내야 하는데, 그것은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敎示>에 따른 것이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낡은 생활 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 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던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㉔

名 節

名節은 첫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 <음력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속적으로 즐기는 날>^㉕ 등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名節만이 지켜지고 있을 뿐, 두 번째 개념의 名節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1946年 6月 24日에 發表된 勞動法令에서는 1月 1日, 3月 1日, 5月 1日, 8月 15日, 12月 31日을 名節로 規定하여 이날을 公休日로 定했다.

그 후 1946年 11月 3日 최초로 실시한 <선거일>을 記念하기 위해 11月 3日을 <永遠한 民族의 名節>로 決定했다.^㉖

그러나 이러한 명절과 함께 一般住民들 속에서는 舊正·8月 秋夕·5月 단오절과 같은 傳來的인 음력 名節들이 그런대로 지켜져 내려오다가, 休戰後 社會主義 改革이 本格化되자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1950年代 후반기에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勞動法令에서 규정한 名節中에서 <3月 1日>, <8月 15日>과 그 후에 決定한 <11月 3日>은 없어진 反面에, 4月 15日(金日成 生日)·9月 9日(人民共和國 創建日)·10月 10日(勞動黨 創建日) 12月 27日(社會主義 憲法 制定日)등을 새로운 名節로 定하게

㉔ 전국 농업자매회 김일성 연설, 로동신문 (1974. 1. 13).

㉕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 조선말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68), p. 427.

㉖ 북조선 법령집 (평양: 1947. 11), p. 305.

되었다. ㉔

민俗

舊名節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傳來의 民俗놀이도 없어지거나 새로운 形態로 變形되었다.

그러나, 民俗놀이와는 달리 民俗的인 資料(북장·그릇·서반·활) 등을 保存하는 民俗博物館이 설치되어 있다. 이 민속박물관은 1956年 2月 10日에 開館되었는데〈原始社會〉, 〈노예 사회〉, 〈봉건사회〉, 〈10世紀 以後〉 등으로 區分하여 해당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㉕

民俗놀이의 變形

時 期	內 容
6. 25前	傳統 民俗놀이 存續 一그네, 씨름 (단오) 一널뛰기, 율놀이, 연날리기(구정 초) 一농악부(농촌), 북청 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50年代	民俗놀이 一部가 생산성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一농악을 行事に 利用(8.15, 5.1절 등) 一노동자의 놀이로써 씨름, 그네, 즐다리기 장려
60年代 以後	새로운 形態로 變形 一군중적, 集團的인 놀이로 變形 一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이 美軍) 一씨름, 그네를 민족 경기로 채택

信 仰

사회주의 헌법 제54조에서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은 反宗教 宣傳의 自由만이 保障되고 있다. 그것은 宗教를 미신으로 보고 있는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宗教觀에서 알 수 있다.

㉔ 조선중앙년감 (1976년판), p. 360 및 (1974년판), p. 108.

㉕ 조선중앙년감 (1969년판), p. 192.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다.”^㉞

해방 후 宗教人 團體로서 <北朝鮮 基督教徒聯盟> <北朝鮮佛教總聯盟> <天道教 靑友黨> 등이 組織되었으며, 6.25前까지는 宗教人 團體를 活用하는 時期였기 때문에 宗教生活에 대한 억제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戰爭으로 인한 宗教施設의 파괴와 本格的인 反宗教 政策의 실시로 50年代 후반기에는 모든 종교 행사가 소멸되고 말았다.^㉟

北韓을 訪問한 한 日本人은 案內員에게 北韓의 基督教 實情을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對答을 얻었다.^㊱

“물론 平壤市에는 教會가 없다. 全國어디를 가도 단 하나의 教會도 찾아볼 수 없다. 산속에는 몇 개의 절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도 곧 없어질 것이다. 朝鮮에는 基督教도 佛敎도 금지되고 있지는 않다. 信仰의 自由는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느님에게 정성껏 빌어 보았자 먹을 음식이나 살 집을 얻을 수는 없다. 김일성 수상의 지도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糧食·衣服 및 住宅의 걱정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基督教을 믿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1972年 南北對話가 시작되자, 有名無實했던 宗教團體들을 다시 부활시켜 다음과 같은 左傾 宗教人들의 國際會議에 代表를 參加시킨 바 있다.

—1974. 8. 2 <세계 교회협회>(WCC): 가입 좌절.

—1975. 1. 8~13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인도 개최)에 기독교

㉞ 김일성 저작선집 1권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67), p. 173.

㉟ 1958. 4. 29. 전국사법·검찰인군 회의에서 김일성은 이만화 목사를 반혁명분자로 규정했다. 김일성선집 5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 453.

㊱ 和田洋一, “北朝鮮の印象”, 朝鮮研究月報 (東京 No. 14), p. 22.

교도 대표(김성률) 참가.

—1976. 7. 26 <제 4 차 아시아 佛敎徒 平和大會>(동경 개최), :
正式會員으로 가입.

土俗信仰인 성황당, 기우제, 무당, 푸닥거리 등은 휴전 후에 급
지령이 내려졌으나 아직도 점, 관상, 푸닥거리는 비밀리에 행해
지고 있다 한다.

勞動·保健

勞 動

北韓에서는 노동이 個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共同의 目的과 共同의 利益을 위한 集團勞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1958年 8月, 생산수단에 대한 社會的 所有가 唯一的으로 支配하게 되고, 中央集權的인 계획 경제가 철저하게 實施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勞動을 集團化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主義的인 集團勞動에 모든 公民은 참가할 의무와 권리가 法的으로 규제되고 있다. 즉 1946年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이 發表된 바 있으며, 그 후 內閣決定 등으로 未備點을 補完해 왔는데, 1978年 4月 18日 最高人民會議 6期 2次會議에서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勞動法이 채택되었다.

이 勞動法에 규정돼 있는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 勞動年齡: 滿 16歲부터

○ 勞動時間: 8時間

3名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女性勞動者는 6時間

○ 勞動組織: 都市와 農村의 모든 勞力資源을 統一的으로 動員 利用

○ 休息: 1週日 1日 休息

社會主義 名節日 休息

① 노동신문 (1978. 4. 19).

14日間の 定期休暇

職種에 따라 7日 내지 21日間の 補充休暇

産前・産後 77日間 休暇

○社會保障： 질병・부상은 6個月까지 一時的 補助金 支給, 6個月後부터는 勞働能力 喪失年金 支給

○年老年金： 男子 60歲, 女子 55歲가 되면 근속 年한에 따라 年老年金 支給

勞働年齡을 從前的 14歲로부터 滿16歲로 높인 것은 11年制 高中 義務教育制의 實施와 관련된다. 즉, 16歲까지는 義務教育期間이므로 職業的인 勞働에는 參加할 수 없는 것이다.

勞働時間은 一般 勞働職場에서는 8時間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광산・금속・化學 부문 등의 勞働職場에서는 7時間 또는 6時間制가 實施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勞働生活 組織으로서 8時間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學習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法的 規定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는 私生活을 위한 時間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큰 工場・企業所들에서는 3交代가 實施되고 있으므로 8時間制가 自動적으로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은 建設 및 農牧場과 같은 職場들에서는 연장되기 마련이다.

특히 計劃量 達成에 目標를 둔 〈千里馬運動〉,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 〈速度戰〉과 같은 社會主義 경쟁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勞働時間의 절대적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다.

休息은 勞働者 및 事務員의 경우 每周 1時間이며, 協同農場員은 10日에 하루씩 쉴 수 있다.

年間 有給休暇(協同農場員 除外)는 14日間인데, 休養所 및 靜養所 施設이 不足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를 利用하는 근로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休養所 및 靜養所는 國家 또는 工場 企業所 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는 約 300個所 以上

으로 推算된다.

1971年 12月 以後부터는 이들 휴양소, 정양소를 協同農場員들에게도 冬季에 限해서 利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年老年金은 男子는 만 60歲, 女子는 만 55세로서 一定한 勤續 勞動年限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되며, 노동 재해·질병·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근로자에게는 사회 보험제에 의한 一時補助金을 주며, 만약 그 期間이 6個月이 넘게 되면 勞動能力 상실 연금을 지급한다.②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를 좁히어, 女性을 부업으로부터 해방한다는 3대 기술혁명의 과제를 내세운 바 있으며, 그를 위해 각종 설비의 自動化 및 技術革新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모든 個人은 자기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일원화된 勞動力 배치 계획에 따라 자기의 희망이나 특기와는 관계 없이 직장 배치를 받게 되며, 이러한 노동력 배치에 따라 각자의 주거지가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다.

1979年 9월에 열린 <전국 로동행정 일군대회>에서는 勞動力의 편중 배치와 流動的 現象의 시정책으로서 “勞働을 固着시키며 專門技術分野에 있어서는 代를이어 한 가지 職種에 精通해야 한다”.③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自己의 직업을 子息에게까지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北韓地域에는 <勞働者區>라는 것이 産業施設이 있는 地域을 擇해서 到處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集團的 勞力動員과 勞動規律 強化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多目的性을 띤 行政單位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勞働者들은 <로동자구>에서만 살 수 있으며, 그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있는 自由가 없다.

② 사회주의 로동법 제74조, 동 75조. 로동신문 (1978. 4. 19).

③ 전국 로동행정 일군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 로동신문 (1979. 9. 27)

保健 · 醫療

保健政策은 <사회주의 헌법> 第48條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로 無償治療制度의 공고 발전, 둘째로 豫防醫學的 方針 관철, 셋째로 醫師 擔當區域制 실시, 넷째, 사람들의 生命保護와 健康 增進으로 되어 있다.

無償治療制는 점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52年 11月까지는 무상치료 대상 범위가 3歲 未滿의 幼兒 · 革命遺家族 · 孤兒院 및 養老院 收容者 · 精神病者 · 救急患者 · 極貧者들이었는데, 1952年 11月 <內閣決定 第203號>에 의해 個人 商工業者 · 개인 農民을 除外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0年 2月 27日 最高人民會議 決定으로 全般的인 무상치료가 全地域에서 實施하게 되었다.④

그러나 越南者 家族 · 反動 宗派分子로 숙청된 사람과 그 家族 등 成分이 좋지 못한 住民들은 아무리 重病에 걸려도 高價의 藥品을 쓸 수 없으며, 市 · 區域 · 郡 病院 이상 시설이 좋은 病院에는 入院할 수 없다고 越南者들은 한결같이 證言하고 있다.

그리고 豫防醫學的 方針도 1953年 휴전 후부터 시도했으나 1960年 1次 5個年計劃이 끝나서 保健施設과 保健要員이 어느 程度 확보된 다음부터 實施하게 되었다.

1969년부터 各都市에서는 小兒科 · 內科 · 產婦人科 醫師 담당 구역제와 炭鑛 · 鑛山에서는 職場 · 坑 醫師 擔當區域制가 實施되었었는데, 醫師 擔當區域制란 各 醫師가 自己 맡은 責任區域에 나가서 위생 보건 · 예방 접종 · 건강 점검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個年 計劃期間에 醫療機關 1萬個所, 各種 專門病院 및 郡病院 및 專門科 增設, 里診療所의 病院化, 各里마다의 兒童病院 1個씩 設置 등을 計劃한 바 있으며, 2次 7個年 計劃期間에는 예방치

④ 조선중앙년감 (1961년판), p. 228.

로 집단수를 1.3倍, 病院 침대수를 1.2倍, 아동병동의 擴大, 의사·준의사의 증원 등을 計劃하고 있다.

한편, 東醫(漢方)治療에도 큰 比重을 두고 있는데, 東醫治療을 政策的으로 장려한 것은 휴전 후부터이며, 그 治療機關도 中央으로부터 里까지 體系化되고 있다.

1954年 6月 4日 內閣決定 第79號<인민보건을 개선강화 할데 대한> 決定이 있는 후, 漢方醫師에 대한 資格 試驗을 實施하고 漢醫院을 開院하게 했다. 1956年부터는 國家治療機關에 漢醫師를 두게 되었고, 큰 病院에는 漢方科가 設置되었다.

그 후 東醫師(漢醫師)의 자질을 向上시킬 목적으로 級數制를 實施했는데, 有能한 東醫師에게는 東醫師 1級·2級이란 資格을 주었다. 1960년에 1級 수여자는 239名, 2級 수여자는 1,495 명이나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東醫 治療體系가 確立되어 中央에는 東醫中央病院, 各道에는 東醫病院이 설치되고, 市·郡 病院과 주요 産業病院에서 東醫科를 신설했다.⑤

最近에는 病院마다 藥草를 責任 栽培토록 하여 新藥 대신 東藥(漢藥)에 의한 치료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浬장하고 있다.⑥

防疫機構로서는 中央에는 보건부 산하 중앙 위생방역소, 各道에는 도 위생방역소, 市·郡에는 위생방역소가 있으며, 국경과 海岸地帶에는 검역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최근 北韓에서 새로 건설된 대표적인 病院으로서는 1978年 7月 頃에 준공된 <해주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들 수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 총건평이 3萬m²이고, 1,000餘 名의 外來患者와 600名의 入院患者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⑦ 그러나 北韓의 醫療機關들은 그 시설이 落後할 뿐 아니라, 醫藥品이 不足하므로 환자들이 治療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民間療法과 같은

⑤ 조선중앙년감 (1961 년판), p. 229.

⑥ 로동신문 (1979. 10. 4).

⑦ 평양방송 (1978. 7. 3).

前近代的인 治療法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醫 療 機 關 現 況

時 期	病 院 數	寢 臺 數	醫 師 及 準 醫 師 數 (人 口 萬 名 當)
1946	85	2,031	1.1
1949	175	6,630	2.2
1953	329	13,829	3.5
1956	313	18,104	6.0
1959	410	28,597	8.7
1960	447	32,698	11.0
1963 ⁽¹⁾	535	48,133	15.8
1964 ⁽²⁾	5,321 (診 療 所 包 含)	52,037	19.0
1967 ⁽³⁾			26.3
1970 ⁽⁴⁾	1960年보다 病院 및 診療所 數는 1.3倍, 醫師와 準醫師 3倍로 증가		
1975 ⁽⁵⁾	1971~1975.8까지 病院 數는 70年의 2.8倍, 寢臺 數는 1.5倍로 增加		

出處 : (1) 以上은 조선중앙년감 (1964년판), p. 326.

(2)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p. 188

(3) 조선중앙년감 (1968년판), p. 107.

(4) 5차 당대회 보고, 로동신문 (1970.11.3)

(5) 중앙통신 보도, 로동신문 (1975.11.23)

조선중앙년감 (1978년판), p. 294

社會統制와 逸脫

成分 및 階層構造

北韓은 解放以後 數次에 걸쳐 成分 檢討事業을 실시하여 住民들을 成分別로 嚴格히 區分하고, 成分에 따른 階層別 職種 職位를 맡기고 있다.

이는 反黨, 反革命的 勢力의 索出과 思想性을 點檢, 住民들에 對한 政治 社會的 統制를 加하기 위한 措置인 것이다.

서울大學校 崔弘基 교수는 이같은 北韓의 階級政策이 70年代에 들어와 급격히 增大하는 專門的, 技術的 人力需要에 副應하기 위해 社會的 機能과 關連하여 政治 經濟的 均衡主義의 階級政策으로 바뀌었다고 主張하고 그 根據로 金일성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했다.①

“사람의 成分은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고 늘 끊임없이 變한다.②”

“본인이 지금 革命活動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의해서 評價해야 한다.③”

成分 分類 및 待遇

區 分	對 象	(70年) 比率	待 遇
核心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革命戰士 遺家族 ◦ 被殺, 戰死者 家族 ◦ 黨, 行政幹部 家族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 政權, 軍幹部 登用 ◦ 他階層과 分離 特惠措置 (進學, 昇進, 配給, 居住, 醫療)

① 崔弘基, 北韓體制 및 社會豫測 (국토 통일원, 1978), pp. 5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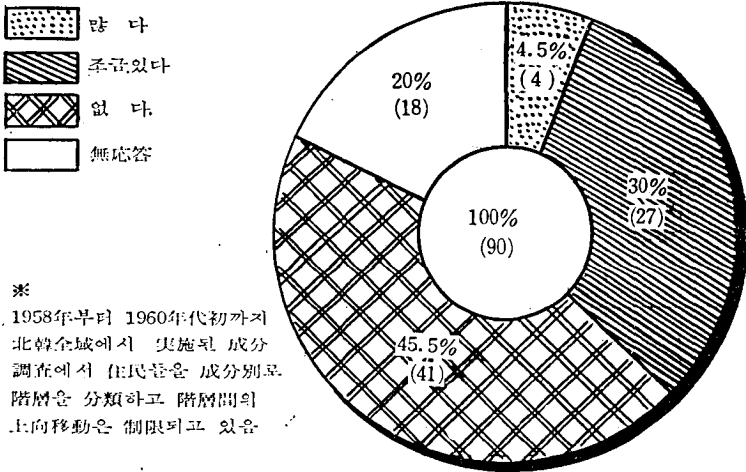
② 金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1974) p. 43.

③ 上揭書, p.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幹部 家族 ※ 共產體制 統治階層 		
基本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般勞動者, 農民 家族 ◦ 一般事務員 家族 ※ 社會主義 體制的 基本群衆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種 下級幹部等 技術者 進出 ◦ 極少數 核心層으로 昇格
複雜階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主, 資本家 家族 ◦ 日帝公職者, 宗教 人 家族 ◦ 越南, 附逆者 捕虜 家族 ◦ 肅清, 犯罪者 家族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有害, 重勞動에 從事 ◦ 進學, 入學, 入黨, 封鎖彈壓 ◦ 制裁, 監視, 包攝對象으로 分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制裁: 強制移住 隔離收容 · 監視: 指名하여 恒時 動 態監視 · 包攝: 集中的教養, 洗腦 ◦ 極少數 基本層으로 再分類 (子女)

出處：韓國研究機關 B 資料

複雜階層에서 基本階層으로의 移動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住民統制

政治 思想的 統制

住民統制의 基盤으로서 黨을 頂點으로 各種 社會團體를 組織, 義務의으로 加入 集團化 시키고, 黨을 國家權力의 中樞로 삼아 모든 것을 지도 감독, 統制하며 下部는 無條件 上部에 服從케 하고 있다.④

政治保衛部를 별도 설치하여 주민 및 集團의 동태를 비밀 감시 시키고 反黨 反革命的 勢力의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通해 不純分子를 숙청한다.

“思想的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빛보다도 중요하다.”⑤하여 <김일성 흙모>를 實現시키되, 自我 및 相互批判을 通해 思想性을 고취시킨다.

經濟的 統制

黨體制가 人間 生存의 基本手段을 장악하여 住民統制에 利用하고 成分階層에 따라 差別 待遇를 한다.

예컨대 基本衣服은 염가로 配給하되 기타는 高價로 統制하여 同一 階層의 衣生活을 劃一化하는 反面, 高級品の 보편화를 억제한다.⑥

食糧은 配給制로 하고 勞動者와 非勞動者(扶養家族)와의 지급 기준에 差異를 두어⑦ 勞力動員의 基源의으로 봉쇄하며, 住宅에 있어서는 職位를 고려 配當하고, 職場 中心으로 아파트 또는 聯立(文化) 住宅型으로 集團化⑧, 動員 統制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④ 조선로동당 규약 제4장 33, 제9장

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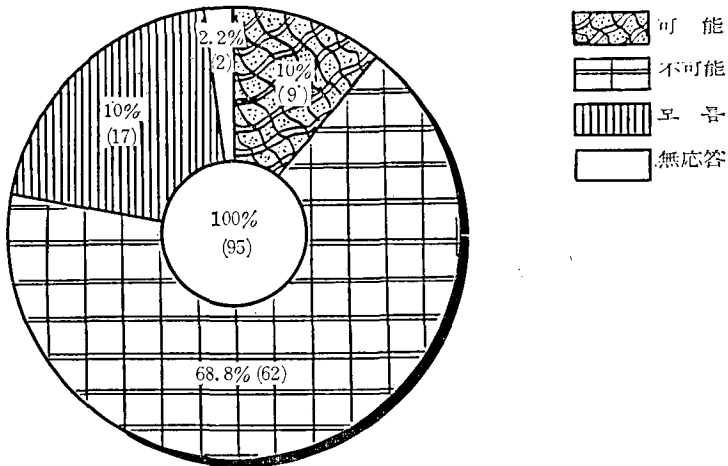
⑥ 北韓經濟 統計集 (국토통일원, 1977), p. 868.

⑦ 上揭書, p. 894.

⑧ 사회주의 노동법 (1978.4.18) 제69조, 北韓經濟 統計集 (국토통일원, 1977), p. 903.

〈사회주의 헌법〉은 希望에 따른 職業選擇의 自由를 規定하고 있으나^⑨ 實際는 職業을 區分, 職位를 부여하며 個人의 素質, 能力, 希望, 學力 등은 副次的이며 職場配置를 恣意로 拒否할 수도 없다.^⑩

職業不滿時 轉業可能性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住居移轉은 職場 移動이 統制되고, 또 家屋이 公有化되어 있어^⑪ 職場 調整, 不純分子 僻지 이주, 都市人 農村 移住 같은 措置가 있을 때만 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住民의 遊休로 인한 勞動力 손실과 心理의 동요 防止를 위해 旅行은 統制되고 公務 旅行만이 許容된다. 旅行時는 職

⑨ 사회주의 헌법 (1972. 12. 27) 제56조

⑩ 사회주의 노동법 (1978. 4. 18) 제18조

⑪ 조선중앙년감 (1976년판, p. 370)

場長이 發行한 旅行證과 糧券, 衛生證 등을 所持하고 發着時 各 各 安全駐在員에 申告하도록 되어있다.¹²⁾

家庭生活 統制

地方行政 末端組織인 15~20世帶 規模의 人民班¹³⁾은 班員의 家庭生活로부터 個人問題까지 討議 決定하고 相互 批判하는 역할을 한다.

또 1958년부터 시작된 5戶擔當制는 5戶씩 世帶別로 나누어 熱誠黨員 1名씩을 配置, <5戶擔當 宣傳員>으로 任命하여 이들은 擔當 世帶의 各 家庭生活 全般과 思想的 監視 指導를 담당하고 있다.

5戶擔當制에서는 “擔當員이 每家庭, 每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通하여 그들의 知識 程度, 소질, 취미, 희망, 思想 동태를 正確히 了解할 수 있다……매개 주민들을 혁명 과업 실천에 적극 動員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¹⁴⁾

社會的逸脫

北韓에서는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道德의 可變性和 階級性을 주장하고 있다.

“도덕은 사회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사회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계급 사회에서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¹⁵⁾

이러한 觀點으로부터 出發해서 1958年 末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公산주의 道德問題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 후,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가 더욱 강화되고 社會主義 建設이 심화됨에 따라 公산주의 도덕에서 요구하는 內容도 이에 맞추어 달리해 왔다.

12) 韓國研究機關 B 資料

13) 로동신문 (1972. 6. 22) “……인민반들을 천리마 인민반으로 되게……”

14) 근로자 1962. 11. (하), p. 30

15)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8.

오늘날 공산주의 도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 정신, 자력 경쟁의 혁명 정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공산주의적 인간성과 문화성”등이다. ⑩

이러한 共產主義의 道德의 要求와는 달리 그에 위배되는 社會的 逸脫行爲들이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逸脫行爲(犯罪)가 輕할 경우에는 범행 행위자가 속해 있는 黨 및 社會團體들에서 비판 또는 책벌形式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法的 制裁를 받기 마련이다.

非道德的 行爲, 범죄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大赦令이 發布된 事例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赦免實施現況

일 시	사 면 대 상	계 기
1948. 10. 12		인공 수립
1952. 11. 18	3년 이하 징역형	전시 관대 정책
1953. 7. 28	3년 이하 징역 3년 이상은 형벌을 절반으로 감형	휴전과 관련
1968. 6. 6	“	정권 수립 20주년
1972. 1. 25	5년 이하 징역	김일성 회갑
1975. 9. 22		당창건 30주년 기념
1978. 7. 19		정권 수립 30주년

※ 1978년 7월 19일에 발표된 사면 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지 사람도 우리 당이 이끄는 영광스러운 혁명대열에 다시 들어서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범죄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대사를 실시할데 대한 정령시행 세칙>을 승인한다. (보통신문, 1978. 7. 20).

⑩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3), p. 58.

教育·文化

教 育

教育政策

北韓의 教育은 그들의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發展에 따라 그 內容을 달리해 왔는데, 오늘의 教育政策을 명확히 提示하고 있는 것은 1977年 9월에 發表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강령)>이다.

○目標: 건전한 社會主義·共產主義 革命鬪士 및 共產主義的 새人間 養成①.

○政策方向: 全般的 義務教育·無料教育의 強化, 일하면서 배우는 教育和 國家的 어린이 保育敎養의 強化.

○教育內容: 思想教育을 爲主로 하면서 科學技術教育和 體育教育을 統一的 過程으로 進行.

○教育方法: 啓導 啓蒙의 方法, 理論과 實踐教育和 生産勞動의 結合,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結合, 團體 生活의 強化②.

學校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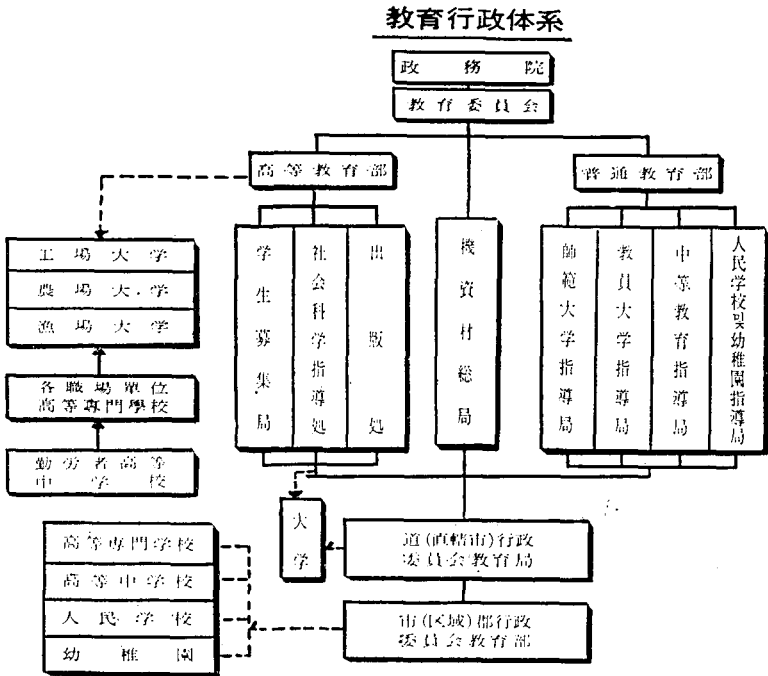
教育制度

○義務教育: 1956년부터 4年制 人民學校의 初等 義務教育制가 實施되어 오다가 1958년부터는 3年間の 中等教育까지 확대하여 義務化하였다.

그러다가 9年後인 1967년에는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교육제>가 實施되었다. 이는 4年制의 人民學校와 5年制의 中學校를 義務

① 사회주의 헌법 제39조.

②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근로자(1977.10호), pp. 2-29.



制로 한 것이고, 中學校의 5年 過程中 3年間은 一般的인 中學教育을 그後の 2年間은 한 가지 이상의 技術을 습득시키는 技術教育으로 되어 있다.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에서는 6個年計劃期間에 義務教育 年限을 1年間 延長하여 10年制 義務教育으로 할 것을 決定했으며, 이 決定에 따라 1972年 7月 黨 5期 4次 全員會議에서 <10년제 高중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同年 9月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할 것을 討議했다.

1975年 9月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따라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유치원 고급반 진학 나이인 만 5歲로 1년이 낮아졌다. 全地域에서 實施되기 시작한

義務教育制度 變遷 過程

195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等義務教育 實施 (1955. 3 最高人民會議 9차회의에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리 1개교 目標로 4年制 人民學校 확장 추진 ◦ 一部 初級中學과 高級中學校를 人民學校와 병합 ◦ 56. 8. 1부터 實施
1958.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年制 中等義務教育 實施 (1959. 10. 2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제 4차 회의에서 법령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學校 4年制와 中學校 3年制 존속 ◦ 기술교육 위주의 教育제도
1967.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年制 技術義務教育 制採擇 (1966. 11. 24 最高人民會議 第 3期 6次會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學校 入學年齡을 만 7세에서 만 6세로 인하 ◦ 人民學校 4年, 中學校 5年 ◦ 一部 教育體制 改編
1972.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年制 義務教育制 採擇 (1973. 4. 10 最高人民會議 5期 2次會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 9부터 段階的 實施 ◦ 유치원 1년간 (만 5세)의 학교전 義務教育實施 ◦ 人民學校 4年, 高等中學校 6年の 義務教育實施

出處: (1) 조선중앙년감(1961년판), p. 210.
 (2) 조선중앙년감(1966~1967년판), p. 132.
 (3) 조선중앙년감(1974년판), p. 105.

11年制 義務教育에서는 수업료는 물론 教科書도 무상으로, 그리고 校服과 學用品도 무상, 또는 一部 부담으로 支給되고 있다 한다.

人民學校 및 學生現況

(年度는 학년 말)

年 度	學 校 數	學 生 數(千名)
1947	2,482	1,183
1950	3,882	1,474
1954	3,399	1,391
1957	3,777	1,508
1960	4,145	957
1964(1)	3,992	994(3)
1965	3,985	1,113
1975(2)	4,700	

出處: (1) 이상은 조선중앙년감(1964년판) p. 327.
 (2) 조선중앙년감 (1965년판) p. 167.
 (3) 최고인민회의 5기 5차회의 김일성 연설, 노동신문 (1975. 4. 10)

北韓의 無償義務教育에 대해 日本의 左翼界 言論人은 “……全國民의 강제노동의 결과를 징발한 사실은 은폐하고 無償義務教育만을 내세우는 欺瞞에 속을 정도로 세계는 어리석지 않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 評했다.③

中等課程學校 및 學生現況

(年度는 학년 말)

年 度	中 等 學 校	學 生 數(千名)
1947	246	103
1950	995	411
1954	1,095	328
1957	1,374	509
1961	3,694	1,115
1964	4,365	1,166(1)
1965	4,361	989(2)
1975	4,100(3)	

出處：(1) 이상의 數値는 조선중앙년감 1964년판 p.327.

(2)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167~168.

(3) 로동신문(1975. 4. 10).

※ 1949년부터 1957년까지는 중등전문학교의 초급중학교와 합계. 1961년부터 1965년까지는 초급중학과 기술학교의 합계.

○ 高等教育：北韓에서 처음으로 大學이 開校된 것은 1946年 9月 1日이다. 즉, 1946年에 組織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同年 9月 1日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평양에 建立할 것을 決定함으로써 9月 1日부터 開校를 보게 되었는데, 이 때 같이 開校한 大學은 咸興醫科大學이고, 다음 달인 10月에는 興南工業大學·海州教員大學·清津教員大學 등이다. 9月 1日 開校한 것은 學年初가 9月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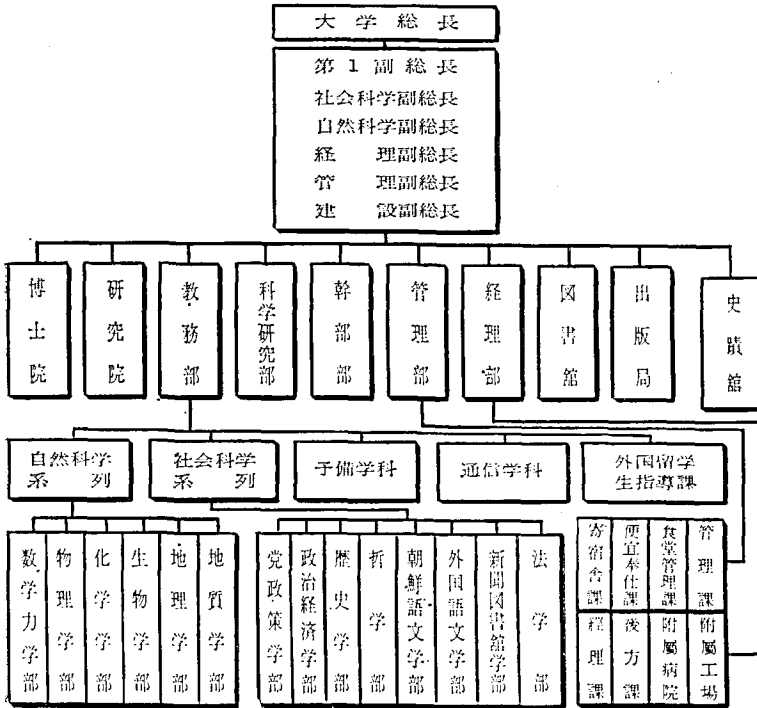
1948年 7月 7日<北朝鮮 人民委員會 第157號 決定>에 의해 高等教育 擴張策의 일환으로써 <김일성 종합대학>의 農學部·醫學部·工學部를 分離 獨立시켜 3個의 單科大學을 만들었다④.

1948年 9月 9日 北韓政權이 수립된 후 元山教員大學을 비롯한 4個의 大學을 增設하여 6.25 前에는 모두 15個 大學에서 11,984名

③ 佐藤勝己「朝鮮研究」177(1978. 4. 15)論文

④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 128

金日成綜合大學 機構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 金日成 綜合大學은 1965.6 黨中央委 決定에 따라 政務院에 直屬됨.

의 學生이 있었다. ⑤

休戰後 3個年 復舊建設期(1954~1956)에는 開城의 松都政治經濟大學과 平壤人民經濟大學 등이 새로 신설되어 1956年 9月 現在 19個大學에 學生數는 16,592명이었다. ⑥ 이는 戰前보다 4個 大學과 4,600명의 學生이 늘어난 것이다. 5個年計劃期間(1957~1960)에는 全般的 中等義務教育을 實施하는데 目標을 두었기 때문에 高等교육부문에서는 中等敎員의 大量 養成을 위해 敎員大學과 師範大學

⑤ 조선중앙년감(1951~1952년판), p. 569.

⑥ 조선중앙년감(1958년판), p. 141.

을 擴張시켰다.

1960年 8月에는 로동당 擴大全員會議을 開催하고, 7個年計劃 遂行에 필요한 기술자 確保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工場大學>, <夜間大學>設立을 決定하였다. 同決定에 따라 큰 工場·企業所에 24個의 工場大學(工業系)이 新設되어, 大學은 76個로 增加되었다. ⑦

7個年 人民經濟計劃 期間(1961~1970)에는 工場大學을 더 많이 增設하여 大學數를 128個校, 學生數를 22만 7천명까지 成長시킬 것을 計劃하였는데, 1970年 11월에 개최되었던 勞動黨 第5次大會 報告에서 大學數 129個로 發表함으로써 計劃을 達成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6個年 人民經濟計劃 期間(1971~1976)에는 기술자·전문가와 인텔리를 50萬名으로부터 100萬名으로 배나 養成할 것을 目標하고, 晝間大學·工場大學·通信大學·夜間大學 등을 大幅 增設한 결과 1979년 현재 大學總數가 162個로 增加되었다. ⑧

大學 및 學生數의 年度別 現況

年 度	1947	1948	1949	1953	1954	1955	1956	
大 學 數	4	11	15	15	16	16	19	
學 生 數	3,000	8,731	11,984	11,268	7,700	12,857	16,592	
年 度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大 學 數	20	23	37	71	92	97	96	
學 生 數	20,510	25,640	52,000	97,000	182,000	203,000	214,000	
年 度	1967	1969	1970	1971	1972	1975	1978	1979
大 學 數	98	100	129	136	140	150	158(1)	162(2)
學 生 數	未發表	—	—	—	—	—	—	—

出處: 朝鮮중앙년감, 로동신문에 의거작성.

: (1) 로동신문(1978.9.10).

※ 1973년 4월, 11년제 의무교육 결정에 관한 보고에서 大學과 고등기술학교 학생 總수를 24만 명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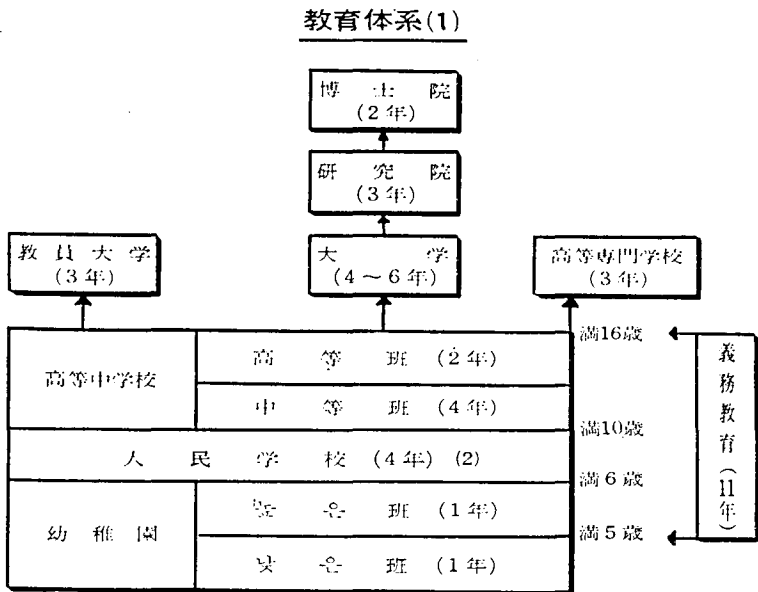
(2) 로동신문(1979.9.9).

⑦ 朝鮮중앙년감(1961년판), p.212.

⑧ 로동신문(1979.9.9), 公化국 창건 31주년기념 박성철 보고.

한편, 高等教育體系에 속하는 것으로서 高等技術學校가 있었는데, 이는 1972年 9月 새로운 學制로 改編됨에 따라 高等專門學校로 그 名稱이 바뀌고 수업 年限도 2年에서 3年으로 되었다. 現在 高等專門學校가 郡마다 1個 以上씩 있고, 그 數는 600個에 達한다.⑨

大學 및 高等專門學校 學生들은 大部分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⑩ 그러나 高等教育은 個人의 希望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黨의 추천에 의해서만 可能하며 學科의 선택에 있어서도



出處: 國土統一院 分析資料

註 (1) 1973. 4. 10 최고인민회의 5기 2차회의 보고, 로동신문(1973. 4. 11).

※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體系로서 큰 工場, 協同農場 등에 工場大學, 農場大學, 漁場大學과 공장 및 농장 고등전문학교가 있고, 成人教育體系로서 근로자 중학교, 근로자 고등중학교가 있음.

(2) 人民學敎 4년 과정이 高等中學校內 人民班에서 이수되기도 한다(조선중앙년간 1978년판 p. 226).

⑨ 조선중앙년간(1976년판), p. 338.

⑩ 사회주의 헌법 제42조.

教 育

黨의 양성계획에 의해 配定받게 된다.

즉 大學進學에서 本人의 希望이 참작될 수 없으며, 黨에서 選
발되고 추천된 者만이 大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敎員養成

11年制 義務敎育 實施에 따라 이에 要求되는 敎員을 充當하기
위해 師範大學을 各道마다 3~4個씩 設置하고 있다. 道마다 2個의
師範大學과 2個의 敎員大學이 設置되었으며, 第1 師範大學에서는
高等中學 高等班 敎員을, 第2 師範大學에서는 高等中學 中等班敎
員을 養成하며, 第1,2 敎員大學에서는 유치원 敎養員과 人民學校
敎員을 養成하고 있다.

6個年計劃期間에 敎員을 6萬名이나 養成해서 各級學校의 敎員
數가 約20萬名에 이르고 있어서 學生 20名에 敎員 1名이라는 比
率이 나온다.①

敎育內容

敎育內容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發表된 바는 없으나 思想敎育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大學에서는 一般科目보다 金日成勞作·金日成 革命活動 歷史·
朝鮮勞動黨 政策史 등 思想, 政治部門 科目이 重要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最近에는 一般大學의 外國語敎育을 強調, “모든 大學生
들이 한 가지 以上의 外國語를 完全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②

金日成은 外國語에 관한 發言에서 “英語·프랑스語·露語·中
國語, 日本語를 비롯한 여러가지 外國語”로 表現, 英語를 첫째로
들고 있다.③

그리고 高等中學校와 人民學校에서도 金日成革命活動·金日成
革命歷史·朝鮮勞動黨 政策이 講義되고 있다.④

유치원에서는 “만 5세의 어린이들에게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따

①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p. 335-336.

②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9.5).

③ 김일성, <전국 교육 일군대회>(1978.10.1)연설.

④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337.

라 배우도록 하며, 말을 정확히 하며, 人民學校에 入學하여 교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습득하고, 연필 쥐는법, 글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자모와 자기 이름을 쓰며, 일정한 수까지 세고 간단한 숫자를 쓸 줄 알도록 배워주고 있다.”는 宣傳과 같이 유치원의 교과목은 <金日成 어린시절 이야기>, <공산주의 도덕>, <우리말>, <셈세기>, <노래> <도화·공작> 등 總 1,360時間의 教育이 實施되고 있다.⑮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政治思想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集團主義體制에 적응시키고 金日成과 黨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 수 있는 <공산주의적 세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黨 教 育

黨教育機關으로는 郡 黨學校·道 共產大學·金日成 高級黨學校 및 人民經濟大學 등이 있다. 郡黨學校는 里級 幹部를 재교육시키고, 道級幹部和 郡級 責任者들은 金日成 高級黨學校나 人民經濟大學에서 1년반 내지 3年間의 보수 교육을 받는다.

政務院 部長을 비롯한 中央級 幹部들은 每週 土曜日 오후마다 학습을 받을 뿐 아니라, 1년에 1個月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⑯

그밖에 黨 및 行政機關·經濟機關 등의 幹部들 중에서 批判을 받고 現職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短期 洗腦教育도 실시되고 있다.

社 會 教 育

社會教育은 한 마디로 社會人에 대한 思想教育이다. 비록 正規的인 教育은 아니라 하더라도 黨員이나 人民을 막론하고 하루 2시간 이상 學習을 해야 한다.⑰

⑮ 조선중앙년감(1973년판), p. 259.

⑯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189.

⑰ 모동신문(1975. 11. 10).

學習 과목은 주로 <金日成勞作>이며 黨員과 住民들은 自習會·講演會·講習會 등에도 빠짐 없이 참가해야 하고, <전국 학습경연대회>도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幹部들은 土曜 學習, 水曜 講演이 첨가되는데, 이같은 教育體系가 1977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⑯

이 외에도 作業前 휴식 시간에 실시하는 讀報會가 있으며, 朝會 등을 통해서도 思想教育이 실시된다.

黨의 外廓團體인 聯盟·農動盟·女盟 같은 社會團體들의 기본 任務도 組織員들에 대한 共產主義 教養을 強化하는 데 있다.^⑰

1974년 6월부터는 모든 住民들이 언제나 金日成 書籍을 가지고 다니도록 義務化하고, 그 위에 金日成에 대한 學習까지 시키고 있다고 越南者들이 證言한다.

그 밖에 黨政策 宣傳機關인 각종 機關紙(新聞)·라디오·TV·映畫·演劇·雜誌 등 매스 미디어와 각종 文化活動 역시 社會教育의 일익을 담당한다.

研究機關

科學研究的 最高機關으로서 政務院直屬의 科學院과 社會科學院이 있다.

科學院은 1952年 10月 9日<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 결정 제183호>에 의해 創設되었으며, 社會科學院은 1964年 2月 科學院의 一部가 分離되어 別途로 組織되었다.^⑱ 이 두 科學院에는 分野別로 몇 개의 委員會와 研究室 등을 가지고 있으며, 專門의 研究事業外에 全般的인 과학 연구의 指導와 과학자의 養成, 그리고 對外活動 業務를 遂行하고 있다.

그 밖에 政務院의 各部·各委員會의 直屬으로 教育科學院·農業

⑯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 300.

⑰ 김인성지작 선집 4권(평양: 1972), pp. 132-133.

⑱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 170.

科學院·醫學科學院 등이 있다.①

科學者 養成을 위한 別途의 體系로서 研究院과 博士院이 있으며, 이들은 金日成大學을 비롯한 주요한 大學등에 設置되어 있다.②

研究院은 1949年 4月 6日 教育省令 第 3號에 의해 教育相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大學에는 언제든지 設置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現在 研究院의 履修年限은 學士論文의 通過를 포함하여 3年으로 되어 있다.

博士院은 1961年 2月18日 <內閣決定 第 19號>에 의해 大學 및 科學研究機關에 設置하게 되었는데, 入籍 對象으로는 學位(學士)·學職(副教授)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年 以內에 博士 學位論文을 作成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조선중앙년감(1965년판), p. 170.

② 로동신문(1966. 11. 14)

文 化

言 語

北韓의 言語政策은 言語가 가지는 革命的 役割을 높이는 것과 함께 共產主義 革命과 建設에 있어 政治思想 教養 및 住民의 組織 動員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①

<文化語>라 부르는 標準語 政策이 바로 그것이다. 南北韓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서울 말 중심의 標準語를 거부하고, 平壤 말을 중심으로 한 것이 文化語이다.

北韓은 “서울 標準語가 부르좌的 要素와 復古主義的 要素가 있기 때문에 이를 使用하면 人民들의 意識 속에 反動的 부르좌 思想과 封建·儒敎思想을 비롯한 온갖 낡은 思想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②이라는 理由로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에 맞고 <김일성이 몸소 쓰는 우리말>③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學者들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이 文化語는 平壤 말에다 상당수의 威鏡道 사투리가 가미되어, 된소리가 많고 거칠고 공격적이며, 새말은 노동자·농민이 알아듣기 쉬운 말 위주로 만들며 古典 翻譯에도 固有語 사용을 규제하고, 金日成 偶像化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④

1966년 6월 이래, 內閣 직속 국어 사정위원회와 사회 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 연구소에서 어휘 선정, 사전 편찬 작업을

① 김일성,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

② 문화어 학습(평양) 1971년 3호.

③ 上揭書

④ 李炫馥 남북한어의 음성학 및 언어학적 비교연구(국토통일원, 북한종교학술토의 주제발표논문, 1979)

洪妍淑 남북한 언어 개념의 이질화 연구(국토통일원, 북한종교학술토의 주제발표논문, 1979)

하고있다.

해방 후 한글과 漢字를 혼용해 오다가 1949년부터 漢字를 폐지, 學術 研究部門에서만 쓰도록 하고 한글을 전용하고 있다.

文學·藝術

文藝政策

文學 藝術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黨의 指導와 領導를 벗어난 순수한 文藝 活動이란 있을 수 없다. 文學·藝術의 創作과 活動에서 지켜야 할 原則으로 내세우는 것은,

첫째,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이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는 民族의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革命的인 內容, 階級的인 內容)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創作方法이라고 한다.⑤

둘째, 黨性, 階級性, 人民性의 구현이다.

文學·藝術에서의 黨性에 對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이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 되며, 착취 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한 혁명적 문학 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 수 있다.”⑥

文藝作品 創作에서의 主題別 比率은 1964年 11月 7日 <文學·藝術 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鬪爭에 관한 것을 各各 5對 5로, 其中 革命鬪爭에서는 북한 것을 4, 남한 것을 1로 配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 왔

⑤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2), p. 497.

⑥ 김일성 저작선집, 2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 579

다.⑦

文藝創作에서의 主題別 比率

主 題 別	比 率
社 會 主 義 建 設	6
革 命 闘 爭	5 (북한 4 / 남한 1)

그러나 1960年代 후반기부터는 金日成 個人에 관한 것과 <革命傳統>을 內容으로 하는 主題 選定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

다음은 1975年 10月 10日 黨創建 30주년을 記念하기 위해서 全 國 文學藝術 小組員들이 發表한 作品의 주제별 비율이다.

文藝小組員 發表作品의 主題別 比率

主 題 別	比 率
金日成과 黨中央(金正一)	217편 (42.7%)
黨과 革命傳統	53편 (10.3%)
經濟建設	183편 (36.2%)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	55편 (10.8%)

文藝團體

職業 藝術人의 組織體로서는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中央 組織과 道組織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망라된 예술 단체로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 미술가동맹> <조선 음악가동맹> <조선 영화인동맹> <조선 연극인동맹> <조선 무용가동맹> <조선 사진가동맹>등 7개 동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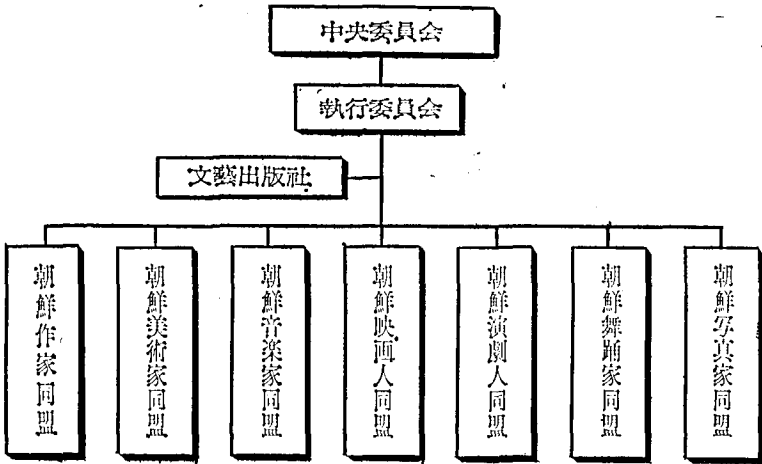
本來 解放後 예술인 단체로서 1946年 3月 北朝鮮 文學藝術總同盟이 發足됐는데, 1951年 3月 越北한 南韓의 藝術團體와 合치여 <朝鮮文學藝術總同盟>으로 改編되었다. 그러다가 休戰 直後인 1953年 9月, 文藝總에서 주도적 役割을 해 온 林和·李源朝·金南天·薛貞植 등 南勞黨系의 文藝人들이 속칭되자, 文藝總은 해산되고, 作家同盟·作曲家同盟·美術家同盟 등 3個 同盟만 남게 되었다.

⑦ 김일성 저작선집 4권(명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p. 157.

그러다가 1961年 2月 舞踊家同盟·寫眞家同盟 등 몇 개의 藝術同盟을 망라시켜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을 再組織했다. 作家 藝術人들은 이와 같은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黨에서 제시하는 作品만을 創作할 수 있으며, 各者의 特技와 藝術的 個性을 살리는 것보다는 集體作이라는 名分下에 活動을 制限하므로 北韓의 作家 藝術人은 一種의 匠工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 藝術의 大衆化를 위해 工場·企業所 및 協同團體들에는 藝術小組라는 것이 있다. 이 藝術小組는 各分野別로 組織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網羅되고 있다.

朝鮮文學藝術總同盟機構



出處: 문학에술사전(명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698.

※: 各 同盟傘下에는 分科委員會들이 있으며, 各道에는 總同盟 支部와 部門別 支部가 있다.

文學

文學은 순수 문학의 의미를 벗어나 黨의 政策을 具現하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武裝시키는데 服務해야 하므로 主題선택에서는 勿論, 素材에 있어서도 制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作品들의 素材를 보면 大部分 現實性和 革命性, 그

리고 社會主義的인 것을 담은 內容들이며, 金日成과 黨에 忠直한 英雄의 人物들만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作品 구성에서는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主義의 英雄主義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最近에는 金日成의 <革命鬪爭과 革命의家庭>의 形象, 그리고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 투쟁을 소재로 한 作品들이 創作되고 있다.

「꽃파는 처녀」라는 장편 소설이 그 代表作이라 할 수 있다.⑧

이는 金日成이 抗日鬪爭시기에 직접 창작했다는 <꽃파는 처녀>를 그대로 小說化 했다는 것인데 主人公인 <꽃분이>를 통해 日帝下에 壓迫과 착취받는 조선민족의 비참한 生活을 묘사하고 祖國光復, 그리고 自由와 幸福을 위해서는 鬪爭隊列에 參加해야 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 小說을 <革命的 文學藝術이 지켜야 할 미학적 원칙들을 가르쳐주는 참된 교과서>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밖에 <불바람>, <젊음을 자랑하라> <영집이> <우리는 이렇게 자란다>등 사회주의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中短篇小說들이 있다.

詩文學으로서는 <人民의 위대한 太陽>을 비롯한 서사시와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 바다여> 등 서정시가 最近에 창작되었다.⑨

主要 文學 作品

<小說作品>

區分	作 品 名	內 容	創作年度
長篇	동트는 압록강	金日成의 生長史 美化	1975
短篇	사랑의 길	金日成 革命思想 形象化	"
長篇	忠誠의 한 길에서	金日成에 忠直한 革命鬪士, 典型的 性格 描寫	"
短篇	時代의 흐름 속에서	勞動을 통한 金日成과 黨에의 忠誠心 強調	"
"	衷心으로	"	"

⑧ 조선중앙년감 (1978년판), p. 304.

⑨ 조선중앙년감 (1978년판), p. 304.

區分	作 品 名	內 容	創作年度
長篇	철세를 마스라	勤勞者들에게 忠誠의 革命觀 確立	1975
"	동대	"	"
短篇	새봄	三大革命 小組員의 모습 形象化	1976
"	피괴침	勤勞者들의 義務感 描寫	"
"	보통날 아침	執務에 임하는 金日成의 근면성 描寫	"
"	祖國의 바다	金日成의 漁勞作業 現地指導	"
長篇	꽃파는 處女	階級鬭爭	1977
中篇	불바람	勤勞者들의 勞動描寫	"
"	젊음을 자랑하라	靑年勤勞者들의 勞動과 思想性描寫	"
短篇	영심이	三大革命붉은旗 爭取運動과 小組員들의 모습을 形象化	"
"	우리는 이렇게 자란다	"	"
短篇 小說集	太陽을 따라		"
"	조약돌		"

<詩作品>

區分	作 品 名	內 容	創作年度
長詩	永生不滅의 金日成將軍의 노래	金日成의 革命業績謳歌	1975
叙情詩	아버이 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獻詩	金日成에 對한 人民의 尊敬과 喜모	"
長詩	永遠히 빛나라 忠誠의 해발이여	金日成의 전치 金貞淑 讚揚	"
叙事詩	향도의 해발은 누리에 빛난다	金正一 讚揚과 忠誠謳歌	"
詩集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	다함 없는 忠誠의 노래	"
叙情詩	幸福에 겨워 눈물에 젖어	金日成의 現地訪問과 그 감격한 노래	1976
"	동해선 천리	東海線 千里 遠편을 발전시킨 金日成의 恩덕 칭송	"
"	회령 고향집	金日成의 전치 金貞淑 追慕	"
叙事詩	山村 마을 꽃 피워	三大革命과 金日成 禮讚	"
"	막장의 불빛	三大革命 小組員 讚揚	"
"	검덕의 마음	金日成과 金正一에의 忠誠	"
"	인민의 위대한 太陽	金日成의 革命業績과 共產主義의 德性 喜모	1977
長詩	선례이라 벼바다 장녕이 바다여	金日成偶像化와 社會主義 農村讚揚	"

出處: 조선중앙년감 및 조선문학

文 化 美 術

北韓의 美術은 해방 이후 6.25動亂까지는 초상화를 비롯한 宣傳 壁畫 등 共產主義 宣傳 <포스타>등이 大部分이었다. 1945年 한해에 그려진 金日成의 肖像畫만도 9만여 점이나 된다^⑩.

1950年 初부터 中반까지는 越北한 作家들에 의해서 比較的의 自然主義的인 方法으로 風景이나 花草 또는 人民들의 生活相등이 등장하고, 또한 古美術에 대한 소개가 번번히 나타나곤 했다.

50年代 후부터 1960年初에 걸쳐서는 金日成의 肖像, 工場·企業所들과 戰後復舊 및 千里馬運動 등과 같은 경제 건설이 主題가 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이 畫面에 등장하는 비율은 전체 작품의 20% 안팎이었다.

그러나 60年代 中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90% 이상의 作品에 金日成이 登場하여 朝鮮畫의 方法에 의해 美化되고 偶像化된 作品들로 일관하고 있다.^⑪

北韓의 美術은 60年代 以後부터 作家의 主觀이나 個性이 일체 배제된 美術形式으로서 集體畫가 번번히 등장, 目的畫의 형식으로 전락하여 樣式上에서의 급격한 전통의 왜곡 변질과 內容上 金日成의 偶像化가 오늘날 北韓 미술의 전반적 氣流이다.^⑫

音 樂

解放後 1950年代 中半期까지만 해도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의 音樂이 연주되었으나 그 後는 金日成 讚美와 革命化, 勞動階級을 위한 선동수단으로 化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거의 完全히 金日成 讚揚 一色化이다.

1977年 평양 문예출판사 발행 <조선음악 600곡집>을 보면, 600곡 가운데 歌曲 302편, 歌劇에서 나오는 아리아 190곡, 映畫主題歌 108曲 등이 들어 있는데 歌曲편만 분류해 봐도 232곡이 김일성을

⑩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144.

⑪ 尹明老, 북한미술학술토의 주제발표문(국토통일원, 1979).

⑫ 吳光洙 上揭文

찬양하는 노래로서 전체의 80%를 점한다.

이 가곡들은 가사 내용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고, 멜로디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 있다.

1962年 3月 이후 金日成의 音樂改造 지시에 따라 5音音階로 된 民族樂器의 制限性을 극복하고, 어떠한 복잡한 曲도 자유 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12律 半音 체제를 갖는 改良運動이 있었다.

예컨대,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철 줄을 사용하고, 부들(染尾)을 없애고 12絃을 13絃과 19絃으로 그 줄을 늘려 가야금의 調律性을 상실하였으며 地方的인 特徵을 가진 唱法도 單一唱法으로 統制하였다.

우리의 傳統音樂은 크게 變質되어 地方的인 特色은 물론 優雅하고 韻致 있고 餘韻을 남기는 전통적 한국 음악은 北韓에서 영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⑬

映畫·演劇

映畫를 <直觀藝術>이라 하여 다른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어떤 藝術 장르보다 重要視하고 있다.

대부분의 北韓映畫·演劇의 內容은 肯定的 人物과 否定的 人物을 登場시키고, 否定的 人物은 解放前의 素材로는 日人和 地主, 그 後에는 美國人이나 南韓人 또는 보수적인 인텔리 등이며, 肯定的 人物은 金日成을 숭배하는 勞動者·農民이 大部分이다.

60年代 千里馬運動이 본격화함에 따라 映畫·演劇도 大型化하고 量產되었으며, 千里馬運動의 典型, 그 위에 黨의 唯一思想體系와 革命傳統 教養을 체계화한 金日成 神格化가 主軸을 이룬다.

70年代에 들어 代表的인 作品은 1971년에 製作된 <피바다> (가극 上下篇 映畫化)와 1972년의 <꽃파는 처녀>이다. 이들 두 作品이 모두 日帝 植民地 下의 生活을 主題로 한 것으로서 <階級的

⑬ 張師助 北韓의 음악 학술도의 주제 발표문, (국보통일원, 1978).

怨憎들과는 個別的, 自然 發生的으로 투쟁해서는 悲劇的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⑭ 든지 金日成이 제시한 武裝鬭爭路線만이 祖國을 광복할 수 있다. ⑮”는 등 <혁명의 참된 敎課書>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피바다>는 김일성이 각본을 직접 쓰고 配役들의 대사와 연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했다. ⑯

이같은 北韓의 映畫 演劇은 新派의 과장으로서 現實과 무관한 圖式性에 빠져 있고, 世界 演劇史에서는 1世紀 가량 낙후한 진부한 형태이다. ⑰

報道·出版

新 聞

新聞은 勞動黨의 機關紙로서 中央에는 <로동신문>, 各道에는 <道日報>들이 發刊되고 있으며, 最高人民會議과 政務院 기관지로서 <민주조선>, 社會團體 機關紙로서 <로동청년>, <로동자신문>, <농업근로자>와 같은 신문들이 있다.

그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 <인민군신문>과 같은 政務院의 各部에서 發刊하는 신문이 있다.

이러한 신문들은 뉴스의 傳達者나 敎養 娛樂 手段이 아니라, 케닌이 규정한 바와 같이 <集約的 宣傳煽動者 및 組織者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北韓에서 가장 권위 있고 發行 部數가 많은 <로동신문>의 과업에 대해 同紙 創刊 25周年 축하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⑱

첫째, 全人民을 黨의 유일 사상으로 무장

둘째, 社會의 革命化, 勞動階級化

세째, 文化革命의 추진

⑭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2). p. 1016

⑮ 上掲書 pp. 895-898.

⑯ 上掲書 pp. 895~898.

⑰ 金正鉉 북한학술토의 주제문 “북한영화에서의 예술성과 사상성”, (국토통일원, 1979), p. 9

⑱ 로동신문(1970. 12. 21)

네째, 國防力 強化 및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대한 5대方針 貫徹

다섯째, 金日成의 世界 革命戰略으로 武裝

로동신문의 本身은 1945年 11月 1日 當時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의 기관지로 發刊된 <正路>였는데, 1946年 8月 29日 北朝鮮共產黨, 朝鮮新民黨^㉑과 더불어 北朝鮮勞動黨의 黨報로서 <로동신문>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其他 主要宣傳 媒體

新 聞 名	發 行 機 關	雜 誌 名	發 行 機 關
로동자신문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근 로 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로동청년	사 모 청 중앙위원회	친 리 마	문예출판사
세 날	농 근 명 중앙위원회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중앙위
농업근로자	작 가 동 맹 중앙위원회	청년문학	연극인동맹및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문학신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예술	사모청중앙위원회
조국전선	교육위원회	청년생활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교원신문	인민무력부	조선녀성	사회과학출판사
인민군신문	철 도 부	문화어학습	
교통신문	건설부		
건설신문	평양시보사		
평양타임스 (영문·불문)			

通 信

통신機關으로서는 唯一하게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동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니아문통신>등의 通信 등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한 대내의 선전물이 편집 발행되고 있다.^㉒

放 送

放送의 임무는 신문과 같이 黨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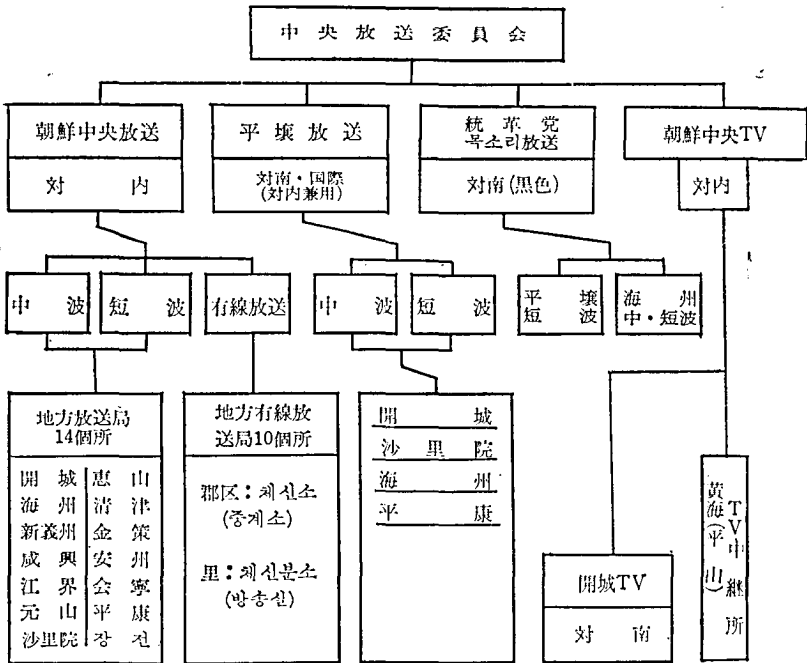
㉑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3), p. 328.

㉒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364.

다. 방송은 政務院直屬 中央放送委員會와 그 산하에 있는 道·市·郡 放送委員會의 一元化된 체계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中央放送委員會는 조선중앙방송과 텔레비전방송, 對外放送 등을, 그리고 地方放送委員會에서는 中央放送의 중계 및 自體放送 編成業務를 수행하고 있다.②

放送體系에서 特異한 것은 對南心理戰放送으로서 <平壤放送>이 별도로 설치되어 中央黨의 對南工作 部署로부터 통제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黑色放送으로서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이 있는데, 이는 1968년 4월부터 <南朝鮮 解放放送>이라는 이름으로 放送을 해 오다가 1970年 6月 1日에 그 名稱을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으로 改稱한 것이다.

北韓放送網體系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② 조선중앙년간(1976년판), p. 365.

TV放送은 1969년부터 正規放送을 하게 되었다.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는 6個年計劃 期間에 <全國의 텔레비전化>의 實現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黨決定에 따라 황해 및 마식령·원산·자강도 일대에 中繼塔이 設置됨으로써 全國的 範圍에서 텔레비전 수상이 可能하게 되었다.㉔ 칼라TV도 1974年 4月 15일부터 放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밖에 開城에는 對南心理戰을 目的으로 한 TV放送局이 설치되어 1971年 4月 15일부터 放映되고 있다.

出 版

出版事業은 黨의 強力한 선전 선동 수단의 하나로서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敎示에 따라서 그 事業 方向을 정하고 있다.

“……혁명 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 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㉕

주요 出版物로서는 사상 혁명과 관련된 圖書出版을 주로하는 <조선로동당 출판사>, <금성 청년출판사>등과 科學知識 普及을 위한 <사회과학 출판사>, <과학원 출판사> 및 文藝作品의 圖書만을 取扱하는 <문예 출판사>등이 있다.

또한 教育圖書를 出版하는 教育委員會 傘下 <김일성 종합대학 출

金日成勞作·革命傳統 敎養圖書 出版 現況

區 分 年 度	金 日 成 勞 作		革 命 傳 統 敎 養 圖 書	
	種 類	部 數	種 類	部 數
1960~1969(1)		3,900萬		4,550萬
1971(2)	35	1,402萬 5千	81	1,008萬 1千
1972	49	1,816萬 8千	85	1,130萬 9千

出處: (1)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p. 275.

(2) 以下 조선중앙년감(1974년판), p. 231.

※ 1972년 1년간의 발행 부수가 1960년대 10년간 발행 부수의 절반에 가깝다.

㉔ 조선중앙년감(1972년판), p. 349.

㉕ 조선중앙년감(1971년판), p. 272

판사), <고등교육 도서 출판사>, <외국문 교육도서 출판사>와 海外宣傳 冊子 出版을 하고 있는 <외국문 출판사>가 있다.④

主要出版社

黨 및 思想關係	科學技術關係	教育文化 및 其他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과학원출판사	외국문출판사
근로자사	공업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의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사로청출판사	체신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
학생소년출판사	교통출판사	문예출판사
조선인민군출판사	무역출판사	군중문화출판사

体 育

體育政策

北韓의 體育은 住民의 思想敎養의 일환으로 또한 勞動과 國防의 必要性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⑤

때문에 체력 단련이나 體育人의 養成만을 目的한 것이 아니다.

思想敎養을 目的한 경기로서는 <金日成 同志께 드리는 便紙傳達 제주>와 <갖고 集團달리기>와 <金日成 원수님께 끝없이 忠直할 近衛隊>라는 題下의 집단 체조, 그밖에 <革命戰蹟地 달리기> 등을 들수있다.⑥

60年代 후반기부터는 국방 체육을 위주로 하는 體育의 大衆化 政策으로 轉換했는데⑦, 그 種目으로서 登山, 野營, 行軍, 集團달리기, 사격, 무전통신, 자동차 및 트랙타運轉, 밧줄오르기, 장애이겨내기, 수류탄 던지기, 山野 횡단 등이 있다.

體育의 지도기관으로서는 <體育指導委員會>와 中央·道·市·郡 團으로 一元化 體系로 組織되어 있으며, 中央의 專門의인 體育團

④ 조선중앙년간(1976년판), p.364

⑤ 사회주의 헌법 제47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⑥ 1969. 11. 3 체육지도 위원장인 강양옥은 전국 체육인 대회에서 “체육사업을 천차하게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진인민적 체육으로 전환되었다.”라고 강조(1969. 11. 4 로동청년).

體와 함께 工場·企業所·協同農場 및 各級學校마다 <體育小組>가 운영되고 있다.

競 技

國內競技로서는 季節과 記念日에 따라 冬季에는 氷上, 봄과 가을에는 陸上을 비롯한 一般 體育大會가 開催되는데, 4月에는 金日成의 生日 慶祝의 일환으로서 체육 축전이 거행되고 있다.

每年 갖는 중요한 體育大會는 다음과 같다.

- 1月 : 빙상 호케이 선수권대회
- 2月 : 속도 빙상 선수권대회
- 2月 : <白頭山컵> 체육경기대회
- 3月 : 全國 <통일상> 마라톤 경기대회
- 4月 : 全國體育祝典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 4月 : " 靑少年學生 體育경기대회
- 4月 : 高等體育專門學校 學生 體育競技大會
- 8月 : 全國民族 體育競技大會
- 9~10月 : 공화국 창건기념 體育種目別 選手權大會
- 10月 : 黨創建 記念 全國陸上 競技大會

그밖에 소련, 중공 등 共產國家들뿐만 아니라 中立國 또는 西方國家들의 선수들을 초청하여 親善競技들을 개최하고 있다.

國際競技에 있어서는 1968年 멕시코에서 열린 올림픽大會에 參加하는 것을 시초로 계속해서 선수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밖에 世界 卓球選手權大會, 사격 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등 種目別, 地域別 경기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第 8 回 아시아競技大會에서의 北韓戰績

■ 金메달 (15개)

◇ 사 격 (67개)

- 소구경 소총 복사 단체 = 2, 361점
- 동 개인 = 김영호 (598점)
- 소구경 3자세 개인 = 이호준 (1, 148점)
- 속사 권총 단체 = 2, 348점

- 스탠더드 소총 3자세 개인=김동걸(577점)
- 센터파이어 권총 단체=2,309점
- ◇ 역 도(3개)
 - 52kg급=한경시(235kg)
 - 56kg급=양의영(250kg)
 - 60kg급=송석린(267.5kg)
- ◇ 체 조(2개)
 - 여자 개인 뽀름=최정실(19.12점)
 - 남자 개인 링=김광진
- ◇ 육 상(2개)
 - 여자 1천 5백m=김옥순(4분 18초 9)
 - 여자 3천m=김옥순(8분 24초 7)
- ◇ 복 심(1개)
 - 페더급=구용조
- ◇ 축 구(1개)
- 銀메달(13개)
- ◇ 체 조(1개)
 - 여자 단체=1,867점
- ◇ 역 도(2개)
 - 52kg급=임중관(227.5kg)
 - 81.5kg급=유동일(307.5kg)
- ◇ 사 격(5개)
 - 공기 소총 단체=1,494점
 - 소구경 3자세 단체=4,544점
 - 속사 권총 개인=소길산(592점)
 - 스탠더드 소총 3자세 단체=2,247점
 - 자유 권총 개인=김기중(548점)
- ◇ 레슬링(1개)
 - 48kg급=장세홍
- ◇ 복 심(2개)
 - L플라이급=이병욱
 - 미들급=장봉문
- ◇ 육 상(2개)
 - 마라톤=최창섭(2시간 15분 57초 4)
 - 여자 800m=정동선(2분07초9)
- 銅메달(15개)

- ◇ 역 도(3개)
 - 67kg급=이광주(285kg)
 - 75kg급=안안곤(292.5kg)
 - 100kg급=한진석(317.5kg)
- ◇ 궁 도(2개)
 - 여자 단체=3,448점
 - 동 개인=김향민(1,206점)
- ◇ 육 상(4개)
 - 여자 1,500m=최영란(4분 33초 3)
 - 여자 800m=장영애(2분 08초 3)
 - 여자 1,600m계주
 - 마라톤=고춘선(2시간 16분 10초 3)
- ◇ 사 격(1개)
 - 공기 소총 개인=김경호(375점)
- ◇ 체 조(2개)
 - 남자 개인 안마=한광선
 - 여자 개인 평행봉=정향숙(19.30점)
- ◇ 복 심(1개)
 - 플라이급=고길윤
- ◇ 탁 구(1개)
 - 남자 단체
- ◇ 농 구(1개)
 - 남자부

國際機構加入現況

機	構	加 入 年 度
國際올림픽委員會		1963.10.19
〃 스키이트協會		1953
〃 아마추어 농구聯盟		1956
〃蹴球協會聯盟		1956
〃 사격聯盟		1956
〃 아마추어 권투聯盟		1957
〃 탁구聯盟		1957
〃 배구聯盟		1957
〃 아마추어 레슬링聯盟		1958
〃體操聯盟		1958

機 構	加 入 年 度
國際 아마추어 水泳聯盟	1959
〃 力道聯盟	1959
〃 自轉車競技聯盟	1960
〃 아이스 하키聯盟	1963
〃 보트 경기聯盟	1963
〃 하키聯盟	1963
〃 카누聯盟	1964
〃 유도聯盟	1964
〃 스키이聯盟	1964
〃 漕艇聯盟	1964
〃 大學體育聯盟	1965
〃 弓術聯盟	1966
〃 펜싱聯盟	1968

※ 그밖에 1974.9 아시아 권투, 자전거, 역도, 사격, 체조, 수영, 송구, 축구聯盟에 加入.

文化施設

文化施設로서는 各地方마다 群衆文化會館이 있으며, 工場·企業所·協同農場 등에는 <구락부>施設이 設置되어 있다.

또한 歷史博物館·圖書館·體育館·展示館·競技場·動植物園 등은 大部分 道에 設置되어 있는데, 70年代에 들어와서 이러한 文化施設들이 大型化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主要 文化 施設

區 分	名 稱	規 模	建 立 日
劇 場	평양 대극장	◦ 좌석 : 2,300餘席 ◦ 무대 : 772m ²	◦ 1960.8 竣工
	국립 교예극장	◦ 座席 : 1,800餘席 ◦ 공중 무대와 둥근 바닥무대 設置	◦ 1964 建立
	모란봉 극장	◦ 회전무대와 부설 야외극장 設置	◦ 1960.8 竣工
圖 書 館	국립중앙도서관	◦ 藏書:227만권(1972년말)	◦ 1946.10.13開館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 藏書:200만권(1972년말)	◦ 1970.10.20開館

區 分	名 稱	規 模	建 立 日
		◦ 座席 : 1,000席	
博物館	중앙력사박물관 조선혁명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 敷地面積 : 24만평 ◦ 總建坪 : 5萬 3,700m ² ◦ 展示品 延長길이 : 4.5km ◦ 建坪 : 1萬 1,000m ² ◦ 진열실 : 26개실 ◦ 진열품 종류 : 생활 용구 류 위주 ◦ 原始社會, 奴隸社會, 封建社會 10世紀 이후로 구분하여 展示	◦ 1945. 12. 5 開館 ◦ 1948. 8. 1 創設 (1972. 4. 25새로 建立) ◦ 1954. 9. 28 開館 ◦ 1956. 2. 10開館 (1970년 김일성 관계자로 위주로 개편)
記念館	당 창건 기념관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 7개의 진열실 설치 ◦ 건평 : 5만 200m ² ◦ 70여개의 진열실 設置	◦ 1970 設立 ◦ 1953. 8 開館 (1974. 4. 11 새로 建立)
展覽館	중앙공업 및 농업 전람관 어머니 전람관 3대혁명 전시관	◦ 중공업, 경공업, 농업등 부문별 진열실 설치 ◦ 3개의 관으로 구성 ◦ 사상혁명관과 기술혁명관으로 구성	◦ 1956. 5 설치 ◦ 1961. 11 설치 ◦ 1974. 3. 8 설치
會 館	인민문화궁전 2.8문화회관 평양학생소년궁전	◦ 總建坪 : 5만2,000여m ² ◦ 座席 : 3,000席 ◦ 500여개의 방으로 구성 ◦ 總建坪 : 8만m ² ◦ 座席 : 6,000여석 ◦ 1日 1萬여 명 관람 능력	◦ 1974. 4. 12 建立 ◦ 1975. 10. 7 建立 ◦ 1963. 9. 10 開館
動 植 物 園	평양 동물원 평양 식물원	◦ 부지 면적 : 275정보 ◦ 동물 종류 : 330여종 ◦ 부지 면적 : 120여정보 ◦ 식물 종류 : 2,000여종	◦ 1959. 4. 30 창설
競技場	평양 체육관 모란봉 경기장 남포 체육촌	◦ 부지 면적 : 20여정보 ◦ 建坪 : 70,000m ² ◦ 좌석 : 20,000석 ◦ 스탠드 높이 : 40m ◦ 면적 : 16,000m ² ◦ 수용 인원 : 4만명 ◦ 스탠드 높이 : 30계단 ◦ 수용 인원 : 3만명	◦ 1973. 4. 8 開館 ◦ 1974년 開館

出處 : 조선중앙년감(1962, 1966, 1973, 1974, 1976년판).

軍事

軍形成과 性格

形成過程

北韓은 政權樹立을 公式的으로 對內外에 宣布하기도 전인 1948年 2月 8日에 <朝鮮人民軍>이라는 軍隊를 創設하여 內外에 宣布를 하고, 평양에서 <人民軍>의 열병과 分열식을 거행하였다.①

그러나, <人民軍>의 創設作業은 解放直後부터 <建黨·建國·建軍>이라는 3大課題가 提示되고 <마르크스·레닌주의思想으로 무장한 正規화된 革命的 軍隊>의 創設必要性이 強調되었던 狀況에서 평양에 주둔한 소련 25軍司令部의 지도하에 <保安隊>가 1945年 10月 21日에 組織됨으로써 비롯되었다.

당시 소련군사령부는 1945年 10月 12日에 “北韓地域내에 있는 모든 武裝隊를 해방시킬 것, 모든 武器·彈藥·軍用物資들을 軍警務司令官에 바칠 것, 平民중에서 社會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臨時 道議員會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協議下에 既定된 人員數의 保安隊를 組織함을 許可한다”는 성명서를 發表하였다.② 이 聲明書에 따라 解放直後 北韓地域의 治安을 目的으로 組織되었던 <治安隊>·<自衛隊> 등 기왕의 武裝隊는 解散되고, 9日후인 10月 21日에는 北韓의 各地域에 새로 <保安隊>가 組織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人民軍>의 母體이다.

그러므로, 1948年 12月말 蘇聯軍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③할

① “조선인민군창건 열병식에서의 김일성 연설(1948.2.8)”, 김일성선집, 2권 (1964) pp.73-76.

② “북한 주둔 소련 25군사령관의 성명(1945.10.12)”, 조선중앙년감 (1949년판) p.58.

③ 소련은 북한의 요청을 받고 1948년 9월 18일부 回答에서 同年 2月末까지 철병을 완료하겠다고 회답,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49.

때까지 北韓의 〈人民軍〉은 蘇聯軍에 의해 組織되었으며, 蘇聯軍의 직접적인 指導下에 조직·訓練 등이 實施되었으므로 〈人民軍〉의 政治的·思想的·軍事的 起源은 소련군의 軍事思想이나 軍事制度에서 出發한 것이었다.

1946年 1月에는 各道에 〈鐵道保安隊〉가 창설되었고, 軍事政治幹部の 養成을 위하여 平壤學院이 2月 8일에 설치되었다. 그후 보안대 병력의 확충·훈련을 위하여 〈保安訓練所〉(신의주·정주·강계)를 6月 초순경에 설치하였고, 이어 〈中央保安幹部學校〉를 창설하여 軍事幹部和 政治幹部를 平壤學院에서 각각 양성하였다.

따라서,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1946年 8月 15日 各地域에 조직된 保安隊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하고, 价川·羅南·平壤에 〈保安幹部訓練所〉를, 江西에 〈保安幹部學校〉를 설치하였다.

1個月後인 1946年 9月下旬에는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人民集團軍總司令部〉로 改稱하고, 1947년부터는 소련의 군사원조로 新型武器로 무장하기 시작하여 급속한 發展을 하였으며, 1948年 2月 4日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內에 〈民族保衛局〉을 新設하여 〈人民軍〉創建의 준비를 完了하고, 2月 8일에 〈人民集團軍〉을 〈朝鮮人民軍〉으로 개칭하고 正規軍으로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한편 海軍과 空軍의 創設過程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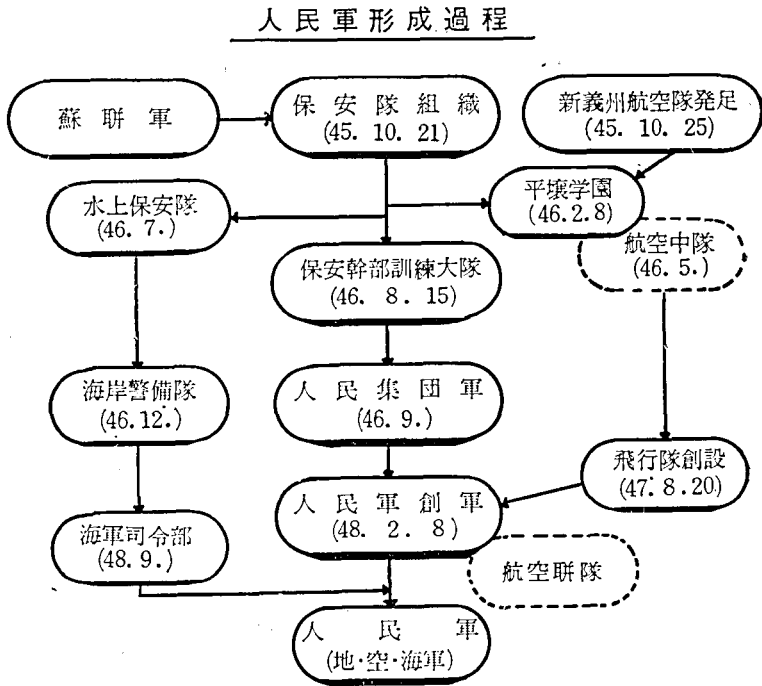
北韓의 海軍은 1946年 7月에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元山에 창설(東海水上保安隊; 元山, 西海水上保安隊; 南浦)한데서 비롯되었다.

1946年 12月에는 〈水上保安隊〉를 〈海岸警備隊〉로 개칭함과 同時에 元山과 南浦의 〈水上保安隊〉를 〈警備衛守司令部〉로 개칭하고 淸津에 〈衛守司令部〉를 新設하였고, 1947년 6월에는 元山에 〈海岸警備隊幹部學校〉를 두었는데, 이것이 뒤에 〈海軍軍官學校〉로 되었다. 그후 1948年 8月 北韓共産政權의 수립으로 〈海岸警備隊〉는 〈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고 北韓〈人民軍〉의 海軍으로 發展

하였다.④

空軍은 1945年 10月 25日에 순수한 民間機構로 발족한 <新義州航空隊>가 그 嚆矢로서, 同 機構가 1946년 5월 平壤學院에 編入되어 <航空中隊>로 改編됨으로써 北韓 空軍의 正式 教育機關이 되었다.

1947年 8月 20日에는 소련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新義州航空隊>出身(약 300名)을 중심으로 <飛行隊>를 創設하고, ⑤ 1948年 2月 8日 <朝鮮人民軍>創設과 함께 <航空聯隊>로 增編하므로써 北韓의 正規空軍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④ 북한의 <해안경비대>는 내무성 관할에 속하였으나 1948년 8월 28일부터 민보성으로 이관되었음. 1972. 6. 3 정령으로 이 날을 海軍節로 정하였음.

⑤ 1972. 5. 25 政令에 의해 이 날을 空軍節로 정하였음.

軍形成과 性格

北韓의 <軍>이 이와 같이 形成된 데 대해 金日成은 “조선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자신의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인민 군대를 창건한 것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완전 자주독립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⑥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1959年 1月 14日에는 民兵組織인 <勞農赤衛隊>를 創設하고, 1970年 9月 12日에는 <붉은靑年近衛隊>를 組織하여 北韓의 全社會를 兵營化하였는데, 北韓은 계속 軍事力을 증강하여 현재 정규군 70여만명, 예비병력 2백 60만명에 이르고 있다.^⑦

人民軍의 性格

北韓의 <軍>은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黨規約에 <朝鮮人民軍은 朝鮮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軍>은 <黨>의 絶대적 支配下에 있을 뿐 아니라, <黨>의 지시에 따라서만 行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에 대해 金日成도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 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혁명의 길로 전진하여 당이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혁명적 방법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유일한 혁명군대.”^⑧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黨軍의·革命的 性格>은 金日成의 唯一體制와 연결되며 <金日成의 軍隊>化하고 있다.

예컨대, <人民軍>이 <金日成의 軍隊>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人民軍은 수령이 조직해서 현대적 정규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킨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김일성의 군대”^⑨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制度的으로도 金日成이 <黨>의 <總秘書> 겸 <黨軍

⑥ “인민군 창군 열병식에서의 金日成 演說 (1948. 2. 8)”, 김일성선집, 2권 (1964), p. 73-76.

⑦ 北韓의 군사력증강 현황에 대해서는 軍事現況중 兵力과 裝備 參照.

⑧ “조선인민군 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의 김일성 연설 (1958. 2. 8)”, 김일성선집, 5권 (1968), p. 319

⑨ “인민군 창건 47돌 기념보고 대회에서 서철보고 (79. 4. 24)”, 로동신문 (79. 4. 25)

事委員會委員長)으로서 <黨軍事政策 執行方法의 決定, 軍需產業과 人民軍隊와 모든 武力의 強化를 위한 事業의 組織, 軍事力의 指導>를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政權의 <主席>인 동시에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77년까지 2月 8日을 <人民軍>創建日로 정해 기념하던 것을 1978년부터는 金日成이 1932년에 <抗日遊擊隊>를 창설했다는 4月 25日로 <人民軍>創建日을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은^⑩ <人民軍>성격을 <항일 빨치산투쟁 전통>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며, 김일성에 대한 個人崇拜 運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 <金日成의 軍隊>로서의 北韓<人民軍>의 성격은 軍事制度나 軍事政策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⑩ 로동신문(1978. 4. 16)

軍事政策과 戰略

軍事政策

北韓의 軍事政策은 <모든 戰爭은 그 根源이 되는 政治制度和 不可分>하며 <平和 역시 다른 手段으로 하는 戰爭(階級鬭爭)의 계속>이라는 共產主義的 軍事思想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軍隊는 <黨>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黨>의 政治目標을 達成하는 수단이므로 <軍>의 獨自의인 軍事政策은 存在할 수가 없다.

<軍>의 形成以後 그 동안 추구한 軍事政策은 1962年 <國防에서 自衛原則>을 表明한 때를 기점으로 크게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人民軍의 創軍에서 蘇聯軍이 직접 지도하였고, 1948年 12月까지 北韓에 주둔했기 때문에 6·25戰爭 때까지는 별 다른 軍事政策이 있을 수 없었으므로 休戰以後부터 61년까지를 前期로 볼 수 있다.

前期의 軍事政策은 戰後再建이란 狀況 속에서 國防뿐만 아니라, 經濟問題로 소련과 中공에 의지하는 依存政策을 基本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1958年 中共軍이 완전히 撤收함에 따라 兵力과 火力의 質的, 量的 增大가 요구되어 1959년에 <勞農赤衛隊>를 창설하고, 1961년에는 中·蘇와 각각 軍事同盟條約을 체결하여 安全에 대한 保障을 中蘇에 依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依存政策이 自衛政策으로 전환된 것은 1962年 12月 黨 中央委員會 4期 5次 全員會議에서 <조성된 경제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國防에 있어

서의 自衛> 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①

이 원칙에 따라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라는 <黨>의 自衛의·革命的 軍事路線의 基本內容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1963년부터 실천에 옮겨졌다.

4大軍事路線의 基本內容②

全人民의 武裝化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 기술적으로 무장시키는 것.
全國土의 要塞化	방방 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만드는 것.
全軍의 幹部化	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모두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全軍의 現代化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하게 하는 것.

金日成은 1966年 10月 5日 黨代表者會議에서 “인민군대의 간부화, 현대화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전인민무장화, 전국토요새화는 군사전략상 가장 유력한 방위체계라”고 말하고, 이 4大軍事路線의 추진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③ 강조했다.

또한, 1970年 11月 黨 5次大會의 總和報告에서 김일성은 “4대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통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① 조선중앙년감(1963년판), pp. 157-162.

② 최현. “우리 당의 자주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 하자” (1968. 1. 8)

③ 김일성저작선집, 4권(1969), pp. 354-361.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④고 말하였다.

이러한 四大軍事路線으로 表明된 北韓의 軍事政策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으로 4大軍事路線의 채택 이후 北韓의 軍事政策의 주요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軍事政策의 主要 實踐方向

60 年代	70 年代
<p>〈4大軍事路線의 貫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1) ◦ 戰爭을 위한 戰略物資의 備蓄(2) ◦ 全黨과 全人民의 動員된 戰爭態勢 確立(3) 	<p>〈4大軍事路線의 完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4) ◦ 自立的 國防工業基地를 完成하여 획기적인 自衛力의 育成(5) ◦ 긴장되고 動員된 태세의 견지(6)

出處 : (1) 1966, 1967년 로동신문 신년호 사설.
 (2) 1965. 11. 당 4기12차 전원회의 결의.
 (3) 1971년 김일성 신년사.
 (4) 1970. 11. 2 당 5차회의에서의 김일성 보고
 (5) 1971년 김일성 신년사.
 (6) 1974, 1976, 1977년 김일성 신년사.

軍事戰略

北韓의 軍事戰略은 당초 速攻機動攻勢 戰略과 包圍殲滅 戰略을 內容으로 하는 소련의 野外敎令에서 出發하였으나, 그후 6·25의 經驗과 越南戰의 戰法 등을 적용하여 1960年代末에 와서 〈現代戰과 革命戰의 配合〉이라는 基本戰略戰術을 설정하였다.

北韓이 韓半島 實情에 맞는 戰略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6·25 動亂의 실패 經驗에 대한 反省에서 비롯되었다. 1950年 12月 3次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6·25動亂의 失敗에 대한 戰略의 反省에 기초하여 새로운 戰略의 課題를 제시했다는데,⑤ 이것이 오늘날까지 北韓 軍事戰略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58年 中共軍이 주둔하고 있을 때까지는 中共軍과 〈人民軍〉과

④ 로동신문(1970. 11. 3); 김일성 저작선집, 5권(1972), pp. 437-475.
 ⑤ 조선중앙년감(1953년판), pp. 23-37, 소위 〈別午里會議〉라고 함.

의 聯合行動作戰을 전제로 한 戰略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 中共軍이 철수하고,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人民軍>의 獨自의인 戰略을 확립하였다.

金日成은 1969년 1월 人民軍黨 4期 4次 全員會議 때의 結論 演說에서 <祖國解放戰爭>의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戰爭 勝利의 決定的 要因은 現代戰과 遊擊戰을 配合>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防禦戰과 正規化部隊·遊擊部隊의 配合作戰>, <小部隊과 大部隊의 必要性>, <輕步兵部隊의 조직과 武器의 輕量化>, <曲射砲와 低空 飛行의 증강>, <山岳戰의 重視> 등을 강조하였다.^⑥

또한, 김일성은 1970年 黨 5次大會에서 “우리 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행하며,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한다면 설령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적일지라도 얼마든지 섬멸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 경험과 오늘의 월남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⑦고 주장함으로써 軍事戰略戰術의 구체적 방향을 提示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전략술을 綜合的으로 表現한 것이 1971年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의 韓益洙의 報告이다. 즉,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 교란의 배합, 대소 부대 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공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 배후의 제 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 사냥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술전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⑧고 강조했다.

北韓은 이와 같은 戰略戰術에 의거하여 <人民軍>의 編制, 裝備, 配置 등을 修正, 補完해 왔다.

⑥ 69.3. 귀순용사 노관봉 소지문건.

⑦ “朝鮮勞動黨 5次大會報告”, 로동신문(1970. 11. 3).

⑧ 로동신문(71. 2. 8).

軍事組織體系

軍事機構

北韓의 軍事機構는 勞動黨組織을 통한 政治指導體系와 政權機關을 통한 軍事指揮體系로 二元化되어 있다.

모든 <武力>은 사실상 <首領(金日成)>에게 복종하며, 勞動黨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軍>에 대한 黨的 指導와 統制는 軍事幹部의 <黨>內의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勞動黨內 軍事幹部 變化推移

()안은 정원

區分	期別	1次大會	2次大會	3次大會 ⁽¹⁾	4次大會	5次大會	現在 ⁽²⁾
政治委員會	正委員	0(5)	0(8)	1(11)	1(11)	3(10)	5(16)
	候補委員	0(0)	0(0)	0(4)	0(4)	0(5)	1(7)
	計	0(5)	0(8)	1(15)	1(15)	3(15)	6(23)
中央委員會	正委員	7(43)	9(64)	7(71)	19(85)	24(117)	
	候補委員	0(0)	1(20)	9(45)	8(50)	4(55)	
	計	7(43)	10(84)	16(116)	27(135)	28(172)	

註：(1) 3차대회에서는 常務委員會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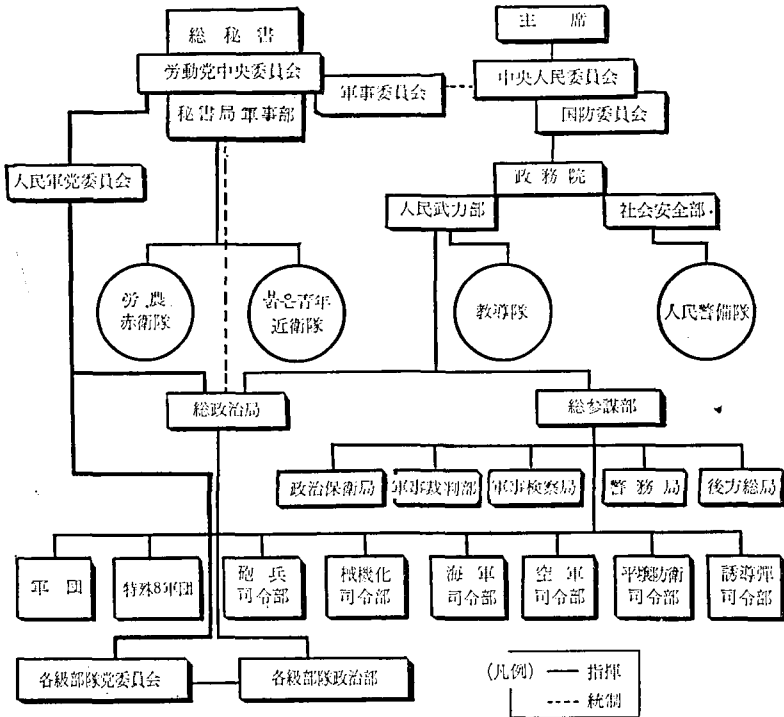
(2) 現在の 政治委員會 定員은 推定數임.

예컨대, 일체의 武力을 지휘 통솔하는 <主席>은 <黨>의 第1人者인 黨總秘書이며, 그리고 中央人民委員會國防委員會 副委員長, 人民武力部長, 人民軍總政治局長, 總參謀長 등 主要 軍事幹部는 黨政治委員 또는 秘書를 겸직하고 있다. 黨中央委員會 委員中에는 軍事간부가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2年 12月 改正된 憲法에 따르면 <主席>은 <全般的 武力의 總司令官>, <中央人民委員會國防委員會 委員長>인 동시에 <일체의 武力을 指揮統率>하도록 되어 있어 <主席>으로서의 김일성의 位置와 地位는 더한층 강화되었다.⑨

또한, 主權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의

軍事組織体系



⑨ 사회주의헌법 제93조.

〈주석〉은 〈國防 및 國家政治保衛事業을 지도〉하며, 〈중요 軍事幹部를 임명 및 해임〉하며, 〈將領 軍事稱號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⑩ 따라서, 김일성은 북한의 〈武力〉의 사실상의 最高指揮者일뿐만 아니라 法的으로도 절대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1962年 黨 4期 5次 全員會議 이후 4大軍事路線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中央 및 道(直割市)·市(區域)·郡 單位의 黨委員會에 〈軍事委員會〉를 설치하였다.^⑪

〈黨中央委員會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의 執行方法의 決定〉, 〈軍需産業과 人民軍隊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事業의 組織〉, 〈軍事力의 指導〉 등 기본적인 軍事政策을 다루게 되어 있으며,^⑫ 各級 地方 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軍事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戰時 動員體制의 檢討, 民兵組織의 運營管理, 民兵訓練 등의 임무를 遂行하게 되어 있다.

1972年 12月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中央人民委員會〉內에 신설된 〈國防委員會〉는 委員長을 〈주석〉이 겸직하게 되어 있으며,^⑬ 副委員長은 통상 人民武力部長, 總參謀長, 民兵組織의 책임자 등이 되는데 〈주석〉의 提議에 의하여 最高人民會議가 〈선출·소환〉하게 되어 있고,^⑭ 기타 委員은 中央人民委員會가 〈임명·해임〉하게 되어 있다.^⑮

〈國防委員會〉는 形式上으로는 中央人民委員會의 임무를 돕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黨軍事委員會〉가 결정한 基本軍事政策을 심의 결정하고 해당부서의 〈國防事業〉을 지도하며, 유사시에는 戰時狀態 및 動員令을 宣布하는 등의 任務를 수행하는 〈國防〉의 最高指導機關이다.

⑩ 사회주의헌법 제103조.

⑪ 1950年 6月 26日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의 〈政令〉에 의해 조직된 戰時機構인 政權機關의 〈軍事委員會〉와는 별개의 것임.

⑫ 조선로동당 규약 제 3장 27.

⑬ 사회주의헌법 제9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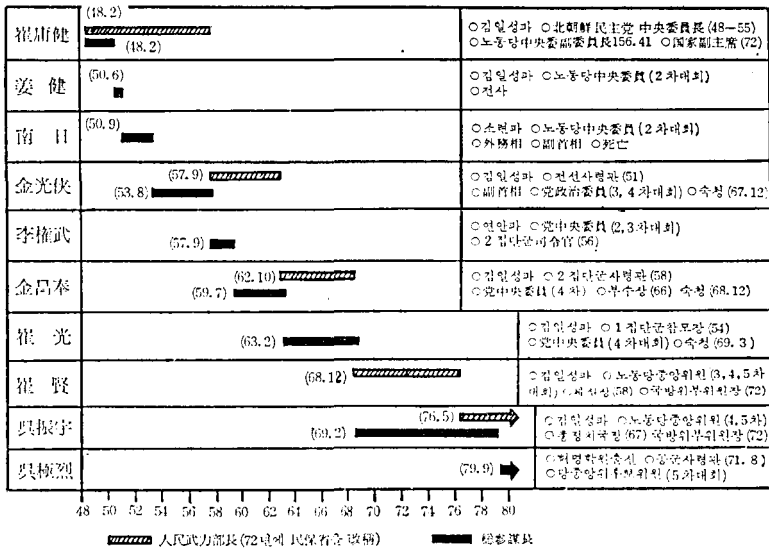
⑭ 사회주의헌법 제76조.

⑮ 사회주의헌법 제105조.

〈人民武力部〉는 〈主席〉 및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 〈國防〉業務를 執行하는 政務院의 部署이다.

黨中央委員會의 統制下에 있으며, 人民武力部の 直屬下에 조직되는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은 軍隊內 각 단위의 〈政治部〉 등 〈政治機關〉을 통하여 軍隊內 黨 政治事業을 조직, 지도하는 機關이다. ⑯

歷代 人民武力部長 및 總參謀長



軍隊內 政治組織

〈黨의 革命武裝力〉인 〈人民軍隊〉內에는 〈黨〉組織을 통한 政治指導體系로서 各種의 政治機構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機構를

⑯ 조선로동당 규약 제 8장 51.

통해서 <黨>이 <軍>을 統制하고 政治事業을 展開하고 있다.

軍隊內 政治組織으로는 <黨>組織과 <사회주의 若동청년동맹> 조직이 있다.

軍隊內 <黨>組織은 6·25動亂期間에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⑰ <인민군당위원회>로 정식 조직이 完了된 것은 1958년에 와서였다. 이리하여, 1961年 4次 黨大會에 와서는 黨規約에 軍隊內의 <당> 조직에 관한 사항을 明示하게 되었다.

4차 당대회 당시 民族保衛相이었던 金光俠은 보고를 통하여 새로 조직된 <人民軍黨委員會>는 <軍事政治의 指導機關>으로서 <人民軍隊>의 강화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軍隊內 모든 事業에 획기적인 轉換을 가져 왔다고 말하였다. ⑱

軍隊內의 <黨>組織으로는 中央에 <人民軍隊內의 全體 黨組織>唯一的으로 망라>하는 <朝鮮人民軍黨委員會>가 있고, ⑲ 大隊級 以上에는 黨委員會가, 中隊·小隊 單位에는 黨細胞가 組織되어 있는데, 各級 黨組織들은 <地方黨 組織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 ⑳

<朝鮮人民軍黨委員會>는 <조선로동당> 中央委員會에 <直屬>하며, 그 <指導 밑에 事業>을 하게 되어 있다. ㉑

軍隊內 各級 <黨>組織은 <黨의 唯一思想體系 確立>, <黨隊列의 擴大 強化>, <軍事事業의 黨指導 強化>, <黨의 軍事路線 貫徹>, <社勞靑組織의 強化 指導>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㉒

軍隊內에는 <黨委員會>와는 별도로 <政治機關>을 조직하고 있는데, 人民武力部 산하에는 <黨>의 政治事業을 <唯一的으로 組織 指導>하는 <朝鮮人民軍總政治局>이 있고, 大隊級 이상의 部隊에

⑰ 1950. 10. 黨中央委員會 決定에 따라 軍隊內의 黨組織이 착수되었다. 조선로동당 역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4) p. 265.

⑱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 토론집(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2. 7. 5), p. 93.

⑲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47.

⑳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50.

㉑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47.

㉒ 조선로동당 규약 제 7장 48.

는 <政治部>가 있다. 政治機關은 <黨의 政策>, <黨의 決定>을 집행하는 <黨>의 부서로서 參謀部와는 關係가 없다. ㉓

1969년부터는 군대내에 <政治委員制>를 도입하였는데, 사단과 연대 단위에는 <政治委員>, 대대와 중대 단위에는 <政治指導員>을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 배치하여 作戰·訓練 등 모든 軍事業務와 군대내 政治事業을 조정, 감독하도록 하였다. ㉔

따라서, 軍隊內 <黨>組織은 二重 三重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師團의 경우, 사단 당위원회 責任秘書, 政治委員, 政治部長 등이 있다. 그리고 <軍>의 모든 命令書는 軍事幹部뿐만 아니라 政治委員의 서명이 있어야 效力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 ㉕

軍隊內 <軍官(장교)>은 물론 모두 黨員이며, <下戰士(사병)>의 경우도 兵種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육군의 경우 20~30%, 특수부대나 해·공군의 경우는 60~70%가 黨員이다.

軍隊內에는 部隊單位에 따라 <社勞靑>이 조직되어 있는데, <사로청>조직은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㉖ 軍隊內의 非黨員을 <黨>의 指導 밑에 結束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軍事編制

北韓의 <人民軍>은 地上軍·海軍·空軍을 <人民軍總參謀長>이 총괄 指揮하는 單一統合軍體制이다. <人民軍 最高司令官>은 <主席>이다.

平時에는 中央人民委員會의 國防委員會, 政務院의 人民武力部를 통해 <人民軍總參謀長>이 <人民軍>全體에 대한 軍政과 軍令權을 행사한다.

戰時에는 中央人民委員會의 國防委員會를 중심으로 <軍事委員

㉓ 1969. 1.6~1.14 조선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에서 金日成 發言.

㉔ 상기 회의에서의 金日成 指示.

㉕ 상기 회의에서의 金日成 指示.

㉖ <사로청>규약 제7장 48조; 로동신문(1964. 5. 17); 상기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

會)를 조직하고 <人民軍最高司令部>가 直接 <人民軍總參謀長>을 통해 <人民軍隊>와 勞農赤衛隊 등의 豫備兵力을 포함한 全<武裝力>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人民軍>의 編制는 <總參謀長>隸下에 前後方の 8個 軍團, 特殊 8軍團,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平壤防衛司令部, 誘導彈司令部가 있다.

이 가운데서 前後方の 8個 軍團, 特殊 8軍團,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 平壤防衛司令部, 誘導彈司令部는 地上軍에 該當한다.

軍團은 基本戰術司令部로서 戰術 및 支援兵科部隊가 協同된 最大規模의 部隊로서 戰術 및 行政機能을 同時에 遂行하게 되어 있는데, 隸下에는 步兵師團 / 旅團, 機動化師團, 輕步兵旅團, 狙擊旅團 등이 있다.

特殊 8軍團은 正規軍과의 配合作戰, 非正規戰인 遊擊戰, 特攻隊 作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隸下에는 特殊旅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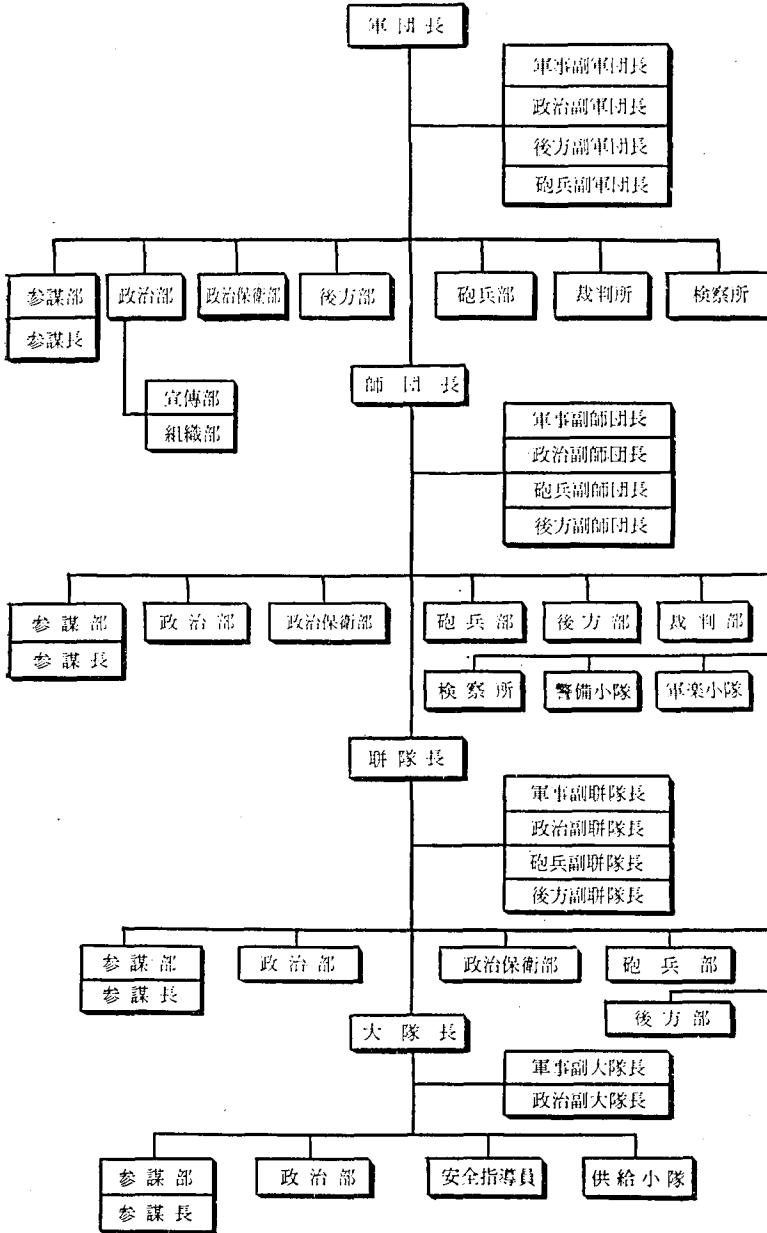
機械化司令部 에 하에는 戰車師團/旅團, 獨立戰車聯隊, 機械化步兵大隊 등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戰車部隊는 여러 兵科들로 編成되어 있어서 協同作戰은 물론이고 機動部隊로서의 독자적 作戰 遂行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砲兵司令部 隸下에는 高射砲師團, 女子高射砲旅團, 高射砲聯隊, 砲兵大隊, Frog大隊 등이 있으며, 誘導彈司令部 에 하에는 SAM旅團, 技術支援大隊 등이 있다.

海軍은 海軍司令部 에 하에 東海艦隊司令部和 西海艦隊司令部가 있으며, 各 艦隊司令部 에 하에는 戰隊로 編成되어 있다.

空軍은 空軍司令部 에 하에 戰鬥機師團, 爆擊機師團, 輸送師團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電波深知機, 通信, 建設 등의 聯隊와 空軍基地 등이 있다.

軍団指揮体制



軍事現況

兵役 및 訓練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徵集 연령은 18~20세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만 16세로 낮추어져서 만 16세가 되면 모든 남자는 軍入隊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①

그러나, 成分不良者 및 進學하여 특수 분야를 전공하는 者는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다.

士兵의 복무 연한은 兵種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통 5~7년이며, 특수한 경우는 7~9년으로 연장된다.

軍服務에 있어서는 精神的 武裝과 紀律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5기 10차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① 강인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 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기율 등 <戰鬪力 強化 5大方針>이 제시되었다.②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人民軍最高司令官>의 이름으로 ① 軍事規程의 철저한 준수, ② 武器의 精通과 철저한 管理, ③ 軍事命令의 철저한 執行, ④ 黨 및 政治組織들에 對한 忠實의 어김없는 執行, ⑤ 國家機密·軍事秘密·黨組織秘密의 엄숙한 지킴, ⑥ 社會主義的 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軍事政治訓練에의 어김없는 參與, ⑧ 人民에 대한 사랑 및 人民財產의 侵害禁止, ⑨ 國家財產과 軍需物資의 철저한 보호, ⑩ 軍隊 안의

① 만 16세가 되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의무교육이 끝나게 됨.

② 『로동신문(1975. 2. 8)』.

一致團結 등과 같은 〈軍務生活의 10대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③

이와 같이 북한은 〈人民軍〉의 철저한 전투태세강화를 위해 〈생산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 아래 〈戰鬪力強化 5大方針〉과 〈軍務生活 10대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全黨과 온 社會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고 〈革命隊伍를 백방으로 강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④

軍服務를 마치게 되면 除隊와 동시에 職場에 配置를 받게 되며, 배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를 해야 大學進學이 허용된다.

軍服務 중에는 全 服務期間을 통하여 총 15일 정도의 휴가가 허용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것마저 중지되고 있다.

軍 指揮官은 〈김일성 정치대학〉·〈강건 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軍事學校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이들 軍事學校에는 3~4년간의 정규 군관양성과정 이외에 1년 정도의 단기 군관양성과정이 있으며, 6개월~1년간의 보수교육과정을 두어 지휘관의 再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兵器生產

休戰 후부터 兵器의 自給自足を 위해 많은 兵器生產工場들을 건설해 오다가 1960年代 中·蘇 關係가 惡化되자 더욱 兵器産業에 注力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0年代는 4大軍事路線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군수공장을 더욱 擴張시키는 한편, 주요 금속공장·공작기계공장·정밀기계공장·자동차공장·트랙터공장·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軍需品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했다.

70年代에 들어와서도 계속 兵器生產과 새로운 무기 開發에 주력하고 있으며, 兵器工場들은 주로 輿地帶인 慈江道一帶에 密集되어 있다.

③ 김일성 저작선집, 7권(1978), pp. 418-423.

④ “인민군창건 47을 기념 중앙보고대회 서철연설(79. 4. 24)”, 로동신문(79. 4. 25).

따라서, 北韓은 現在 航空機나 電子裝備, 火力統制裝備과 같은 高度의 精密兵器를 제외하고는 탱크와 砲를 포함한 모든 軍事裝備을 사실상 自體 生産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⑤

主要 兵器工場 現況

工場名	位置	規模	施設	生産品	年間生産能力
13號兵器工場	滿浦市	1級	地上 地下	더블베스 싱글베스爆藥, 小銃彈	
17號兵器工場	興南市	1級	地上	더블베스 싱글베스爆藥, 各種 實彈, 雷管, 導火 線, 다이 나 마이트, 硝安 爆彈	
26號兵器工場	江界市	特級	地下 地下	迫擊砲, 高射機關銃, 機 關短銃, 各種 砲彈	
42號兵器工場	長江郡	特級	地下	地雷, 手榴彈, 迫擊砲彈 및 케이스	
65號兵器工場	前川郡	特級	地上 地下	AK 小銃, 小銃用大劍, 迫擊砲, 手榴彈, 地雷, 機關砲, 各種 實彈	◦ AK 小銃: 12만 挺 ◦ 對空機關砲: 100門
67號兵器工場	江東郡	特級	地上 地下	重輕機關銃, 高射機關銃, 多發銃, AK 小銃, 手榴 彈, 砲彈, 各種 實彈	◦ 機關銃: 2,000挺
81號兵器工場	城干郡	特級	地下	迫擊砲, 無反動銃, 40mm 對戰車로켓트發射器, 機 關短銃, 小銃, 多發銃, 各種 砲身	◦ 對戰車로켓트發 射器(未詳) ◦ 迫擊砲: 780門 ◦ 無反動銃: 350門
93號兵器工場	江界市	特級	地上 地下	地雷, 手榴彈, 小銃, 砲 彈, 各種 實彈	
龍城機械	興南市		地上	122mm砲 152mm砲 130mm砲	◦ 520門
龜城戰車	龜城市	1級	地上	T-59型戰車部品, 組立	
新興裝甲車	新興郡	1級	地上	M-1973型裝甲車部品, 組立	
勝利自動車	德川郡	1級	地上	K-61型水陸兩用車部品, 組立	

出處: 韓國研究機關資料

兵力 및 裝備

北韓은 지난 몇년 동안에 兵力과 裝備를 크게 증강하여 軍事力이 世界 제 4위~5位로서⑥ 總兵力이 70萬名의 水準에 이르는 것

⑤ 존 워컴 駐韓美軍司令官의 韓美協會 招請 演說(1979. 10. 24).

⑥ 데이비드 존즈 美合參議長은 <美國의 軍事態勢報告書>(1979. 1. 25 議會提出)에서 세계 제4위라 했고, 美下院軍事委員會 調査小委員會 聽聞錄(1979. 6. 21, 7. 17)에는 세계 제5위라 했음.

으로 推定되고 있다. ⑦

美國의 軍事情報分析機關(CIA, DIA)의 分析에 의하면, 特別히 地上軍이 현저하게 增強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⑧ 兵力은 從前 評價(77년)인 29個 師團/旅團의 45萬名에서 37個師團/旅團의 55萬~60萬名으로 늘어났고, 장비는 탱크가 35%, 砲火器와 機甲車輛이 20% 늘어났음이 밝혀지고 있다. ⑨

北韓은 이와 같이 地上軍의 현저한 增強과 동시에 自體 生産한 탱크 및 裝甲車와 長距離 自走砲 그리고 各種 艦艇과 潛水艦 등 北韓의 規模에 어울리지 않는 大規模의 軍事力을 開發·配置해 두고 있다. ⑩

主力部隊는 물론 前方에 集中 配置되어 있지만은 小規模 單位로 編成된 機動部隊를 平壤을 中心으로 해서 北韓 全域에 걸쳐 配置하고 있으며, ⑪ 特別히 休戰線 近方에 追加 配置하였다고 한다. ⑫

軍事力의 增強 特徵으로는 兵力에 있어서는 奇襲攻擊 및 特攻隊 作戰에 알맞도록 編成된 空輸部隊와 輕步兵旅團이 急增하였고 ⑬ 裝備에 있어서는 戰鬥機動力과 砲火力이 增強되어 戰術的 奇襲攻擊과 先制攻擊의 電擊戰 能力이 強化되었다 ⑭는 점이다.

새 分析評價에 의해 밝혀진 北韓의 地上軍의 增強現況과 南北 對話이후의 軍事力의 增強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 當時 노재현 國防長官은 共和黨과 維政會의 外務國防委員會에서 北韓의 總兵力이 72만명이라고 밝혔다. 朝鮮日報(79.10.14)

⑧ 이 事實을 처음 보도한 것은 美國의 軍事專門 週刊紙인 아미 타임즈(79.1.2)와 워싱턴 포스트(1979.1.14)인.

⑨ 美下院 軍事委員會 調查小委員會 聽聞錄(1979.6.21, 7.17), p.5 및 p.8.

⑩ 카터 美國大統領의 韓國報告書(1979.1.25 議會提出).

⑪ 美下院 軍事委員會 調查小委員會 聽聞錄(1979.6.21, 7.17), p.9.

北韓은 600여개의 機動大隊를 保有하고 있으며, 韓國軍을 休戰線에 묶어둔 채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充分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고 함(아미 타임즈 1979.1.2). 따라서, 北韓은 중·소의 지원없이도 對南單獨戰爭挑發이 가능하다고 評價하고 있음(上記委員會의 聽聞錄, 1979.9.7, p.4.)

⑫ 朝鮮日報(1979.5.24).

⑬ 美下院 軍事委員會 人力小委員會 太平洋地域 研究그룹의 <駐韓美地上軍 撤收計劃의 中止要求 特別報告書>(1979.1.24 議會提出).

⑭ 해롤드 브라운 美國國防長官의 <年例國防報告書>(79.1.25 議會提出).

北韓 地上軍 增強現況

區 分	從前評價(77)	새評價(79)	備 考
師 團, 旅 團	28~29개	37개	비정규부대 제외 3개 師團을 休戰線에 追加配置
兵 力	45만~52만명	55만~60만명 (또는60만~65만명)	
特 攻 隊	5만 8천명	7만 3천명	T-62 탱크 자체 생산
戰 車	2,000대	2,600대~2,700대	
各 種 砲	3,400문	3,800문~4,000문	
多彈頭로켓發射器 (107미리, 122미리)	1,400대	1,700대	
裝 甲 車	800대	960대	

出處：朝鮮日報 (1979. 5. 24).

브라운 美國務省代辯人 發表 (서울신문 1979. 6. 13).

美下院軍事委員會調查小委員會聽聞錄(1979. 6. 21).

(兵力)

北韓 軍事力 增強現況

區 分		72年初	77年	79年 8月現在
正 規 軍	地 上 軍	40만 8천	48만 9천	64만
	海 軍	1만 2천	2만 7천	3만
	空 軍	4만 5천	4만 7천	5만
	計	46만 5천	56만 3천	72만
非 正 規 軍	勞 農 赤 衛 隊	1백 39만	1백 39만	1백 67만
	붉은青年近衛隊	70만	70만	76만
	教 導 隊		26만	23만
	計	2백 9만	2백 35만	2백 66만

出處：韓國研究機關 推定

(裝備)

區 分	72年初	77年	79年 8月現在
各 種 砲	8천 8백문	1만 5천 7백문	4만문
戰 車	7백대	1천 8백대	2천 6백대
水陸兩用車		7백 5십대	1천 1백대
地對地미사일	12기	12기	24기
潛 水 艦	4척	10척	17척
誘導彈高速艇	14척	20척	20척
魚 雷 艇		1백 20척	1백 40척
戰 爆 機	6백 50대	7백 60대	7백 60대
輸 送 機 등	1백 60대	3백대	3백 40대

出處：韓國研究機關 推定

各軍의 主要 裝備는 다음과 같다. 地上軍의 主要 裝備로서는 AK 小銃, SKS半自動小銃, 輕機關銃, 迫擊砲, 對戰車砲, 曲射砲, 高射砲, 放射砲, 自走砲, 裝甲車, 水陸兩用車, 戰車, 水陸兩用戰車, 浮橋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Frog-5/7의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基地는 주로 開城, 谷山 등지의 休戰線 가까이 에 配置되어 있다.

海軍의 主要 裝備로서는 潛水艦, 誘道彈艇, 哨戒艦, 潛水艇, 驅逐艦, 砲艦, 魚雷艇, 上陸艇 등을 들 수 있다.

空軍의 主要 裝備로는 主力이 戰爆機와 輸送機인데, 戰爆機는 MIG-19型, MIG-21型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輸送機로는 IL-18型을 비롯해서 TU-154, YS-11, AN-24, AN-2 등이 있다.

豫備兵力

北韓의 住民軍事動員政策은 <人民>을 <武裝力>의 가장 重要한 要素로 보고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軍事思想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유사시 軍事力을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전시 軍需支援 및 戰鬥支援能力을 보장할 수 있도록 全人民을 軍事的으로 組織化하고 있다.^⑤

住民의 軍事動員組織이 本格的으로 強化된 것은 1962年 12月の 勞動黨 4기 5차 全員會議에서 제기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政策에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住民의 軍事動員組織이 여러 형태로 組織 展開되고 있으나, 이미 1958年 中共軍의 撤收를 계기로 1959년 1월에 <勞農赤衛隊>가 創設되었다.

그후 1962년에 <教導隊>가 組織되었고, 또한 1970年 9月 金日成의 指示로 學生組織인 <붉은青年近衛隊>가 創設되었다. 1972年 12月 <社會主義 憲法>의 채택과 함께 <國防委員會>의 설치 등 軍事動

⑤ 1950. 12. 21 慈江道 滿浦市 別午里에서 열린 黨中央委員會 3次 會議에서 金日成은 “豫備隊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後方供給事業들이 잘 組織되지 못하였다”고 함으로써 豫備隊의 組織이 미흡하여 6. 25남침이 실패하였음을 자인하였음.

員機構의 體制強化로 住民의 軍事動員과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制度的 補充이 가해졌고, 현재 軍事人力 動員의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教導隊 : Ⅲ급 이상의 工場 및 企業所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 軍除隊者(20~40세)를 중심으로 組織되며, 正規軍 編制에 준하여 工場 및 企業所의 규모에 따라 師團·聯隊·大隊·中隊로 편성되어 있다. 各級 梯隊의 指揮官과 參謀職은 現役 軍官이며 師團은 後方 軍團에 所屬되어 있다. 指揮系統은 해당 黨委員會와 人民武力部의 二重統制를 받는다.

教導隊는 平時에는 後方地域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戰時 動員令이 하달되면 즉각 除隊 當時의 現役兵 階級으로 正規軍에 編入되어 戰鬥任務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勞農赤衛隊 : 18~45세의 勞動者·農民·學生들로 組織되며, 正規軍 編制에 준하여 <勞動黨>秘書局의 軍事部 관장하에 <勞農赤衛隊司令部>를 설치하고, 道·(直割市=軍團級), 市(區域)·郡(聯隊級), 里·洞(大隊級), 部落 및 職場(中·小隊級) 등의 勞農赤衛隊로 編成되어 있다.

各級 勞農赤衛隊는 道(直割市)·市(區域)·郡黨 軍事委員會의 指導 監督을 받으며, 各級 梯隊의 隊長은 대부분 該當 黨委員會의 責任秘書가 된다.

勞農赤衛隊의 基本的 使命은 “수령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黨中央委員會를 목숨으로 지키며, 社會主義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수령이 제시한 黨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 관철하며, 社會主義 祖國과 혁명의 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하며 祖國의 統一과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위하여 투쟁 하는데 있다”¹⁰⁾고 規定하고 있는데, 平時에는 對空防衛 등 地域防

¹⁰⁾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0), p.192.

하여 1959년경 각 海岸地域을 비롯한 國境과 島嶼地域의 경비를 강화할 目的으로 軍에서 除隊한 청장년 중에서 一定한 人員을 15日間씩 交代제로 動員 組織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下戰士는 正規軍 招募對象者 중에서 선발되어 社會安全部 新兵訓練所에서 3~4個月間的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軍官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軍官學校의 正規教育을 이수해야 한다.

人民警備隊는 政務院 社會安全部 제 5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鐵道警備處 隸下에는 鐵道警備隊가 있고, 해당 道警備處 隸下에는 海岸警備地區隊 등이 있다. 그 組織은 正規軍과 유사하다.

주요 임무는 重要地域 및 鐵道와 海岸의 警備를 담당하고 있다.

軍事同盟

北韓은 金日成 자신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1961年 7月 6日에는 <朝·蘇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을, 同年 7月 11日에는 <朝·中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였다.

<朝·蘇 조약>이나 <朝·中 조약>은 다같이 締約一方이 武力侵略을 당하여 戰爭狀態에 처하게 되면 締約相對國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軍事 및 其他 援助>를 제공하도록 規定함으로써, 軍事同盟條約의 성격을 分明히 하고 있다.

<朝·蘇條約>은 條約의 効力에 관해서 10年 有効의 時限的 條項을 두고 있으며, 또 締約一方이 時限滿了 1년전에 解約 希望을 표시하지 않으면 5年間 効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有効期間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朝·中條約>은 締約 雙方이 修正 또는 廢棄할 것에 관해 合意하지 않는 한 계속 有効하도록 <無期限 効力> 條項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外 交

外交政策

政策基調

國際政治觀

古典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指導理念의 根幹으로 하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다”라는 命題에 따라 國際政治도 階級鬭爭의 視角에서 풀이하고 있다.①

이에 따라 金日成도 “社會主義나라들은 外交에서도 當당 階級的 원칙을 견지하여 美帝에 壓力을 加하며 그의 侵略과 戰爭政策을 폭로하고 규탄하여야 합니다”②라고 함으로써 國際政治와 外交를 階級鬭爭이론에 의한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드러냈다.

國際政治를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立場은 黨規約과 헌법에도 나타나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원칙에서 社會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反對하는 世界 모든 나라 人民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民族解放鬭爭과 혁명투쟁을 적극 支援한다”③는 것이다.

政策目標 및 指針

이러한 立場에서 세워진 外交政策의 基本目標은 “美帝를 國際的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祖國統一과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④는 것이다.

① 西歐의 共產黨과 日本共產黨은 이러한 立場을 取하지 않고 있다.

② 金日成 저작선집, 4권(1973) p.32.

③ 조선 로동당 규약 전문 및 社會주의 헌법 제16조.

④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의 허담 토론, 로동신문(1970. 11. 6.)

즉 北韓外交政策의 목적은 <朝鮮革命的 全國的 勝利(즉 共產化 統一)>를 促進시킬 수 있는 <國際革命力量과의 連帶性強化>에 있다는 것이다.

그 目標達成을 위하여 북한은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⑤ 맺는 한편, 일방적으로 韓國을 支持하는 西方國家에 대해서는 非政治的 關係를 통한 <人民外交>方式의 侵透外交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外交的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 아래 國家間的 實際關係를 이어가는 지침은 대상에 따라 特性을 보이고 있다.

첫째, 社會主義諸國과의 관계에서는 黨의 관계, 政策上的 차이, 이데올로기 상의 마찰과는 관계없이 국가관계를 維持한다는 것이다. 中·소間의 理念紛爭에서 中共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소련과의 國家關係는 유지했었고, 東歐共產國家들의 獨自路線宣言과는 관계없이 그들 국가와의 國家的 關係를 유지해 왔다.

둘째,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는 紐帶關係 強化와 外交關係 樹立을 위하여 招請과 訪問活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近者의 傾向이다. 지난 1978年의 경우 북한은 黨·政次元에서부터 社會團體 및 個別人士에 이르기까지 經濟, 科學, 文化등 各分野에 걸쳐 66개국에서 168개의 使節團 및 使節을 초청했고, 102個의 北韓使節團 및 使節이 49개국을 巡訪했었다.^⑥

셋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南北韓 等距離政策을 前提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 5기 1차 회의에서 “조선 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원칙에서 국가

⑤ 사회주의 헌법 제16조.

⑥ 로동신문 1979. 1. 1~12. 31; 총 87개국에서 271개 대표단 초청(유럽 21국 103개 대표단), 67개국에 191개 대표단 파견(유럽 17국 88개 대표단, 북미 1국 1개 대표단). <地域外交> 특히 “第三世界外交”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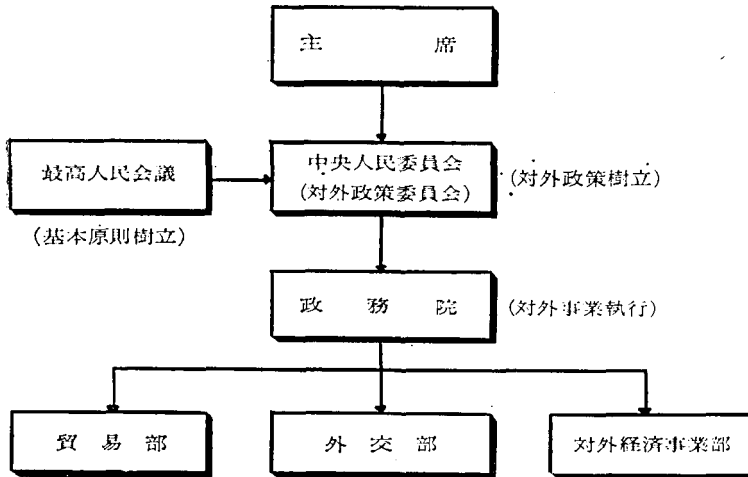
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⑦고言及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의 對西方接近이 강화되어 1979년 10월 현재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59개국에 이르고 있다.

北韓外交政策은 1948年 政權樹立 이후 많은 變化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기본적으로는 中·蘇의 갈등과 대립이 變化의 決定的 요인이었다. 그러나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促進>시키기 위한 <國際革命力量과의 連帶性 強化>라는 基本路線은 일관하여 추진되고 있다.

政策決定 및 執行機構

北韓의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中央人民委員會는 對外政策을 수립하고 外交部 등 政務院의 관계부서는 對外事業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⑧

對外政策決定 및 執行過程



⑦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자”(1972. 12. 10 최고인민회의의 제 5기 1차회의 연설).

⑧ 사회주의 헌법 제76조 2항, 103조 1항, 109조 7항.

그러나 최근 越南 歸順한 전직 勞動黨 고위간부의 證言에 의하면, 북한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實質的 最高權力機關인 <조선로동당>으로서, 모든 대외정책에 대한 원칙문제로부터 政策決定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黨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黨大會에서 基本原則을 세우고 政治委員會에서 具體的인 政策을 결정하면, 黨 국제부의 지도 통제 아래 政務院의 外交部 등 관계부서와 民間外交機關인 對外文化連絡協會와 기타 黨의 外廓團體들이 外交活動을 전개한다고 한다.⑨

政策變化過程

북한 外交政策 變化過程은 時期別로 4段階로 구분지을 수 있다.⑩

1) 陣營外交期(1948年 政權樹立~1950年代初) : 소련을 中心으로 그 영향권아래 있는 東歐共產諸國 및 中共 등 11개국과 國交關係를 맺은 시기로서 政權承認과 관련하여 共產國家에 국한된 陣營外交를 전개한 것이 特徵이다.

2) 多邊外交開始期(1950年代 中盤~1950年代末) : 1955년 4월 반둥 會議가 개최되고, 1956년 2월 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이 발표되는 등 國際情勢의 변화에 따라 北韓도 共產圈一邊倒外交로부터 脫皮하는 政策的 變化를 하였다. 1956년 4월에 開催된 조선로동당 제 3 차대회에서 陣營外交에서 多邊外交로 전환할 方針을 闡明한⑪ 뒤, 이를 위해 1956년 4월 <對

⑨ 대외관계 주요 의판단체로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각국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고, 기타 사모청·여맹·적맹·농근맹·체육지도위·문예총 등도 각각 대외사업에 참여한다.

⑩ <修交現況>의 時期別·地域別 修交現況表 參照.

⑪ 조선로동당 제 3 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국들과 형제적 친선단결을 눈동자 같이 고수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 3 차 대회 주요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6) p.12.

外文化連絡協會>라는 黨 外廓團體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월남귀순자들의 證言이다.

3) 第三世界 外交開始期(1960年代) : 內政不干涉과 相互平等을 내세우면서 中·蘇로부터 <自主性>을 強調하는 한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接近을 시작한 시기다. 1961년 9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 4 차대회에서는 가) 社會主義國家와 의 團結 나) 帝國主義陣營에 대한 反對鬭爭, 다) 中立國, 新生國家에 대한 接近이 對外政策의 基本원칙으로 採擇되었다.^⑫

中·소간 對立이 深化되고, 아시아·아프리카 新生國들이 대거 유엔에 加入하였고, 1960년 15차 UN 總會에서 南北韓 동시 초청 문제가 提起되자 中·소의 제어로부터 脫皮와 第3世界에의 接近 強化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던 狀況에서 북한은 1966년 8월 이른바 外交에서의 自主路線을 宣言하기에 이르렀다.^⑬

4) 對西方接近期(1970年代) :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對外政策은 實利的인 外交中心으로 戰術的 轉換을 하였다.

1971년 11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 5기 3차 全員會議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란 議題를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黨의 政策路線으로 채택하였다. 이때부터 北韓은 第3世界에 대한 多邊外交를 擴大하고 西方自由國家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美·中共關係의 극적인 改善, 새로운 6개년 經濟計劃 수행상 필요한 支援획득, 유엔政策 對備에 필요한 支持國家 수의 增加要求 등이 實利를 위한 對西方接近을 積極화 하게 한 것이다.

⑫ 특히 김일성은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시키는 것을 대외 정책의 중점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더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 저작 선집, 3권(1968) pp.195-196.

⑬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사설(1966.8.12) 참조. <자주로선>이 당노선으로 확정된 것은 1966년 10월 당 대표자회의에서였다고 한다.

이러한 變化過程을 거친 오늘날 북한의 對外政策은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團結>, <反帝·反美 공동투쟁을 위한 불력不加擔국가들과의 紐帶強化>,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수립>을 課題로 하고 있다.

外交活動

地域外交

對中·蘇外交

北韓政權의 樹立 初期에는 對蘇 一邊倒外交를 하다가 中共의 韓國戰 參戰을 계기로 對中·蘇關係가 北韓外交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對中·蘇關係가 항상 安定되고 均衡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三角關係의 均衡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 中·蘇간의 紛爭임은 學界의 通說이거니와, 北韓의 中·蘇 예측으로부터의 脫皮도 中·蘇 분쟁의 結果라고 보고를 있다.

1956年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 運動 전개로 北韓의 대소 관계는 以前보다 소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年 7月 6日과 11日에 소련 및 中共과 <友好協力 및 互相援助條約>을 締結하였다는 事實은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均衡을 이루었음과 中·蘇의 對北韓關係에서의 경쟁적 立場을 立證해 주었다.

1962年 10月 쿠바 미사일事件과 中·蘇國境紛爭은 中·蘇關係를 決定的으로 惡化시킨 계기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說이며, 이것은 북한의 대소 관계의 惡化까지 야기시켰다.

1964年 흐루시초프의 失脚과, 1965年末부터 시작된 中共의 文化革命은 北韓의 對蘇關係가 회복되는 契機가 되었다.

1962年 이후 7年計劃이 차질을 빚어 3年씩이나 계획이 延長되고, 1965年 이후 越南戰이 擴大되는 등 國內外 情勢가 變化하는

가운데, 1965年 2月 코시킨의 平壤訪問 이후 北韓은 親蘇的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親蘇期 동안 中共을 非難^① 해오던 北韓은 1966年 8月 12일 이른바 「자주로선」을 선언^②하였다.

그러다가 1969年 7月 1日 北韓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하여 중국인민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對中共關係 改善 의사를 表示하였다.

이는 文化大革命의 終熄과, 第3世界와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北韓의 對中·蘇 外交活動

中/蘇		(分野別)										(1970. 1. 1~1979. 9. 30)	
구분	분야	외교 친선	경제 통상	군사	과학 기술	항공 운수	문화 예술	보건	보도 언론	체육	사회 단체	계	
초청	中	28	12	6	18	13	16	5	9	39	11	157	
	蘇	21	13	3	13	3	37	1	9	24	27	151	
방문	中	20	13	4	17	2	14	2	7	22	8	109	
	蘇	21	14	1	27	1	25	1	6	19	40	155	
협정	中	0	9	1	9	4	0	0	0	0	0	23	
	蘇	0	11	0	7	1	8	1	0	1	1	30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中/蘇		(年度別)										(1970. 1. 1~1979. 9. 30)	
구분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초청	中	6	15	16	31	18	14	7	13	24	13	157	
	蘇	12	15	24	20	9	21	7	10	20	13	151	
방문	中	7	14	20	15	10	10	6	11	9	7	109	
	蘇	22	21	24	14	11	17	6	9	15	16	155	
협정	中	2	3	5	2	2	1	2	0	5	1	23	
	蘇	2	2	0	0	5	7	4	2	7	1	30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① 예컨대 1964. 12. 3 로동신문은 中共의 교조주의 毒素 추종 압력을 비난하는 사설 게재.

②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1966. 8. 12),'

役割을 고려하여 취해진 政策의 變化라고 평가되고 있다.

70年代에 들어서 北韓의 對中·蘇關係는 過去와 같이 不安定해지지 않고 이른바 <自主路線>도 定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北韓은 中共으로부터는 名分支援을 받고, 소련으로부터는 實利를 支援 받는 獨特한 對中·蘇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다.

北韓의 對中·蘇頂上級 外交活動

(副首相級 以上)

日 字	北韓·中共	北韓·蘇聯
1949. 2. 22		김일성, 소련방문
1953. 7	최용건, 중공방문	
1953. 9. 1		김일성, 소련방문
1954. 9. 28	김일성, 중공방문	
1955. 8. 15	朱 德, 북한방문	
1956. 6. 1		김일성, 소련방문
1956. 9. 12	최용건, 중공방문	
1956. 10. 17		김일성, 소련방문
1957. 11. 3		김일성, 소련방문
1958. 2. 14	周恩來, 북한방문	
1958. 5. 3		정일용, 소련방문
1958. 11. 22	김일성, 중공방문	
1959. 1. 27		김일성, 소련방문
1959. 4. 3		최용건, 소련방문
1959. 9. 29	김일성, 중공방문	
1960. 11. 11		호루시초프, 평양방문 계획취소
1961. 5. 30		코시킨(부수상), 북한방문
1961. 6. 29		김일성, 소련방문
1961. 10. 21		김일성, 소련방문
1963. 6. 5	최용건, 중공방문	

日 字	北韓・中共	北韓・蘇聯
1963. 9. 14	劉少奇, 북한방문	
1965. 2. 11		코시킨, 북한방문
1966. 3. 29		최용건, 소련방문
1967. 2. 13		김 일, 소련방문
1967. 3		노비코프, 북한방문
1967. 10. 17		최용건, 소련방문
1969. 5. 14		포드고르니, 북한방문
1969. 10. 1	최용건, 중공방문	
1969. 12. 8		박성철, 소련방문
1970. 4. 5	周恩來, 북한방문	
1970. 4. 29		최용건・박성철, 소련방문
1971. 3. 28		김 일, 소련방문
1971. 7	李先念, 북한방문	
1972. 10. 17		최용건, 소련방문
1975. 4. 17	김일성, 중공방문	
1975. 9. 21	張春橋, 북한방문	
1977. 1. 24		박성철, 소련방문
1978. 5. 5	華國鋒, 북한방문	
1978. 9. 9	鄧小平, 북한방문	

對東歐 外交

北韓의 對東歐政策은 中・蘇關係의 變化 속에서 對蘇關係와 函數關係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中・蘇紛爭이전 北韓의 對東歐政策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의 참여와 협조를 名分으로 하여 建후 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 획득을 追求하는 方向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다.^③

③ 동구의 대북한 원조는 소련, 중공에 비하면 규모면에서 절대적으로 작은 것이었지만, 동구로부터의 원조의 대부분이 1954~56년간의 建후 복구 3개년 계획기간과 1957~60년간의 5개년 경제 계획기간에 제공되었다.

中·蘇紛爭에서 동구국가들과 北韓이 서로 다른 共產大國을 추구함으로써 北韓의 對東歐關係는 다소 소원했었으나, 北韓의 對中·蘇關係가 균형적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70年代에 北韓·유고슬라비아와 관계가 急進展되었고, 中·蘇紛爭期부터 대소 <自主路線>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했다.④

北韓의 對루마니아·유고貿易現況

(單位:百萬弗)

年度別	輸 出			輸 入		
	總計	루마니아	유고	總計	루마니아	유고
1970	114.65	6.02	0.8	69.36	8.75	0.6
1971	78.14	10.68	—	75.22	10.97	—
1972	95.83	11.29	—	172.83	15.95	—
1973	154.54	15.85	0.3	350.80	19.21	2.28
1974	242.80	20.41	16.36	835.77	22.47	5.69

出處: IMF & IBRD, *Direction of Trade, 1970~71, 1975.*

1972年 2月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과 때를 같이하여 北韓은 外交部長 許鎔을 團長으로 하는 政府代表團을 소련 및 루마니아·유고·체코·동독·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에 巡訪시켜 東歐諸國과의 相互政策 支持를 다짐하였다.

1975년 印度支那가 共產化된 후 金日成은 中共訪問을 마친 뒤 곧 이어 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를 訪問하였다.

經濟的인 면에서도 北韓은 루마니아와 1976~1980年間 長期 貿易協定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는 1976~1985년까지의 <10個年 經濟 및 科學技術協助議定書>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와는 相互經濟協同委員會 設置에 合意하였다.

70年代 北韓의 對東歐關係는 통상적인 交流關係 그 自體도 하나의 目標였지만, 비동맹 세력권에의 接近과 對西方進出을 위하여

④ 유고와 북한은 1948. 10. 30 수교 합의하였으나 1971. 9. 2에 공관을 개설했다. <修交現況>의 地域別·時期別 修交現況表 참조.

外交活動

유고 및 루마니아와의 관계 개선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 特徵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對東歐 外交活動

초청/방문, () : 협정

(1970. 1. 1~1979. 9. 30)

분야 국가	외교 친선	경제 통상	군사	과학 기술	항공 운수	문화 예술	보건	노동 업권	체육	사회 단체	계
불가 리아	14/5 (1)	8/10 (10)	1/0	6/5 (8)	0/0	20/10 (4)	0/2	5/3 (3)	11/6	8/13	73/64 (26)
루마 니아	24/17 (2)	12/14 (15)	5/3	4/4 (8)	3/0 (1)	16/12 (3)	0/1 (2)	15/9	8/7	17/16 (2)	104/83 (33)
동독	14/12 (2)	9/8 (8)	2/0	6/5 (5)	3/0 (1)	19/9 (3)	2/2 (2)	8/7 (1)	12/13	4/15 (2)	79/71 (23)
헝가 리	12/9	6/10 (9)	3/2	5/6 (5)	1/0	13/8 (4)	0/1 (1)	6/7 (1)	11/13	10/13	67/69 (20)
폴란 드	10/11	9/8 (13)	2/0	3/5 (8)	2/1 (1)	5/6 (4)	0/1 (1)	4/3 (1)	6/5	7/8	48/48 (28)
체코	8/11 (1)	4/5 (4)	2/0	6/5 (6)	1/0	3/5 (3)	0/0 (2)	3/4 (1)	10/4	3/13	40/47 (17)
유고	6/15	3/3 (3)	2/1	2/3 (1)	0/0 (2)	4/5 (3)	1/1 (2)	8/5 (3)	1/0	7/7 (1)	34/40 (15)
알바 니아	2/2	5/5 (7)	0/0	2/1 (1)	0/0	3/1 (3)	0/0	1/0	0/0	0/2	13/11 (11)
계	90/92 (6)	56/63 (69)	17/6	34/34 (42)	10/1 (5)	83/56 (27)	3/8 (9)	50/38 (10)	59/48	56/87 (5)	458/433 (173)

出處 :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第3世界 外交

北韓의 第3世界外交의 목표는 反美共同戰線의 形成과^⑤ 이에
다른 北韓統一方案 支持獲得에 있다.^⑥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第3世界國家들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接近하고 있다.

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1963. 10. 28)
“민족해방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사설(1964. 1. 27)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사설(1966. 8. 12)

⑥ 1974. 8. 11 로동신문에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제일 지지세력은 제3세계라고 규정하고 있
다.

- 1) 平和共存路線 표방
- 2) 反帝·反植民主義 및 民族解放鬪爭 支援 宣傳
- 3) 國際共產主義 宣傳機構 加入
- 4) 人民外交
- 5) 文化 및 經濟交流

1955年 반동會議가 있는 후 1956年 4月 로동당 3次大會를 계기로 第3世界 國家들과의 관계 設定에 눈뜨기 시작하여 <對外文化連絡協會> 등 黨 外廓團體를 통한 친선 및 文化交流 形態의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政治的 性格의 接近은 1961年 9月 로동당 4次大會 이후였다. 第2次 반동會議를 앞두고 中共指導者들이 아시아·아프리카 地域을 순방할 때 (1963.12~1964.2 周恩來, 1965.9 陳毅) 北韓에서는 高位層 代表團을 파견, 中共代表團들의 뒤를 따라 이 地域을 순방하였다(1964.4, 최원택 최고인민회의 의장. 1964.12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겸 부수상, 1965.5 이주연 부수상)

中共에 文化大革命이 일어나 그들의 對外關係가 硬塞되자 1966년부터는 친소적 國家들을 向하여 친선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例컨대, 1966年 8月 강양옥은 통일아랍공화국·탄자니아·이라크·시리아를 訪問하였고, 1966年 10月 이주연은 버마·파키스탄·캄보디아를 訪問하였다.

訪問과 더불어 北韓은 1964年 11月 나세르 아랍공화국 대통령을 招請한 이후 各國의 首腦級 人士들을 大舉 平壤으로 招請하였다.

最近 北韓 外交에서는 訪問보다 초청이 많은데, 이것은 訪問하여 說得하는 것보다 招請하여 實物과 現況을 보여 주면서 접근하는 것이 效果가 크다고 判斷한 것으로 推定된다.

한편, 第3世界 國家들과의 關係強化는 그들 國家 大部分이 비동맹회의의 구성국가들이라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北韓의 對第3世界 外交活動

초청/방문 (年度別, 地域別/招請, 訪問) (1970. 1. 1~1979. 9. 30)

지역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계
		초청	48	69	57	65	49	51	33	57	75	
아시아주 (일본제외)	방문	23	21	45	54	36	43	31	34	53	23	363
	초청	30	55	50	25	25	49	30	64	67	21	416
아프리카주	방문	11	5	26	28	25	64	34	39	32	16	280
	초청	13	30	20	17	21	12	8	21	6	8	156
라틴 아메리카주	방문	11	12	7	19	16	15	8	9	8	2	107
	초청	91	154	127	107	95	112	71	142	148	60	1,107
계	방문	45	38	78	101	77	122	73	82	93	41	750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초청/방문 (分野別, 地域別/招請, 訪問) (1970. 1. 1~1979. 9. 30)

지역	분야	외교	경제	군사	과학	항공	문화	보건	노동	체육	사회	계
		친선	통상		기술	운수	예술		업권	단체	단체	
아시아주 (일본제외)	초청	170	53	28	27	19	48	6	44	55	85	535
	방문	126	53	10	20	3	43	3	26	40	39	363
아프리카주	초청	222	15	26	5	5	23	3	22	7	88	416
	방문	158	39	9	0	0	23	2	3	19	27	280
라틴 아메리카주	초청	35	8	0	5	0	10	0	12	10	76	156
	방문	57	9	0	6	1	10	0	3	3	18	107
계	초청	427	76	54	37	24	81	9	78	72	249	1,107
	방문	341	101	19	26	4	76	5	32	62	84	750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즉 한반도 문제의 유엔 問題化 試圖와 관련하여 ⑦ 非同盟會議 國家들과의 國際統一戰線을 形成, 對 유엔 攻勢를 取한다는 것이다.

1975年 8月 리마에서 열린 非同盟外相會議에서 正式會員國으로 加入된 이래 北韓은 非同盟會議에 한반도 문제를 上程, 그들의 政策에 대한 支持를 받으려 하였다.

⑦ <UN 外交> 참조.

1978년부터는 非同盟會議가 열리기 전에 미리 黨中央委員會와 中央人民委員會의 連席會議를 열어 비동맹회의에 臨하는 北韓자신의 政策을 整理·確認하는 方針까지 취하고 있다.

北韓의 非同盟會議關係 主要動向

日 字	비동맹회의의 관계	북한관계 주요내용
1975. 3. 17~19	비동맹사무국회의(아바나)	북한 가입방침 결정
1975. 8. 25~30	비동맹외상회의(티마)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1976. 8. 14	제5차 비동맹정상회의(콜롬보)	박성철(총리) 참석
	—한반도 조항에 지지 유보(25개국)	
1977. 4	비동맹조정위외상회의(뉴델리)	허담(외교부장)참석
1978. 7. 25~30	비동맹 외상회의 (베오그라드)	허담(외교부장)참석 ※1978. 7. 12 당중앙위, 중앙인민위, 연석회의 개최 —1978. 7. 27 허담, 연설에서 미군 및 핵무기 철수, 대미 평화협정체결 주장
1979. 6. 7~8	비동맹조정위외상회의(콜롬보)	허담(외교부장)참석 —허담,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직접 거론 회피
1979. 8. 31~9. 1	비동맹 외상회의(아바나)	허담(외교부장)참석, 부의장국으로 피선 ※1979. 7. 18 당중앙위·중앙인민위 연석회의 개최
1979. 9. 3~9	제6차 비동맹정상회의(아바나)	이종욱(총리)참석 —1979. 9. 6 이종욱, 연설에서 미군 및 핵무기 철수, 대미협정 체결 및 3당국 회담에 앞서서 자격의 한득 참가 가능 시사

그러나 最近 非同盟會議 會員國 間에 自體의 路線紛糾가 생기는 등 問題가 생기면서부터 北韓은 非同盟國家들의 統一團結과 經濟協力 및 自主性을 強調하면서 鬭爭의 銳鋒을 反帝國主義 方向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⑤

⑤ 1979. 7. 18 당중앙위·중앙인민위 연석회의 결정 및 “1979. 9. 6 제 6 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이종욱의 연설”, 로동신문 (1979. 7. 19).

非同盟會議宣言中 韓半島 關係條項 變化 추이

	글름보 선언(1976. 8)	베오그라드 선언 (1978. 7)	아바나 선언(1978. 9)
한반도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도발 책동 핵무기 및 모든 전쟁수단, 군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단의 지속은 국제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 긴장조성에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민의 평화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분단상태 지속되고 있음
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 공동성명에 기초한 남북한민(North & South Korean People)의 통일투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한국민(Korean people)의 통일염원 환영 	
외군철수 및 휴전협정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철수와 군기지 철거 UNC 해체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군철수, 외군기지 및 군사시설 철거, UNC 해체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군기지 해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촉구

對西方 外交

北韓의 對西方 接近이 본격화한 것은 1970年代로서^⑨ 닉슨의 中共訪問說, 美·中共관계 개선, 美·蘇의 平和共存體制의 樹立 등에 자극받아, 1971年 11月 조선로동당 第5期 3次 全員會議에서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을 결의하면서부터이다.^⑩ 北韓의 對西方 外交方式은 民間 수준의 <人民外交>方式과 政府次元의 外交의 접근을 併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대상 국가의 著名人士를 개별 초청하거나 訪問하고, 民間貿易代表部와 公報館등을 設置하여 半政府的 次元으로 끌어 올렸다가 公式的인 국교 관계까지 發展시키는 方式을 쓰고 있다.^⑪

최근 북한은 西方側에 대하여 선전활동을 통한 平和攻勢를 強化하고^⑫, 무역관계를 擴大하는 方向에서 接近을 推進하고 있다.

北韓의 對西方外交의 核心은 對美·對日關係에 있다. 이는 美國 및 日本의 對韓 지원이 共產化統一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

⑨ 민간 차원의 접근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은 이미 영국·서독·프랑스 등 국가로부터 상품, 기술 등을 도입하고 민간 차원의 무역협정도 체결하였다.

⑩ 김일성은 이러한 진출적 전환이 <제국주의와의 타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선집, 4권(1968) p. 338

⑪ 대표적인 경우가 스칸디나비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중립국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經濟外交>·<修交現況>참조

⑫ <對外交傳> 참조.

北韓의 對西方 外交活動

초청/방문

(1970. 1. 1~1979. 9. 30)

지역	문 야	분 야										계
		외교 친선	경제 통상	군사	과학 기술	항공 운수	문화 예술	보건	보도 언론	체육	사회 단체	
西 歐	초청	23	18	0	0	2	3	0	13	1	130	189
	방문	23	7	0	1	1	24	0	3	3	75	137
北 美	초청	0	0	0	0	0	0	0	0	0	6	6
	방문	0	0	0	0	0	0	0	1	0	0	1
日 本	초청	0	2	0	0	0	12	0	42	9	122	187
	방문	0	2	0	2	0	5	0	2	3	18	32
大 洋 洲	초청	1	1	0	0	0	2	0	0	0	7	11
	방문	0	1	0	0	0	1	0	0	0	2	4
계	초청	24	21	0	0	2	17	0	55	10	265	393
	방문	23	10	0	3	1	30	0	6	6	95	173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근거 작성.

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美·對日外交의 기본 목표는 美·日의 對韓支援을 弱화시킨다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며, 부차적인 目的은 美國의 北韓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기술 및 자본도입 등이라는 경제적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北韓은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置시키자는 문제를 내걸고 美國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⑬

日本과는 國交가 없는 狀況에서 北韓은 우선 日本內의 反韓勢力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輸入超過라는 不利한 狀況에서도 이를 <國交正常化>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對日 경제관계를 深化시켜 나가고 있다.

UN 外交

北韓은 1948年 유엔 第3次總會에서 한국이 한반도에서 唯一合

⑬ 최근에만도 북한은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을 통해 카터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1976. 9), 유고의 티토 대통령 (1977. 8), 루마니아의 조세스쿠 대통령 (1978. 5)의 북한 방문이 대미 접근책 강구의 일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法政府로 承認되고, 1950年 安保理에서 北韓과 中共을 侵略者로 規定하자 유엔의 權威와 機能을 認定하지 않고 拒否해 왔다. ㉔

1953年 韓國戰 休戰會談에서 유엔 司令官과 休戰協定을 체결한 뒤 북한은 유엔을 美國과 同一視하면서 統一을 위한 南北韓 포함 有關 國會議을 提議하는 등 韓國問題를 유엔으로부터 떼어내려 하였다. ㉕

1960年代 中盤 이후 北韓이 이른바 <自主外交>를 強調하면서부터 유엔에 대한 자세는 硬化되어 60年代 中盤 이후에는, 60年代 中盤 이전과는 달리 유엔의 權能을 否認하는 立場을 取하였다.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共이 유엔에 加入하게 되고, <南·北韓 同時招請 提議>가 나오는 등 狀況이 변하자 北韓은 1973年 제28차 유엔 總會에서부터 유엔 外交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73年 9月 5日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常駐代表部를 開設했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국에도 상임 옵서버 代表部와 국제기구 상설대표부를 設置하고 있다.

유엔傘下機構 加入現況

(1979. 10 현재)

區 分	機 構 名	加 入 日
直屬機構	유엔 通商開發會議 (UNCTAD)	1973. 7. 23
	世界保健機構 (WHO)	1973. 5. 19
	萬國郵便聯合 (UPO)	1974. 5. 29
	世界地籍財產機構 (WIPO)	1974. 8. 17
專門機構	유엔 教育科學文化機構 (UNESCO)	1974. 10. 17
	世界氣象機構 (WMO)	1975. 5. 7
	國際電氣通信聯合 (ITU)	1975. 9. 24
	國際民間航空機構 (ICAO)	1977. 9. 15
	유엔 食糧農業機構 (FAO)	1977. 11. 14

㉔ 한편 북한은 1949년 2월 9일과 1952년 1월 2일, 2차에 걸쳐 단독 유엔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1957년과 1958년에 소련을 통해 <남북한 동시가입안>을 제출한 바 있다.

㉕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은 의무성 비방목 형식을 통해 유엔의 한반도 문제 토의시 북한 참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주장은 이후에도 되풀이되었다.

1973년부터 北韓은 한국이 이미 加入한 유엔산하기구에 加入하기 시작하여 現在 9個의 유엔산하기구에 加入되어 있으면서도 “국제연합에의 가입은 남북한 단일국호에 의하여야 한다”^⑥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北韓이 그 동안 非同盟國家들에 대한 外交를 強化시킨 結果 유엔內에 북한 지지세력이 大幅 증가되었고, 1975年 제30차 總會에서는 南北韓 立場을 각각 支持하는 두 개의 決議案이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최근 北韓은 주한 미군철수를 主張할 때 30차 유엔總會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원용하는 등 유엔의 權能을 선별적으로 活用하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⑦

時期別 對 유엔關係 變化過程

時 期	年 度	主 要 立 場	備 考
韓半島問題에 관한 유엔干涉 拒否期	1948 ~ 53	○ 유엔干涉拒否 ^⑧ — 유엔 통한 남한지역 단독선거 반대	○ 1949, 1952, 가입신청 ○ 1950. 6. 25 安保理, 북한과 중공을 칩락자로 규정 ○ 1953. 7. 27 유엔 司令官과 휴전협정 체결
韓半島問題의 유엔上程 拒否期	1954 ~ 70	○ 유엔을 美國과 同一視 ^⑨ ○ 統一위한 남북한 포함有 關國會議 提議 ^⑩ ○ 유엔 權能否認 ^⑪	○ 1960. 8. 14 김일성, 南北聯邦制提議 ○ 1966. 8. 12 <자주로선> 선언 ○ 1969. 10. 29 서독 할슈타인 원칙 폐기

⑥ 1973. 6. 23 발표한 김일성의 <영화통일 5대 방침>, 조선중앙년감(1974), pp.54~56.

⑦ 예컨대, 3당국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발트하인의 북한방문을 허용하고 북한 유엔 대사가 발트하인과 자주 접촉하는 등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

⑧ 外相 林憲永이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브리에 보낸 서한(1948. 12. 10), “조선정부 대표단의 참가없이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은 이러한 결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⑨ 의상 남일의 대유엔 성명(1957. 1. 12), “미국은 유엔을 자기의 정책수행에 계속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칩락적 의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미국의 거수기에 의하여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일련의 유엔총회 결정들은 조선문제 해결에 계속 방해를 주었다.”

⑩ 의상 남일의 대유엔 성명(1955. 7. 12), 1955. 8. 15 김일성 연설, 1957. 9. 20 최고 인민회의 제2기 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

⑪ “국련은 조선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로동신문(1962. 12. 20)

時期	年度	主要立場	備考
韓半島問題의 選別的 유엔上程期	197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과 미국 분리시도② —美軍에게서 유엔모자 벗기기 한반도 문제의 유엔문제화 시도② 「高麗聯邦國」국호로 유엔 가입 제의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1. 4. 12 허담 8개항 제시 1972. 7. 4 남북한 공동성명 1974. 29차 총회 UNCU RK 해체안 결의 1975. 30차 총회 남북한 지지 두 개의 결의안 동시 통과

북한이 參加하고 있는 유엔 이외의 기타 國際機構는 非同盟國家會議(1975年 리마에서 加入)를 비롯해 5개의 정부간 국제기구 및 각 分野別 국제조직이 있다.

〈人民外交〉를 外交의 主要方式으로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半官半民이나 민간 레벨의 국제관계를 強化해 나가고 있는데, 赤十字·스포츠·科學 및 노동조합·青年學生 등 직업별, 계층별

政府間 國際機構 加入現況

(1979. 10월 현재)

機 構 名	加入日
亞, 阿法律諮問委員會(AAIM)	1974. 3. 15
國際法制計量機構(IOIM)	1974. 5. 9
國際原子力機構(IAPA)	1974. 9. 16
赤十字聯盟	1956. 5
合同核研究機構(UINR)	1956. 12. 3

의무성 성명(1963. 9. 25), “국련에서의 조선문제 토의는 불법……”

정권창립 18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의 김광협 연설(1966. 9. 8), “유엔은 미국에 의하여 조선전쟁의 교전 일방으로 전락됨으로써 조선문제에 참여할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유엔은 조선문제의 토의를 당장 걸어치워야 합니다…… 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결정들을 취소하고……”

② 최고인민회의의 5기 2차회의에서의 김일 보고(1973. 3. 5), “미국이…… 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방해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유엔의 사명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입니다.”

③ 의무성 비망록(1973. 9. 25), “유엔에서 자기들의 지반이 뒤흔들리자 미국은 유엔총회 제26차회의와 제27차 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토의를 두번이나 연기시켰다……미국정부도 올해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의 문제를 토의하는데 부득불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환영 오찬에서의 김일성 연설(1979. 5. 3), “우리는 앞으로 당신이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문제 해결에서 지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영구분열을 막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로동신문 (1979. 5. 4)

④ 1973. 6. 23 발표한 김일성의 〈평화통일 5대방침〉, 조선중앙년간(1974), pp.54~56.

各分野에 걸친 140餘個의 국제조직에 加入되어 있다.^㉔

이러한 民間 레벨의 外交活動은, 越南歸順者의 證言에 依하면, <조선로동당>의 關轄하에 있는 <조선대의문화연락협회>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經濟外交

北韓의 經濟外交는 당초 주로 소련으로부터 必要한 경제적·기술적 원조를 얻어내는 것으로부터 始作되었다. 그후 中共이 國內의 政治經濟的 基盤을 정비하면서부터는 中共을 위시하여 동독과 체코 등 東歐諸國도 受援對象國으로서의 重要性을 갖게 되었다.

戰後復舊가 어느 程度 完成되고, 1957년부터 1次 5個年計劃이 實施됨에 따라 輸出入이 北韓經濟外交의 重要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나 共產圈만이 주된 거래 대상국이었다.

그러나 1950年 후반부터 中·蘇紛爭이 露骨化되자, 北韓의 共產圈 經濟外交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北韓은 西方과의 경제 교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㉕

1970年代 北韓의 對西方 무역은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하여 1974년에는 총 대의 무역량의 40%가 되었고, 1975년에는 對共產圈과 對西方諸國의 무역량이 거의 比等하게 되었다.^㉖

北韓의 對西方 經濟外交는 당초 經濟的 目的보다는 그것을 政治的으로 連結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輸入超過도 不辭하는 무역을 해왔다.

北韓의 對西方 經濟的 通商關係는 擴大되어 가고 있지만, 科學技術分野에서 關係는 아직 共產國家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㉔ 조선중앙년감(1976) p. 470에는 1975년말 현재 총 141개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음. 이후 증가 없음.

㉕ 1958, 영국·스웨덴과 민간무역협정. 1959, 서독과 무역협정. 1960, 오스트리아에 민간 무역대 표부 설치.

㉖ E.I.U., *Quarterly Economic Review*, 4th Quarter(1976).

北韓의 科學·技術協助 現況

(1970. 1. 1~1979. 9. 30)

지역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 구	서 구	북 미	대양주
초 청	27 (중공 18)	5	5 (쿠바 4)	47	0	0	0
방 문	22 (중공 17)	0	6 (쿠바 5)	61	(스웨덴)	0	0
협 정	21 (중공 9)	26	6 (쿠바 3)	49	0	0	0

出處: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對外宣傳

對外宣傳은 外交活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國際革命力量과의 연대성을 強化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삼고 있다.

5차 당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對外宣傳의 方向이 提示되었다.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계속 지원하며, 이 지역의 신생 독립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 등 각분야에 걸쳐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독점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자본주의 나라 노동계급과 근로 인민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조자 대열을 끊임없이 늘리며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앞당기는 위업에 이바지하겠습니다.㉞”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社會主義運動의 통일단결 강화>와 <反帝·民族解放鬪爭>을 宣傳方向으로 設定하고, 陣營別 外交政策에 맞추어 對外宣傳을 展開하고 있다.

㉞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의 허담 토론, 로동신문 (1970. 11. 6)

宣傳內容 및 方式

宣傳內容은 各對象 地域別로 特性을 지니고 있으나 全地域에 걸쳐 北韓社會의 發展相 宣傳, 反帝·反美鬭爭 선동, 金日成宣傳에 注力하고 있는 것이 共通된 現象이다.

이에 따라 宣傳對象國에 組織된 친북한 단체를 통한 선전물의 配布, 文化館과 메스콤의 活用, 文化·스포츠交流 등을 통한 선전 方式을 驅使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선전에 力點을 두고 있는 北韓은 이른바 金日成의 저작들을 선전대상국 말로 번역 出版하여 大量으로 配布하는 方法을 택하고 있는데, 1977年의 경우 34個 文件을 37個國語로 번역 (總 67種) 出版 하였다고 한다.^㉔

메스콤을 利用하는 宣傳은 1960年代末에는 現地新聞에 김일성 선전 특집광고를 게재하는 方法을 썼으나, 最近에는 친북한 단체들로 하여금 신문에 記事로 취급하여 宣傳하는 方法으로 轉換하고 있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親北韓團體들로 하여금 聲明, 呼訴文, 담화 등을 發表하게 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放送들이 사설을 실게 하거나, 특집과 특별방송을 活用하는 方法을 活用하고 있다.^㉕

㉔ 조선중앙년감(1978) pp.214-215참조; 평양방송(1970. 7. 20)에 의하면 金日成勞作 海外신문 출판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國	別	社	名
핀	란	드	사
덴	마	아	만
日		本	되
			에
			트
			리
			오
			미
			라
			가
			꾸
			이
			라
			사
			샤
레	바	논	다
에	쿠	어	르
버	어	마	투
			알
			리
			와
			흐
			름
			다
			뜨
			레
			따
			보

㉕ 조선중앙년감(1978) pp. 216-226 참조.

外交活動 宣傳機構

對外宣傳機構로는 各種 국제공산주의 戰線機構(世界職業同盟·世界民主青年同盟·世界民主女性同盟 등)에 加入한 黨外團體(직업총동맹·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민주여성동맹 등)를 비롯해 정무원 산하의 부서(외교부·무역부·문화예술부·대외경제사업부 등)와 <대외문화연합회> 및 그 산하기구를 통해 조직된 各種 친선단체·文化協力·通信·放送·出版기관 등을 꼽을 수 있다.

前職 勞動黨 高位人士의 證言에 依하면, 對外宣傳活動도 對外行爲의 하나인 만큼 黨의 指導·統制下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對外宣傳活動에 관한 計劃은 黨中央委員會 선전선동부가 담당하며, 執行에 대한 總체적인 지휘 감독은 國際部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親北團體

北韓은 各國에 <김일성로작연구소>, <김일성로작연구회>, <김일성로작연구회>등을 組織하고, <김일성 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 도서관>을 만들며, 나아가 <주체사상>에 관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는 등 宣傳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와 이를 위한 <國際連絡委員會>라는 것도 여러 나라에 組織해 놓고 있다.

北韓發表에 따르면 1979年 10月 현재, 主體思想研究團體가 59個國에 284개, 親善團體가 69個國에 213個, 統一支持連帶性委員會가 63個國에 197個로 都合 94個國에 694個의 갖가지 親北團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중 親善團體는 비교적 信憑할 만한 것일 수 있으나, 餘他는 아직까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主體思想研究團體와 統一支持連帶性委員會라는 것이 주로 韓半島問題에 별 關心없는 아프리카와 유럽등지에 많이 있고, 정작 있어야 할 共產國家에는 極少數이며, 특히 中共과 소련에 그것

이 없다는 점은 눈길을 끄는 일이다.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開催상황은 다음과 같다.

主體思想討論會 開催現況

구분 \ 년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국 토 론 회	레바논 (12.20 ~22)	시에라 레온 (12.18 ~20)	소말리 아 (11.19 ~21)	토고 (10.2 ~4)	케루 (10.17 ~18)	말가슈 (9.28 ~30)	평양 (9.14 ~17)	<주체 사상연 구소> 설립
국 토 론 회				일 본 (2회)	일 본 (2회) 키프로 스(1회)	일 본 (2회) 코스타 리카 (2회)	일 본 (2회) 토고 (1회) 레바논 (1회)	(4.8일 일본, 동경)	일 본 (2회) 온두라 스(1회) 파키스 탄(1회)

出處 : 조선중앙년잡(1978년판) 로동신문.

1977年 9月 14日~17日 平壤에서 열린 討論會에서는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研究所>를 設立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同年11月 日本 東京에 <組織委員會>事務室을 設立한 후 1978年 正式發足하였다. 1979년에는 討論會가 뉴델리에서 4月 14日~16日에 열렸는데, 北韓은 85個國에서 200여 명이 參席했다고 報道를 하고 있다.^㉑

그런데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도 日本을 除外하면 韓半島問題에 크게 關心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서 열리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는 現象이며, 日本 또한 朝總聯이라는 大規模의 親北團體가 있는 國家라는 점을 考慮하면 <國際討論會>의 性格이 研究團體 活動以外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北韓이 發表하는 參加國 名單에 共產國家가 끼어 있지 않음도 興味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北韓은 2月 21日~22日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조선의 自主의 平和統一을 支持하는 世界大會>를 開催하고,^㉒ <國際連絡委員會>를 組織하였다고 한다.

㉑ 로동신문(1979. 4. 19.)

㉒ 로동신문에서는 50여 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 로동신문(1977. 10. 26.)

第2次世界大會(東京 1978. 11. 27~29)에는 한일관계를 비난하는 議題가 있었기 때문에 日本政府가 입국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40여 개국에서 77명만이 참석하였다.^③ 東京大會는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武器를 한반도로부터 全面 철수할 것을 주장하는 등 7개항의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第3次大會를 1979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開催키로 결정하였다.

第3次世界大會開催 준비의 일환으로, 1979年 3月 9日~10日에 로마에서 열린 <국제연락위원회확대회의>는 1979年初 남북한 접촉과 관련한 北韓의 1.23 조선성명을 支持하고, 4月 21日을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의 民衆과의 연대의 날>로 宣布 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국제연락위원회>위원장에 前 이탈리아 하원 부의장 루자또를 選出(서기장에 프랑스의 장·도리)하고, 第3次世界大會 준비를 위한 問題들을 論議했으나, 第3次世界大會는 열리지 못했다.

朝總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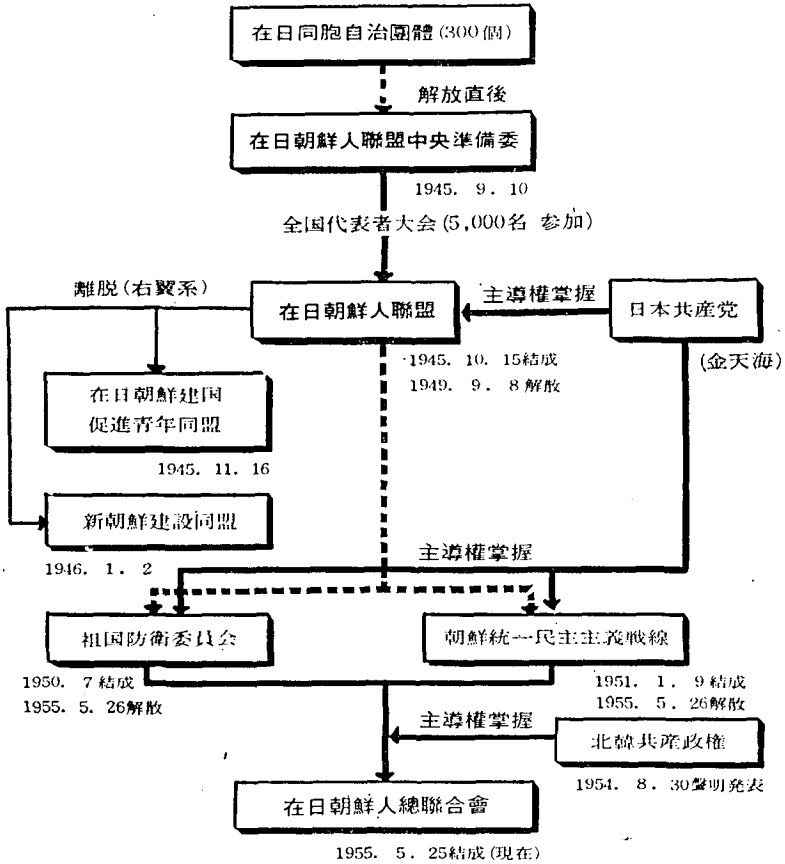
1955年 5月 25日에 組織된 조총련은 日本에 居住하는 60萬 在日 교포들을 북한 支持로 轉向시키고, 한반도에서의 共產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조직된 것이다.

金日成이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제일 조선인 운동은 비로소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한 대오의 사상 의지적 동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융성 발전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朝總聯은 제일교포들에 대한 포섭공작과 한반도의 共產化를 위한 革命力量 強化에 目的을 두고 있다.

北韓은 朝總聯에 對하여 積極的인 支援活動을 하고 있다고 宣傳하고 있다. 例컨대, 1957년부터 1977年 사이에 朝總聯에 對하여

^③ 북한에서는 60개국과 12개 국제기구에서 504명이 참석했다고 보도, 노동신문(1978.12.6.). 그런데 공산국가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흥미롭다.

朝總聯의 結成過程



教育援助費 名目으로 92억 5천엔 (日貨)을 送金했다고 한다. ④

그러나 朝總聯에서 北韓에 갖가지 名目으로 資金을 다시 獻納하는 것은 在日 韓人社會의 常識이 되어 있다. 例컨대, 1979年 4月 完工된 <평양에 국옥당(王糖)공장>은 조총련의 設備寄附으로 建設

④ 조선중앙년간(1987) p. 353.

된 工場이며, 이 以外에도 몇 個의 工場이 있다고 한다. 또한 1979年 8月 28日 北韓의 對日負債 償還延期 交渉이 妥結되면서 對日總支拂額 1,260억엔 中 1979年末까지 支拂해야 할 60억엔을 朝總聯系 朝鮮人信用協同組合(資產額 80억엔)에서 代納해야 할 것이라는 說이 있었다.^⑤

이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의 朝總聯에 대한 支援은 單純한 支援이 아니라 獻納을 誘導하기 위한 措置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經濟的 관계와 아울러 北韓은 朝總聯을 <黨의 唯一思想 主體思想으로 一色化>^⑥하기 위하여 思想敎養事業을 強化해 나가고 있다.

1959年 12月 14日부터는 在日同胞들을 北送시키기 시작하여 1979年 9月 現在까지 183次에 걸쳐 10萬여 명을 北韓地域으로 移住시켰으며, 1962年 3期 最高人民會議부터는 朝總聯代表를 代議員으로 參加시키기 시작했다.

이와같이 北韓과 政治·思想·經濟的으로 連繫를 맺고 있는 朝總聯은 北韓의 對外宣機構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조총련을 통한 對外선전 활동에 대하여 “총련은 출판물을 통한 일상적인 선전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시기마다 기자회견·강연회·가두선전과 시위·시명운동·조국통일 촉진대행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對外환동을 힘있게 벌렸다”^⑦라고 평가하고 있다.

朝總聯은 김일성 저작선집과 <혁명전통교양> 자료들을 各國語로 번역 出版하고 인민조선(주간)을 英語·프랑스어·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하여 140여개 나라를 상대로^⑧ 宣傳活動을 하고 있다.

⑤ 統一日報(1979.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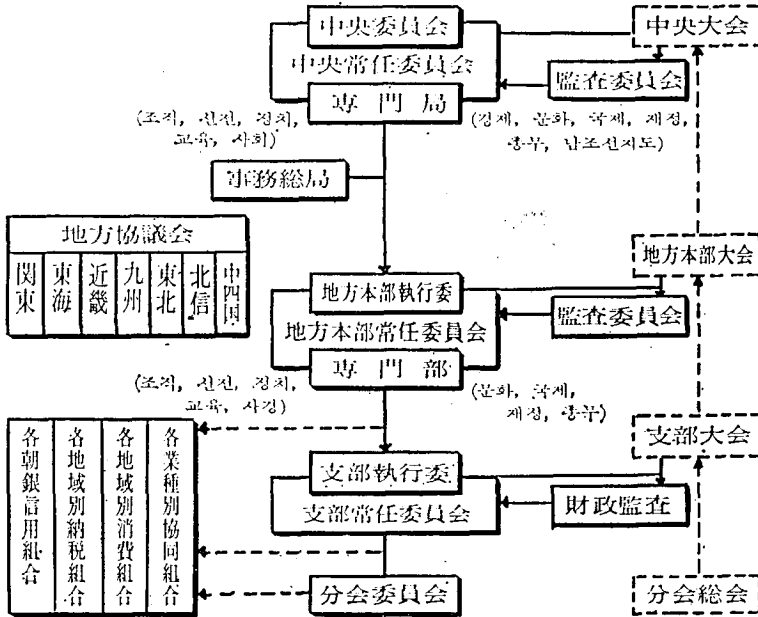
⑥ 조선중앙년감(1976년판) p. 439.

⑦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 358.

⑧ 조선중앙년감(1978년판) p. 358. 이 이외에도 일간신문으로 조선신보(한글판) 조선통신(일어판) 등 3개 신문이 있고, 주간으로서는 조선청년(한글판) 청년주간(한글판), 월간으로서는 조선자료(일어판), 조선문제연구(일어판), 조선화보(일어판) 등 6종이 있다.

조총련은 1979年 현재 49개의 地方本部和 300여개의 支部, 1,800여개의 分會와 17개의 계층별 단체, 21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朝總聯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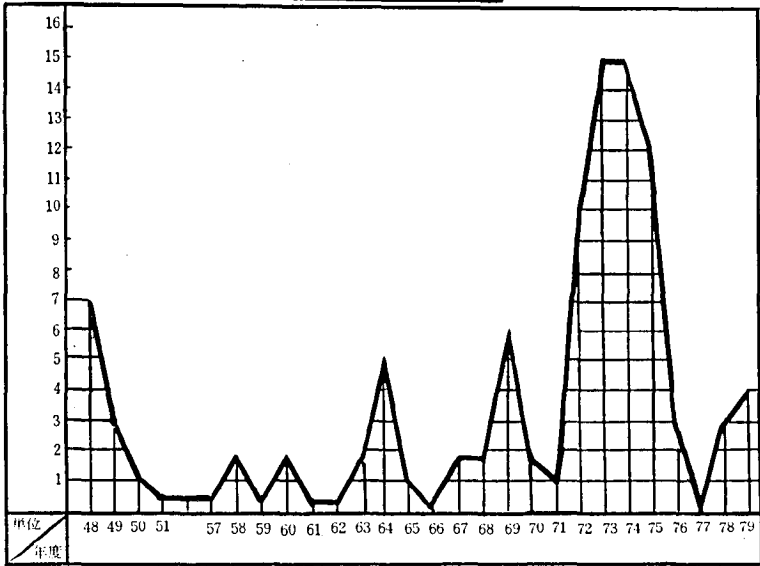
※ 朝總聯規約 근거 작성

修交現況

北韓은 1979年 10月 현재 96個國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으며, 그 중 64%에 該當하는 62개국이 1970年 이후에 관계를 수립한 나라들이다. 1950年代 前半까지는 공산권 一邊倒外交로서 共産國家에 한해서 國交關係를 맺어 왔으나, 1950年代 後半 多邊外交를 전개하기 시작한 이래 中立國을 비롯한 비동맹국, 新生國들에 적극 접근하여 修交國을 확장시켜 왔다.

地域別 修交現況을 보면, 아시아 23, 아프리카 42, 라틴·아메리

修交國 增加趨勢



카 10, 유럽 18, 대양주 3개국과 國交를 맺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아르헨티나, 모리타니아와는 外交關係를 개설했었으나 大使館을 철수하는 등 사실상 國交關係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時期別 · 地域別 修交現況

(1979. 10 현재)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대양주	증감	계	비 고
1948	몽 고 (10. 15)			소련(10. 12) 폴란드 (10. 16) 체코(10. 21) 루마니아 (11. 3) 헝가리 (11. 11) 불가리아 (11. 29)		7	7	유고 : 10월 30일 합의, 71년 9월 공관설치

연도	아 시 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 럽	대양주	증감	계	비 고
1949	중공(10.6)			알바니아 (5.17) 동 독 (11.7)		+3	10	
1950	월맹(1.31)					+1	11	
1951 ~57						0	11	
1958	알 제 리 아 (9.25) 기니(10.8)					+2	13	
1959						0	13	
1960	말리(10.31)	쿠바(8.29)				+2	15	
1961 ~62						0	15	
1963	예 멘 (3.9)	이 집 트 (8.24)				+2	17	
1964	인도네시아 (4.16) 캄 보 디 아 (12.20)	콩고(12.24) 가나(12.28) 모리타니아 (11.12)				+5	22	
1965		탄 자 니 아 (1.13)				+1	23	
1966	시 리 아 (7.25)					+1 -1	23	※ 7월 : 카나데사 관 철수
1967		부 룬 디 (3.11) 소 말 리 아 (4.12)				+2	25	
1968	이 라 크 (1.30) 민 주 예 멘 (2.7)					+2	27	
1969	월남민족해 방전선 (6.12)	적 도 기 니 (1.30) 잠 비 아 (4.12) 차드(5.8) 수단(6.21)				+6	33	

外交活動

연도	아 시 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 럽	대양주	증감	계	비 고
		중앙아프리카(9.5)						
1970	말 디 브 (6.14) 스리랑카 (7.15)					+2	35	
1971		시에라레온 (10.14)		유 고 (9.2) 말 타 (12.20)		+3 -2	36	※3월:중 앙아프리카 대사 관 첩수 ※3월 28 일 스리 랑카대사 관 첩수
1972	파키스탄 (11.9)	카메룬(3.3) 칠 레 루 안 다 (42.2) 우간다(8.2) 세네갈(9.8) 상 부 볼 다 (10.11) 말 가 슈 (11.16) 자 이 르 (12.15)	(6.1)			+9	45	
1973	이란(4.15) 말레이시아 (6.30) 방글라데시 (12.9) 인도(12.10) 아프카니스 탄 (12.26)	토고(1.31) 베닌 (2.5) 감비아(3.2) 모 리 서 스 (3.16) 리 베 리 아 (12.10)	아르헨티 나 (6.1)	스 웨 덴 (4.7) 핀 란 드 (6.1) 노르웨이 (6.22) 덴마크 (7.17) 아이스란 드(7.27)		+16 -1	60	※ 9.18 칠레와 단교 ※조선중 앙연감 (1974년 판). p. 360 에는 64개국으 로 발표
1974	베판(5.15) 라 오 스 (6.24) 요르단(7.5)	리 비 아 (1.29) 가봉(1.29) 기 니 비 소 (3.16) 니제르(9.6) 보 즈 와 나 (11.27)	코스타리 카(2.10) 기이아나 (5.18) 자마이카 (10.9) 베비주엘 라(10.28)	오스트리 아(12.12) 스 위 스 (12.20)	오스트레 일리아 (7.31)	+15	75	※8.14 : 코스타리 카와단교 후 12월 재개

연도	아 시 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 럽	대양주	종감	계	비 고
1975	태국(8. 5) 버어마(5. 19) 싱가포르(11. 8)	케냐(5. 12) 이티오피아(6. 5) 모잠비크(6. 25) 튀니지아(7. 16) 산토메프린시(8. 9) 베르데(8. 18) 코모로(11. 13) 앙골라(11. 16)		포르투갈(4. 15)	피지(4. 14)	+14 -2		※3. 19: 스리랑카와 외교관계 재개 ※4. 30: 실남통일 ※10. 16: 오스트레일리아와 단교
1976		나이지리아(5. 25) 세이셸(8. 24)			파푸아뉴기니아(6. 1)	+3 -0	89	※3. 15: 모리타니아와 단교
1977			바르바도스(12. 5)			+2 -1	90	※11. 16: 중앙아프리카와 재개 ※6. 14: 아르헨티나와 단교
1978					사모아(6. 28)	+2	92	※7. 17: 가나와 재개
1979			그라나다(5. 9) 니카라과(8. 21) 세인트루시아(9. 13) 도미니카(9. 18)			+4	96	
소계	23	42	10	18	3			

出處: 조선중앙년감, 노동신문.

統

一

統一政策

統一政策의 基調

南韓觀

北韓의 新聞과 放送은 韓國社會가 “外國軍의 强占下에 있으며, 經濟는 植民地 隸屬經濟로서 모든 利潤을 搾取당함으로써 國民들은 餓빈고 굶주리고 있다”고 一貫하여 宣傳해 오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 있는 外國軍은 占領軍이 아니라 相互防衛條約 遵守를 위한 駐屯軍이며, 外國人企業家들은 合作企業 關係人士들이고, 經濟의 高度成長 속에 分配面에서 생긴 마찰 등 몇 가지 問題는 있지만, 國民들이 餓빈고 굶주리는 것이 아님은 再言을 要하지 아니하는 問題들이다.

北韓의 統一觀과 統一戰略은 이러한 非現實의이고 造作된 <南朝鮮觀> 위에서 수립되고 展開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南韓의 實情을 事實대로 알리는 것보다는 歪曲하여야만 비로소 <唯一思想的 統制>가 可能해지며, 北韓住民들을 <南朝鮮解放 思想>으로 武裝시켜 體制內的 挑戰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勿論 北韓社會의 閉鎖性도 여기에서 緣由한다고 할 수 있다.

對內 統治를 無難하게 하기 위한 <南朝鮮觀> 造作과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北韓의 統一觀·統一戰略이다. 때문에 北韓은 밖으로는 全民族大會, 聯邦制, 合作·交流를 主張하면서도 韓國이 막상 交流·對話를 하자면 相對方이 應하기 어려운 새로운 條件을 내세우는 것이다.

1970年代初 한때 열렸던 南北對話의 門이 여러 구실로 遮斷되고 만 것이 이러한 연유에서였음은 이미 美·日 등지의 第三者의 分析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要컨대, 北韓은 <南朝鮮解放>의 論理에서 統一問題에 接近하고 있기 때문에 對話와 交流는 關心 밖의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統一觀

北韓政權은 黨規約에서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民主主義 革命의 과업을 遂行하는 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라고 함으로써 共產化 統一의 立場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귀순한 前職 勞動黨幹部가 記憶하고 있는 金日成의 秘密敎示(1968.7.8)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데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다.

“조국통일은 分斷된 國土와 民族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南朝鮮革命을 前提로 하는 全國的 範圍에서의 反帝·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完遂하기 위한 學族的인 事業이다.

南朝鮮革命은 祖國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全朝鮮革命의 一部分으로서 祖國統一과 南朝鮮革命은 서로 不可分離의 連關性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一定한 共通點과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金口成은 統一과 <南朝鮮革命>의 共通點으로서는

- 1) 兩者가 다같이 朝鮮革命에 이바지한다는 點,
- 2) 兩者가 다같이 勞動黨의 主體思想을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있다는 點,
- 3) 兩者가 다같이 <美帝>와 地主·買辦資本家·反動官僚를 主 打擊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點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兩者의 差異點으로서는

- 1) 兩者의 目的과 理念은 같지만, 그 包括하는 地域的 範圍와 指導者가 다른 點,
- 2) 力量編成 關係가 다른 點,
- 3) 統一은 平和的인 方途와 非平和的인 方途가 있을 수 있으나 南朝鮮革命은 오직 暴力的인 方途 밖에는 없다는 點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北韓의 統一觀은 <先 南朝鮮暴力革命·後 共

産化統一>이라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統一戰略

北韓은 <北朝鮮의 革命力量, 南朝鮮의 革命力量, 國際的 革命力量>의 3大革命力量 強化를 統一戰略의 基本方針^①으로 삼고, 때와 場所에 따라 여러 가지 形態로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3大革命力量 強化는 1964年 2월에 黨方針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그 以前에는 “北朝鮮을 革命的 基地로 규정하고 政治·經濟·軍事의 모든 면에서 이 革命基地를 백방으로 強化하는 일관한 托仙을 견지하는”^② <民主(革命)基地路線>을 基本戰略으로 삼아왔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그러한 民主基地路線을, “우리 祖國에 조성된 政세에 대처한 가장 精確한 托仙이었으며, 完전한 統一獨立을 달성하기 위한 物質的 基礎를 축성하게 된 革命的 方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民主基地路線에 의해 이룩된 革命力量을 가지고 6.25戰爭이라는 <最高의 政治鬭爭>^③을 展開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休戰以後에도 民主基地路線은 계속 추구되어 왔는데, 1953年 8月 黨 6次 全員會議에서는 “강력한 民主基地의 창설은 祖國統一을 한층 더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民主基地路線을 再確認하는 決定書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基本路線에 따라 戦후복구건설 3개년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戰爭中에는 <모든 것을 戰爭勝利를 위하여!>라고 하던 宣傳煽動 口號를 <모든 것은 革命的 民主基地 강화를 위한 人民經濟 복구에로!>라는 口號로 바꾸었다.

1960年代에 접어들어서는 3大革命力量路線에 따라 <南朝鮮革命>을 전제로 하는 統一戰略으로 전환하였다.

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8차회의 건문.

②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③ 上同

〈南朝鮮革命〉論은 〈先革命·後統一〉이라는 統一觀에 따라 南韓의 革命力量에 의해 暴力的인 方法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그 후 남한의 人民政權과 合作統一을 平和的으로 이룩한다는 것을^④ 골자로 하고 있다.

金日成은 1968年 9月, 政權創建 2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暴力鬭爭이 없이 그 어떤 平和的인 方法으로 南朝鮮人民들이 主權을 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⑤”라고 폭력혁명을 공공연히 강조한 바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平和統一論〉과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다.

統一戰略構圖

區 分	南 朝 鮮 革 命	祖 國 統 一
順 位	先	後
方 法	暴 力 的	平 和 的
推 進 勢 力	南韓의 革命力量	北韓의 革命力量
包 括 地 域	南 韓	南 北 韓

出處: 근로자 (1974. 4호) 및 로동신문 (1972. 4. 28).

統一方案

統一方案의 變遷

그간 北韓의 統一方案은 時代的인 적응성과 환경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休戰以後 1950年代後半에는 〈平和統一論〉, 1960年代는 〈聯邦制主張〉, 1970年代는 〈5大方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50年代: 北韓은 休戰以後 公式的인 統一方案으로 平和統一論을 1954年 4月에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平和攻勢를 늦추지 않고, 最高人民會議 1기 8차 회의 (1954. 12)에서 또다시 〈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통해

④ 김일성, “조선로동당 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1970. 11. 3)

⑤ 조선중앙년잡 (1969) p.30.

統一問題를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어서 <南北朝鮮間的 經濟·文化交流과 通行, 書信交換을 위한 南北代表者會議>를 召集하자고 주장했다.⑥

1955年 8月 14日, 8.15解放 10주년 기념경축대회에서 金日成은 <外軍撤收, 軍隊의 縮少, 平和보장을 위한 國際會議召集, 武力不行使 協定締結>등을 方案으로 제안했으며, 1954年 6月 <朝鮮勞動黨> 3次大會에서도 <常設委員會의 設置, 韓美相互防衛條約의 폐기, 國際會議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7年 9月 20日 最高人民會議 2期 1次會議⑦, 最高人民會議 1959年の 2期 6次會議⑧에서도 外相인 南日의 報告를 통하여 <平和統一方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1950年代는 <平和統一論>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 內容은 時期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 1) 外軍撤收 및 減軍
- 2) 南北代表者會議와 國際會議 開催
- 3) 經濟·文化交流 및 通行, 書信交換
- 4) 自由選舉 實施

이상과 같이 北韓이 1950年代에 <平和統一論>을 주장한 것은 戰後狀況에서 自體力量을 길러 나가기 위해 一定期間의 平和維持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金日成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외부 조건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5년 내지 1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소련은 물론이고 6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공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해질 것이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⑨라고 한 1955년

⑥ 정치사건(명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994-995.

⑦ 조선중앙년감(1958) pp. 30-36.

⑧ 정치사건(명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999-1000.

⑨ 김일성저작전집, 1권(명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75.

12月 28日 당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은 1950년대의 平和統一 제의가 지니고 있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60年代: 南北聯邦制가 <統一方案>의 主流을 이루었던 時期로서 이것은 金日成이 1960年 8月 14日, 8.15解放 15주년 기념 연설에서 남북 총선거를 주장하면서 “아직 南朝鮮當局이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고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당시 제의한 연방제는 “南北朝鮮에 現存하는 政治體制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의인 活動을 보장하는 동시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朝鮮의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聯邦制를 提議한 데에는 同年 4月 19日 韓國에서 惹起된 一連의 政治的 變革이 重要 要因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한편 1961年 9月 黨 4次大會에서는 <自主·平和·民主>라는 세 가지 原則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여하튼 1960年 11月, 最高人民會議 2期 8次會議에서는 金日成의 8.15 聯邦制 提議를 具體化시켜 다시 提示했다.⑩ 그후 1962年 10月 23日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 3期 1次會議에서 金日成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政府의 常面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연방제를 再次 提議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1960年 8月の 提議와는 달리 <外軍撤收와 南北間의 交流와 相互協助>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⑪

1963年 12월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合同會議>에서는 南北聯邦制 실시를 위해 實務的 問題를 해결키 위한 <南北朝鮮代表者會議>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마지막으로 하여 1960年代에는 聯邦制 제의가 없었다. 그 후 1960年代 後半期에는 對南武力 도발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統一提議가 없었다.

⑩ 조선중앙년감(1961) pp.27-42.

⑪ 조선중앙년감(1963) pp. 32-34.

○70年代: 平和的 統一論을 다시 부활시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집약해 볼 때, <3大原則과 5大綱領>을 統一方針으로 표방한 시기라 하겠다.

3大原則은 중전의 <自立·平和·民主>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에서 남북간에 合意한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뜻하나, 중전의 3原則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⑫

<5大綱領>은 73年 6月 23日 金日成에 의해 발표된 <고려연방공화국> 수립을 내용으로 한 5個項目에 걸친 제의를 말한다.^⑬

이러한 방침을 내세우기까지 過程을 살펴보면, 1970年 11月 5次 黨大會에서 1960年代初의 연방제안을 다시 확인하였으며,^⑭ 1971年 4월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 4期 5次會議에서는 <現 國際情勢와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促進시킬 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外相인 許鎔이 統一方案을 제시했다.

主要 統一方案 提議

日 時	內 容	形 式	備 考
1950. 6. 19	北韓의 最高人民會議와 韓國國會를 統合單一立法機關構成	最高人民會議 常任委가 韓國國會에 提案	
1954. 4. 27	統一政府 形成을 爲한 總選舉實施	제네바會議에서 南日外相 提案	5. 22, 제네바會議에서 韓國의 卞榮泰 外務長官, 自由總選舉 提議拒否
1955. 8. 15	國際會議召集과 全外軍撤收, 南北政黨·社會團體代表者會議召集	8. 15 解放 10週年 金日成 演說	
1956. 4. 18	總選으로 統一政府樹立, 統一 및 平和維持를 위한 國際的協定締結	勞動黨 3次大會 宣言文	

⑫ 조선중앙년감(1976) p.45 에서는 <자주·평화·민주>를 들고 있으나 p.83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지칭.

⑬ 조선중앙년감(1976) p.91.

⑭ 조선중앙년감(1971) p.27.

1960. 4. 21	南北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構成, 南北聯合經濟委員會構成, 南北總選舉實施	政黨·社會團體指導者連席會議	
1960. 8. 14	外勢 干涉없는 南北總選. 南北聯邦制實施(雙方政府代表로 最高民族委員會組織)	8. 15 解放 15週年, 金日成演說	
1970. 11. 3	自由總選舉로 統一政府樹立, 南北聯邦制實施	5次黨大會 金日成報告	8. 15,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 構想宣言에 대한 拒否
1972. 1. 10	南北韓間平和協定締結, 南北政治協商會議召集	日本 <讀賣新聞>記者와의 金日成 會見	
1973. 6. 23 (午前 6時)	統一을 위한 5大 方針提案. ○大民族會議召集 ○南北聯邦制實施(高麗聯邦共和國)	체코黨·政府代表團歡迎연회에서 한 金日成演說	6. 23(午前 10時) 朴正熙大統領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演說에 대한 拒否
1974. 3. 25	對美平和協定 체결	最高人民會議 5期 3次會議 許鎔報告	1. 18 朴正熙 大統領의 南北 相互不可侵 協定提議에 대한 拒否
1975. 10. 9	對美平和協定 締結 南北聯邦制實施 大民族會議召集	黨創建 30週年 紀念 金日成演說	1. 14, 朴正熙大統領의 南北對話 즉각 正常化促求에 대한 拒否
1977. 1. 25	南北 政治協商會議 召集, 긴장상태 완화와 핵전쟁 위협의 제거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採擇便紙	1. 18 朴正熙大統領의 對話場所 변경 容의, 不可侵協定締結後 미군 철수 不反對, 食糧원조 계의 拒否
1979. 1. 23	全民族大會召集, 7·4 共同聲明 遵守, 相互誹謗中傷中止, 軍事行動中止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聲明	1. 19 朴正熙大統領의 南北當局間 對話提議에 대한 拒否
1979. 7. 10	對美 平和協定 締結會談에 韓國代表의 出席 資格 참가 ^㉑ , 當局者·各政黨·社會團體·海外同胞 代表들과의 對話와 協商	外交部代辦人 聲明	7. 1 三當局 會談을 提議한 韓·美 共同 聲明

㉑ 1979. 9 비동맹회의에 참가한 이종욱(정무원 총리)은 기조연설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 바 있다.

8個項으로 제안된 內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외군 철수, 감군, 外國과의 조약 폐기, 남북 총선거, 각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 연방제 실시, 광범위한 交流 주장과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同年 8月 6일에 金日成은 캄보디아 民族統一戰線 委員長인 노르돔 시아누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南北協商 제의와더불어 중건의 8個項을 재확인했다. ⑯

이러한 北韓의 平和功勢에 대응하여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는 <이산가족 찾기운동>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이 그에 응함으로써 1971年 9月 20日부터 南北赤十字會談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고, 나아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南北調節委員會가 개최되었다.

南北會談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중건에 제의했던 統一方案을 종합하여 1973年 6月 23日에 이른바 <平和統一 5大綱領>이란 統一方案을 제시하고,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中斷시켰다.

그 후 1975年 5月 29日, 알제리아 <엘무자히드>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金日成은 3大原則과 5大方針을 되풀이하여 제의하였으며, 1977年 1月 25日에는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명의로 南北政治協商會議 召集을 提議하였고, 1978年 9月 9日 政權樹立 30주년 記念式에서는 韓國의 內部問題(反共法, 國家保安法의 폐기)에 대한 先解決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3大原則과 5大方針을 재확인했다. 또한 韓國側이 當局間에 南北對話를 무조건 再開하자는 1.19提議(1979)에 대해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내세워 全民族大會를 召集하자는, ⑰ 중건의 大民族會議와 같은 主張을 되풀이함으로써 3회에 걸친 變則對坐로 끝나고 말았으며, 1979年 7月 1日 韓美兩國이 共同으로 提議한 三當局會議에 대해서도 統一問題가 民族內部問題란 主張을 하면서 <先 美國과 會談, 後 韓國의 參與>

⑯ 조선중앙년감(1972) p.12

⑰ 로동신문(1979. 1. 24)

라는 提議를 하고 나섰다.

요컨대 韓國側의 새로운 提議가 나오더라도 <3大原則·5大方針>의 테두리 안에서 몇가지 主張을 結合시켜가면서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 北韓의 對南 統一方案 提議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5大方針

<平和統一 5大綱領>으로 불리고 있는 5大方針은 1973年 6月 23日 저녁, 체코 공산당 서기장 후사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金日成이 제의한 것으로 그 主要 內容은

- 1)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
- 2) 多方面에 걸친 合作과 交流
- 3) 大民族會議 召集
- 4) 고려연방제 실시
- 5)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 가입^㉔으로 되어 있다.

金日成은 “우리 黨과 共和國 政府의 自主的 平和統一方針을 새로이 內外에 申明합니다” 라면서 5個項의 제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當日 朴正熙大統領이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을 發表한 데 대하여 反對의 立場을 밝힌 것으로, 特別한 사항은 <고려연방국>이란 연방제의 국호를 거론했다는 점이다.

1) 軍事的 대치상태 해소 : 南北關係를 개선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 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外國軍隊의 撤收, 군대와 군비의 축소, 外國으로부터의 무기 반입 중지, 平和協定 締結 등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方案으로 내세우고, 이의 우선적 해결을 對話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2)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 : 南北間에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의 여러 分野에 걸쳐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㉔ 조선중앙년감(1974) pp. 54-56.

북한은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가 끊어졌던 民族的 유대를 다시 있고 統一의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平和協定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大民族會議 召集: 統一問題를 人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여야 되므로 統一을 위한 南北對話는 南北韓 當局者들 사이에만 할 것이 아니라, 全民族的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勞動者·農民·青年 學生·知識人·軍人·民族資本家·小資產階級을 비롯한 南北韓의 各계 各층 人民들과 各 政黨·사회단체 代表들로 구성되는 大民族會議를 소집하여 統一問題를 協議하여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聯邦制實施: 統一을 앞당기는 가장 合理的인 方法은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방제는 大民族會議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 데 기초하여 現存하는 南北의 두 계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방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른바 <고려연방공화국>이란 국호의 사용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연방제>안은 60年代의 연방제 제외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 동안 <연방제>안의 변화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聯邦制 統一方案의 變遷過程

區 分	60 年 代	南北對話期間	70年代 後半期
前提條件	南北兩政府 獨自的 活動保障	南北의 兩體制 認定, 他方에 體制 不強要	現存 2個의 體制當分 間維持, 大民族會議·政治協商會議召集
構成原則	兩政府代表者 同數로 構成	兩政府 代表者 同數로 構成	大民族會議와 政治協商會議에서 決定
構成形態	最高民族會議	最高民族會議	單一國號의 高麗聯邦共和國
機 能	非政治的인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	南北 사이에 提起된 政治·經濟·軍事的 問題解決	經濟·文化의 統一的 發展, 國防의 單一化, 對外活動의 統一的 展開, 統一促進

<p>根 據</p>	<p>8.15 解放 慶祝大會에서 行한 金日成演說(1960. 8. 14)</p>	<p>日本마이니찌新聞記者들이 提起한 質問에 對한 金日成 對答 (1972. 9. 17)</p>	<p>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 63次擴大會議에서 한 許燦報告 (1974. 11. 9) 南朝鮮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 30를 記念式에서 採擇한 呼訴文 (1978. 4. 24)</p>
------------	---	---	--

5)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加入 : 對外關係 分野에서 南北이 共同으로 나가야 하며, 統一이 되기 전에 유엔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연방제라도 實現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이란 單一國號를 가지고 하나의 國家로 가입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南北對話

最初の 公式的인 南北對話는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가 離散家族 찾기 運動을 提議한 데 대하여 8月 14日 北韓赤十字社가 이를 受諾함으로써 分斷 이후 26年만에 시작되었다.

그후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됨을 契機로 南北對話는 人道的 次元에서의 南北赤十字會談을 비롯하여 政治的 次元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 會議가 서울과 平壤에서 交代로 열렸다.

調節委員會는 1975年 3月 14日 第10次 副委員長 會議를 끝으로 中斷되었으며, 赤十字會談은 1977年 12月 9日 第25次 實務會議 이후 斷絶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1973年 8月 28日에 北韓側이 對話를 거부하기 위하여 내놓은 <金英柱 聲明>이후 中斷된 상태였다.

그러나 韓國側은 對話再開를 위해 1979年 1月 19日에 아무 조건 없이 當局間 對話를 提議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이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對話의 상대로 내세움으로써 아무런 結論 없이 3회에 걸친 變側對坐로 끝나고 말았다.

이밖에 非政治的인 分野에서의 南北間의 對話는 1979年 4月25日 평양에서 개최된 제35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단일 팀 구성을 위한 4회의 접촉이 있었으나 남북간에 타협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다.

南北赤十字會談

赤十字會談은 1971年 8月 20日 板門店에서 兩側 派遣員이 最初로 接觸한 이후 總 86회의 會談을 했으나 아무런 成果 없이 中斷

되었다.

赤十字會談이 中斷된 原因은 韓國側이 1971年 8月 12日 提議의 目的에 따라 會談內容을 離散家族찾기라는 人道的 問題에 局限시킨 데 對하여, 北韓이 政治的 問題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한 데 있다.

北韓側이 本會談을 決裂시킨 表面的인 이유는 서울의 霧圍氣가 會談을 개최할 만한 環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赤十字實務會談마저 拒否할 때는 <팀·스피리트> 韓美合同 軍事訓練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越南·歸順한 전직 勞動黨幹部에 의하면 金日成은 1972年 6月 30日 다음과 같은 秘密敎示를 했다고 한다.

“일천만의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 자체로서는 흥미가 없다.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남조선으로 가는 길이 트일 것 같으면 회담을 좀 끌어보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남조선에서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요구를 대가지고 걸어치우라...그리고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 회담장을 우리의 선전무대로 이용해야 한다.”

요컨대, 會談이 決裂된 것은 會談에 임하는 兩側의 姿勢가 根本的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南北 赤十字會談 進行過程

區 分	回數	日 字	內 容
提 議		1971. 8. 12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總裁 <離散家族 찾기 運動> 提議
受 諾		1971. 8. 14	北韓赤十字社 孫成弼委員長 受諾發表
派 遣 員 筋	5	1971. 8. 20 ~9. 16	장소 : 판문점
豫備會談	25	1971. 9. 20 ~72. 8. 11	台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 次 本會談은 平壤, 第 2 次는 서울 開催 ◦ 代表團과 記者의 身邊安全保障 ◦ 携帶品 不可侵 ◦ 總 20回線의 有線電信·電話線保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赤十字社 中央機關間 直通電話 ◦ 代表 7名, 諮問委員 7名, 遂行員 20名, 內信報道陣 20名
實務會談	13	1972. 2. 21 ~6. 5	議題合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離散家族(家族, 親戚)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問題 ◦ 離散家族의 自由로운 訪問과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 ◦ 自由로운 書信往來를 實施하는 問題 ◦ 自由意思에 依한 再結合問題 ◦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豫備會談 實務者會議	3	1972. 6. 27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次 本會談 開催場所 ◦ 本會談 其他 進行節次
本會談	7	1972. 8. 29 ~73. 7. 13	主要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赤十字 共同委員會와 南北赤十字 板門店共同事業所 設置 ◦ 4次 會談부터 雙方 記者數 5 名씩 增員
代表會議	7	1973. 11. 28 ~74. 5. 29	主要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實務會議 運營 및 節次問題
實務會議	25	1974. 7. 10 ~77. 12. 9	26次 會議를 78年 3月 20日 開催키로 合意하였으나 北韓側이 팀 스프리트訓練을 理由로 拒否, 中斷

南北調節委員會

政治的 次元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은 1972년 7월 4일 南北이 <民主·平和·民族大團結>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合意한 공동성명을 發表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공동성명을 發表하기 까지는 1972年 5月 2日 韓國의 李厚洛 정보부장의 평양방문과 5月 29日 북한 朴成哲 부수상의 서울 방문이 있었다. 그간 총 20회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975年 3月, 10次副委員長 會議를 끝으로 북한측이 개최를 拒否함으로써 中斷된 狀態에 있다.

北韓은 南北間의 合意에 따라 設置된 南北 直通電話마저 1976年 8月 30日 一方的으로 斷絶시켰다.

南北調節委員會 會議 進行過程

區 分	回	日 字	內 容
豫備接觸	1	1972. 5. 2 ~5. 5	韓國 李厚洛部長 平壤訪問
	2	1972. 5. 29 ~6. 1	北韓 朴成哲 第2 副首相 서울訪問
共同聲明		1972.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은 外勢排除코 自主的 解決 ◦ 武力不行事,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 ◦ 사상과 理念 超越코 民族的 大團結
共 同 委 員 會 長 議 會	1	1972. 10. 12 (板門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間의 諸問題 協議, 共同聲明精 神 再確認 ◦ 第2 次會議을 10月하순경 開催키로 合意
	2	1972. 11. 2 ~11. 4(平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 한 合意書 署名交換 ◦ 1972. 11. 11. 00:00부터 相互비방 放 送 및 빼라살포 中止키로 合意
	3	1972. 11. 30(서울)	◦ 雙方調節委機構 構成發表
調 節 委 員 會 議	1	1972. 11. 30 ~12. 1(서울)	◦ 幹事會議의 構成, 共同事務局 設置 調節委運營細則 作成
	2	1973. 3. 14 ~3. 16(平壤)	合意없음
	3	1973. 6. 12 ~6. 14(서울)	合議없음
幹事會議	1 2 3	1973. 3. 10 1973. 4. 24 1973. 5. 23	◦ 南北調節委員會 運營細則 및 共同 事務局 運營細則 草案討議
副委員長 會 議	總 10回	1973. 12. 5 ~75. 3. 4	北側의 一方的 拒否로 중단

그러나 實質的으로는 이미 1973年 8月 28日 <金英柱聲明>以後 對話는 中斷된 셈이며, 그 후 副委員長會議로 命脈을 維持해 왔으나 아무 進展없이 雙方間의 주장만 되풀이되었다.

北韓은 韓國의 無條件 對話 再開 要求에 대해서, <全國的 範圍에서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데 最終目的>이 있다는 그들의 黨規約 改廢를 附帶條件으로 提示하지는 않고, 一方的으로 韓國의 反共法 國家保安法을 철폐할 것과 聯共政策을 實施할 것, 6.23 宣言을 철폐할 것을 先行條件으로 提示하면서① 調節委員會의 構成

① 정권수립 30주년 기념 중앙경제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로동신문(1978.9.11)

을 바꾸어 政黨·社會團體를 비롯한 各界·各層代表를 參與시키
 دن가 아니면 이들을 中心으로 別途의 기구를 조직해 南北對話를
 하자고 맞서 왔다.

變則對坐

南北間의 對話가 南北赤十字 第25次 實務會議(1977. 12. 9)를 끝
 으로 완전히 中斷된 狀態에서 韓國의 朴正熙 大統領이 1979年 1月
 19日 責任있는 當局間의 무조건 對話를 再開하자는 提議에 의해
 對話가 再開되었다.

당시 韓國이 1.19提議에서 “時期, 場所, 水準등에 일체의 前提
 條件없이 南北韓 當局間의 對話를 무조건 再開하자”고 提議한 데
 대해 北韓側은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내세워 全民族大會 召集
 과 <民族統一準備委員會> 발족을 제의하였다.②

이처럼 會談에 대한 基本的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月 27日부터 판문점에서 접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第3次 對坐
 (3月 14日)에서 韓國側은 쌍방 자 3名의 當局 實務代表로 3月 28日
 10時에 次期會談을 開催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하였다.

그러나 北韓側이 참석치 않음으로써 1.19 提議에 따른 南北對
 話는 3회에 걸친 變則對坐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變則對坐 過程

區分	日時	韓 國	北 韓
提議	1979. 1.19	朴正熙大統領: <時期, 場所, 水準>등 일체의 前提 조건 없이 무조건 책임있는 당국간 對話 再開	
	1.23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7.4共同聲明理 念과 原則준수 및 全民族 大會 9月初 開催 提議(서울 또는 평양), 실무급 대 표회담 6월(평양) 개최 제 의

② 로동신문(1979. 1. 24)

	1. 25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 : 當局間 會談을 위한 예비 회담 6月 前에 서울 또는 평양)	
	2. 5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書記局 : 協商 예비 기구로 <民族統一 準備委員會> 발족 및 이를 위한 연 락대표회의 2月 20日 판 문점 개최 제의
	2. 12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 제 4 차 조절위 회의를 위 한 부위원장회의를 2月 17日 개최 제의 (판문점)	祖統시기국 : 20日 개최 제의를 수정, 서울측 조절위 가 제의한 17日에 연 락대 표단 참석 발표
제 1 차	2. 17	남북조절위 대표참석 : 남 북조절위 정상화와 책임 있는 당국간의 대화제의	조국전선 : 민족통일 준비 위 연락대표 참석, 전 민 족대표 소집 주장
제 2 차	3. 7	남북조절위 대표참석 : 남 북조절위 정상화와 책임 있는 당국간의 대화제의	참석자, 제의내용 上同 ※평양에는 <調節委>가없 다고 주장
제 3 차	3. 14	참석자 上同 쌍방 새로운 3명의 당국실 무대표로 3월 28일 남북한 당국간 대화문제 논의제의	참석자 上同 : 기존주장을 되풀이하면서 祖戰이틀대 신 <정당·사회단체·당국 연 락대표단>으로 명칭변 경 용의 표명
제 의	3. 26	김성진 문화공보부장관 : 실무대표 명단 발표	
	3. 27		4月 2日에 <정당·사회단체 당국연락대표단>회의제의
流 産	3. 28	실무대표 3명 판문점과견	불 참
	4. 2	불 참 ※실무대표단 董勳 수석대 표 : 조절위 및 당국자간 변 대화추구와 비생산적 처 대화 거부	연락대표단 4명 판문점과견 ※<남북연락 실무대표단> 으로 개칭용의 표명

卓球會談

國際卓球聯盟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제 35회 世界卓球選手權大會가 平壤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어, 韓國은 聯盟을 통해 參加 신청을 하였다.

同大會의 主權側이기도 한 北韓은 대진 추첨일(3月 14, 15日)

40여일을 앞두고 79年 2月 20日 體育指導委員會 및 卓球協會 이름으로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南北韓 單一팀 구성, 출전과 이를協議키 위해 27日 관문점회의를 하자고 제의하였다.③ 이에 대해 韓國側 大韓體育會와 大韓卓球協會가 北韓側 提議를 수락함으로써 單一팀 구성을 위한 會談이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會談過程에서 韓國側은 基本原則에 관한 問題의 先合議를 提議한 데 반해 北韓側은 세부 절차에 관한 問題에 대한 우선 해결을 主張함으로써 상호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單一팀 구성을 위한 會談이 決裂되고 말았으며, 또한 北韓側이 끝내 韓國選手團의 入北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므로써 韓國 팀의 參加가 봉쇄되었다.

卓球會談過程

區分	日字	韓	北	韓	合議事項
動機 提議 受諾	1979. 2.16 2.20 2.24	國際卓球聯盟을 통해 비자 신청			
		단일팀 구성 수락 통보 와 더불어 대표단 4명 구성 발표	同大會에 남북한 단일 팀 구성을 위한 2월27 일 관문점회단 제의	대표단 4명 발표	1차 회의 개최일시 및 대표
會談 過程	제 1 차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진추첨일(3월14,15일)이전인 3월12일까지 단일팀 구성 국제탁구연맹(ITTF)에 單一팀 구성의 위약 여부 조희 3月 12日까지 未合意時 관문점 통한 참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랭킹에 따른 선수 선발 및 팀 구성문제 공동훈련을 평양에서 실시 선수단 호칭문제 (고려) 		2차 회의 3月 5日 개최
	제 2 차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에 대한 기록권 인정 요구 3月 12日에 단일팀 구성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훈련 장소: 평양 체육관 한국선수단에 대한 생활조건 무료제공 ITTF총회 대표 자자 1명 국기없이 휘장만 사용하고 복장과 선수 기용은 쌍방향합의 		3차회의 3月 9日 개최

③ 로동신문(1979. 2. 21)

제 3 차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선수단의 참가가 특권 인정되고 참가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일팀 논의 ○ 단일팀 · 체육교류 동시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차회의 주장 반복 	4 차 회의 3월 12일 개최
제 4 차 (3.12)	上 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특권과 통일팀 구성은 별개문제 ○ 통일팀 구성 전제한 기 특권 인정 	

三當局會談

1. 19提議에 따른 變則對坐 이후 中斷된 南北對話를 再開시키기 위한 일련의 提議들이 있었다.

그 代表的인 提議로 韓美兩國에 의한 三當局會談 提議와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의 南北對話 仲裁 提議를 지적할 수 있으나 아직 특기할 만한 성과는 없는 狀態이다.

三當局會談은 1979年 7月 1日 韓美兩國이 共同聲明에서 北韓側에 提議한 것으로 同 提議는 第3國(인도네시아)에 의한 公式的 外交通路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北韓側은 7月 10日에 “3당국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제의”^④라고 主張하면서 거부하여 實現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北韓側은 韓半島의 긴장 완화(美軍撤收와 對美 平和協定締結)와 統一問題가 별개의 問題라는 論理를 展開하면서 <先 美國과 單獨會談, 後 韓國의 參與>라는 역제의를 하였으나 美國의 <韓國參與 없는 北韓과의 對話反對>라는 基本立場에 의해 거부되었다.

한편 1979年 1月26日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은 韓半島 問題 解決을 위해 자신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5月初 평양과 서울을 각각 방문^⑤하여 南北對話에 관한 의견을 교

④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1979. 7. 11)

⑤ 1979年 5月 2~3日 평양 방문, 5月 5~6日 서울 방문.

환하였다. 그 뒤 발트하임 총장은 <자기가 지명하는 읍저버와 유엔에 파견된 南北韓 代表>를 중심으로 南北對話추진을 위한 仲裁活動을 계속 전개하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資料

朝鮮勞動黨規約

(70. 11. 黨大會에서 改正)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 勞動階級과全體 勤勞大衆의 先鋒的 組織部隊이며 우리나라 勤勞大衆의 모든 組織中에서 最高形態의 革命組織이다. 朝鮮勞動黨은 朝鮮民族과 朝鮮人民의 利益을 代表한다.

朝鮮勞動黨은 勞動者, 農民, 勤勞 인텔리 가운데서 勞動大衆의 利益과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의 偉大한 事業의 勝利를 위하여 獻身的으로 鬪爭하는 先鋒的인 鬪士들로서 組織한다.

朝鮮勞動黨은 朝鮮共產主義者들이 抗日武裝鬪爭에서 이룩한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의 直接的인 繼承者이다.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 同志의 偉大한 主體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國際 共產主義運動과 勞動運動에서 發露된 修正主義, 教條主義, 온갖 種類의 機會主義와 부르조아思想을 反對하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하기 위하여 果敢히 鬪爭한다.

朝鮮勞動黨의 當面 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의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遂行하는 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데 있다.

朝鮮勞動黨은 우리나라의 革命遂行과 黨 建設事業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의 確立을 基本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建設의 強力한 武器인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強化하여 社會主義 建設의 總路線인 千里馬運動을 全力을 다하여 發展시킨다.

朝鮮勞動黨은 勞動階級の 指導的 役割을 높이고 勞農同盟을 基礎로 한 全朝鮮의 各界 各層 愛國의 民主力量들과 統一戰線을 強化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朝鮮勞動黨은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自己事業의 最高原則으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사람들과의 事業을 黨事業의 基礎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黨事業의 基礎로 삼는다.

朝鮮勞動黨은 黨事業에서 靑山里 精神과 靑山里 方法을 貫徹한다.

朝鮮勞動黨은 黨員들과 勞動者들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모든 社

朝鮮勞動黨規約

會를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革命化하고 改造하면서 政治思想的으로 革命隊列을 鞏固히 하며, 階級的 怨讐들에 대한 獨裁를 強化하며, 自力更生の 革命精神을 發揮하여 經濟 및 國防建設을 促進하며, 共和國 北半部에 樹立된 社會主義 制度를 더욱 튼튼히 하며,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祖國의 自主 平和統一 路線을 貫徹하며, 祖國의 統一을 위하여 朝鮮人民의 철천지 怨讐인 美 帝國主義者들을 南朝鮮에서 몰아내며, 日本 軍國主義를 反對하며,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 官僚輩들의 傀儡政權을 打倒하고 政權을 爭取하려는 南朝鮮人民들의 反美, 反傀儡鬭爭을 積極支持 聲援하며, 南朝鮮 革命的 完成을 위하여 鬭爭한다.

朝鮮勞動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서 社會主義 나라들과 團結하고, 國際 共產主義運動을 強化하기 위하여 鬭爭하며,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新生獨立國들과의 親善 및 紐帶關係를 發展시키며, 모든 地域人民들의 反帝·民族解放運動과 獨占 資本主義를 反對하는 資本主義 國家들의 勞動階級과 人民들의 革命鬭爭을 支持하며, 廣範한 反帝·反美 統一戰線을 實現하며, 美帝國主義의 四肢를 切斷하고 國際帝國主義를 反對함으로써 平和와 民主主義, 民族的 獨立과 社會主義 共同偉業의 勝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鬭爭한다.

第 1 章 黨 員

1.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과 祖國과 人民을 위하고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最終的인 勝利를 爲하여 獻身的으로 鬭爭하는 自覺的인 革命鬭士이다.
2. 朝鮮勞動黨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된 朝鮮 公民으로서 黨의 綱領과 規約을 承認하고,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熱烈히 鬭爭하며, 黨의 一定한 組織內에서 事業하며, 黨의 결정들을 積極的으로 實踐하는 勞動者들이 될 수 있다.
3. 朝鮮勞動黨 黨員은 規定된 候補期間을 마친 候補黨員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特別한 경우에는 入黨請願者를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 黨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滿 18歲부터 入黨할 수 있다.

入黨節次는 다음과 같다.

가. 候補黨員으로 入黨하려는 사람은 入黨請願書와 黨員 2명의 入黨保證書를 黨細胞에 提出하여야 한다.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員이 入黨할 때에 市(區域)·郡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委員會의 入黨保證書로 黨員 1명의 保證書를 代身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入黨할 때에는 入黨請願書와 入黨保證書를 黨細胞에 提出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黨細胞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다른 入黨保證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인 儒敎思想 및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등 온갖 反黨, 反革命路線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固守하여야 한다.

나. 黨員은 黨의 組織生活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黨性을 단련하고 勞動階級的 模範을 따라 自身을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會議과 黨學習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黨組織에서 委任된 分工을 正確히 遂行하며, 日常的으로 黨生活을 總和하고 批判을 通하여 自己의 思想鬪爭을 積極的으로 展開하여 自己를 革命家로 改造하여야 한다.

黨員은 職位와 功勞에 關係 없이 全體黨員들에게 各같이 適用되는 黨의 規律을 自覺的으로 遵守하고 規律을 違反하는 現象들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여야 한다.

다. 黨員은 革命的인 學習氣風을 確立하고 自己의 政治, 思想, 文化水準을 不斷히 向上시켜야 한다.

黨員은 黨의 路線과 政策 및 그 革命的인 傳統을 깊이 研究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一般的인 原理를 體得하여 自己의 思想理論의 水準을 向上시키며, 正確히 黨政策을 理解하고 그 基礎 위에서 現實問題를 正確히 分析하며, 社會主義 經濟의 管理問題와 先進科學 및 技術을 研究하며, 文化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라. 黨員은 革命的인 群衆路線을 貫徹하며 日常的으로 大衆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黨員은 大衆에게 黨의 路線과 政策을 日常으로 解說하여 주며, 그들을 教養 改造하며 그들을 黨 주위에 굳게 結束시켜 革命課業의 遂行을 위하여 그들을 組織 動員하며, 大衆의 意見을 正確히 接受하여 그들의 要求를 제때에 解決하여 주어야 한다.

마. 黨員은 勞動과 生活에서 大衆의 模範이 되며, 革命課業을 위하여 항상 思考하고 움직이며 모든 事業에서 先鋒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

黨員은 非黨員보다 政治 思考水準이 높아야 하며, 自己와 家族 및 集團의 革命化 事業에서 模範이 되어야 한다.

黨員은 勞動을 사랑하고 勞動規律을 自覺的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自己 맡은 事業에 精通하며 맡은 바 任務를 模範的으로 遂行하여야 한다.

黨員은 保守主義와 消極性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技術革新運動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勞動 生産能率을 不斷히 提高하며, 企業管理 運營에 率先參加하여 國家와 社會財產을 愛護 節約하며 國家의 經濟를 儉約하여야 한다.

바. 黨員은 高尚한 共產主義的인 道德 稟性을 所有하고 組織과 集團을 사랑하며 組織과 集團의 利益을 위하여 個人의 利益을 犧牲할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黨員은 恒常 素朴, 率直, 謙遜하여야 하며 私利와 功名을 탐내지 말고 黨앞에 率直하며, 人間性이 豊富하고 文化的이며, 社會秩序와 社會道德을 自覺的으로 遵守하여야 한다.

사. 黨員은 社會主義 祖國을 튼튼히 保障하여야 한다.

黨員은 日常的으로 緊張되고 動員된 態勢를 갖추고 軍事知識을 배우고 敵의 侵略으

나. 入黨保證人は 2年 以上の 黨年限을 가져야 한다.

入黨保證人は 被保證人の 過去 및 現在の 社會, 政治生活을 잘 알아야 한다.

入黨保證人は 保證의 眞實性에 대하여 黨 앞에 責任을 진다.

다. 入黨問題는 個別的으로 審査하며, 黨細胞 總會에서 入黨 請願者의 參加 밑에 討議 決定하고, 採擇된 결정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入黨保證人は 入黨問題를 討議하는 會議에 參加하지 않아도 된다.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入黨問題에 대한 黨細胞의 결정을 1個月內에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라. 特殊한 環境에서 일하는 사람의 入黨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特別히 制定한 規定과 節次에 따라 審議한다.

마. 他黨에서 黜黨한 사람이 入黨하려면 3年 以上の 黨年限을 가진 黨員 3名의 保證이 있어야 한다.

他黨에서 平黨員으로 있던 사람의 入黨은 市(區域)·郡黨委員會가, 市(區域)·郡級의 委員 및 幹部로 있었던 사람의 入黨은 道(直轄市)黨委員會가, 中央과 道級의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立場은 黨中央委員會가 各各 最終的으로 批准한다.

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은 1年으로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에게 規定된 期間內에 黨員의 資格을 갖추도록 幫助를 주어야 한다.

黨細胞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남에 따라 黨總會에서 그의 入黨與否를 審議 결정하여야 한다.

特別한 경우에는 候補黨員의 候補期間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黨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萬一 候補黨員의 入黨準備 程度가 不充分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候補期間을 1年까지 더 延期할 수 있다.

候補黨員이 候補期間을 마친 後에도 그의 個人的 資質로 보아 入黨할 만한 資格이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黨總會에서 그를 黜黨시키는 데 대하여 審議 결정하여야 한다.

候補期間을 延期하거나 候補黨員을 黜黨시킬 데 대한 黨細胞의 결정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사. 入黨年月日은 黨細胞 總會에서 候補黨員을 黨員으로 또는 入黨請願者를 候補期間을 거치지 않고 直接 黨員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날로 한다.

4. 黨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가.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體系 위에 確固히 서 있어야 한다.

黨員은 우리黨의 唯一思想體系로 確固히 武裝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接受하고 擁護하며 이를 徹底히 貫徹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體得하고, 그것을 擁護하며 繼承 發展시켜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封建的

로부터 革命的 戰取物을 든든히 保衛하며 祖國의 統一을 위한 聖스러운 鬪爭에 壯
장설 覺悟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 黨員은 革命體制와 秩序를 遵守하고, 安逸과 나태를 反對하여 鬪爭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革命的인 警覺性을 높이고 黨과 國家의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자. 黨員은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問題에 대하여 黨組織에 報告하여야 한다.

黨員은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現象들뿐만 아니라, 事業과 生活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든 缺陷과 否定的인 傾向을 反對하여 鬪爭하며, 그것에 대하여 黨中央委員
會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黨委員會에 제때에 報告하여야 한다.

차. 黨員은 規定된 黨費를 매달 支拂하여야 한다.

5. 黨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가. 黨員은 黨會義와 黨出版物을 통하여 黨의 路線과 政策의 實踐 및 黨事業의 發展
을 위하여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

나. 黨員은 各級 黨指導機關 選舉에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다. 黨員은 黨會議에서 正當한 理由와 根據가 있는 限, 어떤 黨員을 莫論하고 批判할
수 있으며,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지 않는 限, 어떠한 指示도 拒絕할 수 있다.

라. 黨員은 自己의 事業과 生活에 대한 問題를 討議 결정하는 黨會議에 參加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마. 黨員은 黨中央委員會에 이르기까지 各級黨 委員會에 어떤 申訴나 請願을 提起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審議를 要求할 수 있다.

바. 候補黨員의 義務는 黨員의 義務와 같다. 候補黨員의 權利는 選舉權과 被選舉權
및 決議權이 없는 以外에는 黨員의 權利와 같다.

사. 黨의 規律을 違反하는 黨員은 黨의 責罰을 받는다.

(1)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거나 黨의 路線과 政策을 反對하고 宗派를
形成하거나 怨讐들과 妥協하거나 그밖에 黨에 嚴重한 損失을 끼친 黨員을 黜黨시
킨다.

(2) 黨員의 稱號를 剝奪하지 않을 程度의 過誤를 犯한 黨員에 대하여는 過誤의 輕重
에 따라 譴責, 警告, 嚴重警告 또는 權利停止의 責罰을 適用할 수 있다.

(3) 責罰의 目的은 過誤를 犯한 黨員을 教養하는데 있다.

黨의 責罰은 過誤를 犯한 動機와 原因 및 그 過誤의 結果를 詳細히 糾明하고 最
大限의 慎重性을 돌려야 한다.

(4) 黨員에게 適用하는 責罰은 本人의 參加下에 그가 屬한 黨細胞 總會에서 討議 決
定한다. 特別한 경우에는 本人이 參加하지 않아도 責罰을 討議 決定할 수 있다.

黨 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
게 直接 責罰을 내릴 수 있다.

黨員에게 責罰을 適用할 때 대한 黨細胞의 결정은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批准
을 받아야 한다.

黜黨에 대한 黨細胞의 결정이 批准되기 前에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 黨員에

게 黨證을 回收하지 못하며, 그를 黨生活에 參加시켜야 한다.

- (5) 黨中央委員會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中央委員會의 全員會議에서,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에 대한 責罰은 該當 委員會의 全員會議에서 결정한다.

黨細胞는 黨 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의 黨規律을 違反한 경우에 責罰을 適用하는 데 대한 自己 意見을 該當 黨委員會에 提起할 수 있다.

그러나 黨細胞는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犯한 過誤가 該當委員會의 事業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을 경우에는 嚴重警告까지의 責罰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은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6. 宗派 및 其他 다른 分派에 參加한 黨員에 대한 黨規律 問題의 審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進行된다.

平黨員 또는 市(區域)·郡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道·(直轄市)黨委員會에서, 道(直轄市) 또는 中央黨 機關의 幹部로 있던 黨員의 問題는 黨中央委員會에서 審議한다.

7.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는 黨規律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請願을 제때에 審議 解決하여야 한다.
8. 黨細胞는 항상 責罰을 받은 黨員을 幫助하여야 하며, 만일 責罰을 받은 黨員이 自己의 過誤를 深刻히 反省하고 그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으며, 實際적인 活動이 改善되고 있는 境遇에는 그 責罰을 解除하는 데 대한 問題를 總會에서 討議 決定하여야 한다.

黨員이 받은 責罰을 解除하는 데 대한 黨細胞의 결정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黨 中央委員會의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이 받은 責罰의 解除는 그 責罰의 適用을 最終적으로 결정한 該當 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9. 正當한 理由없이 6個月 以上 黨生活에 參加하지 않는 黨員에 對하여 黨細胞 總會는 黨機關으로부터의 除名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市(區域)·郡黨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한다.
10. 黨員의 學習과 移動은 黨中央委員會가 제정한 규정과 節次에 의하여 進行된다.

第2章 黨의 組織原則과 組織構造

11. 黨은 民主主義 中央執權制의 原則에 의하여 組織한다.

가. 各級 黨 指導機關은 民主主義의 으로 選舉하고, 選舉받은 黨 指導機關은 黨組織 앞에 自己의 事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報告한다.

나. 黨員은 黨組織에 服從하며 下級 黨組織은 上級 黨組織에 服從하며, 모든 黨 組織은 黨中央委員會에 絕對 服從한다.

다. 모든 黨組織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 貫徹하며 下級 黨組織은 上級 黨組織의 결정을 義務的으로 執行하여야 한다.

上級 黨組織은 下級 黨組織의 事業을 系統的으로 指導 檢閱하며 下級 黨組織은 上級 黨組織 앞에 自己의 事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報告한다.

12. 各級 黨組織은 地域的 또는 生產的 單位에 따라 組織한다.

어느 한 地域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地域의 一部를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대하여 上級 黨組織으로 되며, 한 部分의 全體事業을 擔當한 黨組織은 그 部分의 一部 事業을 擔當한 모든 黨組織들에 대하여 上級 黨組織으로 된다.

13. 各級 黨委員會는 該當 地域 또는 生產的 單位의 最高 指導機關이며 參謀部이다.

各級 黨委員會는 새로운 重要한 問題들을 集體的으로 討議 결정하는 데 根據하여 그것을 執行하여야 하며, 이에 個人的 責任性和 創發性을 嚴密히 結合시켜야 한다.

各級 黨組織은 該當 地域 또는 部分에서 提起되는 問題들을 自立的으로 討議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14.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다음과 같다.

가. 全黨의 境遇에는 黨大會이며,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는 黨大會가 選舉한 黨中央委員會이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境遇에는 該當 黨代表會이며, 黨代表會와 黨代表會 사이에는 黨代表會가 選舉한 該當 黨委員會이다.

初級黨의 境遇에는 黨總會 또는 黨代表會이며, 黨總會와 黨總會, 黨代表會와 黨代表會 사이에는 選舉된 該當 黨委員會이다.

나. 黨大會 또는 黨代表會의 代表者는 한 級 낮은 黨組織의 黨代表會 또는 黨總會에서 選舉한다.

黨大會 代表者의 選出 比率은 黨中央委員會가 규정하며, 道(直轄市)·市(區域)·郡黨 組織의 黨代表會 代表者의 選出比率은 黨中央委員會가 作成한 比率에 따라 該當 黨委員會가 규정한다.

黨中央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의 數는 黨大會에서 결정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數와 初級黨 執行機關의 委員數는 黨中央委員會가 규정한 基準에 根據하여 該當 黨代表會 또는 黨總會에서 결정한다.

黨中央委員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의 準候補委員은 生產勞動에 直接 參加하는 核心 黨員이 選舉된다.

各級 黨 指導機關의 選舉는 黨中央委員會가 규정한 選舉 細則에 따라 執行된다.

15.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 委員, 候補委員, 準候補委員의 除名 또는 補選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서 進行된다.

黨中央委員會와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委員 가운데서 缺員이 생겼을

朝鮮勞動黨規約

境遇에는 그 缺員된 數만큼 該當 黨委員會 候補委員 가운데서 補選한다.

委員會의 候補委員이 아닌 黨員의 補選은 黨中央委員會가 규정한 規則과 節次에 따라 進行한다.

初級黨 組織 執行機關 委員의 除名 및 補選은 該當 黨總會 또는 黨代表會에서 進行된다.

上級 黨委員會는 缺員된 下級 黨委員會의 責任秘書(秘書) 또는 秘書(副秘書)를 派遣할 수 있다.

各級 黨機關의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은 該當 黨委員會 全員會議에 參加하되 發言 權만 가진다.

16. 黨會議는 該當 黨組織에 所屬된 黨員 또는 候補黨員, 代表者 總數의 3分之2 以上이 參加하여야만 成立될 수 있고, 提起된 問題의 결정은 該當 黨會議 參加者의 過半數 贊成으로써 採擇된다.

17. 各級 黨委員會 內에는 必要한 部署를 設置한다.

部署의 設置 및 廢止의 權限은 黨 中央委員會가 가진다.

18.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 또는 그들과 同等한 機能을 遂行하는 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黨 中央委員會의 批准을 받아야 하며, 初級黨委員會 및 分初級 黨委員會의 組織과 解散은 道(直轄市) 黨 委員會가 批准하고 少數黨員을 가진 初級黨 委員會 또는 部門黨委員會 및 黨細胞의 組織과 解散은 市(區域)·郡黨 委員會가 批准한다.

道(直轄市)·市(區域)·郡黨 委員會는 黨組織의 組織과 解散에 대하여 黨 中央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19. 黨 中央委員會는 어떤 黨組織을 莫論하고 黨의 路線과 政策 및 黨의 綱領 規約를 嚴重하게 違反하거나 實踐하지 않는 境遇에 그 黨組織을 解散하고 그에 所屬되었던 黨員의 事業을 個別的으로 審議하며, 그들을 再登錄하여 새로운 黨組織을 組織할 수 있다.
20. 黨 中央委員會는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重要한 地域과 部門을 考慮하여 特殊한 環境에서의 黨組織의 構成, 黨組織의 活動方法 및 其他 黨 建設의 諸般 問題들을 결정할 수 있다.

第3章 黨의 中央組織

- 21 黨의 最高機關은 黨大會이다.

黨大會는 4년에 1회 黨 中央委員會가 召集한다. 黨 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黨大會를 규정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3個月前에 發表하여야 한다.

22. 黨大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黨 中央委員會 및 黨 中央檢査委員會의 活動을 總和한다.

나. 黨의 綱領과 規約을 採擇 또는 修正 補充한다.

다. 黨의 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의 基本問題들을 결정한다.

라. 黨 中央委員會 및 黨 中央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23. 黨 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모든 黨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黨 中央委員會는 全黨에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樹立하고 그 實行을 組織 指導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의 候補隊를 準備하며, 黨員의 黨生活을 組織 指導한다.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온 社會를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여, 그들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思想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各級 黨委員會를 設置하고 그들의 活動을 指導 檢閱하며, 各級 黨機關을 組織指導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 檢閱하며 革命的 武力을 組織하여 그들의 安全을 鞏固히 한다.

國內外의 其他 政黨 및 團體들과의 關係에서 黨을 代表하며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

24. 黨 中央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6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는 該當 時期에 黨앞에 提起된 重要問題들을 討議 결정하며, 黨 中央委員會政治委員會의 總秘書와 秘書들을 선거하며, 秘書局을 組織하고 黨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25. 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黨 中央委員會 名義로 黨의 모든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會議을 召集한다.

26. 黨 中央委員會 秘書局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및 其他 當面問題들을 정기적으로 討議 결정하며, 그 결정의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27. 黨 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 執行方法을 토의 결정하며, 軍需產業과 人民軍隊와 모든 武力의 強化를 위한 事業을 組織하며, 우리나라의 軍事力을 指導한다.

28.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 反革命的 宗派行爲 및 其他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의 綱領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거나 其他 黨規律을 위반한 黨員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黨 規律問題와 關聯된 道(直轄市)黨委員會의 提議 및 黨員의 申訴를 審議 解決한다.

29. 黨 中央檢査委員會는 黨의 財政 經理事業을 檢査한다.

30. 黨 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에 黨代表者會議을 召集할 수 있다.

黨 代表者會의 代表者 選舉節次와 代表者 選出比率는 黨 中央委員會가 규정한다.

黨 代表者會는 黨의 路線과 政策 및 戰略戰術의 緊急한 問題들을 討議 결정하며, 자기의 任務를 遂行하지 못한 黨 中央委員會 委員, 候補 委員 또는 準候補委員을 그 成員으로부터 召喚하고, 中央委員會의 成員을 새로운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으로 補選한다.

第 4 章 道(直轄市)의 黨組織

31. 道(直轄市) 黨 組織의 最高機關은 道(直轄市) 黨代表會이다.

道(直轄市)代表會는 2년에 1회 道(直轄市)黨委員會가 召集한다.

道(直轄市)代表會는 必要에 따라 규정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될 수 있다.

道(直轄市)黨委員會는 道(直轄市)黨代表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2個月前에 傘下 黨 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2. 道(直轄市)黨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道(直轄市)黨委員會와 道(直轄市)黨 檢査委員會의 事業을 總和한다.

나. 道(直轄市) 黨委員會와 道(直轄市)黨 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다. 黨大會에 派遣할 代表者를 選舉한다.

33. 道(直轄市)黨委員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특히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및 封建的인 儒敎思想을 反對하고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等 온갖 表現의 反黨 및 反革命의 思想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保護한다.

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後備隊를 準備하며, 黨의 力量配置를 組織하며, 黨의 委任을 黨員에게 賦與하며, 革命課業을 위하여 항상 思考하고 움직이도록 그들의 黨生活를 指導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初級黨委員會, 工場, 企業所, 高等教育機關의 細胞를 組織하고 그들의 活動을 指導 檢閱한다.

勞動階級의 模範을 따라 勤勞大衆을 革命化하고 改造하여 他們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黨員과 勤勞大衆 속에서 思想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勤勞者들의 社會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이 自己 基本課業을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도록 他們을 指導 檢閱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의 指導的 役割을 훌륭히 遂行하며, 革命課業의 成果의 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 戰鬥力의 向上을 組織 指導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自己의 事業 情形을 黨 中央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34. 道(直轄市)黨委員會는 道(直轄市)黨 全員會議를 4個月에 1회 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遂行方法을 討議 決定한다.

常務委員會와 道黨委員會의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舉하며, 秘書處를 組織하며, 道

(直轄市)黨委員會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과 全員會議 사이에 道(直轄市)黨委員會 名義로 黨內 事業과 行政 및 經濟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常務委員會 會議는 1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秘書處는 幹部事業 및 其他 黨內 事業問題들을 討議 결정하고 그 執行을 組織한다.

道(直轄市)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遂行方法을 討議 결정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35. 道(直轄市)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 또는 反革命的 宗派行爲를 하거나 其他 黨의 唯一思想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綱領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거나 黨規約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規律 問題와 關聯된 市(區域) · 郡黨委員會의 提議 및 黜黨에 대한 결정을 最終的으로 批准하여 黨規律 問題와 關聯된 黨員의 中訴를 解決한다.

第5章 市(區域) · 郡의 黨組織

36. 市(區域) · 郡의 黨組織의 最高機關은 市(區域) · 郡黨 代表會이다.

市(區域) · 郡黨 代表會는 2년에 1回 召集하고, 必要에 따라 市(區域), 郡黨 代表會는 규정된 期間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다.

市(區域) · 郡黨委員會는 市(區域) · 郡黨 代表會의 召集期日과 議程을 1個月에 傘下 黨組織들에 通知하여야 한다.

37. 市(區域) · 郡黨 代表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가. 市(區域) · 郡黨委員會와 市(區域) · 郡黨 檢査委員會의 事業을 總和한다.

나. 市(區域) · 郡黨委員會와 市(區域) · 郡黨 檢査委員會를 選舉한다.

다. 道(直轄市) · 黨代表會에 派遣할 代表者를 選舉한다.

38. 市(區域) · 郡黨委員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는 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特히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教條主義, 부르조아思想 및 封建的인 儒教思想을 反對하고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등 온갖 表現의 反黨 및 反革命的 思想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여,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노동자와 같이 保護한다.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그들을 育成하며, 幹部 後備隊를 準備하고 그들을 系統的으로 訓練한다.

黨의 委任을 黨員들에게 賦與하고, 革命課業을 위하여 日常的으로 思考하고 움직이며 부단히 黨性을 단련하도록 그들의 黨生活을 組織 指導한다.

黨의 核心을 發見하고 그 隊列을 擴大시키며 黨員 擴大事業을 日常的으로 組織 指

朝鮮勞動黨規約

導하며, 黨의 力量을 適切히 配置하며, 黨員과 候補黨員을 教養한다.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大衆을 革命化하고 改造하여 그들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黨員들과 勤勞大衆속에서 思想事業을 組織 指導한다.

初級黨 組織을 合理的으로 組織하여 初級黨 組織의 執行機關을 強化하며, 自己機能과 役割의 부단한 向上을 위하여 그들을 指導 幫助한다.

勤勞者들의 社會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이 自己의 任務을 正確히 遂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의 指導의 役割을 훌륭히 遂行하고 革命課業의 成果의 遂行을 保障한다.

勞農赤衛隊를 強化하고 그들의 政治思想教養과 戰爭準備를 強化하며, 戰鬪準備를 完成하여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의 財政을 管理하며 自己의 事業情形을 上級黨委員會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39. 市(區域)·郡黨委員會는 全員會議을 3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全員會議는 黨의 路線과 政策의 執行方向을 討議 결정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 常務委員會의 責任秘書 및 秘書를 選擇하며, 秘書處를 組織하며, 市(區域)·郡黨委員會 軍事委員會와 檢閱委員會를 選舉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常務委員會는 全員會議와 全員會議 사이에 市(區域)·郡黨委員會의 名義로 黨內 事業과 行政 및 經濟事業을 組織 執行하며 指導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常務委員會는 1個月에 2回 以上 會議를 召集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秘書處는 幹部事業 및 黨內事業에서 提起되는 諸般問題들을 討議 결정하며, 그 결정들을 執行한다.

市(區域)·郡黨委員會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事政策 執行方法을 討議 결정하며, 그 執行을 組織 指導한다.

40. 市(區域)·郡黨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를 하거나 其他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行爲를 하거나 黨 綱領과 規約을 遵守하지 않거나 黨規律을 違反한 黨員에게 責任을 追窮하며, 黨 規律問題와 關聯된 黨 細胞의 결정을 討議 批准하며, 黨 規律問題와 關聯된 申訴를 審議 解決한다.

第 6 章 黨의 基層組織

41. 黨의 基層組織은 黨細胞이다.

黨細胞는 黨員生活의 據點이며, 大衆 속에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直接 遂行하는 黨의 戰鬪單位이다.

黨細胞는 黨員 5名 以上이 있는 모든 行政 및 生産單位에서 組織한다.

- 42 黨의 基層組織의 組織方式은 다음과 같다.

가. 黨員 5名에서 15名까지의 單位에는 黨細胞를 組織한다.

黨員 5名 未滿을 가진 單位에는 黨細胞를 두지 않고, 그 行政 및 生産單位の 黨員 또는 候補黨員은 隣接 黨細胞에 所屬시키거나 作業性格과 隣接關係를 考慮하여 2個以上の 行政 및 生産單位로써 1個의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特殊한 경우에는 黨員 3~4名이 있는 單位 또는 15名 以上の 單位에도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3名 未滿의 單位에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推薦하는 黨員을 責任者로 하는 黨小組를 組織할 수 있다.

나. 黨員 16名 以上이 있는 單位에는 初級黨 委員會를 組織한다.

다. 黨員 16名 以上이 있는 行政 및 生産單位에는 初級黨 委員會와 黨細胞 사이에 部門黨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라. 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 또는 黨細胞의 組織形成만으로 黨의 基層組織을 合理的으로 組織할 수 없는 경우에는 初級黨委員會와 部門黨委員會 사이에 있는 行政 및 生産單位에 分初級黨委員會를 組織한다.

마. 以上の 組織型에 符合되지 않는 경우에는 黨中央委員會의 批准 밑에 實情에 맞는 組織形成을 取할 수 있다.

43. 初級黨 組織(委員會)의 最高 指導機關은 黨總會(代表會)이다.

가. 黨 細胞總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나. 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 總會(代表會)는 3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黨員 또는 候補黨員이 500名 以上이거나 傘下의 黨組織들이 널리 分散되어 있을 경우에는 初級黨組織의 黨總會를 6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할 수 있다.

44. 初級黨 組織에는 1年을 期間으로 하는 執行機關을 選舉한다.

가. 黨細胞는 總會에서 秘書와 副秘書를 選舉한다.

나. 初級黨 委員會, 分初級黨委員會, 部門黨 委員會는 該當 黨總會(代表會)에서 選舉하며, 秘書와 副秘書는 該當 黨委員會에서 選舉한다.

初級黨委員會에서는 必要에 따라 執行委員會를 選舉할 수 있다.

初級黨委員會, 分初級黨委員會, 部門黨委員會는 1個月에 3回 以上 會議를 召集하며, 執行委員會가 組織된 行政 및 生産單位の 初級黨委員會는 1個月에 1回 以上 召集한다.

內閣과 中央機關의 初級黨 組織內에 黨 指導委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45. 初級黨 組織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가.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그들이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授受하고 끝까지 擁護 貫徹하며 黨의 唯一思想體系에 어긋나는 修正主義, 敎條主義, 부르조아 思想 및 封建的인 儒敎思想을 反對하고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 등 온갖 種類의 反黨·反革命思想을 反對하여 堅決히 鬪爭하며, 主體思想에 基礎한 黨의 統一과 團結을 固守하도록 黨員들과 勤勞大衆을 우리 黨의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킨다.

나. 下級 黨組織의 幹部隊列을 튼튼히 꾸리고 體系의 으로 育成하며, 黨核心을 發見하고 敎養하며 不斷히 그 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朝鮮勞動黨規約

- 다. 黨員들의 黨生活를 強化하고 그들의 黨性을 不斷히 단련하며, 黨員들 속에 黨規約 學習을 정기적으로 組織하며, 革命事業을 위하여 恒常 思考하고 움직이며, 모든 事業에서 先鋒의인 役割을 하도록 黨의 委任을 賦與하며, 높은 政治思想水準에서 黨會議를 進行하고, 黨生活를 總和하여 黨員의 黨生活 情形을 徹底히 把握하고 그들을 教養하며, 黨員들을 革命家로 改造하고 批判의 方法으로 思想鬭爭을 成果의으로 展開하며, 黨員이 過誤를 犯했을 경우에는 責任을 追窮하고 그 過誤를 是正하도록 그들을 幫助한다.
- 라. 入黨請願者를 發見하여 그들을 體系的으로 教養 檢討하며, 準備된 사람들을 黨에 받아들이며 候補黨員들과 새로 入黨한 黨員들을 育成한다.
- 마.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勤勞大衆을 革命化하고 改造하며, 黨 周圍에 그들을 튼튼히 結束시켜 革命課業을 遂行하도록 그들을 組織 指導하며, 勤勞大衆의 要求와 意見を 謙遜히 接受하고 그것을 제때에 解決하여 주며, 그들의 物質文化 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며, 모든 行政 및 生産單位와 職場에서 系統과 秩序를 樹立하며 反革命的 要素들과의 鬭爭을 強化한다.
- 바.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한다.
黨員들과 勤勞大衆 속에서 黨政策 教養을 強化하고, 革命傳統教養과 共產主義教養의 基礎가 되는 階級教養과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教養을 強化한다.
- 사. 勤勞者의 社會組織을 強化하고 그들에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提示하며, 그들이 自己의 義務를 正確히 遂行하도록 指導한다.
- 아. 새 環境에 適應하도록 黨 事業方法을 不斷히 改善하고 모든 事業에서 政治事業을 先行시키며, 革命事業의 成果의 遂行을 保障하며, 行政 및 經濟事業을 正確히 指導한다.
모든 黨員들과 勤勞大衆이 自己 分野에서 革命課業을 忠實히 遂行하도록 指導하며, 끊임없이 革新을 일으키며, 千里馬運動과 社會主義 競爭運動에 積極 參加하며, 技術革新運動을 強化하며, 勞動生産 能率을 提高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며, 國家財産과 社會財産을 愛護 節約한다.
- 자. 勞農赤衛隊를 徹底히 強化하고 그들의 思想 政治教養 및 軍事教育을 強化하며, 黨이 부른 때 恒常 動員할 수 있도록 準備한다.
- 차. 黨員과 候補黨員을 教養하며, 黨費를 받으며, 自己事業 情形을 上級黨委員會에 正當的으로 報告한다.

第 7 章 朝鮮人民軍隊內 黨組織

46. 朝鮮人民軍은 眞正한 人民의 軍隊이며, 抗日 武裝鬭爭의 榮光스러운 傳統을 繼承한 朝鮮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다.
47. 朝鮮人民軍隊 內의 各級 單位에 黨組織을 形成하며 朝鮮人民軍의 全體 黨組織을 唯

一的으로 網羅하는 朝鮮人民軍黨委員會를 組織한다.

朝鮮人民軍 黨委員會는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에 直屬하며, 그 指導 밑에 事業하며, 自己 事業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 앞에 正常的으로 報告한다.

48.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黨員들과 戰士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徹底히 確立하며,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幹部 後備隊를 育成하며, 黨員의 黨生活을 組織 指導하며, 黨隊列을 擴大 強化한다.

黨員들과 戰士들을 革命化하고 그들을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改造하며, 그들을 黨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朝鮮人民軍隊內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組織들을 強化하고 그들의 機能과 役割을 높이도록 指導하며, 軍事事業의 黨指導를 強化하며, 黨의 軍事路線을 貫徹하며, 붉은旗中隊運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며, 人民軍을 一當百의 革命的인 武裝力으로 強化하며, 抗日武裝鬭爭 時期에 이룩한 指揮官과 戰士, 軍隊와 人民들의 傳統的인 團結精神을 發揮하도록 指導한다.

49. 朝鮮人民軍隊 內 各級 黨組織들은 朝鮮勞動黨의 規約와 黨中央委員會가 推進한 指示와 原則에 따라 事業한다.

50. 朝鮮人民軍隊內 各級 黨組織들은 地方黨 組織들과 緊密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朝鮮人民軍隊內 黨委員會는 黨 中央委員會의 批准 밑에 政治 및 軍事幹部를 駐屯地域의 道(直轄市)·市(區域)·郡黨委員會 또는 工場, 企業所의 初級黨 委員會 委員으로 推薦할 수 있다.

第8章 政治機關

51. 黨中央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政治, 經濟 및 軍事分野의 重要한 部門에 政治機關들을 組織한다.

內閣과 中央機關에 組織된 政治局(政治部) 및 그들에게 所屬한 政治機關들은 該當 部門에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에게 政治敎養 事業을 唯一的으로 組織 指導하며, 該當 單位內에 組織된 黨委員會 執行部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朝鮮人民軍 總政治局 또는 該當 黨委員會의 政治部로서 그에게 所屬한 政治機關들은 黨 政治事業을 唯一的으로 組織 指導한다.

52.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에 所屬한 各級 黨機關들은 上級 政治機關의 指導 밑에 事業하며, 內閣과 中央機關의 政治局(政治部)에 所屬한 各級 政治機關들은 地方黨委員會와 上級 政治機關들의 二重的인 指導 밑에 事業한다.

53. 內閣과 中央機關內에 組織한 政治局(政治部)들은 下級 政治機關들을 指導함에 있어서 該當 地方黨委員會들과 緊密한 連繫를 가져야 한다.

54. 政治機關들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遂行함에 있어서 黨員들과 勤勞大衆의 組織 및 動員을 위하여 黨 熱誠者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55. 政治機關들은 勞動黨의 規約와 黨 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示와 原則에 따라 組織事

第9章 黨과 勤勞大衆의 組織

56.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이며 抗日武裝鬭爭의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繼承하는 黨의 外廓團體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大衆의 思想敎養 組織이며, 黨과 大衆을 連結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忠實한 幫助者이다.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우리의 革命課業을 直接 繼承하는 靑年들의 革命的 組織이며 黨의 戰鬪的 後備隊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黨의 指導下에 自己의 事業을 進行한다.
57.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盟員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꾸리며, 勞動階級の 模範을 따라 他們을 革命化하고 勞動階級化하며, 他們을 黨 周圍에 튼튼히 結束시키며, 同盟 隊列들을 鞏固히 하며, 盟員들의 思想敎養事業을 強化하며, 千里馬運動과 社會主義競爭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며, 盟員들을 革命과 建設에 積極的으로 組織動員한다.
- 가. 職業同盟은 盟員들 속에서 思想, 技術 및 文化革命을 強力히 展開하며, 人民經濟計劃을 完遂 또는 超過完遂하며 經濟的인 生産管理에 盟員들을 끌어들이며, 勤勞大衆의 生活條件을 保障하기 위하여 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 나. 農業勤勞者同盟은 盟員들 속에서 思想·技術 및 文化革命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며, <우리나라의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提議>를 貫徹하며, 農業生産을 不斷히 向上시키며, 勞動生産 能率을 높이며, 農業勤勞者의 生活條件을 保障하도록 全力을 傾注한다.
- 다. 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은 盟員들 속에서 黨員 後備隊를 育成하고, 黨隊列을 不斷히 補充하며, 黨과 祖國을 위하여 幹部 後備隊를 育成하며, 學生들과 靑年들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忠實한 建設者가 되며, 깊은 知識을 所有하고 높은 道德과 強한 體力으로써 政治思想的으로 準備된 近衛隊와 決死隊가 되며, 黨 中央委員會를 목숨으로 擁護 保衛하며, 聖스러운 祖國防衛事業에 自覺的으로 參加하도록 他們을 敎養한다.
- 라. 女性同盟은 盟員들의 政治思想 및 文化水準의 向上을 위한 事業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며, 社會主義 建設에서 女性들의 役割을 더욱 向上시키며, 그들의 아들 딸들이 革命的 忠實한 繼承者가 되고 家族을 革命化하도록 他們을 敎養하여야 한다.
58. 各級 黨組織들은 勤勞大衆의 幹部隊列을 強化하고, 他們을 敎養하며, 勤勞大衆의 組織을 通하여 大衆과의 事業體系를 樹立하며, 그들이 自覺的으로 自己 任務를 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第 10 章 黨의 財政

59. 黨의 財政은 黨員들의 黨費, 黨 機關들과 黨 企業所들로부터의 收入 및 其他 收入으로 形成한다.
60. 黨員 및 候補黨員의 黨費는 月 收入의 2%로 한다.
- ※註: 本 規約은 露語版의 國譯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 12. 27)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 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자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 11 조 국가는 내외적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 12 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

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배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 2 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높아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종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의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 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제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인화, 세부화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에 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 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 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종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5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발살정책으로부터 지키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모용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4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전,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모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용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모용조건을 보장 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모용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모용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유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들, 혼란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요시설,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 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너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정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국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치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2조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 5 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인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

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 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전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 없이 체포할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자자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헌법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6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법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건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사임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7 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운다.
2. 정부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 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부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부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부장, 그밖의 정부원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 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범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8 장 정 무 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채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투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 보호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11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 9 장 지방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17조 도(직할시) 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가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
기관이다.

제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
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 10 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중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지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략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11 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 울터같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 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비는 1 : 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1977. 4. 29)

제1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지도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 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 후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으며 외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안락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 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 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나라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촌을 기계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전망성 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 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목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 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 밑천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 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10조 국가 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 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 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관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리용할 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 리용은 협동농장 규약에 의하여 20~30명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 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고 정리 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꾸러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 총계획을 세우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 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 총계획의 전망기간을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 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 내며 간석지를 개간 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 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 리용 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 국토건설계획은 도인민회의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 지 보 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유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 정리사업은 큰물 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 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 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 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 강 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 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 정리는 큰물 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 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 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등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제를 세우고, 강하천 보수관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조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여 해당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 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 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태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 보내거나 오물을 버릴 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로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에 근로자들의 문화 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매기 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 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제의 대자연 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뽕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의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품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여 산림을 잘 보호 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 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뽕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뽕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

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 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는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9조 산림은 인민경제 발전을 인민생활 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와 순환식 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벨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 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여 필요한 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제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이를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 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촌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 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의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칩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캐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캐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

제4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 발전시키면서 발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 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 완비하며 지하수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 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치목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 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배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 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 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리리적 조건이 좋고 개간이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 관수체계, 화학적 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 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 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 동맥의 중요 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 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가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노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양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 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 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노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 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 보호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 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 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 있게 조직 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 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 평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평해의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토 지 관 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업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 없이 목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 목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 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 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 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 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지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 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

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남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 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 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 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 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부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 토지에는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문화 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 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 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 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리용하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 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 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꾼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여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 보호 건설 및 관리 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책임을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

(1978. 4. 18)

제1장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 원칙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을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

제2조 노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의 사회와 인간의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조적 노동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된다.

제3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4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한다.

제5조 사회주의하에 모든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의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6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을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7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노동이 즐거운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로 되게 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간다.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9조 노동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 발전시키며,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노동생산 능력의 높은 성장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주의하에서 노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노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모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12조 노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모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노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노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조 노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제1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모동을 사랑하고 모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모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노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모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 적태도와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 노동규율은 자각적 규율이며, 사회주의 노동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 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차게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 수준은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 과제를 일별, 월별, 분가 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노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 리용율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며, 경각성 있게 지키며, 노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노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노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모력적 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모력영웅칭호의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 표창을 받는다.

제 3 장 사회주의 노동조직

제25조 사회적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나라의 모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모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 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찰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노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군중모선을 구현하며 모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노동계획화는 노동조직을 바로 하며, 노동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노동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노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 생산부문과 보조 생산부문 사이에 노동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노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노동자 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노동자 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노동을 배치하며, 직접부문 노동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노동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노동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노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노동보충 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 발전계획에 예견된 노동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에 노동력을 정확히 조절 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노동을 적제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노동조직을 바로 하며, 노동관리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노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동당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노동과 휴식의 학습을 옹기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은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노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일시 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노력이 남는다고 하여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척할 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노동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노동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 일꾼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생산력 발전을 다그치는 힘 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 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원칙에 팀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급제와 상급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 수 있도록 생활비지 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 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게 생활비 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 실행정형, 제품의 질, 실비, 자재의 리용정리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 사업에서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기술기능 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 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축적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국가 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결과물 평가하고 분배율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 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 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 평가사실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 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노동생산 능력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 노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노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5 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

제46조 노동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노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중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창의 고안, 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 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 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 배려를 돌리며 기술 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 고등전문학교, 농장 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 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 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 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기술기능 학습체제와 기능 전습체제를 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로체위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현대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제를 실시한다.

국가 과학기술기관과 로동행정기관 기사급수, 기능등급 판정시험을 정기적으로 조직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로 동 보 호

제53조 로동보호사업을 잘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 교양사업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 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 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 시킬 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 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 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 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로동보호 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기업, 감독 기관의 준공 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 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기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야간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호 연구를 보장하여 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노동보호 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노동보호 물자를 극력 아껴 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노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증진에 엄청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 7 장 로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 노동제, 유급 휴가제,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의 로동을 시킬 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 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중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 휴가 외에 연속 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 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제68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 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 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낮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게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낮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 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 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 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 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 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 근로자들이 로동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 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 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 휴가기간에는 일시적 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 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 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로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1976. 4. 29)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2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8조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테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복무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준중로선을 관철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

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 2 장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부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찰한다.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훌륭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추어준다.

제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 시설을 갖추어준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한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국가는 어린이 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국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들린다.

제20조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 기간의 로임과 식량, 배륜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로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로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철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

계는 로동시간안에 쉼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을 줄이고 응근로임을 준다.

제21조 국가는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꺼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삼태자에게는 옷과 모단, 1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제 3 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 보육

제22조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 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한다.

어린이들을 위생적으로 거두어주고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4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인다.

제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물을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들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들을 잘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 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제 4 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29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는 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3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한다.

제34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태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5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한다.

제36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준다.

국가는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설편는 법 등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제38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육원, 교양원들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공로가 있는 양육기관 부모자들에게 명예칭호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39조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양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총부,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야한다.

제40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양육기관의 모든 일꾼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정통하며 해당한 국가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42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43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 6 장 어린이 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자라나는 세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양육기관이다.

제45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전 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만 4살~만 5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6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

제47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는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실현한다.

제48조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전반사업을 조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 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4. 탁아소, 유치원을 운영하는 중앙기관에 대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지도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결린문제를 풀어주도록 지도한다.

제51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효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등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제54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게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국가는 중앙과지방에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 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젓소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도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9. 5)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집령하기 위한 투쟁은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집령하는데서 사상적요새를 집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집령할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집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집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넓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모든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교육문제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혁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었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모든 세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공부하고 있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을 훌륭히 관리 운영하고 있다.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 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땅위에 사회주의적문명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1.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때에만 자주적으로 창조적인 사회적존재가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품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준비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공적 참가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은 사상잔재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남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을수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낼수 없다.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강화하여 사람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온갖 남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

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품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배운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써먹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수있다. 공산주의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기술로 무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유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건강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담보이다. 건강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부터 먼저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인재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키울수 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을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방향을 가르치준다. 사회주의 교육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사업전반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교수를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은 당의 지도밑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없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율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교양사업은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규율을 세워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교육분야에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난감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을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적 선을 세워야 한다.

교육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배운다는것은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만일 교육사업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범교육을 한다면 사람들은 범범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범범사회로 될수 있다.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노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노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비노동계급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노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야 한다. 교육분야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

르조아사상과 퇴폐적인 생활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특히 부르조아교육리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부인하고 교육의 무사상성과 《자유화》를 선포하는 수정주의교육리론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난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고수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순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인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구체적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인간을 키우는 창조적사업이다. 모든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다 들어맞는 교육 리론이나 경험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조선혁명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 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며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조선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옹계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교육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체적립장에서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도리어 나쁜 후과를 끼칠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것을 디잘 알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디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가 허용되면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교육리론과 사상조류가 들어올수 있으며 교육사업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천지히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어야한다.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것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리론발전의 추동력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킨다. 사람은 세계에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치도 혁명과 건설에 썩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 우리 사회에 혁명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리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며 모든 리론과 지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에 우리 나라의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국가의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 단초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혁

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언제나 교육사업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교육을 잘하여 다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는 원칙에서 '교육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여 그들을 모두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사회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여야 사람들 사이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할수 있도록 질적인 교육제도와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고 후대교육사업과 성인교육사업,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 되어있고 교육기관을 국가가 지도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책임적인 보장에 의해서만 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있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며 교육시설을 꾸리고 교재와 교구비품을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특징짓는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수있도록 구성되어야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정치사상교양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 사상교양을 잘 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을 잘하는 기초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도

것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지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학생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북돋워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치주어 모든 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적 내용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부리를 똑똑히 알게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에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건철히 옹호보위하며 당의부리에 굳게 앉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공산주의 앞날의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과 계속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을 반대하여 건철히 싸울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학생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건철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치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국주의는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인민히 사랑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의 물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치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절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간지게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적준법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이다.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범질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이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높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없애고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교양은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유치원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주고 정치사상의식을 씨피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인식시키도록 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2)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일반지식은 사회주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적 지식이다. 학교에서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며 전문분야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을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한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교육은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체제를 통하여 실시된다.

일반지식교육에서 중요한것은 일반기초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초등교육과 중등일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와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치야 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생산과 결부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에서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고 일반기초지식을 주는에만 치우침으로써 학생들을 생산실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도 안되며 일반기초지식교육을 소홀히하고 기술교육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중등일반교육을 직업교육화하여도 안된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반드시 일반 기초지식을 충분히 주면서 기기에 기초기술교육을 옹계 배합하여야 한다.

일반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들에서 예능과목들의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문학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수 있는 예술적기량과 풍부한 미학적 정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은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준 기초우에서 고등교육단계에서 주어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수 있으며 온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기초원리와 이론,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최신성과들을 깊이 체득시키며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 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이론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옹계 해명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전문기술교육에서는 현대적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현대 생산의 기술의 공

학적인리를 깊이있게 가르치며 일정한 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화신비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능을 키워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보충하고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진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진실히 필요한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체 육 교 육

체육교육의 사명은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모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청소년들의 튼튼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이다. 체육교육을 잘하여 청소년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킬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지를 단련하며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한 투지와 인내성을 키우며 체육기교와 문화적소양을 높인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체육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들과 중등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체육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체육교육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민족적체질의 특성, 청소년학생들의 성별, 나이, 인체생리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골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며 국방체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광범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과외체육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입간체조,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하고 여러가지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사회주의교육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둔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사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깨우쳐주는 교수 교양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치주는 교수이다.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 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킨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사유활동을 추동하여 그들의 사물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도록 한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모든 과목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는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며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학생들의 준비경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수법에서 중요한것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하는 것이다 설명은 생동하고 설득력있고 논리정연하게 하여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제발시키기 위하여서는 토론과 논쟁을 널리하며 특히 문답식방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답식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문답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

직관교육 실험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 현상과 과학적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 사고를 제발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학교들에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 실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은 강압적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으로부터가 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하여야 하며 결합이 있거나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타일러 그가 자기의 결합과 부족점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과 설부는 매개 학생들의 구체적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하여야 한다.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은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이다.

긍정적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준다. 따라서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청소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본따기 좋아한다. 그러므로 긍정적모범은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일으키며 널리 일반화된 수 있다.

항일혁명선열들의 영웅적투쟁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세대들에게 참된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가르치주는 구감이다. 학교들에서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키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모범은 그들의 실생활과 직접 잇닿아있는 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부정적측면을 스스로 이겨내도록 하여야 한다.

2)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책에서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진부되어야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융게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실비, 모동도구란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은 전문분야의 과학적원리와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하여서는 연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연습은 과학적인 리론과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현실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진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과 생산로동을 융게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적실천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생산로동은 자연을 빈척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미제

하고 변화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품모를 개조한다. 생산로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것은 그들을 혁명화, 모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진척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모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모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교육학적으로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참가시키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산로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모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교양을 받고 혁명적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라날수 있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학생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건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모청 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하며 조직의 규약상 의무와 위임분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년단, 사모청 조직생활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학생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소년단, 사모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모청 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보호자이며 그들의 친근한 교양자이다. 학교 소년단조직과 사모청조직들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모청 조직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준비정도, 심리적특성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분공실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로운 분공을 주어 모든 학생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

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치무경할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할줄 아는 능력 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학생들로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를두어 대중속에서 당정책도 해설하고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위생지식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위생근위대, 녹화근위대 활동과 소년단립,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것과 함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적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옹바로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고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후대교육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가 공통된 지향과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수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옹게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교육을 잘하여 학교교육을 안받침하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설들은 학생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하여 정치사상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며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이 학생교육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 일군들은 학생교육문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공동보조를 취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대제

여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교육적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천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사회정치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언제나 김박하게 생활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한 마디한마디의 말과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아들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사,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천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들은 모든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일생동안 공고발전된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풍부화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적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유기 결합하고 병진시키는것이다.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단계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교양의 연속적과정이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교양의 첫공정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이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어린 시절에 올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이 중요하다.

학교전 교육의 중심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두어야 한다.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전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육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물의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다. 청소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탐구력과 인식능력이 왕성하고 육체적으로 빨리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에 결정적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세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시고 현대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청소년들을 중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

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고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성인교육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성인교육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며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과학 기술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교육하지 않으면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킬 수 없으며 현실발전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성인교육은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 성인교육의 대상에는 지난날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교육체제를 통하여 중학교졸업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 정규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식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체제를 내오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체제에 망라되어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간부들을 여러가지 재교육체제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토요학습 수요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매일 2시간 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 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

사회주의 교육사업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역사적 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었다.

우리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 새조국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데제

설하였다. 민주주의교육제도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점차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었으며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1) 전반적의무제도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일부 소수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교육체제의 구성과 교육기관들의 배치, 무료교육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시책들은 모두 전체 인민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

우리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제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 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56년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모든 세대대들에게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무료의무교육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제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세대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제에 망라되어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내오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운영하여 학령기의 세대대들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누구나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기술수준과 정치리론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상화하고있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위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여 온 사회의 인대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대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교육을 받도록함으로써만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야 사회주의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가 완성된다.

당면하게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점차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로 넘어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기본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력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을 더욱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지역적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들을 지역적으로 옹골치게 배치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지역적특성과 전반적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에 교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보장하며 각도에 종합적간부양성기지를 꾸리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의 과학부문별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매 시기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부문별로 대학들과 대학의 학부학과들을 옹골치게 편성하고 학생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자연과학기술이 높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문학계통에 비한 자연과학기술계통의 비중을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2) 전반적 무료교육제도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는데 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어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고 전문학교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철저한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학교교육뿐만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날로 더욱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국가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더 잘 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집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3)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건설의 작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대대들뿐만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내왔으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 오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민교육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이 있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어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동시에 밀고나

가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는 진민교육을 실현할수 없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있음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의 길을 열어주고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전체 인민을 끊임없이 교육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뿐아니라 교육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교육방침의 정당성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갖춘 유능한 민중간부들 많이 키워낼수 있게 하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생산자이며 현직일군이다. 실천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들은 혁명적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과 실천활동은 서로 떼어낼수 없는 통일적과정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한 교육사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키우는 매우 좋은 방도로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들은 거의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과 생산기업소들에 병설되어있으므로 교육일군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을 손쉽게 해결할수 있다.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본진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근로자고등중학교 체계는 필요없게 될것이며 앞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고등교육체계와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가 기본형태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대학을 늘리고 그 교수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역들에는 농장대학들을 내오고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적 어린이 보육교양제도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비롯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 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보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체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 왔다. 우리는 해방후에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를 세웠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수많은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내오고 전제고아들을 받아서 키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도대가 다져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국가는 계획적인 투자와 전사회적운동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대대적으로 꾸러졌으며 그 운영사업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

우리 나라의 국가적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양육에서 공산주의적 원칙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이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적인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근본형식이다.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적관계속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품격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는것도 공산주의적원칙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노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어린이들을 더 잘 보육교양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주 및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 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국가적인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식료품, 놀이감, 교구비품, 의약품, 양육설비들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꾼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당적, 국가적인 사업이며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교육일꾼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확고히

현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사명과 임무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

세대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자라나는 세대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건국 세대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간부를 키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민족간부가 없이는 새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학교는 세대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결합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사업을 옹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학적과정에서 첫공정은 교육강령을 만드는 사업이다. 교육행정기관들과 대학들에게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과 과학기술습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교육강령을 잘 만들어야하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준비에서 기본은 교수안을 잘 만드는것이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만든 교수안을 반드시 검열하여야 하며 칠판토문을 거치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교수사업을 할 때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강의할 때에는 반드시 방식상학이나 시범상학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 충분히 가르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심적으로 틀어쥐고나서야 할 문제는 교수의 정치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교수들 당정책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교수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교수의 과학리문지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방법을 개선하며 강의, 학과토론, 실험실습, 학과논문 작성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정된 모든 형태의 교수론 다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소화정도를 정상적으로 요해장악하여 그들의 학과실험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한다는 것은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맞물려진 교육학적과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학교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학교안에 과학적인 교육행정지도 체계를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학적과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교육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행정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안에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교육규률을 세우야 한다.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학교에 맡겨진 법적과제이며 첫째가는 교육규률이다. 학교들에서는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과정안, 교수요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 정치조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육교양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수사업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과외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과학습뿐만아니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도 옹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상교양기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옹계 수행하며 학생들을 지식있고 문명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칸지게 하는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사상혁명의 기관답게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모든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 또한 학교를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려야 한다.

학교를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교실과 연구실, 실험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균중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학교를 알뜰하게 거두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위치와 역할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태가 건

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이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다.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기본방도는 그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교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한다.

교원들은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중요한 실천활동은 교수교양사업이다. 교원들은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야 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사회정치활동과 과학기술보급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교원들은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려면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뿐아니라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아야 한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

교원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자기의 전공과학분야에 정통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또한 기초과학지식을 비롯한 여러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하며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그리고 교육 리론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대학교원들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학위학위를 가져야하며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은 다 자격교원이 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학습을 생활화하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방식상학, 시범상학,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를 자주 조직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검열명정하는 국가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사로청조직생활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보호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지도하는 과외교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의 사회적양육자이며 교육자이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비제

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하며 학령전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중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수 있으며 그래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들에 좋은 학생들을 골라넣으며 이 대학들의 교수교양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범교육기관들에서는 학교 사료칭지도원, 소년단지지도원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직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세우고 현직 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수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심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옹계 장악지도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학교들에서의 교육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기본거점은 학교이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당의 요구와 혁명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당의 교육정책은 교육행정기관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집행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대열을 튼튼히 꾸리며 교원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과학리론적 자질이 높은 좋은 사람들로 교원대열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교원대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않된다.

당조직들은 교원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교원들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과학리론적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후대교육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학습을 잘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쫓아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전공분야의 새 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하며 대학기간에 민족간부의 자질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여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교 사로칭 조직과 소년단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잘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사로칭조직들이 주되는 힘을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에 들리며 학교 사로칭조직과 소년단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대학생모집사업을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에서 옹기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로동생활과 군대생활에서 단련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적자오가 높으며 학습성적이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학에는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당원들이 집결되어있으며 학부와 강좌 그리고 학생들속에 당조직들이 있다. 대학에서는 교육강령을 만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자립적으로 조직진행한다. 그러므로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대학의 모든사업을 옹기 지도하는 것은 고등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대학당위원회의 기본업무는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민족간부로, 공산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데 있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대학앞에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고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안의 당조직들과 사로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교직원,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4)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의 물질적수요는 매우 방대하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은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한다.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국가는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모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늘어나는 학생수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사건설을 앞세우고 학교들에 실험실과 실습기지를 잘 꾸려주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와 학용품, 여러가지 교구비품을 충분히 보장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 교육기자재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교육기자재들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교양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사회교양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세 세대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어야 하며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학부형으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학교들의 물질적태를 꾸리기 위한 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후원단체가 되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출판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 출판하는 도서들과 새로 생산하는 기계설비들 가운데서 교육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학교들에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北韓主要年表

(1945. 8~1979. 12)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45.	8	25日: 소련軍 平壤進駐, 司令部設置	
	10	10~13日: <朝鮮共產黨 西北5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 非公開裡開幕. 金日成 正式으로 出現, 基調演說.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設置. 14日: <金日成歡迎 平壤市群衆大會> 開催. 28日: <北朝鮮 5 道行政局> 正式發足.	
	11	3日: <北朝鮮民主黨> 結成. 28日: <北朝鮮 5 道行政10局> 設置.	
	12	17日: <朝鮮共產黨 北部朝鮮分局> 第3次 擴大會議開催. 責任秘書에 金日成을 正式으로 選任 發表.	27日: 모스크바 三相會議閉幕. <朝鮮問題에 關한 決定> 發表.
1946.	1	2日: <北朝鮮共產黨>과 各社會團體,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定支持共同聲明 發表.	
	2	8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樹立 (委員長 金日成, 副委員長 金科奉, 書記長 康良煜). <天道教青友黨> 結成大會. (黨首 金達鉉). 16日: <朝鮮獨立同盟>, <新民黨>으로 改編.	
	3	5日: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에서 土地 改革法令 公布.	20日: 第1次 美蘇共同委開催.
	6	24日: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 公布. 27日: 農業現物稅에 관한 決定書 公布. 現物稅率 收穫高의 25%.	
	7	30日: 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公布.	
	8	10日: 重要産業, 交通, 遞信, 運輸, 銀行 등의 國有化法令 公布. 28~30日: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46.	11	3日：北韓의 〈道·市·郡人民委員會〉選舉.	23日：左翼政黨,〈南朝鮮勞動黨〉으로 統合(委員長 許憲).
	12	19日：社會保健法 公布.	
1947.	2	17~20日：〈北朝鮮 道·市·郡 人民委員會〉開催.	
	5		21日：第2次 美·蘇共同委開催.
	10		30日：韓國에 유엔委員團 派遣案 可決.
	11		14日：유엔總會, 韓國總選舉案을 可決(유엔委員團 構成. 유엔監視下 南韓 全域에서 1948年 3月까지 總選舉實施, 統一政府樹立後 兩軍撤退등).
1948.	1	23日：소련側, 유엔韓國委의 北韓入境 拒否通告.	
	2	8日：〈朝鮮人民軍〉創建.	26日：유엔小總會, 可能な 地域 單獨選舉案(美國案) 31:1로 可決.
	3	27~30日：〈北朝鮮勞動黨〉第2次大會 開催.	
	4	29日：〈北朝鮮臨時人民會議 特別會議〉憲法草案 採擇.	
	5		10日：유엔監視下 南韓總選舉
	8	25日：〈人民共和國〉樹立을 위한 〈最高人民會議〉代議員 選舉.	15日：大韓民國政府樹立 宣言, 李承晚大統領 就任.
	9	2~9日：〈最高人民會議〉第1次會議 開催. 第1日會議, 議長團選出(議長：許憲, 副議長：李英·金達鉉). 憲法委員會 選出. 第6日會議(9日), 金日成 內閣成員을 發表(首相：金日成, 副首相：朴憲永·金策·洪命慈,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48.	9	閣僚全員 19名),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	
	12	26日: 소련軍 撤收完了	
1949.	1	28~31日: <最高人民會議> 第2次會議 開催. <1949~50년 2個年計劃에 關한 法令>採擇.	
	2	22日: 金日成 소련訪問.	
	3	17日: 朝·소間 <經濟 및 文化的 協助에 關한 協定> 調印(總 21億1200萬루블의 借款을 約定).	
	6	25~27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結成大會 開幕.	
	11	25日: 里人民委員會 代議員選舉.	
	12	3日: 面人民委員會 代議員選舉.	
1950.	6	25日: 4時, 北韓軍 38線 全域으로부터 南侵開始. 26日: 北韓<軍事委員會>組織 (委員長: 金日成, 委員: 朴憲永·洪命慈·金策·崔庸健·朴一禹·鄭準澤).	
	7		7日: 유엔安保理, 유엔군 派韓 決定.
	9		15日: 仁川上陸作戰.
	10	25日: 中共軍 韓國戰爭에 介入.	
1951.	1	1日: 中共軍 6個軍團 38線 넘어 南下.	
	7		10日: 開城에서 休戰會談 開始.
1953.	6		18日: 反共捕虜 석방.
	7		27日: 休戰協定 調印.
	8	6日: 이승엽 (사법상·당비서) 사형판결. 12日: 소련政府의 10億루블援助決定接受.	
	9	1日: 金日成一行 소련訪問.	
	10		1日: 韓·美相互防衛條約調印.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53.	11	10日：金日成을 團長으로 하는 北韓代表團 中共訪問.	
1954.	4	20~23日：〈最高人民會議〉第1期 第7次會議開催，人民經濟戰後復舊3個年(54~56年)計劃에 對한 法令 承認. 27日：南日 外相, 제네바政治會議에서 統一方案提議.	
1955.	3	31日：中共軍 6個師團 撤收開始.	
	5	25日：朝總聯 結成.	
	12	15日：朴憲永에게 死刑判決.	
1956.	2	2日~3. 13日：소련共産黨 第20次大會에 參加次 北韓 黨代表 모스크바訪問 (團長 崔庸健).	
	4	23~29日：〈朝鮮勞動黨〉第3次大會 開催.	
	6	1日~7. 19日：金日成을 團長으로 한 北韓代表團 소련·東歐訪問.	
	12	11日：〈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12月全員會議開催，討議事項：〈1957년 인민 경제계획에 대하여〉.	
	8	27日：〈最高人民會議〉2期 選舉.	
1957.	11	3~23日：10月革命40周年記念式 參加代表團(團長：金日成) 소련 방문.	
1958.	2	14~21日 周恩來 北韓 訪問.	
	3	3~7日：勞動黨 第1次代表者大會開催 ① 5個年人民經濟發展計劃에 對하여 ② 黨의 統一과 團結을 더욱 強化 할 데 대하여 ③ 黨組織問題 討議.	
	6	9~11日：〈最高人民會議〉第2期 第3次會議 開催，第1次 5個年(57~61年)計劃에 對한 法令 採擇.	
	9	1日：中共軍 9月 25日까지 撤收를 公布.	
	11	1日：全般的 中等義務教育制 實施.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58.	11	21日~12. 9日：金日成 中共訪問.	
1959.	1	14日：〈勞農赤衛隊〉創設.	
	8	13日：僑胞北送協定調印(칼카타에서)	
1960.	4		19日：4. 19革命.
	6		15日：第2共和國 成立.
	8	14日：〈聯邦制〉提議.	12日：第2共和國 大統領에 尹 潛善 선출. 16日：國會, 張勉 國務總理를 認 准.
1961.	5		16日：5. 16 軍事革命.
	7	6日：朝·中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締結. 10日：朝·土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締結.	2日：朴正熙少將, 最高會議 議 長에 就任.
	9	11~18日：〈朝鮮勞動黨〉4次大會 開催.	
	10	14日：土共產黨 第22次大會 參席次 勞動 黨 代表團(團長：金日成) 出發.	
1962.	1		13日：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 劃(1962~1966)成案.
	10	8日：〈最高人民會議〉第3期 代議員選舉 實施. 22~23日：〈最高人民會議〉第3期 1次會 議 開催.	
	12	10~14日：〈勞動黨〉第4期 第5次會議 開 催 ① 造成된 情勢와 關聯하여 國 防力을 加一層 強化할 데 대하여 ② 1962年 人民經濟實行 總和와 19 63년 人民經濟發展計劃 討議.	
1963.	2		17日：第3共和國 發足, 新憲法 發効.
1964.	2	25日：〈勞動黨〉4期 8次 全員會議에서 〈社 會主義農村問題에 관한 테제〉 채택.	
	6	11日：AA會議에 代表團 派遣.	
	11	1~4日：수카르노 印尼大統領 복한 訪問.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65.	2	11日 : 코시킨 소련首相 北韓訪問.	
	4	10日 : 金日成 인도네시아 訪問.	
	5		22日 : 韓日協定 正式調印.
1966.	2	10日 : 北韓 民族保衛相 命令 第5號 發令 (現情勢를 正確히 認識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全般的 戰鬪準備를 完成할 것 등 6個項).	
	3	26日 : 北韓 勞動黨代表團(團長 : 최용진) 소련 共産黨 第23次 大會에 參加次 平壤 出發	
	4	29日 : 北韓 <最高人民會議> 農業現物稅制 廢止에 關한 法令 公布.	
	7		9日 : 韓·美行政協定 調印. 29日 :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7~1971) 發表.
	8	12日 : 勞動新聞 사설을 통해 <자주노선> 宣布.	
	10	5~12日 : <朝鮮勞動黨> 代表者會議 開催.	31日 : 존슨美大統領 한국방문.
1967.	1		19日 : 韓國海軍警備艇 56艦, 北韓砲火에 의해 침몰.
	2	13日 : 소련방문 北韓代表團(단장 : 第1 副首相 金一) 평양 출발.	
	3		22日 : 北韓 中央通信社 副社長 李穗根 板門店에서 僞裝 歸順.
	5	20日 : 소련副首相 노비코프, 평양 도착.	
	9	23日 : 經濟代表團(단장 : 이주연), 소련 방 문.	
1968.	1		21日 : 1.21 무장공비 사건발생. 23日 : 푸에블로號 拉北.
	2	20日 : 소련軍 創軍50주년 참가 북한 대표 단(단장 : 金昌奉) 평양 출발.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68.	8		24日:〈統一革命黨〉地下間諜團事件發表.
	11		2日:蔚珍·三陟地區에 武裝共匪 사건 발생.
	12		23日: 푸에블로號 승무원 82명 과 시체 1구 귀환.
1969.	4		15日:美情報機 EC-121, 東海上空서 北韓에 의해 被擊.
	5	14日: 소련 最高會議 幹部會議長 포드고르니 북한 訪問.	
	10	1日: 崔鏞健 중공창건 20주년 기념식 참가.	
	12	6日: 北韓外相 朴成哲, 소련 訪問	11日: KAL旅客機 拉北.
1970.	2		14日: KAL機 승객 판문점으로 送還.
	4	5日: 中共首相 周恩來 평양 방문. 25日: 소련軍 代表團 평양 방문.	
	7	26日: 北韓·中共間 軍事會談(北京).	
	8		15日: 朴大統領 8.15 紀念式서 〈人爲的 障壁 단계적 除去〉 선언.
	11	2~13日: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 開催. 6개년 인민경제계획 (1971~1976) 채택.	
	12		29日: 國會 非敵性 共產國과 交易을 튼 貿易去來法改正案 通過.
1971.	2		9日: 第3次 經濟開發5個年計劃(1972~1976) 發表.
	4	12日: 〈最高人民會議〉 第4期 5次會議 開催.	
	5	6日: 朴成哲, 포드고르니 會談(모스크바).	
	6	10日: 초세스쿠 루마니아大統領 北韓訪問.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1.	8	6日：金日成, 시아누크訪問歡迎 席上에서 韓國의 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 大衆團體 人士와 接觸할 用意 있다고 示唆. 14日：北韓赤十字, 韓赤의 家族찾기 運動 提議에 板門店서 會談 열자고 提議. 18日：軍事代表團(團長：吳振宇) 中共訪問.	12日：韓赤, 〈南北家族 찾기 會談〉 짓자고 北赤에 提議. 20日：南北赤 연락관, 分斷 26 年만에 첫 대면.
	9		20日：南北赤 家族찾기 예비회담 開催(판문점).
	12	11日：金日成, 소 最高會議 代表團과 會談.	
1972.	1	23日：日 議員團, 平壤에서 北韓과 貿易 擴大覺書에 調印.	
	2	25日：許鎔·브레즈네프 會談(모스크바).	
	5	26日：NYT紙 슬즈베리記者 북한 방문.	
	7		4日：7.4 南北共同聲明 發表.
	8		30日：南北赤 本會談 開催(평양).
	12	12日：〈最高人民會議〉 5期代議員 選舉 25~28日：〈最高人民會議〉 5期 1次會議 閉幕. 27日：〈社會主義憲法〉 채택.	27日：維新憲法 公布.
1973.	2	9日：許鎔 外相, 中共 訪問(11日, 周恩來와 面談)	
	4	9日：〈最高人民會議〉 第 5 期 第 2 次 會議 開催.	
	5	22日：世界保健機構(WHO) 加入.	
	6	23日：金日成 〈祖國統一 5 大綱領〉 發表.	23日：朴大統領, 平和統一-外交 政策 發表(6. 23宣言).
	8	28日：金英柱, 南北調節委員會 會談拒否 聲明.	
	9	10日：당 5기 7차 전원회의 개최(金正一 조직·사상 담당 비서 동용설).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3.	10		1日 : 유엔 政治委, 南北韓 無條件 同時招請案 可決.
	11	16日 : 祖國戰線, <大民族會議> 召集 提議.	
1974.	1		18日 : 朴大統領, 年頭會見에서 南北不可侵協定 締結提議.
	3	20日 : <最高人民會議> 5기 3차회의 開催. 美國에 <평화협정 체결> 제안. 稅金 制度 완전 폐지 (4月 1日부터 실시 결정).	
	5	29日 : 萬國郵便聯合 (IPU) 加入.	
	8		15日 : 朴大統領 狙擊未遂事件 發生. 平和統一 3大原則 發表.
	11		15日 : 非武裝地帶의 제1 땅굴 발견.
1975.	4	18~26日 : 金日成, 毛澤東 會談 (北京) <南朝鮮人民 蜂起 積極支援> 演說	
	5	22~6.10日 : 金日成, 東歐, 아프리카 諸國 (루마니아 · 알제리아 · 모리타니아 · 불가리아 · 유고) 訪問.	
	8	30日 : 北韓, 非同盟會議 加入 (리마).	
	9	21日 : 中共政府 代表團 (단장 : 張春橋), 평양 訪問.	
	10	30日 : 濱洲 駐在 北韓 大使館員 撤收.	29日 : 유엔 政治委, 對立된 두 개 韓半島案 可決 (西方案 : 贊 59 · 反 51 · 棄權 29 · 共產案 (贊 51 · 反 38 · 棄權 50).
1976.	1	29日 : 經濟使節團 (단장 : 공진태), 모스크바 向發.	
	2	22日 : 黨代表團 (단장 : 朴成哲), 소련 共產黨 제 25차 대회 참가차 모스크바着.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6.	6		18日：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1977~1981) 發表.
	8	19日：金日成 全軍에 戰鬥態勢令.	18日：판문점 美軍 警備將校 살해사건 발생.
	9	19日：崔鏞健 死亡.	
1977.	1	1日：金日成, 新年辭에서 〈對美平和協定〉 促求. 24日：朴成哲·코시킨 會談(모스크바). 25日：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對南提議 採擇. 〈人民間 政治協商〉 또는 〈大民族會議〉 早速 開催.	1日：朴大統領, 新年辭에서 南北對話 正常化 및 門戶開放을 促求. 12日：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 相互 不可侵協定後 美軍 撤收 不反對. 對北食糧 援助提議. 28日：張基榮 調節委員長, 調節委 再開促求(不可侵協定 推進).
	2	1日：平壤放送, 韓國의 對北食糧 援助提議 拒否. 21~22日：〈조선통일을 위한 제 1 차 세계 대회〉 개최(브라질).	
	4	20~29日：最高人民會議 5期 7次會議 開催. 土地法 採擇.	
	6	21日：經濟水域 200海里에 關한 〈政令〉 採擇. 25日：〈조선통일 지지 국제연락위원회〉 결성(알제리).	
	7	12日：P.L.O. 代表團 北韓訪問.	15日：外務部, 北韓 200海里 經濟水域 不認定宣言.
	8	1日：200海里 經濟水域, 東海 50海里·西海 200海里·軍事水域 發效. 24日：유고 티토大統領 北韓 訪問.	
	9	14~17日：〈主體思想에 關한 國際討論會〉 開催(平壤).	23日：國務會議, 12海里 領海法案 議決.
	10	23日：許鏐 外相 유고 訪問. 31~11月 9日：소련 10月革命 60週年 記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念行事 參席代表團(團長:林春秋) 모스크바 向發. 1977	
1977.	11	11日:〈最高人民會議〉6期代議員 選舉. 14日:세계 식량농업기구 <FAO> 加入.	
	12	10日:金日成, 호네거 歡迎宴에서 獨逸式 統一方法 韓半島 適用 拒否. 13日:勞動黨中央委 5期 15次 全員會議 開催. 15~17日:〈最高人民會議〉, 第6期 1次會 議開催. 第2次 7個年計劃(1978~ 1984) 採擇.	
1978.	3	20日:20次 赤十字實務會議 拒否.	7~17日:팀 스피리트 '78작전 실시
	4	9日:〈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설립(東京).	
	5	5~9日:華國鋒 북한 방문. 20日:초세스쿠 루마니아大統領 북한 방 문.	
	8	18日:中共 軍事代表團(단장:國防省 副相 栗裕) 평양 訪問(~9.1).	
	9	8~13日:鄧小平 北韓訪問 10日:〈人共〉樹立 30주년 기념.	2日:申鉉碯保社部長官, WHO 會議 參加次 소련向發.
	11	27~28日:〈勞動黨〉중앙위 제5기 17차 전원회의 개최. 27~29日:〈조선통일을 위한 제2차 세계 대회〉 개최(東京).	7日:韓美聯合司 發足.
1979.	1	23日:〈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 〈전민족 대회〉 소집 위한 南北會談 제의.	19日:朴대통령 <南北當局間對 話〉 제의. 2.17~3.14日:南北 變則 對話 개최(1~3차).
	2	20日:北韓 卓球 協會, 제35차 평양 세계 탁구 대회에 <남북 통일〉 팀 구성출 전 제의.	27~3.12日:南北 卓球協會 대 표 회의 개최(1~4차).
	3	27~29日:〈最高人民會議〉6기 3차회의 개 최.	

北韓主要年表

年月	區分	內 容	備 考
1979.	4	14~16日 :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 개최. (인도 뉴데리)	
	4	25日 : 제35차 平壤 世界 卓球選手權大會 개막.	
	5	2~3日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平壤 방문.	4~5日 :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서울 방문.
	5	26~6.1日 : 中共 全人代 상무위 부위원장 등영초 북한 방문.	
	6	13日 : 黨 中央委 5기 18차 전원회의 개최.	
	7	10日 : 外交部 대변인 성명 (3당국 회담 거부).	1日 : 韓·美 共同聲明 발표 : 三當局 會談 제의.
	10		26日 : 朴大統領 逝去.
	12	10~12日 : 黨 中央委 5기 19차 전원회의 개최. 80.10 黨 6차대회 소집 결정. 20日 : 제22차 올림픽(모스크바)에 <민족 유일 팀> 구성 참가 제의.	21日 : 제 4 공화국 10대 崔圭夏 大統領 취임.

北韓人名錄

<參考>

- ① 北韓 主要人物 200名을 收錄.
- ② 姓名·地名·機關名 등을 韓
수록 漢字로 表記.
- ③ 年月은 事件發生時期 또는 確
認時期임
- ④ 現職은 물론, 可能性이 있는
職責을 末尾에 表示.
- ⑤ 1979年末을 基準

7

강 도권(男) ○51.11 第8師團 사단장
○69.2 第20車輻化師團 사단장(대과) ○
현재 第24車輻化 步兵師團 사단장.

강 석승(康錫崇·男) 1912 출생. 본명
강 석상 ○57.10 勞動黨中央委 부부장 ○
61.1 內務省 정치국장 ○61.8 勞動黨 監
査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8.10
松都政治經濟大學 학장 ○69.7 慈江道黨
책임비서 ○71.6 金日成 高級黨學校 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咸
北淸津) ○74.9 朝·中親善協會 상무위원
○74.9 朝·中 親善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5.7 黨歷史研究所 소장 ○77.4
勞動黨 代表團 단장으로 이라크 방문 ○
현재 黨歷史研究所 소장, 朝·中親善協會
상무위원, 맑스·레닌主義學校 교장.

강 성산(姜成山·男) ○69.8 黨 慈江
道委 책임비서 ○69.11 黨平壤市委 책임
비서 ○70.11 黨中央委 위원 ○72.12 最
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4 平壤市
人民委 위원장, 平壤市黨 책임비서 ○73.
10 黨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5.1 交通·
遞信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부총리 ○
79.9 政務院 부총리 겸 철도부장(현재).

강 양옥(康良煜·男) 1904.11 平南大
同郡 출생. 平壤神學校·日本中央大學출
업. 康敦煜(김일성의 외조부)의 6촌 동생,
日帝時 기독교 장로 ○28.10 長老教 목사
○45.11 北朝鮮民主黨 中央委상무위원 ○
47.2 北朝鮮人民會議 常任委 서기장 ○48.
8 最高人民會議 제1기 대의원 ○48.9 最
高人民會議 常任委 서기장 ○48.9 國旗勳
章 제 1급 수여 ○49.6 祖國統一民主主義
戰線 中央委 상무위원 ○57.8 最高人民會
議 常任委 서기장 유임 ○57.8 最高人民
會議 제 2기 대의원(平南 덕흥) ○59.4
소련·東歐·蒙古 등 순방 ○59.9 最高人
民會議 常任委 부위원장 ○59.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 상임위원 ○60.5 祖
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62.10 最高
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平壤 大駝嶺) 同
常任委 부위원장 ○65.5 朝鮮平和擁護 全
國民族委員會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
議 제 4기 대의원 ○67.12 同 常任委부위
원장 ○69.6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장

北韓人名錄

단 의장 ○70.1 最高人民會議 대노단장으로 UAR방문 ○70.7 對外文化連絡委員會 위원장 ○71.11 朝鮮올림픽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副主席 겸 中央委員會 의원 ○현재 副主席.

강 점구(姜漸求·男) 咸南 출생. 製鐵所 노동자 출신 ○60.10 輕工業委員會 부위원장 ○61.12 水産省 부상 ○63.3 水産省 ○63.7 國旗勳章 제 1급 수여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7.12 수산상 유입 ○68.11 수산상 해임 ○78.12 江原道 行政委 위원장 ○79.2 政務院 水産委 위원장(현재)

강 현수(康賢洙·男) ○56.6 松都政治經濟大學 출신, 맑스·레닌주의 강좌장 ○62.12 소련 駐在大使館 무관(소장) ○66.7 人民軍 소장 ○68.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0.7 社會安全省 정치국장 ○70.11 黨 5次大會代表者資格審査委員 위원 ○70.11 黨中央委 위원 ○70.12 社會安全部 정치국장 ○73.12 黨 平壤市委 책임비서 ○74.3 平壤市 人民委 위원장 겸 黨 책임비서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 위원 ○78.5 平南道 人民委 위원장 ○78.5 平壤市黨 책임비서 해임 ○현재 平南道 人民委 위원장.

강 희원(男) 1916 咸北 출생. 맑스·레닌주의學院 출신 ○37. 共產黨 組織事件에 관련 투옥 ○58.7 電氣省 副相 ○58.7 勞動黨 中央委員會 經濟部長 ○61.9 勞動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2.8 平壤市 人民委員會 위원장 ○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역포) ○68.12 最高人民會議 豫算委 위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1.9 咸興市 人民委員會 위원장 ○72.9 平壤市 人民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平壤市 行政委員會 위원장 ○78.9 政務院 부총리(현재).

계 응태(桂應泰·男) 咸北 출생. ○57.5 黨 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60.12 外務省 부상 ○60.11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越盟 방문 ○62.3 貿易省 부상 ○67.4 國際貿易推進委員會 부위원장 ○67.10 貿易省 제 1 부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兩江 甲山) ○67.12 貿易相 ○70.11 黨中央委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政務院 貿易部 부장 ○73.5 朝·칠레 親協 위원장 ○75.4 黨 및 政府代表團 단원으로 中共 방문 ○76.12 政務院 부총리 ○77.1 부총리 겸 무역부장, 黨政治委 후보 위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黨政治委 위원 ○78.4 무역부장 해임 ○현재 黨政治委 위원, 政務院 부총리.

계 형순(桂亨淳·男) 咸北 출생 ○55.7. 平壤市 人民委 農業部 부부장 ○62.7 農業省 부상 ○65.2 機械工業省 부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9.12 第 1 機械工業相 ○70.11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72.1 工業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세경) ○73.7 政務院 機械工業委員會 一般機械工業總局 국장 ○73.8 機械工業委員會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 위원 및 政務院 機械工業部 부장 (현재).

공 진태(孔鎭泰·男) 平南 출생 ○54. 人民經濟大學 교관 ○58. 對外經濟總局 2 부장 ○63.6~64.7 對外經濟總局 부총국장 ○66.12 石炭工業省 부상 ○67.12 對外經濟委員會 부위원장 ○71.6 對外經濟委員會 위원장 ○71.10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越盟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비현) ○72.12 政務院 對外經濟事業部 부장 ○73.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 방문 ○74.10 政務院 사무장 ○75.6.17 부총리 ○76.7.15 黨中央委 위원 ○76.11 黨中央委 政治委 후보위원 ○78.10 金日成 특사(경제 대표단장)로 루마니아·유고 방문 ○현재 政務院 부총리,

권 민준(權敏俊·男) 1926.9 平壤출생 ○57. 모스크바 共產青年學校 1년수로 ○62.9. 民靑副委員長 겸 學生委員會 부위원장 ○64.5 社勞靑 中央委員會 위원 ○67.3 國際學生同盟 제 9차 대회 단장으로 蒙古 방문 ○73.7 外交部 부부장 ○73.7 유엔 常駐 兪서비 수석대표, 제28차 유엔 總會 대표 ○74.10 제29차 유엔 總會 代表團 부단장 ○75.10 제30차 유엔 總會 代表團 부단장 ○79.2 黨中央委 부부장 ○79.2~3 黨代表로 南北連絡代表들의 板門店 1~3차 접촉에 참석.

권 희경(權熙景<京>·男) 1928.2 慈江道 출생. ○53~56 勞動黨 中央委 근무 ○65~72.1 外務省 부상 ○69.7 政府代

表團 단장으로 싱가포르 방문 ○72.2 소련 駐在大使 (76.8 해임) ○72.1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咸北 화대) ○73.6 스웨덴 주재 접임 대사 ○73.10 제28차 유엔總會 代表團 대표 ○74.9 제61차 IPU總會 대표(동경) ○75.9 제62차 IPU總會 참가(런던) ○76.7 대사직 해임 소환.

길 재경(吉在京·男) 1924 출생. ○53~61. 金日成大學 교수(역사학부장) ○74.3 駐 스웨덴大使館 대사 ○74.4 駐 아이슬란드 大使館 대사 겸임 ○77.7 外交部 부부장 ○78.2 리비아 방문 ○현재 政務院 外交部 부부장.

김 경련(金晙煉(敬連)·男) 1925.9 咸北 출생 ○49. 모스크바大學 유학 ○54 人民經濟大學 경제학 부장 ○60.5 內閣書記局부국장 ○61. 國家計劃委員會 계획국장 ○62.11 黨中央委 財務部 부부장 ○64.11 勞動黨 中央委員會 부부장 ○70.11 勞動黨 中央委위원 ○71.朝·中親善協會 中央委 위원장 ○71.朝·시리아 親善協會 위원장 ○71.6 財政相 ○72.12 最高人民會議제 5기 대의원 ○73.12 政務院 財政部부장 ○76.4 케냐 개최 UNCTAD 제 4차 회의 참가 ○77.12 政務院 財政部 부장 ○78.7 經濟代表團 단장으로中央 아프리카 諸國 순방 80.1 부총리.

김 공성(男) 1919 출생. 8.15 解放前 체육인 ○46. 軍隊入隊 保安幹部 훈련 제 2지도 참모장, 제 2師團 대령 참모 ○46~50 組織動員補充局 전제부장 ○50~51 隊列補充局 부국장 ○51~54 대일보총국장 ○69. 民保省 總參謀部 대일보총국장 (소장) ○71. 機械化司令官(중장·현재)

北韓人名錄

김 관섭(金寬燮·男) 1922.5 平北출생. ○1939년 新義州 敎員大學 부학장. ○57.12 勞動黨 慈江道 委員會 위원장 ○61.9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 차 당대회) ○61.12 蒙古駐在大使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平南 신양) ○64.5 기니아駐在大使 ○67.7 對外文化連絡委員會 부위원장 ○68.9 朝·越盟 親善協會 부위원장 ○68.10 朝·中友好協會 부위원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 對外文化連絡委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4.9~10 第61次 IPU總會 참가(동경) ○74.8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위원장 ○75.10 勞動黨 中央委 위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의원 ○78.9 朝·中親善協會 위원장 ○79.2~3 勞動黨代表團 단장으로 노르웨이·對·스웨덴·덴마크·핀란드 방문 ○현재 外文化連絡委 위원장, 勞動黨 中央委위원.

김 광진(金光鎭·男) 1918년생. 平南출생. ○50.6 民保省 後方總局 참모장 ○70.3 人民軍 소장 ○70.7.25 砲兵 사령관(중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2.7 김일성 훈장수여 ○78.10 人民武力部 부부장(현재).

김 국태(金國泰·男) 1918 咸南 출생. 모스크바大學 출신. ○62.10 朝鮮勞動黨 學校 지도부부장(중장) ○66.10 黨 代表者會議 집행부임원, 勞動黨 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67.7 社會安全省 政治局 국장(상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載寧) ○68.2 勞動黨 中央委 宣傳煽動部 부장 ○68.5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원겸 中央委 부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1.10 黨中央委員會 文化藝術部부장 ○72.11 勞動黨 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 부장 ○73.2 金東奎 政府代表團 단장을 수행 소련 방문 ○76.6 金日成高級黨學校 교장 ○77.5 咸南道 人民委위원장 ○77.10 이디오피아 駐在大使

김 국훈(金國薰·男) 1925(1919?) 咸北 출생 ○50. 中央黨學校 黨委員會 부위원장 ○58.12 中央黨學校 부교장 ○61.5 金策工業大學 학장 ○61.5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 ○61.9 黨中央檢査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平壤외성) 同 法制委員會 위원 ○64.1 平和擁護全民族委員會 부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성진) 同 法制委員會 위원 ○69.10.23 中央黨學校 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2.3 中央放送委員會 위원장 ○2.8 朝鮮議會 구루빠서 기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형봉) ○73.2 쿠바 駐在 특명전권대사 ○74.6 유엔 海洋法 회의 참석(베네주엘라) ○74.12 가이아나 대사 겸임 ○77.3 朝·리비아親善協會 위원장 ○77.8 東獨駐在 대사.

김 기남(金基南·男) 1926.8 江原道 출생 ○48.8 最高人民會議 제 1 기 대의원 ○54.1 外務省 제 2 부장 ○57.6 駐在 中共大使館 임시 대리 대사 ○57.12 外務省 의례부장 ○61.8~65.1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科學 및 學校敎育部 부부장 ○61.3 外務省 의례국장 해임 ○72.4 勞動新聞社 부주필 ○73.4 박사 ○76.5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76.10 勞動黨

中央委 후보 위원 ○77 8~8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제 8차 國際記者 機構(IOJ)總會 참가 및 同機構 부의장 피선 ○77.11 最高人民會議제 6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78.9 勞動黨 中央委 위원 ○78.9~10 로동신문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8.11 로동신문 代表團 단장으로 日本 방문 ○현재 로동신문 책임 주필, 黨中央委 위원.

김 길용(男) ○76.1 軍事停戰委 차석 대표(少將·현재).

김 길현(金吉賢·男) ○60. 黨中央委 科學 및 學校教育部 부부장 ○71.9 黨中央委員會 부부장 ○72. 祖國統一民主主義 戰線 中央委員會 書記局 부국장, 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부위원장 겸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 ○72.8 南北赤十字本會談 자문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2 政府代表團 단장 金東奎를 수행 모스크바 방문 ○74.10 黨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77.4 黨 親善參觀團 부 단장으로 中共 방문 ○현재 黨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김 대홍(金大弘·男) 1919.12 東滿洲 출생 ○40. 소련군 소위로 임관되어 獨·蘇 戰爭에 참가 ○46. 人民軍 第1師團 第1聯隊 참모장 ○47. 南浦旅團 참모장 ○48. 第1軍官學校 군사부장 ○51.2 第10師 사단장 ○51.9 第32師 사단장 ○60.11 民族保衛省 부상 ○61.9 勞動黨中央委 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沙里院 경안) ○63.2 空軍司令部 사령관 및 民保省 부상 ○64.12 軍事代表團 단장으로 越盟방문 ○67.6 民

族保衛省 부상 재임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은산 승화) ○70.11 勞動黨 中央委 위원(제 5차 당대회) ○72.2 人民武力部 부부장, 人民軍 總參謀部 교 육국장 겸임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현재 人民武力部 부부장

김 덕현(金德賢·男) 1929 平北 출생 ○53.7 中央通信 소속 판문점 출입 기자 ○63.5 제18차 올림픽 남북 단일 팀 구성 회담 참가(홍콩) ○64~69 印度 駐在大使館 駐在 中央通信社 통신원 ○71.9 赤十字會 보도부장, 勞動黨 組織指導部 부부장 ○71.9 中央通信社 부사장 ○71.9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대표(단장) ○72.1 北赤代表團 부단장 겸 대변인 ○72.9 黨 中央委 정치 책임지도원 겸 組織部 부부장 ○72.10 ~11 南北調節委 공동 위원장, 제 1~3차 회의 대표 ○73.3~6 南北調節委員會 제 2~3차 회의 간사 위원.

김 동규(金東奎·男) 1916 東滿洲 출생. ○1940년 소련 유학 大學卒業. ○58.11 소련 주재 나흐트카총영사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2.8 黨中央委員會 행정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同 法制委員會 위원 ○66.10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66.9 黨 平壤市委 책임 비서 ○67.10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同 常任委員會 의원 ○68.7 黨中央委 秘書局 비서 ○69.4 黨中央委員會 국제부장 ○69.12 黨 中央委政治委員會 위원(제 5차 전당대회) ○71.9 黨中央委員會 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봉춘) ○72.12. 28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3.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소련·루마니아·헝가리·동

北韓人名錄

독·폴란드 순방 ○74. 3 黨 및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체코 등 방문 ○74. 11 부주석(77. 12 해임) ○75. 5 金日成 東歐諸國巡訪 수행

김 두영(金斗榮<永>·男) ○48. 3 北勞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 ○59. 8 長津江發電所 지배인 ○60. 8 赤十字社 조직기획부 부부장(중장) ○71. 5 社會安全省부상 ○72. 12 社會安全部 부부장 ○77. 12 政務院 부총리 ○78. 4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현재 政務院 부총리.

김 두환(男) ○51. 12 第5軍團 정치위원 ○65. 8 朝鮮科學院 부원장 ○65. 11 清津市 新岩區域 人民委 부위원장 ○71. 2 民族保衛省 부상 ○74. 11 軍事停戰委 위원(소장·현재).

김 득준(金得俊·男) ○1924. 2 咸南출생 ○1950 모스크바大學 유학 ○56. 11 民靑中央委 상무위원 겸 부위원장(제 4차 대회) ○61. 12 內閣直屬 體育指導委 부위원장 ○64. 1 朝鮮 올림픽委員會서기장 ○65. 9 朝鮮 라틴·아메리카親善協會 위원장 ○68. 10 平壤體育大學 학장 ○73. 4 國際貿易促進會 부위원장○73. 4 朝鮮體育指導委 부위원장 ○77. 12 올림픽委 부위원장 ○78. 5 제35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평양) 조직위 위원장○현재 올림픽委員會 부위원장.

김 리준(男) ○72. 7 平北人民委 위원장 ○72. 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慈江 중장) ○73. 2 慈江道 행정위원장 ○77. 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9. 8 慈江道 행정위원장(현재).

김 만금(金萬金·男) ○1905 平南 安州郡 출생. 日本 明治大學 졸업. 소련幹部學校 유학 ○53 勞動黨 中央委 조직부장 ○56 黨 平南道委 위원장 ○56. 4 黨中央委 위원(제 3차 당대회) ○56. 4 黨中央委 농업부장 ○57. 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8. 2 朝·소親善協會 中央委위원 ○59. 9. 1 農業相 ○61. 9 黨中央委 위원, 黨農業部 부장(제 4차 당대회) ○62. 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7. 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板門)○70. 7 부수상, 農業委員會 위원장 사임 ○70. 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1. 12 黨中央委員會 政治委 후보위원 ○72. 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연안) ○72. 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政務院 부총리 겸 農業委員會 위원장 ○73. 9 政務院 총리 및 農業委員會 委員長 해임 ○73. 10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위원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의장단 의장 ○78. 4. 26 平壤市人民委 위원장 ○78. 9 黨 정치위원 ○현재 平壤市人民委 위원장.

김 병률(金炳律·男) ○67. 11 普通教育部 제 1부상 ○69. 11 黨平北道委員會책임비서 ○70. 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 9 社會安全省부상 ○72. 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 12 最高人民會議法案審議委員會 위원 ○74. 9 平北道 人民委 위원장 ○74. 11 社會安全部 부부장(중장) ○77. 12 平北道 책임비서.

김 병하(金炳夏·男) ○69. 1 社會安全相 ○70. 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 11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

원(해방산)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겸 社會安全部 部長 ○73.2 社會安全部長
해임 ○73.5 國家政治保衛部 部長 ○76.9
崔庸健 장래위원. ○현재 불명

김 봉률(男) ○19.11 平北 新義州 출
생 ○30.9 소련유학 ○36.9 레닌그라드大
學 文學部 졸업 ○45 소련軍 입대 ○45.8
新義州安全參謀學校 통역 ○46 第1師團
포병부장(대좌) ○47 砲兵部 참모장 ○
48.3 勞動黨 平北道委 조직부장 ○50.9
소장 진급 ○50 砲兵司令官 ○52.4 中장
진급 ○53.7 제1급 自由獨立勳章 ○56.
4 勞黨 中央委 후보위원 ○56.8 人民軍 最
高司令部 공병국장(중장) ○60.10 人民軍
상장 ○61.2 砲兵司令官 겸 民族保衛省
부상 ○61.9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에서
탈락(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
議 제3기 대의원 ○66. 民保省부상 ○67.
제4기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72.12 最高
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3.5 人民武力
部 부부장 ○75.7 人民武力部 부부장 겸
결연국장(현재).

김 봉주(金鳳柱·男) ○76.11 金성政
治大學 학장 ○77.6 聯總 위원장 ○77.12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最高人民會
議 常設會議 의원 ○78.11 聯總代表團
단장으로 헝가리·유고슬라비아 방문 ○
79.6 聯總 단장으로 東獨 방문 ○현재 職
業總同盟위원장,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김 상호(男) ○70.6 人民軍 소장 ○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6
人民軍 總參謀部 부총참모장(현재).

김 석준(金碩俊·男) ○73.9 北傀 유엔
옵서버 代表部(제비바) 대표 ○76.7 國際
保健機構(제비바) 北傀 代表部 부대표 ○
79.2 (현재) 民主黨 中央委 부위원장 ○
79.2~3 南北連絡代表 단원으로 1~3차
남북접촉시(板門店) 참가.

김 석형(金錫亨·男) ○1912 慶北 출
생 ○1939년 京城帝大 史學科 졸업(고려
사) ○56.1 金日成大學 교수(역사학 박사)
○56.3 科學院 歷史學研究所 소장 ○56.10
루마니아 방문 ○58.11 科學院 상무위원
○59.5 科學院 社會學部門委員會 위원장
겸 歷史學研究所長(과학원 원사) ○60.8
제25차 國際 東方學者大會 참가차 소련
방문(모스크바 종합대) ○61.5 祖國平和
統一委員會 위원 ○64.4 맑스·레닌주의
放送大學 부총장 ○62.10.8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3.8.23 古考學者 代表
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67.11 最高人民
會議 제4기 대의원, 同豫算委員會 위원
(平北 운산) ○72.4 社會科學院歷史學研
究所 소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3.2 金日成 綜合大學 부총장.

김 성걸(金成杰·男) ○65.5 勞動黨
兩江道委 위원장 ○70.10 中央通信社 사
장 ○71.8 中共 방문 ○72.12 제5기 대
의원(노학) ○78.9 朝鮮記者代表團 단장
으로 東南亞 방문 ○78.10~10 朝鮮通信
社 代表團 단장으로 헝가리 방문.

김 성애(金聖愛·女) 1924 平南 출
생. 平壤師範 졸업. 金日成大學 英文科 출
업. 金日成의 처 ○65.9 女盟中央委員會
부위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구직)

北韓人名錄

○72.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
○75.5~6 김일성 수행 루마니아·알제리·모리타니아·불가리아·유고 동방문
○77.11.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의원 ○현재 女盟 위원장, 黨
中央委 위원.

김 성일(男) ○62.1 重工業委員會 부
위원장 ○63.11 機械工業委員會 第 1 機械
總局 부국장 ○71.6 江原道 黨委員會 비
서 ○73.7 平壤市 行政委 부위원장 ○현재
少年團 위원장

김 수철(金壽哲·男) ○60. 朝鮮民主
青年同盟 黃北道 부위원장 ○72.8 朝鮮赤
十字會 中央委員會 書記局 부국장 ○72.8
南北赤十字 회담 代表團 단원(제 1 차~제
6 차) ○73.3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
委員會 書記局 부국장, 祖國平和統一委員
會위원 ○74.11 赤十字會 文化宣傳部 부장

김 시학(金始<時>學·男) ○56.11 朝
鮮作家同盟 外國文學 분과위원 ○70.11
黨中央委員會위원, 同中央委員會 부장(제
5 차 당대회) ○70.11 社勞靑 中央委員會
위원장 ○72.12 中央放送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
73.5 朝·파키스탄 親善協會 위원장 ○74.
9 朝·아르헨티나 親善協會 위원장 ○75.
3 朝·토고 親善協會 위원장 ○75.11 朝
鮮記者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75.3 平
壤市 行政委員會 위원장 ○79.2~3 中央
放送委員會 代表團 단장으로 東獨·체코·
헝가리·루마니아 방문.

김 연주(金連周·男) ○67.4 카이로
駐在大使館 참사관 ○69.3 예멘 駐在大使

館 참사 ○72.9 제 2 차 南北赤十字 本會
談 수행원 ○73.5 北韓赤十字中央委員會
참사 ○73.5 제 6 차 南北赤十字 本會談
代表團 단장.

김 영남(金永南·男) 咸北 출생. ○52
中央黨學校 출신, ○53 모스크바 유학 ○
56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국제부 서기장
○60.8 對外文化連絡委員會 위원장 ○61.
6 소련 및 中共 방문(김일성 수행원) ○
61.9 黨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黨咸北道
委부위원장 ○62.10 外務省 부장 ○63.
4 黨中央委員會 부부장 ○67.10 聯總 中
央委 부위원장 ○68.5 黨中央委員會 부부
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의원, 勞動黨 中央委
국제부장 ○73.2.19 對外文化連絡委 위원
장 ○74.6 黨政治委 위원 후보 ○74.9 中
央人民委員會 대외정책 위원, ○75.2 黨
秘書局 비서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78.8 勞動
黨 정치위원 겸 비서 ○현재 黨中央委 國
際部 부장, 黨政治委 위원 겸 비서.

김 영순(金英<榮>淳·男) ○60.1 江原
道 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9.6 元山市 人
民委員會 위원장 ○70.8 UAR 주재대사
○73.5 平和擁護全民族委員會 부위원장
○73.8 朝·루마니아 親善協會 부위원장
○74.1 朝·中親善協會 부위원장 ○74.4
民主法律家協會 부위원장 ○76.4~6 페
루·파나마·라이베리아 방문 ○77.2~3
朝·中親善協會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
문 ○77.5~6 親善文化代表團 단장으로
이디오피아·리비아방문 ○78.9~9 朝·
루마니아 親善協會代表團 단장으로 루마

니아 방문 ○78.9 朝·종고 親善協會 위원장

김 영주(金英柱·男) 1922 滿洲 撫松 출생. 본명: 김일만(김일성의 동생), ○41. 소련 입국 ○45. 모스크바大學 政治經濟學部 졸업 ○52. 모스크바 高級黨學校 연구반 졸업 ○54 黨조직지도부 지도위원 ○57. 조직 지도부 지도과장 ○61.9 黨中央委 위원, 同 組織指導部 부장(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7.6 黨中央委員會 조직지도부 부장 ○66.10 黨政治委員會 후보위원 겸 秘書局 비서,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同 常任委員會 위원 ○69.12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위원, 秘書局 비서 ○71.11 南北調節委員會 공동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4.2 政務院 부총리 ○74.4.19 김일성 특사로 이집트 방문 ○75.4.8 最高人民會議 제5기 5차회의 참석.

김 영채(金永采·男) ○62.6 南浦通信機械工場 지배인 ○65.2 平壤電氣工場 지배인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平南 평화)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3.7 遞信部 代表團 단장으로 蒙古 방문 ○77.12 政務院 체신부장 ○현재 政務院 遞信部 부장.

김 용운(男) 소련 스페스코 空軍士官學校 졸업 ○58.4 第2師團 58聯隊 飛行部 연대장, 第2師團 56聯隊 飛行部 연대장 ○73.3 人民軍 중장 ○74.7 飛行區分隊長 ○현재 空軍司令部 부사령관.

김 윤상(金允相·男) ○60. 江原道 人民委員會 어업부장 ○72.8 水産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2.12 기구 개편 水産部 부장 ○77.7 漁業代表團 단장으로 소련 방문 ○77.12 政務院 水産部 부장. ○現在 不明

김 윤혁(金潤赫·男) ○77.12 政務院 사무장,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同 法案審議委 위원 ○현재 政務院 사무장.

김 응삼(金應三·男) ○67.12 勞動黨 中央委 후보위원 ○67.12 科學技術委員會 위원장 ○70.10 제3기계공업상 ○70.11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제5차 당대회) ○71.5 科學技術委員會 위원장, 工業科學院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8.2 科學院長(현재).

김 응상(金應相·男) 東滿洲 출생. ○53.10 勞動黨 中央委 부부장 ○55.12 化學工業大學 부학장 ○57.10 教育文化省 부장 ○61.9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國家建設委員會 제1부 위원장 ○63.9 自然保護聯盟부위원장 ○63.11 內閣 제6 사무국장 ○65.1 建材工業相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71.5 內閣 事務局 국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國家建設委員會 위원장(현재).

김 익현(男) ○51.1 第2師團 6 聯隊長 ○69.11 人民軍 구분대장 ○70.11 勞動黨 中央委위원(제5차 黨 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육동) ○74.

北韓人名錄

11 第4軍團군단장 ○75.3 人民軍부총참모장(중장) ○77.2 ○77.7 人民武力部 부부장(상장).

김 일(金一·男) 1912 滿洲 閭島省 안도縣 출생. ○43~45 金日成 부관(해방전 소련군 중위) ○45.11 勞動黨 平北道委 비서 ○48.4 中央委員會 위원(제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1기 대의원 ○50.10 遼信省 정치국장 ○50.12 民族保衛省 부상 ○52.8 黨中央委員會 부위원장, 상무위원, 정치위원, 군사위원, 平南道黨 위원장 ○53.3 軍團정치 장교(중장) ○54.3 부수상 겸 농업상 ○56.4 黨中央委員會 상무위원 ○57.8 最高人民會議 제2기 대의원 ○57.9 농업상 해임 부수상 유임 ○57.1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중앙위원 ○59.1 제1 부수상겸 北勞黨 부위원장 ○60.2 歐洲 社會主義國家 共產黨代表會議 참가차 소련 방문 ○61.9 黨中央委員會 부위원장 겸 政治委員會 위원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黃北운곡) ○64.11 社會主義 10月革命 行事 참가차 소련 방문 ○66.10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상무 위원 겸 秘書局 비서 ○67.3 軍事·經濟技術援助 조인차 소련 방문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勝湖) ○70.11 정차위원 겸 비서(제5차 당대회) ○71.3 제24차 소련共產黨大會에 대표단장으로 참가 ○72.11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威北 雙浦) ○72.12 政務院 총리 겸 中央人民委 위원 ○74.7 루마니아 요양 후 귀국 ○76.4 부주석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현재 副主席.

김 일대(金一大·男) 77.12 政務院 教育委員會 위원장(현재).

김 일성(金日成·男) 1912.4 平南大同郡 古平面 南里 출생. 본명 김성주(金成柱) ○29. 東滿地區 共產主義 青年同盟委員會 서기 ○29.9 毓文中學 中退 ○31. 中國共產黨 입당 ○32. 中國共產黨 朝鮮人部隊 지대장 ○35. 본명 金成柱로부터 金日成으로 개명 ○42. 소련 입국 ○45.8 소련軍 소좌 ○45.10 소련에서 平壤 귀환 ○45.12 朝鮮共產黨 北朝鮮組職委員會 책임비서 ○46.2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위원장 ○46.7 北朝鮮勞動黨 부위원장 ○47.2 北朝鮮人民委員會 위원장 ○48.3 北朝鮮勞動黨 부위원장(제2차 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1기 대의원 ○48.9 內閣 수상 ○49.6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위원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상무위원 ○50.6 軍事委員會위원장 50.6 人民軍 최고사령관 ○53.2 元帥 稱號 수여 ○53.8 英雄稱號 國旗勳章 제1급 수여 ○53.9 소련 방문 ○53.11 中共 방문 ○56.4 黨中央委員會 위원장, 상무위원, 조직위원 ○57.8 最高人民會議 제2기대의원 ○57.9 제2차 內閣 수상 ○57.10 소련 10月革命 40주년 記念式에 黨및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참가 ○59.1 소련共產黨 제21차 대회 참가 ○59.9 中共政權 創建 10週年記念式 참가 ○61.7 友好協助 및 相互 援助 條約 체결을 위해 소련·中共 방문 ○61.9 黨中央委員會위원장 및 政治委員會 위원장 ○61.10 소련共產黨 제22차 대회참가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2.10 제3차 內閣 수상 ○65.4 수카르노 대통령초청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66.10 黨中央委員會 총비서 ○67.1 비공식으로 소련 방문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松林) ○70.11 총비서 겸 정치위원(제5차 당대회) ○72.12 最高人

민會議 제 5기 대의원(慈江 熙川) ○72.1
 2 國家主席,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겸 國
 防委員會 위원장 ○74.9 토고대통령과 회
 담(평양) ○74.9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회
 담(평양) ○74.9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평
 양) ○74.11 예멘 대통령과 회담(평양)
 ○74.12 시하누크와 회담(평양) ○74.12
 자이레 대통령과 회담(평양) ○75.4 中共
 방문 ○75.5~6 루마니아·알제리·모리
 타니아·불가리아·유고 순방 ○77.11 最
 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안주)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제 1차회의에서 국
 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재선 ○78.5 세이
 셸 대통령과 회담(평양) ○78.5 華國鋒과
 회담(평양) ○78.5 모잠비크대통령과 회
 담(평양) ○78.5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대
 대통령과 회담(평양) ○78.6 루안다 대
 대통령과 회담(평양) ○78.9.9 北傀創建 30돌
 慶祝大會 참석 보고 ○78.9.12 鄧小平과
 회담(평양) ○78.9.14 탈가슈 대통령 회
 담(평양) ○현재 勞動黨 총비서 國家主席
 ·人民軍最高司令官.

김 재봉(金在奉<鳳?>·男) 1925 출생
 ○52. 勞動黨 中央委 근무 ○60.4 루마니
 아 駐在大使館 대리대사 ○61.2 쿠바 駐
 在大使館 임시 대리대사 ○62.6 同 참사
 ○65.9 外務省 부상 ○70.11 黨中央委 위
 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外交部 부부장(73.
 4 확인) ○74.6~7 外交部 代表團 단장
 으로 라오스·월명 방문 ○76.8 소련 駐
 在大使館 대사(현재).

김 정일(金正一·男) 1940.2 출생 平
 壤 南山高級中學校, 김일성大學 졸업. 김
 일성 전처 金貞淑의 소생(장남) ○48.9

平壤南山學校 人民班 입학 ○50~52 中共
 吉林學院에 수학 ○64. 김일성大學 졸업
 ○64 黨中央委 조직지도부 지도원 ○69.
 黨中央委 조직 지도부 부부장 ○70 中央
 黨 문화 예술부장 ○73.9 中央黨 조직 및
 선전 비서,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3.12
 中央黨 非公開 會議에서 김일성 후계자로
 결정 ○74.2 黨中央委정치위원회 ○74.4 人
 民軍 소장 ○75.9 黨對南工作 총책

김 좌혁(金佐赫·男) 1903 滿洲間島 출
 생. 中央黨學校 졸업. 33년 共產黨地下
 組織工作에 종사 ○48.8 人民軍 연대장
 ○50.6 政治 부연대장 ○52.8 人民軍第 4
 師團 정치부장 ○58.10 民族保衛省偵察
 局 부장(소장) ○61 總政治局 부국장 ○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 검사위원(제 4
 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제 3기
 대의원(江原 백무) ○64.12 民族保衛省
 총참모부 차장 겸 정찰국장, 朝鮮赤十字
 會 상무 위원장 ○65.2 人民軍 중장 ○65.
 2 民保省 정찰국장 ○66.9 民保省 특별
 작전국장 ○66.10 黨代表者會代表者 資格
 審査委員會 위원 ○67.12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겸 법제위원 ○68.7 黨
 平壤市委 책임비서(70.2 해임)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1.
 1 勞農赤衛隊 사령관.

김 중린(金仲麟·男) 1924(22?) 平北
 碧潼郡 출생. 본적 咸北 ○45.8 이진 민
 族解放同盟 소속 공산주의자 ○54.3 黨中
 央委 부부장 ○59.4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상무위원, 제일교도 北送 협의차 제네바
 회담 참석 ○61.9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제 4차 당대회) ○62.10 黨中央委員會
 문화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北韓人名錄

대의원(慈江時中) ○65.1 黨中央委수산부장 ○66. 中央黨 南朝鮮局 문화부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철만산) ○67. 黨中央委 對南事業 비서 ○69.4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비서 ○70.11. 黨中央委員會 비서 겸 정치위원(제 5차 당대회) ○70.6 政府代表團부단장으로中共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6.9 對南工作 機構의 南韓研究所 소장

김철만(金鐵<哲>萬·男) 1918 滿洲 출생. ○50.7 人民軍 연대장(과라) ○55.4 人民軍 第37師團 사단장(소장) ○62.7 人民軍 중장 ○62.1.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江原 양지) ○64. 民保省 작전국장(중장) ○65.1 人民軍 제 2군단장(중장) ○67.11 最高人民會議제 4기 대의원(도화) ○68.2 人民軍 부총참모장(상장) ○68.9.17 共和國 영웅칭호 수여 ○70.7 人民軍 제 1부총참모장 ○70.7 軍事代表團 단장으로 中共방문 ○70.11 勞動黨 中央委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平壤 찬진) ○78.2~3 國際非政府組織軍縮會議(NGO)에 北傀 대표로 참가 ○78.9 現在不明.

김충일(金忠日·男) 1938.6 출생 ○55~61. 平壤外國語大學 영어학부 北京大學 영어학부 3년 유학 ○70. 쿠웨이트駐在 貿易代表部 통역 ○73.7 유엔駐在 北傀유서버代表團 1등 서기관 ○73.9~11 第28次 유엔 總會 代表團 고문 ○74.9~12 제29차 유엔總會 代表團 전문위원. ○75.9~12 제30차 유엔總會 代表團 전문위원 ○77.8 유엔駐在 유서버代表部 공사 ○78.6 外交部 부부장(현재).

김태극(金泰極·男) ○77.12 政務院 資材供給部 부장(현재).

김태희(金泰禧·男) 1921 咸北 출생. 中央黨學校 졸업, 1948년 소련 유학 ○54.3 外務省 副相 ○57. 中央黨 宣傳煽動部 지도위원 ○58.10 勞動黨 慈江道委 부위원장 ○61.5 外務省 부상 ○66.12 루마니아 주재 대사(69.12 해임) ○71.4 對外文化 連絡委員會 부위원장 ○71.9 北韓赤十字會 中央委員會 서기장(72.8 해임) ○71.9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수석대표(제1~25차) ○72.2 南北赤十字 實務者會談 수석대표(제1~13차) ○72.8 北韓赤十字會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72.8 南北赤十字會 會談 대표 단장(제1~6차)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8.10~10 赤十字 代表團 단장으로 불가리아방문

김현수(男) 1928 출생 ○50년 6 參戰 조종사 ○50~68 空軍 5師團 사단장 ○68~72.11 空軍司令部 政治 부사령관(소장) ○75.5 空軍司令部 政治 부사령관(소장·현재).

김형률(金亨律·男) ○77.9 外交部 부부장 ○78.4~5 차이레 방문 ○78.7 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캄보디아 방문 ○78.10 유엔教育科學機構 제20차 總會 참가차 프랑스 방문 ○현재外交部 부부장.

김환(金煥·男) ○61.5 重工業省 化學工業研究所 부연구원, 國旗勳章 제 3급 ○63. 咸興工業大學 分析化學 강사 교관 ○67.7 科學院 咸興分局 高熱化學研究所 織物研究室 연구원 ○68.10 紡織 製紙工業省 부상 ○72.12 政務院 化學工學部 부

장 ○75.5 勞動黨 代表團 단장으로 기니 비사우, 가봉 방문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同 대의원 자격 심사위원 ○78.12 勞動黨 中央委 위원, 政治委정치 위원, 秘書局 비서,

ㅅ

박 명빈(朴明彬·男) ○74.6 政務院 保健部 부장 ○75.6 保健代表團 단장으로 社會主義國家 保健長官會議에 참가(東獨) ○78.3 保健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8.10 東獨 및 소련訪問 ○현재 政務院 보건부장.

박 성철(朴成哲·男) 1912 威北 출생. 34.3 日本共產黨員○48. 人民軍 第3師團 참모장(대좌) ○50.3 人民軍 第15師團 사단장(중장) ○54.9 불가리아 주재 공사 ○55.5~56.8 駐불가리아 大使館 대사 ○56.8 黨中央委員會 국제부장 ○56.10 外務省 부상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9.10 外務相 ○61.5 祖國平和 統一委員會 위원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平南 德川) ○64.6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후보위원(補選) ○65.7 아프리카·아시아 제 2차 外相會談 참석(알제리아) ○66.3 소련共產黨 제 23차 大會 참석 ○66.10 黨中央委 정치위원 ○66.10 부수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0.4 레닌誕生100돌 記念行事에 참석(소련) ○70.6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0.7內閣 제 2 부수상(의상 해임) ○70.11 黨中央委員會 정치 위원회 위원(제 5차 당대회) ○72.5 韓國방문(비

공식) ○72.10 南北調節委 공동위원장 대리(제1~3차 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부총리 겸 人民奉仕委員會 위원장 ○74.4 中共 방문 ○76.2~3 소련共產黨 제 26차 大會 참석 ○76.4 政務院총리 ○76.8 스리랑카 코롬보 非同盟頂上會議 참석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현재)

박 수동(朴守東·男) ○68.6 黨 兩江 道委 책임비서 ○70.11 黨中央委 위원 ○72.9 黨 조직지도부 제 1부 부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黃南 향측) 同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74.2 勞動黨 조직부장 ○75.9 黨中央委 비서 ○77.9 黨政治委 후보위원 ○78.2~3 社勞青 中央委 제 17차 전원회의 참석 ○현재 黨 組織部 부장.

박 영순(朴英淳·男) ○48.8 勞動黨威 北委 부장 ○56.10 黨中央委員會 통신부장(67.7 재임) ○61.9 黨中央委員會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遞信相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4.9 中共政權創建 15週年記念式 참석 ○66.10 勞動黨 代表者會議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나홍), 常任委員會 부위원장 ○70.11 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당대회) ○71.6 체 신상 해임, 勞動黨 中央委 행정부장 ○72.12 最高人民會議 資格審査委員會 위원,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威南 덕성) ○73.5 革命博物館 관장 ○75.10 영웅칭호 및 國旗勳章 제 1급 ○78.8 革命博物館 創立 30돌 記念報告 참석.

北韓人名錄

박 영순(女) ○67.11.20 女子高射銃旅團 여단장 ○74.4 女子高射銃旅團 여단장 (대좌).

박 용준(男) ○50~63 空軍大學 야크 第11大隊 대대장, 空軍大學 미그 第15大隊 대대장 ○63~70.12 第1 戰鬪機師團사 단장(소장) ○73.5.16 第1 追擊機師團 사 단장 ○75.5 空軍 第1 戰鬪機師團 사단장 (중장·현재).

박 입태(男) ○66.5 兩江道 建設委員會 委員長 ○72.10.9 建設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平北 남흥) ○72.12.28 政務院 建設部 부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代의원 ○77.12 政務院 建設部 부장(현재).

박 재로(朴在魯·男) 1923.1 慶北義城 郡 比安面 山堤洞 834 出生. ○39.3 日本 입국 ○47.7 民靑 中央委外務부장 ○53. 日共 中央對民部 부원 ○53.2 民靑中央書記局 서기국장 ○55.5 總聯 中央事務局 국원 ○57 總聯 中央事務局차장 ○58.6 總聯 中央事務局 선전부장 ○66.10 南朝鮮 報道委 소속 대남공작원 ○66.12 總聯 中央事務局 국장 ○72.12 總聯부의장(총련 제 5차 중앙 상임위) ○73.3 제 5차 南北赤十字會談 자문위원 ○74.5~6 總聯 단장으로 北韓 방문 ○75.5~6 總聯 대표 단장으로 北韓 방문 ○76.9 總聯부의장(연론 보도 부문·현재).

박 중국(朴重國·男) 1918 咸北 出生. 中央保安幹部學校 졸업 ○1949년 소련유학, 中央黨 連絡部 근무(상좌) ○54. 중앙委 노동과장 ○58.10 外務省 참사관 ○63.

1 外務省 제 1 국장 ○64.9 軍事停戰委員會 수석대표(소장) ○1.3 軍事代表團 단장으로 기네 방문 ○71.6 人民軍 부참모장(중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江原원동) ○74.8 駐루마니아 대사 ○77.8 人民軍 중장 ○77.10 黨中央委 후보위원 人民武力部 부부장(현재).

박 태진(男) ○53.2 勞動黨 南浦市黨 위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代의원 ○65.3 人民軍 總政治局 정치국장(중장) ○68.12 金日成大學部 학부장 ○73.5 人民軍 總政治局 적공국장(중장·현재).

방 철갑(男) ○68. 勞動黨 中央委員會 대남 사업부 과장(대좌) ○70. 海軍司令部 부사령관(소장) ○73.5 海軍司令部사령관(중장) ○75.2 유고 방문 ○현재 海軍司令官.

방 철호(男) 1926 出生 ○71~74.2 第 1 軍團 참모장 ○74.10 中將 진급 ○74.3 ~75 第 5 軍團 軍단장

방 태을(方泰律·男) 咸北 出生 ○54.5 朝鮮職業總同盟 中央委員會 부장 ○54.8 外務省 2등 서기관 ○59.2 中共駐在大使館 상무 참사 ○62. 貿易省 부상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 부위원장 ○72.9 國際貿易促進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代의원(黃南 삼천) ○72.12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2.12 貿易部 부부장 ○74.8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불가리아 방문 ○78.6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이집트·소련 방문 ○78.11 政府貿易代表團 단장으로 폴란드 방문.

방 학세(方學世·男) 1912 소련에서 성장. 해방 전 소련軍 출신 ○48.3 北勞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49. 內務省 정치보위국장 ○51.3 社會安全相 ○52.10 內務相 ○56.4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3차 당대회)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江原 通川) ○60.11 最高裁判所 소장 ○66.10 黨代表者大會 집행 부 임원 ○66.11 黨連絡局정보부장 ○67. 7 對南事業總局 조사부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明川) ○70.11 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江原 伊川) 同 法案審議委員會 위원 겸 中央裁判所 소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法案審議委員會 위원 中央裁判所 소장(현재)

백 준혁(白俊赫·男) ○66. 黨檢閱委員會 위원 ○79.2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書記局 부국장 ○79.2~3 南北連絡 代表, 板門店에서 1~3차 접촉시 祖統 대 표로 참가 ○현재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 書記局 부국장.

백 학림(白學鶴林·男) 滿洲 間島 출생. ○48.8 中央 호위대장 ○50.6 人民 軍聯隊長 ○52.3 民保省 政治安全局 국 장(상좌) ○58.5 第3師團 사단장(소장) ○60. 軍事停戰委員會 위원 ○61.9 黨中 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1. 10 內閣事務局 護衛處 처장 ○62.5 民族 保衛省 政治安全局 국장(중장) ○67.8 社 會安全省 警備局 국장(중장) ○67.11 最 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충호), 법제 위원 ○68.2 安全護衛處 사령관 ○70.3.

19 社會安全省 제 1 부장 ○70.11 黨中央 委員會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 의원(평양 냉천) ○73.4 社會安全部 부부 장 ○73.5 人民警備隊 대장 ○78. 人民 武力部 부부장(중장) ○현재 人民武力部 부부장.

人

서 관희(男) 平南 출생. ○1950 모스 크바大學 유학 ○54.5 平壤市 人民委員會 농업부장 ○63.9 平壤市 農業管理委員會 위원장 ○64.1 平壤市 農村經理委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豫算 審議委員會 위원 ○73.6 政務院 農業委員 會 제 1부위원장 ○73.9.20 農業委員會 위원장 ○76.7 黨中央委員會 委員 ○77.11 最 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同 豫算審議委 員會 委員 ○79.1 農業委員會 위원장 해임 ○현재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員會 위 원. 中央人民委員會

서 성철(徐成喆·男) 咸南 甲山 출생 ○71.8 赤十字會 中央委 지도원 ○71.9 赤十字會 中央委 文化宣傳部 부부장 ○71. 9 南北赤十字 豫備會談 대표 단원 ○75. 1 北赤 대표 취임(조 명일 후임) ○76.6 北赤 대표 해임(정재일과교체) ○현재 北 赤文化宣傳部 부부장.

서 윤석(徐允錫·男) ○70.8.28 黨 海 洲市委 책임비서 ○70.12 黨黃南道委 책임 비서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 의원(黃南截亭) ○75.10 黨 中央委 組織 部 제 1 부부장. ○78.5 平壤市黨 책임비

北韓人名錄

서(현재).

서철(徐哲·男) 1907 東滿洲 출생 45年前 共產主義 운동 가담 ○55.1 外務省 제 2 국장 ○55.6 越盟駐在 대사 ○56.4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제 3 차 당대회) ○58.7 人民軍 總政治局長(중장 60.5 해임) ○61.5 祖國統一委員會위원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2.8 黨中央委員會 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 ○66. 朝鮮對外文化部 連絡協會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 ○67.12 最高人民會議 外交委 위원장(69.12 해임) ○69.12 黨中央委 비서 ○70.8 最高人民會議 常任委 부위원장 ○70.11 黨中央委 政治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1.12 黨代表團長으로 폴란드 방문 ○72.11 中央選舉管理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常設會議 의원 ○73.6 黨中央檢閱委 위원장 ○73.7 祖國統一民主主義 戰線 의장 ○77.10 人民軍 總政治局長(대장) ○77.11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현재 黨中央委政治委員, 人民軍總政治局長.

손성필(孫成弼·男) 黃海道 松禾郡 연정면 교양리 출생 ○64.11 中央黨學校 학부장 ○69.8 人民經濟大學 총장 ○70.7 高等教育相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 차 당대회) ○71.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3.5 政務院 教育部 高等教育總局長 ○74.6 高等教育部長 ○75.5 黨中央委 위원 ○76.2 黨代表團長으로 유럽 순방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 현재 赤十字會中央委 위원장.

손정도(男) ○79.3 總聯 中央監査委員會 위원장 ○79.3~6 總聯 일군 代表團長으로 北韓 방문 ○현재 總聯中央監査委員會 위원장.

신상대(申相大·男) 1924.8 慶北義城郡 가음面 尊湖里 출생. ○39.8 日本 입국 ○53.1 民戰 자성縣委員會 위원 ○55.5 總聯 자성縣本部 사무국장 ○59.5 總聯 자성縣本部 조직부장 ○60.6 總聯中央新瀉出張所 교양과장 ○60.11 總聯中央組聯部 지도원 ○68.9 總聯 九月書房부사장 ○74.11 總聯 大阪本部 위원장, 總聯 中央委員 ○77.9 總聯 中央委 부의장 ○ 현재 總聯 中央委 부의장.



안형국(男) 1928 출생 ○60~63 航空 2師團 사단장(대좌) ○66~70.12 空軍司令部 飛行 부사령관(소장) ○현재 空軍飛行 부사령관.

양중협(梁中協·男) 1947.1 南濟州郡 大靜面 永樂里 출생 ○65.3 大阪 朝鮮高級學校졸업 ○69.4 奈良縣 朝鮮初級中學校 교원 ○71.3 在日朝鮮青年同盟 中央委員會 奈良縣本部 부위원장 ○71.10 同위원장 ○79.4 朝青 中央委 부위원장 ○79.4 ~7 總聯청년인문 대표단장으로 北韓 방문 ○현재朝青 中央委 부위원장.

양형섭(楊亨燮·男) 1950년 소련 유학. ○54.5 人民經濟大學 교육학부장 ○61.10 中央黨學校 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咸南 교음)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삼천 ○67.12

高等教育相 ○70.6 中共 방문 ○70.1.27 黨中央委 비서 ○70.11 政治委員會 후보 위원(제 5 차 당대회) ○71.12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73.4 黨代表 단장으로 시리아·이라크·프랑스 방문 ○75.7 國家檢閱委員會 위원장 ○77.4 中央人民委員會 法制委員會 위원장 ○78.12 黨代表團 단장으로 기네·부룬디·루안다방문 ○현재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의장단의장, 黨中央委 위원.

연 형묵(延亨默·男)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0.11 黨中央委部長 ○71.12 黨中央委 비서 ○72.1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黃北 鳳山)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4.12 黨中央政治委員會 위원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8.7 黨 平北道 全員會議 확대회의 참석

오 극열(吳極烈·男) 1928 中國 吉林省 汪清縣 석현 출생. 萬景臺學院, 소련空軍大學 졸업. ○64.11 朝鮮人民軍 空軍聯隊 司令官(소장) ○67.10 人民軍 中將, 空軍 司令官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 ○70.11 勞動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 차 당대회) ○71.8 中共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5.4 김일성 수행원으로 中共방문 ○78~8.7 中共 방문 ○78.7 人民軍 副總參謀長(중장) ○79.9 人民軍 總參謀長(현재)

오 백룡(吳白龍·男) 1909 東滿洲 省 生. ○53.9 제 7 軍團 부군단장(소장) ○58 護衛局長(중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1.9 民族保衛廳 부상(상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평북 내전)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원남) ○68.2 共和國 英雄 稱號·금성메달·國旗勳章 제 1 급 ○68.11 水産相)69.3 해임) ○69.1 黨 軍事委員會 부위원장 ○69.12 勞農赤衛隊 총사령관(대장) ○70.7 黨 軍事部長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5 차당대회) ○72.12 陸運 및 海運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江原고산) ○72.12.28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부위원장 ○75.9 黨中央委비서 ○76.4.27 黨政治委員會 후보위원 ○77.3 黨政治委員會 정치위원 ○77.12 中央人民委員 겸 國防委 부위원장 ○현재 勞農赤衛隊 總司令官, 國防委 부위원장, 黨 中央委 政治委員.

오 진우(吳振宇·男) 1910 威南 北靑 출생. ○35. ○54 人民軍 3 師사단장(소장) ○56.4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3 차 당대회) ○57.10 人民軍 軍단장 ○58.3 空軍司令部 참모장(중장) ○60.8 第 1 集團軍 사령관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 ○63.10 民族保衛省 제 1 부상 ○66.10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67.5 人民軍 總政治局長(대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文川), 同 常任委員會 위원 ○68.9 黨中央委 비서 ○72.12.28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國防委員會 부위원장,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함남 용성) ○75.4 김일성 中共 방문 수행 ○76.5.14 人民武力部長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현재 人民武力部長.

北韓人名錄

오 태봉(吳泰鳳·男) 咸北 출생. 勞動黨 中央黨學校 졸업 ○55. 內閣事務局 참사 ○58. 同 부국장 ○61.6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4차 당대회) ○62.9 內閣 제5 사무국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금화) ○70.11 黨中央委 위원 겸 비서(제5차 당대회) ○71.3 內閣事務局 국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평북 친선) ○72.12 中央人民委 위원, 最高人民委員會 豫算審議委 위원장 ○73.12 黨政治委 후보위원 ○75.4 最高人民會議 제5기 5차회의에서 보고 ○현재 不明.

원 동구(元東求·男) 咸南 출생. 1948년 모스크바 大學 유학 ○56.8 重工業省 化學工業管理局 부장 ○61.10 重工業委員會 부위원장 ○64.4 金屬化學工業省 화학공업 총국장 ○65.10 化學工業省 부상 ○72.1 朝·獨科學技術協助委員會위원장 ○73.11 政務院 化學工業部 화학공업 총국장 ○77.12 化學工業部 부장(현재).

유 금선(男)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下新興) ○73.4.5 咸南 咸州 教育大 학장 ○75.7 政務院 普通教育部 부장 ○75.11 朝·모리타니아 親善協會 위원장 ○78.9 朝·루안다親善協會 위원장 ○현재 政務院 普通教育部 부장.

유 장식(柳章植·男) 모스크바 유학 ○48. 南滿洲 농업 중사 ○50. 外務省 참사 ○55.8 外務省 제2 부장 ○59.10 外務省 부상 ○64.12 黨中央委員會 부부장 ○67.5 黨中央委員會 連絡部 부부장 ○67.11.25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자강도

송원) ○67.12 黨中央委員會 國際部 부부장 ○68.9~69.5 黨中央委員會 對南事業部 부부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2.8 黨中央委員會 組職指導部 부부장겸 對外事業部 부장 ○72.8 제1차 南北赤十字會談(평양) 참가 ○72.12~73.3 제1차~3차 南北調節委 부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문선) ○72.1.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74.10 黨中央委 비서 ○75. 南北調節委員長해임 ○75.3 이탈리아 共產黨14차 대회참석(로마) ○현재 不明.

윤 기복(尹基福·男) 1926.8 咸南道 출생. 서울 壽松國民學校 졸업. 京畿中 4年 중퇴(41회). 滿洲醫學學校 졸업. 48년 소련 유학. ○56.4 人民經濟大學 부교수 ○62.8 普通教育相 ○62.12 朝鮮·쿠바 團結委員會 위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5.12 朝·라틴 아메리카 親善協會 위원장 ○66.6 朝·쿠바 團結委員會 위원장 ○66.6 中東지역(아랍·탄자니아·이라크·시리아) 순방 財政相 ○69.7 黨 中央委員會 위원 ○59.9 國家計劃委員會위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1.11 黨中央委員會 科學教育部長 ○72. 對外文化 連絡委員會 부위원장, 平壤市 人民委員長 ○72.8~11 제1~4차 南北赤十字會談 자문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위원 겸 法案審議委員會 위원장 ○73.2~5 제5~6차 南北赤十字 平壤側 자문위원 ○73.7 萬壽臺 藝術團 단장으로 日本 방문 ○74.9~10 國際IPU 제16차 東京大會 참석 ○77.3 中央人民委 經濟委員會 부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및

법안 심의 위원장 ○현재 最高人民會議
의원 및 法案審議委員長, 中央人民委經濟
委 부위원장.

윤 상철(尹相哲·男) 1924.5 濟洲道南
郡 中文面 江定里 출생. ○40.4 日本 입
국 ○47. 12 民青 大阪本部 부위원장 ○
50.5 解放新聞 편집장 ○50.11 朝防 全國
委員會 위원 ○51.6 民青 大阪部委員會
사무국장 ○55.8 總聯 中央外務部 부부장
○57.10 總聯 中央外務部 부장 ○71.2 總
聯 국제부장 겸 중앙상임위원 ○77.9~9
總聯祝賀團단장(北韓 방문) ○77.9 總聯
中央委 부위원장(현재).

윤 치호(男) ○66.7 朝鮮人民軍 金剛
山地區 사령관 ○71.4.28 人民軍出版社 주
필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성북) ○76.5 人民武力部 總政治局 부국
장(중장) ○79.10 소련 방문. ○현재 總
政治局 부국장.

윤 호석(尹虎碩·男) ○72.12 最高人
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7.12 金屬工業
部 부장(현재).

이 건일(李健一) 1935.11 咸北 鏡城
출생 ○32~45.9 東滿洲 일대에서 고아
생활 ○66. 內閣 護衛局(김일성 호위 부
관) ○70.11 黨中央委 위원 ○74.1 黨中
央委 농업부장.

이 계백(李季白·男) 1906.1 濟州道涯
月面 新殿里 출생 ○55.5 總聯 中央事務
局 국장 ○56.5 總聯 大阪府 본부위원장 ○
60 朝總聯 中央委員會 부의장 ○67.11 最
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新北靑) ○68.
11 朝總聯 中央歸國對策委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충산) ○74.
9~10 제61차 IPU 總會 참석(몽경) ○75.
9~9 제62차 IPU 總會참석(영국) ○77.
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현재
總聯中央委 부의장.

이 근모(李根模·男) 南滿洲 출생 ○
52.10 黨 중앙조직부장 ○58.5 同 中央委
員會 부부장 ○61.9 黨中央委 후보위원
(제 4차 당대회) ○66.10 黨代表者會議집
행부 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股票) 黨中央委員會 문화예 술부
장 ○68.7 제2機械工業相 ○70.11 黨中央
委員會 위원, 정치위후보위원(제 5차 당
대회) ○71.6.20 黨政治委員會후보위원
겸 平南道委 책임비서 ○72.12. 最高人民
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
員會 위원 ○73.9.17 黨中央委 정치위원
○73.9.20 政務院 부총리 ○75.9 黨中央
委 비서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
의원 ○77.12 平南道人民委 위원장 ○현
재 最高人民會議 자격심사위원, 平南道黨
책임비서.

이 기영(李箕永·男) 1894.5 忠南天
安 출생. 日本 正則英語學校 유학, 文學
修士 ○25.8 朝鮮 프롤레타리아 藝術同盟
員 ○34. 2년간 복역 ○45.11 朝·소文化
協會 中央委 위원장 ○46. 2 北朝鮮臨時
人民委員會 중앙위원 ○46.8 訪소 사절단
장 ○47.2 北鮮朝人民會議 常任委員會 위
원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48.9 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 ○55.10
朝鮮作家同盟 中央委員會 상무위원 ○54.
6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選舉委員會 위원
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同 부의장 ○58.1 朝·蘇 親善協會 위원

北韓人名錄

장 ○58.5 朝鮮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상무위원 ○61.5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 겸 상임위원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2.10 最高人民會議 부의장 유입(제 3기 1차 회의) ○64.11 朝·소 親善協會 중앙위원장 재임 ○66.12 文藝總中央委員會 위원장 ○67.11.25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겸 부의장 ○68.1 <祖國統一> 편집위원 ○70.5 소련 最高會議상임위 정령으로 붉은旗 勞力勳章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朝·소親善協會 위원장 ○現在: 文藝總委員長.

이 길송(李吉松·男) ○68.8 勞動黨平南道委 책임비서 ○70.11 勞動黨중앙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同 예산심의위원회위원 ○72.12 勞動黨 兩江道委 책임비서 ○73.2 勞動黨 咸南道委 책임비서 ○74.12 咸南人民委員會 위원장 ○79.8 咸南道黨 책임비서(현재).

이 두산(男) ○63.11 平壤師範大學 학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73.2 金日成 軍事綜合大學 총장(증장 현재)

이 면상(李冕相·男) 咸南道 咸興 德山 출생. 日本音樂學校 졸업. 作曲家 ○46.3 朝鮮音樂家同盟 위원장 ○46.3 北朝鮮文學藝術總聯盟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53.9 作曲家同盟 위원장 ○56.5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상임위원 ○57.2 平壤音樂大學 학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57.9 最高人民會議 상임위원 ○

58.6 朝·불 親善協會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58.7 對外 文化連絡委員會 중앙위원 ○61.1 朝鮮音樂家同盟 중앙 위원장 ○61.5 祖國平和統一 委員會 위원 겸 상무위원 ○61.11 文藝總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61.9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2.10.8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同 상임위원회위원 ○64.12 歌劇代表團 단장으로 越盟 방문 ○67.11 最高人民會議제 4기 대의원 ○70.11 黨中央委員會위원 ○73.10 김일성賞 人民藝術家 작곡가 ○현재: 조선음악동맹위원장

이 성록(李成祿·男) ○78.8 貿易部 부부장 ○78.9 朝·알마니아間 1979年度 商品互相 納入 및 支拂에 관한 議政書 조인 ○현재 貿易部 부부장.

이 성희(李成熙<希>·男) ○63.9 黃北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7.6 黃南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8.8 시리아 주재 대사 ○72.8 外務省 부상 ○72.12 外交部 부부장 ○74.12 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오스트리아 방문 ○77.10 金日成 특사로 토고·카메룬 방문 ○78.7 金日成 특사로 루마니아 방문.

이 세웅(男) ○78.10 貿易部 부부장 ○78.10 政府 貿易代表團 단장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78.11 朝·방글라데시 貿易 議定書 조인 ○현재 政務院 貿易部 부부장.

이 시원(男) ○70.7 人民軍 소장 ○70.7 人民軍 總政治局 부국장 ○70.11 黨 文獻編輯委 위원장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 ○75.5 人民武力部 總政治局 부국

장(소장).

이 영창(李榮昌·男) ○72.2 對外經濟委員會 부위원장 ○72.12 對外經濟事業部 부부장. (현재)

이 오승(男) 1918 滿洲 汪清縣 백초동 출생 ○48 政治保衛部 부원 ○54. 勞動黨 中央委 지도원 ○58. 勞動黨 中央委 조직 과장 ○62. 勞動黨 中央委 부부장 ○63. 10 人民軍 少將 ○65.5 民保省 總參謀部 隊列局 국장(소장) ○69. 第1集團軍 정치위원 ○71.6 平壤 萬景臺革命學院 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4.12 平壤 萬景臺革命學院 원장(중장·현재).

이 응무(李勇武·男) ○70.6 民保省 총정치국 제 1 부국장(중장) ○70.11 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중서) ○72.12 最高人民會議 資格審査委 위원 ○73.10 人民軍 總政治局 국장(중장) ○74.2 人民軍 상장 ○74.6.24 黨中央委員會 정치위원, ○77.9 鑛業部門熱誠者會議 참석 ○현재 不明.

이 증목(李鍾穆<木>·男) 1938.7 兩江道 출생 ○69.6 外務省 8국장 ○72.9 外務省 부상 ○72.12 外交部 부부장 ○73.10 제28차 유엔 총회 참석 ○74.10 제29차 유엔總會 代表團 단장 ○75.10 제30차 유엔總會 代表團 단장 ○78. 外交部 제 1 부부장 ○현재 外交部 제 1부부장.

이 증옥(李鍾玉·男) 1911 咸北 출생. 滿洲 하르빈에서 工業大學 졸업.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49.10 産業省 국장 ○50. 産業省 부상 ○54.3 輕工業省 부상 ○55.1~11 輕工業相 ○56.1 黨中央委員會 공업부장 ○56.1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56.4 黨中央委員會위원, 同 常務委 후보위원 ○57.8.27 最高人民會議 제 2기 대의원,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유임 ○60.1 부수상 ○60.4 重工業委員會 위원장 ○61.9 黨中央委 政治委 위원 ○62.8.19 金屬化學工業相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2.10 부수상 겸 金屬化學工業相 유임 ○65.10 科學院 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중성) ○67.12 4차 內閣 부수상 ○71. 鑛業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2.12 重工業委員會 위원장 겸 中央人民委 위원 ○76.12 政務院 부총리 ○77.3 黨政治委 후보위원 ○77.12 中央人民委 위원 및 政務院 총리 ○78.5 黨 中央委 政治委員, 총리(현재).

이 준옥(男) 1931.1 출생. ○69.6 駐 이라크大使館 3등 서기관 ○72.4 外交部 과장 ○73.6 外交部 국장 대리 ○77.1 駐유엔代表部 참사관 ○77.3 駐카이아나 大使 ○77.11 駐자마이카 大使 ○79.9 駐 그레나다 大使.

이 지찬(李智燦·男) 平北 출생. ○48.3 北勞黨 中央委 후보위원(제 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55.12 電氣省 부상 ○59.6 電氣石炭工業省 부상 ○70.11 黨中央委員會위원(제 5차 당대회) ○76.9 電力工業省 부상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전력 공업부장 ○78.3 勞力英雄 칭호 및 국기 훈장 제 1급 ○78.7 經濟代表團

北韓人名錄

단장으로 루마니아·헝가리 방문 ○현재
政務院 電力工業部부장.

이 진규(李珍圭·男) 1917.12 京畿道 龍仁郡 基興面 農西里 출생. ○55.5 朝總聯 中央委 교육부장 ○58.5 同 교육문화부장 ○60.6 總聯 中央委 의전실장 ○67.11 總聯 朝鮮大學 부학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9.10 朝鮮大學 학장 ○72.12 朝鮮大學校총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1 朝總聯 中央委員會 부의장 ○77.9 總聯 부의장으로 재선 1977.11 勞力勳章 ○77.11 最高人民會議제 6기 대의원 ○78.9 김일성 훈장 ○현재 總聯 부의장.

이 진수(李鎭洙·男) 咸北 출생 ○50.10 朝鮮職業總同盟 中央委 부장 ○55. 最高檢察所 검사 ○57.9 最高檢察所 부소장 ○62.11 朝鮮民主法律家協會 부위원장 ○65.7 社會安全省 부상, (총장) ○70.7 社會安全省 제 1 부상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社會安全部 부부장 ○73.2.21 社會安全部 부장 ○76.12 中央檢察所 소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中央檢察所 소장(현재).

이 창선(李昌善·男) ○48.10 朝鮮文學藝術家總同盟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 ○58. 教育文化省 문화국장 ○60. 文化省 선전국장 ○61.7 勞動黨 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 부부장 ○62.1 內閣 物資總局 資材管理局 부국장 ○62.10 最高人民會議 예산 위원회 위원 ○63.10 文化省 부상 ○63.10 平北道 人民委 위원장 ○63.12 對外文化連絡委 문화부장 ○65.8 朝鮮·

越南親善協會 부위원장 ○68.5 朝·라틴 아메리카 親善協會 부위원장 ○70.3 문화부 제 1 부상 ○71.11 萬壽臺藝術團 단장으로 싱가포르·버어마 방문 ○72.8 文化相 ○1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文化藝術部 부장 ○74.9 제61차 IPU 總會 참가 ○현재 문화예술부장.

이 철봉(李哲奉·男) ○70.1 人民軍 소장 ○70.1 軍事 代表로 시리아방문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4.7 交通遞信 委員會 해운부장 ○77.12 政務院 육·해운부장(현재).

이 청일(女) 70.10 黃北道 人民委위원장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2.8 赤十字會 中央委 상무위원 ○72.8 南北赤十字 本會談 대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8~73.5 南北赤十字 本會談 대표(제1~6차) ○74.5 女盟代表團 부단장으로 日本總評 제 19차 勤勞女性集會 참가 ○75.2 女盟中央委 비서 ○75.2 女盟代表 단장으로 東獨女盟 제10차 全國大會 참가 ○75.5 女盟代表團 단장으로 아랍 女性同盟大會 참가(이타크).

이 태백(男) ○71.8 北朝鮮 金屬品 輸出入會社 사장 ○72.9 貿易部 부상 ○73.4 國際貿易促進委員會 부위원장 ○76.3 朝·印間 1976年 商品流通에 관한 議政書 조인차 무역대표로 인도 방문 ○76.9 通商機關 協力에 관한 協定 대표로 멕시코 방문 ○77.12 朝·이집트間 商品流通에 관한 議政書 조인 대표.

이 학운(男) 1924 출생. 中卒 ○6.25

당서 偵察中隊 중대장, 同 대대장 제 6師團 정찰과장 ○61.12 民保省 偵察局長 ○92. 特殊偵察司令部 정찰과장 ○74.6 人民武力部 정찰국장(소장) ○현재 總參謀部 偵察局長.

임 수만(男) ○67.10 勞動黨 咸南道委 책임비서 ○68.9 勞動黨 咸南道委제 1 비서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위원(제 5 차 당대회) ○73.5 勞動黨 兩江道委員會 책임비서 ○79.8 黨兩江道委 책임비서(현재).

임 춘추 咸北 출생. 高卒. ○50.6 黨 江原道委 위원장 ○51.4 人民軍 第 7師團 정치부장 ○55.10 黨連絡部 부부장 ○56.12 勞動黨 統一大學 교장(소장) ○57.5 알바니아 駐在大使 ○58.12 불가리아 駐在大使 ○61.9 黨中央檢事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 ○62.10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서기장 ○66.10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 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서기장, 위원 ○73.4 金日成放送大學 학장 ○76.4 黨中央委員會 政治委 위원 및 비서 ○77.3 黨中央委員會 정치위원 ○77.9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中央選舉管理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7.12 中央人民委 서기장, 最高人民會議資格審査委 위원장 ○78.9 全國 教育일군大會 참석. ○현재 中央人民委 서기장.

임 형구(男) ○55. 朝鮮民主青年同盟 黃北道委 위원장 ○56.11 同 中央委 위원 ○57.11 民青 中央委 위원 ○61.11 黨黃北

道委 선전선동부장 ○65. 民青 黃北道委 위원장 ○67.3 勞動黨 黃北道委 책임비서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信川) ○67.12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資格審査委 위원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 차 당대회) ○73.12 人民奉任委員會 위원장 ○75.6 黨中央委員會 부장 ○78.3 全國 都市經營部 熱誠者會議에서 보고.

六

장 윤필(張允弼·男) 1920 平南平原郡 강오리 출생. 中央黨學校 출신 ○50~53 人民軍 第18聯隊 政治保衛部 군관 ○54. 勞動黨 中央委員會 조직부 과장 ○56.6 平南人民委員會 위원장 ○57.8 最高人民會議 제 2 기 대의원 同 豫算委 위원 ○61.2 黃南道 人民委員會 위원장 ○61.9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 4 차 당대회) ○62.10 黃南道 農業經營委員會 위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白川) ○70.7.11 農業委員會 위원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위원(제 4 차 당대회) ○71.10 政府 農業代表團 단장으로 투마니아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肅川) ○75.5 協同農場 指導總局 국장 ○75.10 農業委 干潟地 및 灌溉建設總局 국장 ○77.6 農勤盟 中央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常設會議 의원 ○78.9 朝·아프리카 親善協會 위원장 ○현재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장 철(張徹·男) 1926 慶北 義城郡 출생. 明治大學 政經學部 졸업. 同 大學院

北韓人名錄

1년 수료 ○46.5 愛知縣 朝鮮 第4小學校 교원 ○48.3 北勞黨 中央委 위원(제2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1기 대의원 ○57.5 在日朝總聯 中央教育部차장 ○61.5 同 教育部長 ○65.2 文化省 부상 ○70.11.13 黨中央委員會 후보위원(제5차 당대회) ○72.12 文化藝術部 부부장 ○75.5 萬壽臺藝術團 단장으로 소련 방문 ○77.11 巧藝團長으로 유럽國家 방문 ○78.7.26 國立交響樂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8.9 萬壽臺藝術團 단장으로 東歐共產圈순회 ○현재 文化 藝術部 부부장.

전 금철(全金哲·男) ○72.11 제3차 南北赤十字會談 대변인 ○73.3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 幹事會議 참석 ○73.5 南北調節委員會 제3차 幹事會議참가 ○74.6 南北調節委 대변인 ○현재 불명.

전 명수(全明珠·男) 1952 모스크바綜合大學 修了 ○56.10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과장 ○59.11 和蘭駐在 대리 대사 ○60.5 外務省 3국 부국장 ○61.9 폴란드駐在大使館 1등 서기관 ○63.4 外務省 제3국장 ○69.3 外務省 국장 ○72.3 外務省 부상 ○72.12 外交部 부부장 ○73.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불가리아등 순방 ○74.4~5.10 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잠비아·부룬디·루안다·리비아·니제르 親善 방문 ○75.2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잠비아·세네갈·자이레방문 ○75.5~6 金日成을 隨行, 루마니아·알제리·모리타니·불가리아·유고등 순방 ○75.7~8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쿠웨이트·레바논·카타르·아랍추장국·키프레스 방문 ○75.10 金日成 특사로 예멘·아랍共和國·카메룬·차드 방문 ○77.3 中共駐在 대사(현재).

전 문섭(全文燮·男) 兩江道 보천 출생. 中央黨學校 졸업. ○56.4 人民軍 第10 師團 사단장 ○60.8 人民軍 第2 軍團長 ○60.11 開城區域 駐屯軍 사령관(중장) ○61.6 第2 集團軍 사령관(상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3기 대의원 ○64. 社會安全省 호위국장 겸 社會安全省 부상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69.11 영웅칭호·금메달및 國旗勳章 제1급 ○70.8 軍事警務局長 ○72.12 最高人民會議 제5기 대의원 ○74.4 黨中央委 政治員會 후보의원 ○75.4 黨 및 政府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김일성 수행) ○75.9 勞農赤衛隊 총책임자 ○77.11 最高人民會議 제6기 대의원 ○77.12 黨政治委 위원 ○현재 黨政治委 위원.

전 문옥(男) 咸鏡道 출생 ○64.4 第1 集團軍 부사령관(소장) ○66.4 第5 集團軍 부사령관 ○70.11 勞動黨 中央委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4기 대의원 ○73. 姜健軍官學校 교장(중장) ○현재 第6 軍團 군단장.

전 인철(全仁徹·男) 南韓 출생. 모스크바大學 研究院 수료. ○58.5 外務省 3등 서기관 ○64.12 外務省 참사 ○67.8 在日僑胞 北送協定 연장 모스크바會議 참가(대표단장) ○67.8 赤十字會 中央委 부위원장 ○72.12 外交部 참사 ○73.3.10 外交部 정책고문 ○74.6.8 外交部 부부장 ○74.11 北韓赤十字會 부위원장 ○77.1 모스크바 방문.

전 재홍(男) 1940.9 출생 ○70. 外交部 근무 ○75~76 유엔駐在 常任 읍사버대

表部 통역 ○76.10 노르웨이 駐在大使館
2등 서기관 ○78.3 유엔駐在常任옵서버
代表部 부대표(현재).

전 창철(全昌哲·男) 滿洲 間島 출생.
1948 소련留學. ○56.8 勞動黨 中央委員
會 부부장 ○58.6 越盟 주재 대사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2.
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7.3
黨中央委 連絡部學校 교장 ○67.10 職總
中央委員會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포항) 외교위원, 同 常任
委 서기장 ○68.5.21 朝·亞阿 團結委員
會 위원장 ○70.4 職盟 위원장 ○70.11 勞
動黨 中央委員會위원(제 5차 당대회) ○
71.3 越南 人民鬭爭支持 委員會 위원장
○71.11 最高人民會議 常任委 서기장 ○
71.11 中央選舉委員會 서기장 ○72.8 祖
國統一民主主義戰線 의장 ○72.12 最高人
民會議 사무장 겸 常設會議 의원 ○76.
11.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
12.15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및 사
무장(현재)

전 경희(鄭慶姬·女) 1928 출생. ○51
.6 越北 ○53.초 中央黨學校 수료 ○53.
10 開城 松都政治學校 수료 ○60~66 咸南
道黨 宣傳部 지도원, 道黨教育部 부부장
○67~73 連絡部 공작원 ○70.11 黨中央
委 위원(제 5차 당대회) ○71.10 黨中央
委 부장 ○73~74.5 文化部 부부장 ○76.9
對南工作機構 연락부장 ○현재 黨中央委
위원.

전 광순(鄭光淳·男) 1927.1 平北新義
州 출생. 金日成綜合大學 졸업 ○56 金日
成大學 주임 교수 ○61 平北 人民委 부

위원장, ○64. 對外文化連絡委 부위원장,
올림픽委 부총재 ○72.2 올림픽 委員會대
리 겸 高等教育省 부상 職業同盟 中央委
부위원장 ○72.2 朝鮮 올림픽委員會 부위
원장 ○73.1 올림픽委員會 부위원장 겸
教育部 부부장 ○73.3 國際貿易促進委員
會 상무위원 ○74.18 아르헨티나 대사 ○
76.10 유고 대사.

정 동익(鄭東益·男) ○67.4 勞動黨
平壤市委 서기 ○69.7 同 비서 ○70.11
勞動黨 中央黨 부부장 ○73.2 勞動黨 咸
北道委 책임비서 ○73.10 勞動黨 중앙위
원 ○73.10 勞動黨 平南道委 책임비서 ○
74.4 平南道 人民委員會 위원장. ○현재
不明

정 동철(鄭東詰·男) ○58.5 兩江道
人民委員會 위원장 ○61.9 黨中央委 檢
査委 위원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2.10 林業 相 ○67.11 最高人
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0.9. 最高檢察
所 검사총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제 5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平南 내남) ○72.12 中央
檢察所 소장 겸 最高人民會議 法案審議委
위원 ○77.10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
央委 의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의원 및 法案審查委員會 위원(현재).

정 명갑(男) ○72. 國家計劃委員會 부
위원장 ○ 第3軍團 군단장(현재).

정 목(男) 1921 출생. 日本美術大學중
퇴 ○45. 中國에서 귀국 ○50. 兵器局長
○52. 後方總局 생산국장 ○53~56.4 후

北韓人名錄

방총국장 ○56.4 黨中央檢事委 위원 ○60. 중장 ○73.5 후방 ○현재불명.

정 송남(鄭松南·男) 1926.5 咸南咸興市 盤龍山洞 출생 ○63.5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대외 과학기술 협조국장 ○68.3 對外經濟委員會 부위원장 ○69.10 對外科學技術交流協會 부위원장 ○70.7 政府代表團 단장으로 루마니아 방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함남 해방) ○72.12 政務院 對外經濟 事業部 부부장 ○75.4 黨中央委員會 위원 ○79.9 對外經濟 事業部 부장(현재).

정 신혁(男) ○79.3 天道教靑友黨中央委員會 위원장 (현재).

정 오태(男) 1917 출생 ○65.6 民保省 監察局 특수부국장(소장) ○67.10 人民軍 總政治局 부국장(소장).

정 용택(鄭龍澤·男) 1950년 金日成大學 졸업 ○54.10 平北道 人民委員會 부장 ○62.5 平北道 人民委員會 부위원장 ○64.12 平北道 農村經理委員會 부위원장 ○70.10 黃南 農村經理委員會 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대의원(咸南 소장) ○79.1 農業委員會 위원장 ○현재 政務院 農業委員會 위원장.

정 재일(男) ○72.8 南北赤十字 本會談 제 1차 회의 참가 ○72.10 南北赤十字 本會談 제 3차 회의 참가 ○73.3 南北赤十字 本會談 제 5차 회의 참가 ○73.5 南北赤十字 本會談 수행원으로 참가(6차·서울) ○76.6 南北赤十字 本會談 北赤代表團 대표(서 성철 후임·현재)

정 준기(鄭準基·男) 1924 출생 ○62.1 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 부부장 ○63.4 勞動新聞 책임 주필 ○63.4 黨出版社 사장 ○64.2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65.8 朝·인도네시아 親善協會 위원장 ○65.8 朝·베트남 親善協會 부위원장 ○66 黨代表者會議 집행부 성원 同 文獻編輯委 위원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당대회) ○71.1 記者團 단장으로 쿠바 經濟記者同盟 제 7차 大會에 참가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黃南 온천) 常設會議 위원 ○73.9 政務院 부총리 ○73.10 黨中央委 정치위원회 후보 위원 ○75.9 議會代表團 단장으로 제62차 IPU 總會 참가(런던) ○77.9 平壤 개최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議 組織委 부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부총리(제임명) ○현재 政務院 부총리.

조 명륙(男) ○76.519 이집트 代表團 平壤 訪問時 영접(중장) ○현재 空軍司令官.

조 명선(男) ○59~61.4 第47師團 사단장(대좌) ○75.6 人民軍 總參謀部 부총참모장(중장·현재).

조 명일(趙明日·男) 1932.1 兩江道 甲山郡 출생. ○53~71 金日成大學 교원,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장 ○71.9 赤十字會 문화선전 부장, 赤十字會 中央委 참사 ○72.8 赤十字會 中央委 서기장 겸 상무위원. 출판보도부장 ○71.9~73.5 제1,3,5,6차 南北 赤十字會談 대표 ○74. 中央人民委 참사 ○75.1 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南北調節委 부위원장(현재).

조 민성(男) ○74.11 防空(유도탄) 司令官(중장).

조 성백(男) ○69.12 黨中央委 부부장 ○77.11~12 黨일군代表團 단장으로 루마니아·불가리아 방문.

조 세웅(男)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서화) ○72.12 起陽트락트르工場 初級黨 비서 ○73.7 金星트락트르工場 初級黨 비서 ○73.7 김일성 훈장 ○78.3 김일성 大安重機械工場 현지 지도시 浮上.

조 영국(男) ○79.6 勞動黨 中央委 부부장 ○현재 勞動黨 中央委 부부장.

조 인규(男) ○58. 第1師團 사단장 ○64. 第1機動化師團 사단장(소장).

조 창덕(趙昌德·男) ○69.3 鑛業省 부상 ○72.12 鑛業技術總同盟 中央委員會 위원장 ○73.1 重工業委員會 광업총국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政務院 鑛業委員會 위원장(현재).

주 도일(男) 1907 출생, ○50.2 第2師團 政治部 주임 ○51.5 第4軍團 교도 연대장 ○57. 第26旅團 군수부장 ○58.5 第26步兵旅團 여단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4.12 第5師團 사단장 ○65.2 第6訓練所 소장(중장) ○65.9 第6軍團 군단장 ○66.9 第3集團軍 참모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69.2 第3集團軍 사령관(상장) ○70.11 黨 5차 대회 중앙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4.4 第3軍

團長(상장) ○75.10 第2軍團長(현재).

주 창준(朱昌俊·男) 咸北 출생 ○57.12 對外文化連絡委員會 부위원장 ○58.12 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 부부장 ○59.4 軍事停戰委員會 수석 대표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3.2 버어마 駐在 總領사 ○72.5 對外文化連絡委員會 국장 ○72.8 赤十字會 中央委 서기장 및 상임위원 ○72.8 南北赤十字會談 부단장 ○73.8 對外文化連絡委 부위원장 ○74.2 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부위원장 ○74.5 朝·壕 親善協會 위원장 ○76.3 朝·파키스탄 親善協會 부위원장 ○76.5 朝·뉴질랜드 親善協會 위원장 ○76.7 民主法律家協會 부위원장 ○76.10 赤十字 대표단 장으로 國際赤十字聯盟 理事會 참가(제네바) ○78.9 제64차 IPU 總會 참가(西獨).

주 화중(男) ○61.6 科學院 化學工業研究所 소장 ○63.6 科學院 부원장 ○63.12 科學者 代表로 東獨 및 소련 방문 ○77.12 國家科學 技術委員會 위원장 ○78.9 朝·세네칸 親善協會 위원장 ○현재 不明.

지 재룡(池在龍·男) 1940.5 咸南 출생. 金日成綜合大學 출신 ○72.12 社勞靑 중앙위원 ○73.5 社勞靑 中央委 부위원장 ○73.4 社勞靑代表團 단장으로 폴란드·핀란드 방문 ○75.1 朝鮮學生委 위원장 ○75.2~2 社勞靑代表團 단장으로 日本 방문 ○76.6 社勞靑中央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8.10 ~11 社勞靑 代表團 단장으로 소련 방문 ○79.2~3 社勞靑 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79.7 勞動黨 中央委 후보위원, 社

北韓人名錄

勞青 中央委員(현재).

진 충국(陳忠國·男) 1922.12 咸南 五老郡 출생. ○40 咸南中學校 졸업. ○43 東京外國語大學 中語科 졸업 ○46. 咸興中學校 영어 교사 ○48 民青 咸興市委위원장 ○49. 外務省 中國部 職員 ○50. 外務省 中國部 부장 대리 ○62.2 外務省 제 4 국 부국장 ○63.9 同 제 4 국장 ○67.8 印度駐在 大使館 영사 ○68.6 政府 代表團 단장으로 東南亞 순방 ○69.6 外務省 국장 ○73.7 外交部 부부장 ○73.7 유엔 歐洲事務局 상임 옵서버 대표(제네바) ○73.10 제28차 유엔總會 北傀代表團 대표 ○75.10 제30차 유엔總會 北傀代表團 대표 ○76.3 스위스駐在 大使 겸임 ○현재 스위스駐在 大使.

ㄸ

채 희정(蔡喜(熙)正·男) ○58 科學院 社會科學部門委員會 위원 ○60.5 人民經濟大學 교무부장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 차 당대회) ○61.9 黨中央委 부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위원(黃北 瑞興) ○65.4 內閣 참사 ○66.12 黨 中央委員會 부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7.12 政務院 노동행정부장.

천 세봉(千世鳳·男) 1901 咸南 高原출생. 普通學校 4년 졸업. 50년 소련 유학 ○42. 咸南 高原驛운송부 근무 ○45. 咸南 高原郡 人民委員會 근무 ○54.8 朝鮮作家同盟 中央委員會 위원 ○58.10 朝鮮文學藝術總同盟 중앙위원 ○61. 朝鮮作家同盟 中央委員會 소설분과 위원장 ○64.

文藝總 中央委員會 위원장 ○70.11 勞動黨 中央委員會 후보 위원(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파산) 同 常設會議 위원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최 두광(崔斗光·男) 平北 출생. 醫學專門學校 졸업 ○54.10 保健省 국장 ○62.10 保健省 부장 ○65.1 朝鮮赤十字會 상무위원 겸임 ○67.9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74.6 保健代表로 朝·헝가리間 保健協定 조인차 헝가리 방문 ○78.6 제 19차 社會主義國家 保健部長會議 참가차 폴란드 방문 ○현재 保健部 부부장.

최 윤량(男) 咸鏡道 출생. ○64.4 이전 第 4 集團軍 참모장(소장) ○64.4 第10 5戰車 사단장 ○66년 말 第 6 步兵師團 사단장 ○67. 第105 戰車師團사단장(중장) ○74.9 第 2 集團軍 부사령관(중장) 현재 不明.

최 운학(男) ○69.8 少將 ○70.4 平壤市 駐屯部隊 사령관 ○74.11 平壤防衛司令官(소장·현재).

최 원익(崔元益·男)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6.12 社會安全部 부장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社會安全部 부장 유임(현재).

최 원철(男) ○74.6 軍事停戰委 비서장(상좌) ○75.5 軍事停戰委 비서장(대좌).

최 익규(男) ○70.4 藝術映畫攝影所 연출가 ○72.10 <꽃파는 처녀>연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상당) ○77. 9 黨中央委 宣傳部 부부장.

최 인덕(男) ○67.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0.2 勞動黨 中央委 위원(중장) ○72.3 동해지구 사령관(중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3.5 제 1집단군 사령관 ○74.4 제 1군단장 ○79.5 中共 鄧영초咸興 방문시 영접 및 동행(상장).

최 재국(崔宰(載)國·男) ○69.7 財務省 부상 ○72.12 財政部 부부장 ○78.9 財政代表團 단장으로 中共 방문.

최 재우(崔載羽·男) 1913 咸北 출생.

○48. 黨 咸北道委 간부과장 ○57.4 國家計劃委員會 부위원장 ○57.8 機械工業省 부상 ○58.2 機械工業相 ○60.4 重工業委員會 부위원장 ○60.5 金日成綜合大學 물리학 부교수 ○61.8 科學院 측지 및 지구물리학 위원회 위원장 ○61.9 勞動黨 中央委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2.4 內閣 제 1 사무국장 ○62.1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6.10 黨代表者會議 문헌 편집국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1.3 부상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中央人民委員會 위원, 정무원부총리 겸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73.6 黨中央委政治委 후보위원 ○73.6 체코 백사자 훈장 2급 수여 ○74.6 經濟 및 科學技術委員會 대표단장으로 소련 방문 현재.

최 정근(崔正根·男) ○50. 金日成大學 졸업 ○54.5 商業省 공업품 관리국 부장

○58.10 貿易省 제 1국 부국장 ○65.1 通商代表團 단장으로 헝가리 방문 ○78.4 貿易部 부장(현재).

최 진성(崔鎭成·男) ○70.9 降仙製鋼所 당 비서 ○70.11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5차 당대회) ○72.8 日用品工業相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신곡) ○73.12 黨 中央委 부장 ○78.8 체코, 소련 방문 ○78.8 黨中央委 위원, 제 1경제부 부부장(현재).

최 현(崔賢·男) 1907.5 咸北 惠山 출생. ○47. 內務省 38警備旅團 여단장 ○48. 人民軍 정치국장(상좌) ○49. 人民軍 第 2師團 사단장(소장) ○51. 第 2軍團 군단장(중장) ○56.4 勞動黨 中央委員會 위원(제 3차 당대회) ○56.6 民族保衛省 부상(대장) ○58.44 遞信 相 ○61.9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同 常任위원 ○63.3 軍事委員會 부위원장 ○66.10 黨中央委員會 정치위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 同 常任委위원(만경대) ○68.12 民保相 ○70.11 黨中央委 원희政治委 위원 및 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72.12 人民武力部 부장, 中央人民委 위원, 國防委 부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현재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 부위원장.

E

태 병렬(太炳烈·男) 1913 咸北 출생. ○56.10 黨 中央委 부부장 ○61.9 黨中央委 후보위원(제 4차 당대회) ○62.10 最

北韓人名錄

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平壤 전송) ○ 65.1 黨中央委員會 부장 ○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석봉) ○ 70.3 영웅 칭호 및 금별 메달, 국기훈장 제 1 급(중장) ○ 70.9 黨 中央委員會 부장 ○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 차 당대회) ○ 72.9 黨中央 委員會 委員 軍事 부장 ○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평양)

ㅎ

한 덕수(韓德銖·男) 1907.6 慶北 慶山 郡安心邑東湖洞 27 出生. ○ 47.1 總聯중앙 문교국장 ○ 55.5 總聯中央委 議長團 수석 의장 ○ 57.4 朝聯大學 학장 겸임 ○ 67.7 朝鮮大學 이사장 ○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 ○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신명) ○ 72.2 노력영웅 칭호 ○ 77.2 국기훈장 제 1 급 ○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 현재 朝總聯 중앙의장.

한 시해(韓是海) 1934.9 出生. ○ 72.9 제 2 차 南北赤十字會談 대표 ○ 73.4 外交部 국장 ○ 73.10 제 28 차 유엔總會 北韓 대표 ○ 75.8 北赤 中央委員會 문화선전부장 ○ 75.10 유엔駐在 常任 傭서버 代表部 차석 대사 ○ 76.3 外交部 부부장 ○ 76.3 ~ 4 김일성 특사로 세네갈·기네·베닌·에덴·아랍共和國 방문 ○ 77.4~5 外交部 代表團 단장으로 가봉 방문 ○ 77.12 유엔 駐在 常任 傭서버 代表部 대표(현재).

한 웅식(韓雄植·男) ○ 72.11 勞動黨 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직속 책임 지도원 ○ 72.11 제 1 차 南北調節委員會 위원 ○

73.3 南北調節委 제 2 차 회의참석(평양) ○ 73.6. 南北調節委 제 3 차 회의 참석(서울) ○ 현재 不明.

한 주경(韓柱庚·男) 1924 서울 出生. 保安幹部學校 졸업. ○ 50~52 人民軍 第 2 師團 선동원(중좌) ○ 52~56 人民軍 第 2 師團 상급 선동원 ○ 62.1 軍事停戰委 비서장(상좌) ○ 67.4 軍事停戰委 비서장(대좌) ○ 73. 이집트駐在 朝鮮大使館 무관(육·해·공군 총괄) ○ 74.11 이집트 주재 北韓大使館 수석 무관 ○ 74.11 이집트 추방 平壤 도착 ○ 75.12 軍事停戰委 北韓 側 수석위원(少將·현재).

한 천추(男) ○ 65.12 社會安全省 體育指導委 위원장 ○ 69.5 人民軍 중장 ○ 70.1 社會安全省 교화국장 ○ 76. 特殊 8 軍團 軍 단장.

한 홍섭(韓弘燮·男) ○ 67.5 赤十字會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 67.11 保健省 부상 ○ 68.11 保健省 제 1 부상 ○ 70.3 朝鮮 醫學協會 초대 위원장 ○ 73.4 제비바世界 保健機構 26 차 총회 참석 ○ 73.5 政務院 保健部 부부장(현재).

허 경(許慶·男) ○ 58.3 生産協同組合 中央委 勞賃處 부처장 ○ 69.3 朝鮮 國際貿易促進委員會 부위원장 ○ 71.10 國家計劃委員會 부위원장 ○ 78.6 貿易部 부부장 ○ 79.8 말레지아駐在 大使(현재).

허 담(許淡·男) 咸北(경남) 出生. 모스크바大學 유학 ○ 48.10 모스크바大學 유학 후 外務省 참사 ○ 56.6 外務省 儀禮局 부국장 ○ 60.4 同 국장 ○ 62.1 外務省 부

상 ○65.4 김 일성의 수행원으로 인도네시아 방문 ○69.12 外務省 제 1 부상 ○70.7 外務 相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제 5 차 당대회)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72.12 中央委員會 위원 겸 外交部 부장 ○73.2 政務院 부총리 ○75.5 黨政治委 후보위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77.9~10 非同盟 外交部長 非常會議 참석 (뉴욕)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8.7 非同盟國 外相會議 참석 (유고) ○현재 政務院 부총리 겸 外交部 부장.

허 순(許淳·男) ○56.3 輕工業省 綿紡織 管理局 부국장 ○61.8 平壤紡織工場 지배인 ○63.8 輕工業委員會 부위원장 ○67.8 紡織 및 製紙工業省 부상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同 豫算審議委 위원, 政務院 輕工業部 부장 ○79. 輕工業委員會 위원장 (현재).

허 정숙(許貞淑·女) 1903.6 咸北경전 출생. ○45.10 朝鮮共產黨 宣傳煽動部 부 부장 ○46. 北朝鮮勞動黨 幹部部 부장 ○47.2 北朝鮮人民委員會 선전부장 ○48.3 北勞黨中央委 위원, 同委員會 부장(제 2 차 당대회) ○48.8 最高人民會議 제 1 기 대의원 ○48.9 文化宣傳相 ○49.6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중앙위원 ○56.4 黨 中央委위원(제 3 차 대회) ○57.5 對外文化連絡 協會 中央委 위원장 ○57.8 司法相 ○57.8 最高人民會議 제 2 기 대의원 ○58.5 朝鮮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상무위원 ○58.6 극기훈장 제 1 급 수여, 朝·불親善協會중앙위원 ○58.10 朝·中共親善協會 중앙위원 ○59.10 最高裁判所 소장 ○61.9 黨中央委員 탈락 (제 4 차 당대회) ○

72.1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서기국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 同 부의장 겸 常設會議 부위원장 ○73.1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서기국장 ○73.10 同委員會 부위원장 ○75.11 女盟 中央委비서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부 의장(현재).

현 무광(玄武光·男) 1913 咸興 출생. ○57.12 黨咸南道委 위원장 ○61.7 黨中央委員會 重工業部 부장 ○61.9 黨中央委 위원 겸 政治委員會 후보위원 ○62.5 黨 咸北道 黨委員會 위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대의원 同 常任委員會 위원 ○63.9 機械工業委員會 위원장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 기 대의원(낙원) ○67.12 제 1 기 機械工業相 ○70.4 黨代表團 단장으로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방문 ○70.11 黨 中央委員 당비서, 政治委 후보위원 ○71.2 黨中央委員會 重工業部 부장 ○71.4 黨咸南道委 책임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咸南 端川), 中央人民委員會위원 겸 交通遞信委員會 위원장 ○77.4 咸北道 人民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 기 대의원 ○79.8 淸津市黨 책임 비서(현재).

현 준극(玄峻極·男) 咸南道 출생. ○56.5 로동신문 편집국장 ○59.4 로동신문社 부주필 ○59.11 로동신문社 부사장 ○60.10 記者同盟 中央委員會 부위원장 ○60.10 記者代表團 단장으로 오스트리아 제 2 차 世界記者會議 참가 ○62.7 黨出版社 사장 ○66.12 中共 駐在大使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 기 대의원(平北용천) ○75.4 黨中央委 후보위원 ○77.5 對外文

北韓人名錄

化連絡委 부위원장 ○77.12 黨中央委 부부장 ○78.5 黨代表團 대표로 日本社會黨 대표와 회담 ○현재 黨中央委 國際部 부부장.

홍 기문(洪起文·男) 1906(1912?) 忠北 槐山 출생. ○47.10 民主獨立黨 상무위원 ○45.8 最高人民會議 제 1기 대의원 ○48. 金日成大學 교수 ○61.5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위원장 ○64.4 社會科學院 부원장 ○65.6 民主科學者協會 부위원장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 同 부의장 겸 常設會議 부의장 ○73.4 社會科學院 원장 ○73.9 김 일성 훈장 ○74.9~10 제61차 IPU總會 참가(동경) ○77.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의장 제 8차대회 참가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위원 및 부의장(현재).

홍 성룡(洪成龍·男) ○77.12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政務院 國家計劃委員會 위원장 ○78.11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 5기 제17차 전원회의참석. 현재 불명.

홍 시학(洪時學·男) ○58.5 勞動黨 咸北道委 위원장 ○62.9 黨 淸津市委 위원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7.11 最高人民會議 제 4기 대의원(동

림) ○68.9 黨 平北道委 책임비서 ○69.10 鑛業相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제 5차 대회) ○72.5 黨 江原道委 책임비서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江原 鐵原) ○73.3 江原道人民委 위원장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77.12 中央人民委 위원, 最高人民會議 豫算 審議委員會 위원장 ○현재 最高人民會議 豫算 審議委員會 위원장.

황 장엽(黃壯<長>輝·男) 1925 咸南 출생. 소련 留學 ○54.10 金日成大學 철학 강과장 ○58. 科學院 社會科學部門委員會 위원 ○59.12 黨 宣傳煽動部 부부장 ○62.10 最高人民會議 제 3기 대의원 ○64.10 內閣 참사관 ○65.6 金日成綜合大學총장 ○70.11 黨中央委員會 위원 ○72.12 最高人民會議 제 5기 대의원(平南삼봉) 同 의장 겸 상설회의 위원장 ○74.1~2 最高人民會議 代表團 단장으로 쿠웨이트·레바논 방문 ○77.11 最高人民會議 제 6기 대의원, 同 의장 및 상설회의 위원장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현재).

황 철산(男) ○56.5 祖國戰線中央委員會 확대회의 토론 ○62.5 第12師團 사단장 ○67.8 第2集團軍 부참모장(소장) ○72.5 人民軍 總參謀部 부총참모장(소장)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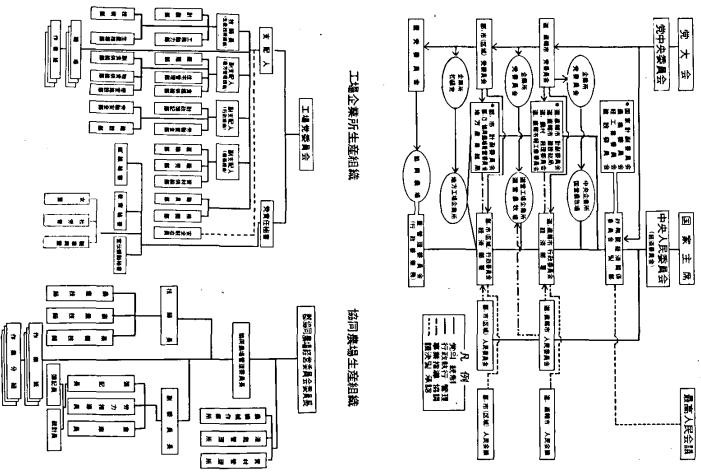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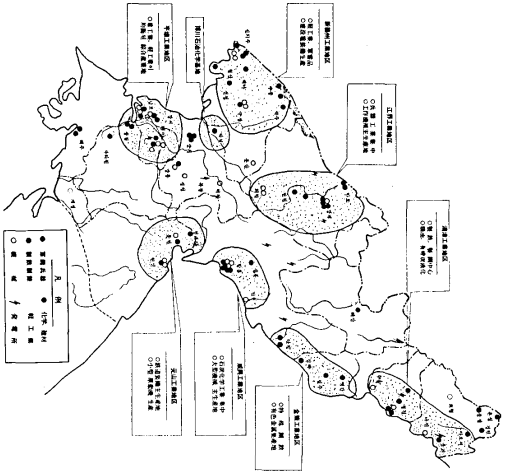
北韓 經濟 現 況

國士院 第一院 調查研究室
1980. 1.)

經濟 管理 與 行政 體系



主要 產業 分 布 圖



主要 經 濟 指 標

項 目	單 位	1975年	1976年	1977年	1978年	1979年
總 產 值	億 韓 元	11,300,000	12,500,000	13,800,000	15,200,000	16,800,000
工 業 產 值	億 韓 元	7,500,000	8,200,000	9,000,000	9,800,000	10,800,000
農 業 產 值	億 韓 元	3,800,000	4,300,000	4,800,000	5,400,000	6,000,000
礦 山 產 值	億 韓 元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林 業 產 值	億 韓 元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水 產 產 值	億 韓 元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其 他 產 值	億 韓 元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總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工 業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農 業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礦 山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林 業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水 產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其 他 產 值 增 長 率	%	10.0	10.6	11.2	11.8	12.5

經 濟 變 遷 過 程

年 代	經 濟 現 狀	經 濟 變 遷	經 濟 變 遷 的 特 點
1945-1949	戰 後 經 濟 崩 潰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49-1952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52-1956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56-1960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60-1964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64-1968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68-1972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72-1976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1976-1980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經 濟 復 甦 和 建 設

(編者: 韓 國 經 濟 研 究 所)





北韓地圖

(北韓概要 附錄)

國土統一院

